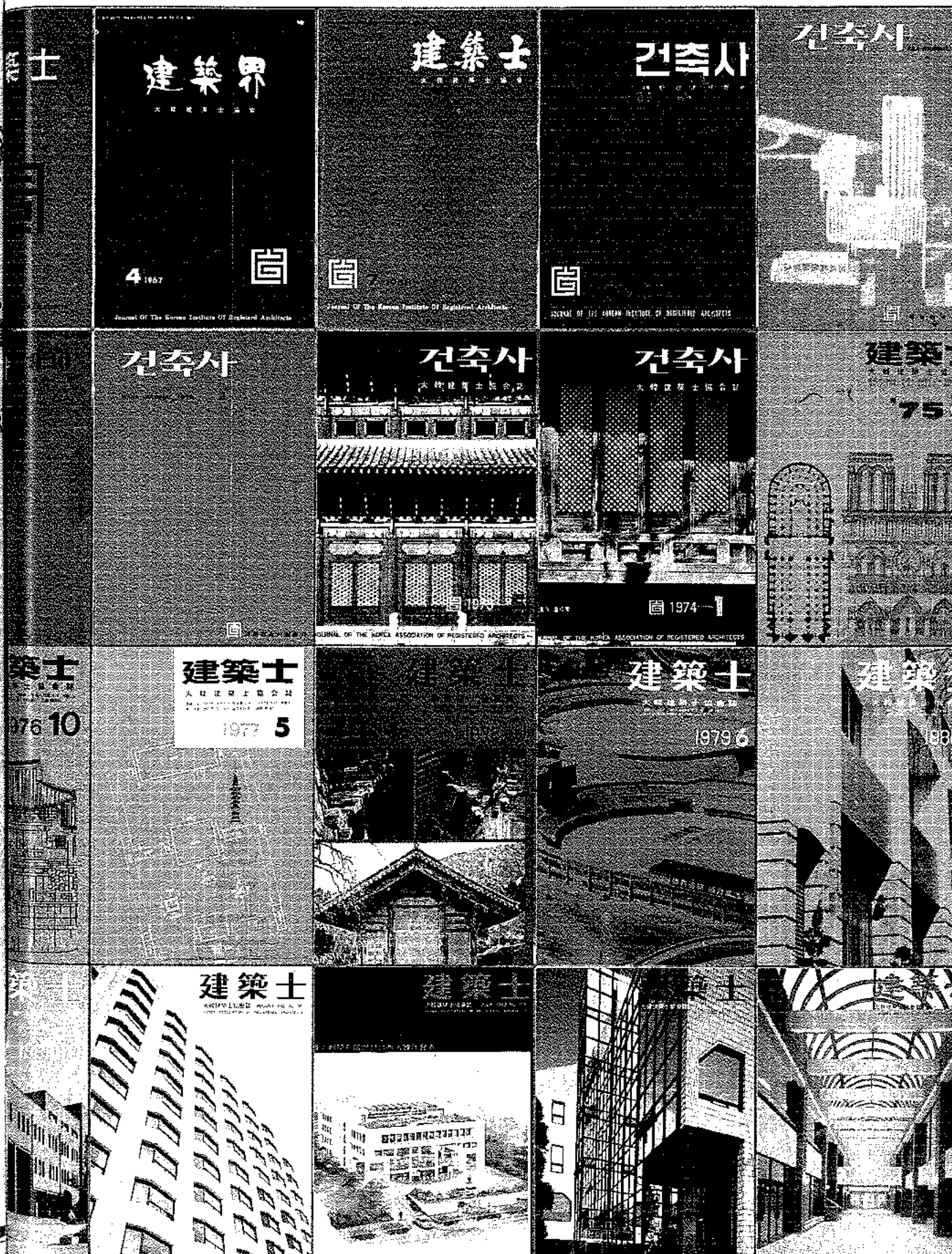


建築士

985. 10

大韓建築士協會誌 OCTOBER 1985. NO. 199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신지

드도 역
입니다

OK!

냉난방 연료비
특히 금강암면과
권료비를 50%
있습니다.

한 변형이 거의
리틀리거나 이음에
어질 염려가 전혀

Q

공기를 단축할
의 중량이 가벼워
절감됩니다.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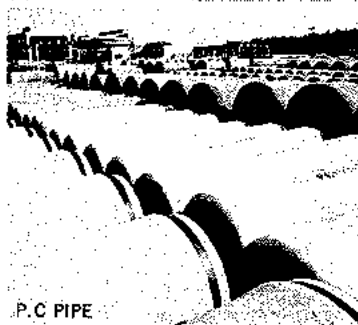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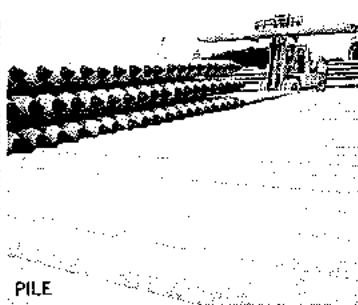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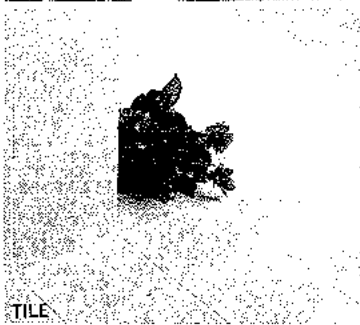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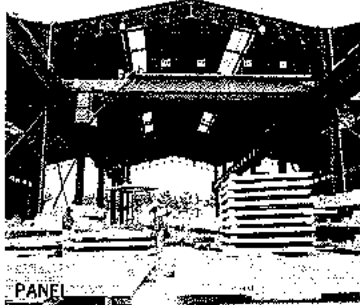
칼로도 쉽게
커 못, 나사, 본드
부착할 수
페인트, 벽지 등
쉽게 마감할

건축자재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

동 서산업은 "완벽한 건축자재만을 생산
공급한다"는 기업이념으로 기술혁신,
신제품개발, 철저한 품질관리로 소비자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 대그룹 계열의 건축자재 메이커로 국내 최초로
대형무늬타일과 각종 콘크리트제품 - 파일,
전주, 고압력 P.C관, P.C판넬 등 - 을 생산하며,

우 수자재만으로 사공되는 '86아시안게임 선수촌
건물 외벽도 동서의 타일붙임 P.C판넬로
시공하였습니다.



주요 생산품목

- 콘크리트 부문
 - P.C관, 전주, 체신전주
 - 고압 콘크리트 P.C관
 - 콘크리트 판넬
 - 철도용 침목 및 각종 P.S.BEAM
- 타일부문
 - 대형무늬 내장 타일
 - 대형바닥 타일
 - 외장 및 모자일 타일



東西産業株式會社

본사 : 서울특별시 중로구 평동 149-1 (서진빌딩) 725-7503~8
TLX : DOSIND. K24916, FAX : 733-7336

建築士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月刊建築士 1985年 10月 15日 発行

1985.10 NO.199

目次

發行人 - 吳雄鎬
編輯 - 出版事業部

編纂委員會

委員長 李永熙
副委員長 金 麟
委員 姜哲求
委員 金瑛碩
委員 徐千植
委員 金基雄
委員 呂鴻九

發行 - 大韓建築士協會
서울特別市江南區瑞草洞 山61-3
郵便番號 - 135
電話 - 서울 (02) 交 581-5711 (代)
5712, 5713, 5714
登錄番號 - 第1 - 1251
登錄日字 - 1967年 3月23日
U. D. C. 69/72(054-2) : 0612 (519)
印刷人 - 全允桂
(流文精版社/ 712-2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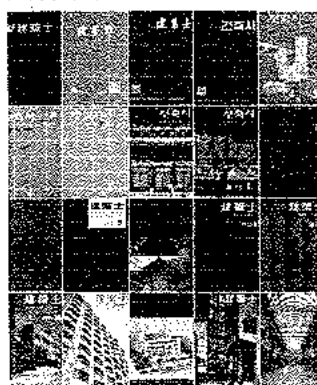
建築士憲章

- 1. 建築士는 建築環境을 善用人으로서 建設力을 發揮하여 建築文化를 推進하여 이끄는 職人이다.
- 2. 建築士는 國民의 快適한 生活空間과 環境의 改善을 위하여 建築士의 義務을 履行한다.
- 3. 建築士는 技術的인 建築物의 質的 向上을 위하여 學問으로서의 使命을 遂行한다.
- 4. 建築士는 友愛의 精神을 바탕으로 會員 相互에 協力하여 名譽와 品位를 保持한다.
- 5. 建築士는 社會의 發展을 위하여 國家政策에 協力하여 國家의 社會에 獻身的으로 奉仕한다.

大韓建築士協會

建築士

1985. 10



이번호 표지는 20년간의 표지 변천상을 모자이크로 함축하였다.

회원작품

- 골프클럽하우스·용평
김관욱 / 대호건축사사무소
- 금성시청사
이홍수 / 신일건축사사무소
- 3대를 위한 L씨주택
최승원 / 최승원건축사사무소
- 선퍼니처전시장
김종진 / 삼주종합건축사사무소
- 전곡성당
이강식 / 아도무·완종합건축사사무소

회원 PLAZA

- 4● 제언·알맞게 / 윤봉원
- 22● 제20회 定期總會에 즈음하여 / 오웅석
- 30● 지부순례 10 / 전라남도편
- 47● 정화칼럼 / 박수원
- 48● 좌담회·다세대주택 현상공모심사를 마치고
- 21● 일하며 생각하며 / 정정치
- 33● 협회 창립20돌을 맞아 / 김희준, 나상기, 유원재
- 36● 회고·건축사 파동 / 안기태
· 건축사지의 창간과 발전
· 회원작품전

연구논문

- 54● 외부환경설계 / 최기수
- 58● 도시재개발사업의 추진방향 / 주철훈
- ✓ 62● 인체의 열적 쾌적환경조건 / 손장열
- 68● 인테리어디자인·실내의 색채 / 조성열
- 73● 한국현대건축의 양식분류를 위한 시론 / 김경수
- ✓ 78● 건축설비의 기초(1) / 김신도

자료·기타

- 82●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 83●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중 개정령
- 88● 건축사지게재 회원논문 총목록
- 95● 건축사지게재 회원작품 총목록
- 81● 신입회원
- 53● 회원동정
- 108● 건축허가(도서신고) 면적변동추세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 199 호
구입년월일	1985.10.31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지부	



알 맞 게

윤 봉 원

건축사사무소 원전사

평소 생활에 기준을 늘 알맞게 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며 행동에 옮기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내 위치를 올바르게 알아야 행동에 옮기게 되기에 내 자신을 돌아 볼 기회를 자주 갖는다. 내 집에서부터 시작하여 직장 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나의 위치를 찾기에 부심한다. 올바르게 알았을 때 알맞게 처세하여 내 한 몫을 할 것이 아닌가? 세상에 태어나 내 몫을 다 못하고 끝을 맺는다면 어찌겠는가? 왔다가 갈 때는 몫을 다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건축인으로서 건축인답게 무엇인가를 사회를 위하여 공헌을 다하고 필요한 사람으로 왔다가 필요한 사람으로 끝을 맺는 값있는 인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세글자는 지키기에 극히 어려운 생활의 방편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알맞게”라는 세글자의 뜻이 “적당히”라는 내용과도 유사한 것 같으나 전혀 반대쪽의 의미임을 알게 된다. 알맞게 살기란 극히 어렵고 힘든 일이나 적당히 살기란 극히 쉬운 생활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 생활로 쉽게 사는길과 어렵고 가치있게 살아 가는 길은 백지 한 장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인간은 늘 적당히 쪽으로 유혹을 받는다. 쉽고도 가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생에 가치관을 구태어 따지지 않더라도 잔 값에 내 인생을 걸 수는 없지 않겠는가. 언젠가 이 세상을 마칠때 세인의 입에서 수고 했는데 필요했는데 또는 더 있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길 수 있어야 가치있는 인간의 형이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하여는 더욱 열심히 그리고 알맞게 삶을 살아 가야 하겠다.

내 집에서 내 위치도 알맞게 그리고 사회도 국가에서도 내 위치를 알맞게 갖다 놓아야 하리라 믿는다.

역시 우리가 속해있는 협회도 올바른 위치에 가져다 놓아야 제 구실을 하리라 믿는다. 그간 홍보 활동의 미흡으로 “건축설계사”로 알려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제자리가 아니라 건축사 협회 본연의 자세로 자리를 지켜주고 활동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각자 회원의 복지나 권익이 지켜지지 않겠는가. 누가 우리들의 위치를 부각시켜주지는 않을 것인가 하고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스스로 실 자리를 마련해야 하겠고 그러기 위하여는 부지런히 우리들의 위치를 알려 주어야 하겠다. 그것도 빨리 그리고 넓게 알려서 올바른 위치에서 노력한 만큼의 열매를 딸 때가 와야 하겠다. 그러기 위하여는 무리 하더라도 홍보하는 일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움직이고 계획적인 홍보를 해야 하겠다. 장기, 단기 계획도 수립이 되어야 하겠고, 지속적인 사업의 전개로 시간을 단축하여 일리는 작업을 해야 하겠다. 하루빨리 대접을 받고져 한다면 하루빨리 작업을 완수해 가야 하리라 믿는다.

협회는 타사업에 앞서 홍보활동에 많은 힘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믿는다. 그래야만 건축사들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당당히 영구건물의 창작 업무에 임 할 수 있을 것이다.

회 원 작 품

골프클럽하우스 · 용평
GOLF CLUB HOUSE · YONGPYEONG

김 관 욱
대호건축사사무소

금성시청사
KEUM-SUNG CITY HALL

이 홍 수
신일건축사사무소

3대를 위한 L씨주택
RESIDING FOR 3GENERATION

최 승 원
최승원건축사사무소

연희동 L씨댁
YEONHEE-DONG L'S RESIDENCE

이상현 · 안화인
대우건축사사무소

선퍼니처 전시장
SUNFURNITURE DISPLAY HALL

김 충 진
삼주종합건축사사무소

전곡성당
CHEON-KOK CATHOLIC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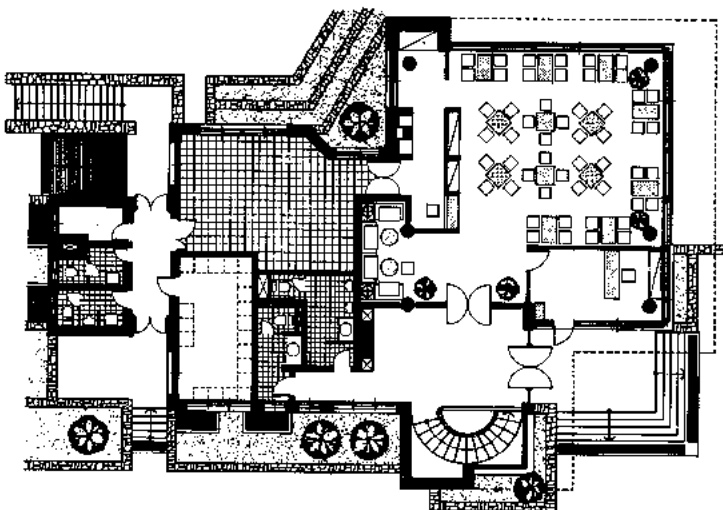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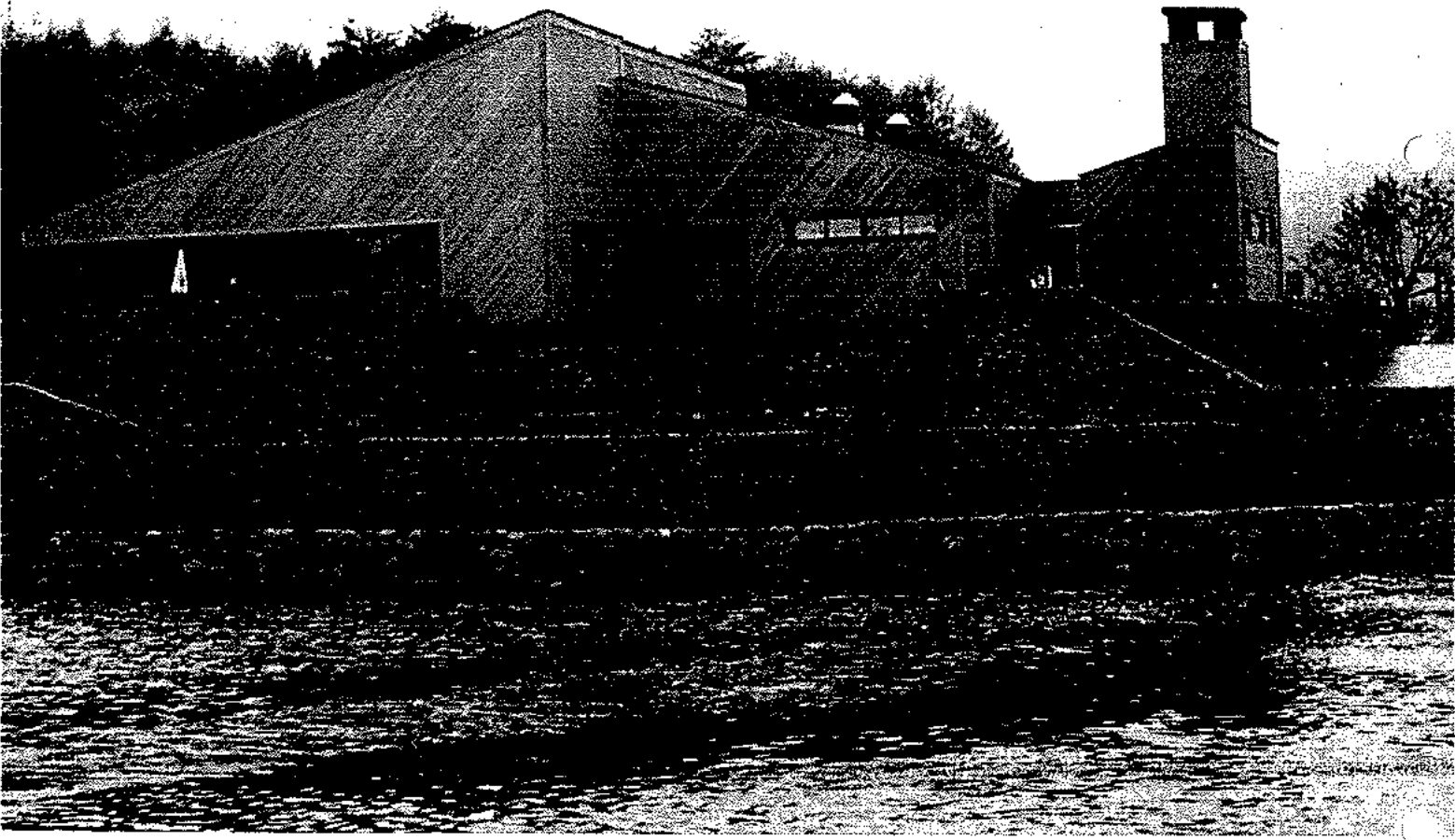
이 강 식
아도무 · 완종합
건축사사무소

골프클럽하우스 · 용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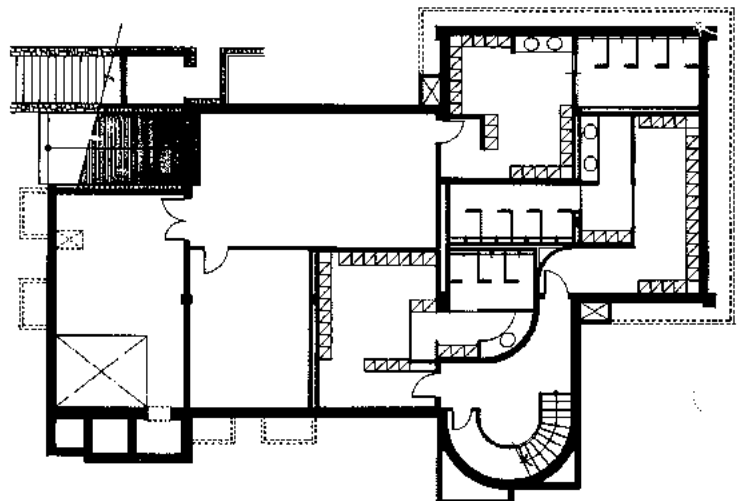
GOLF CLUB HOUSE · YONGPYEONG

김관욱 / 건축사사무소 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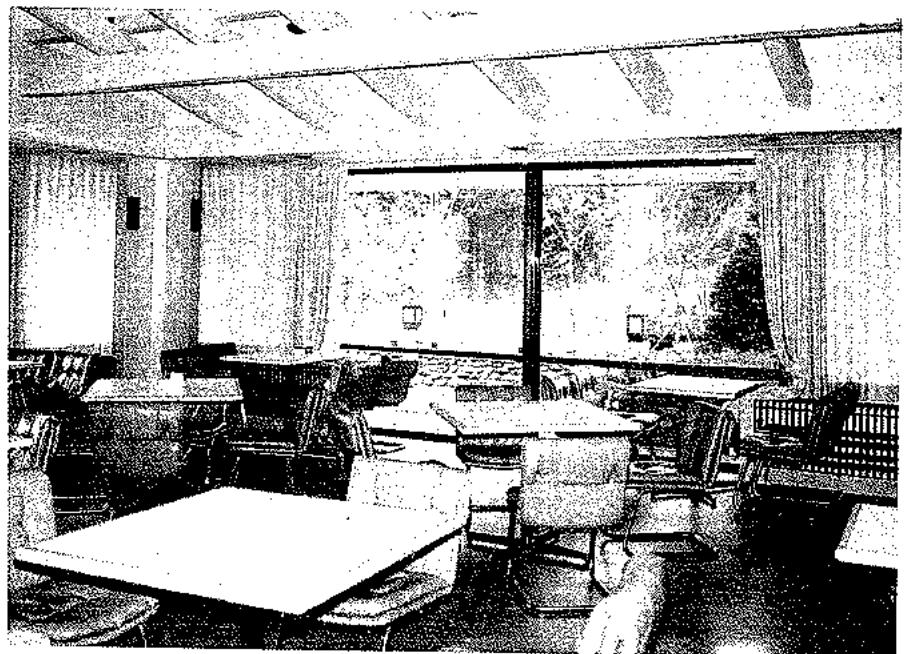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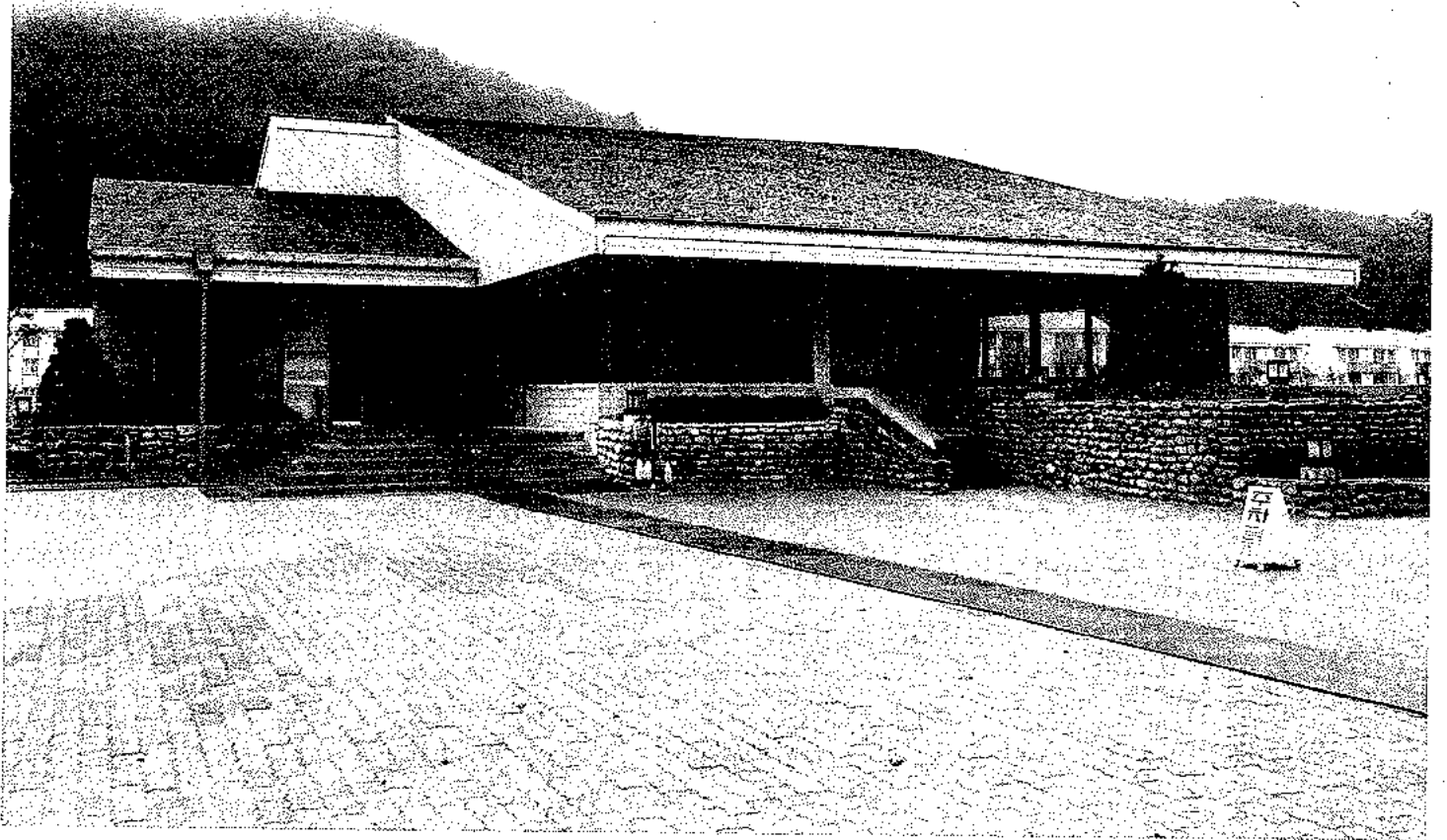
- 대지위치 :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 연 면 적 : 586.7㎡
- 구 조 : R. C 라멘조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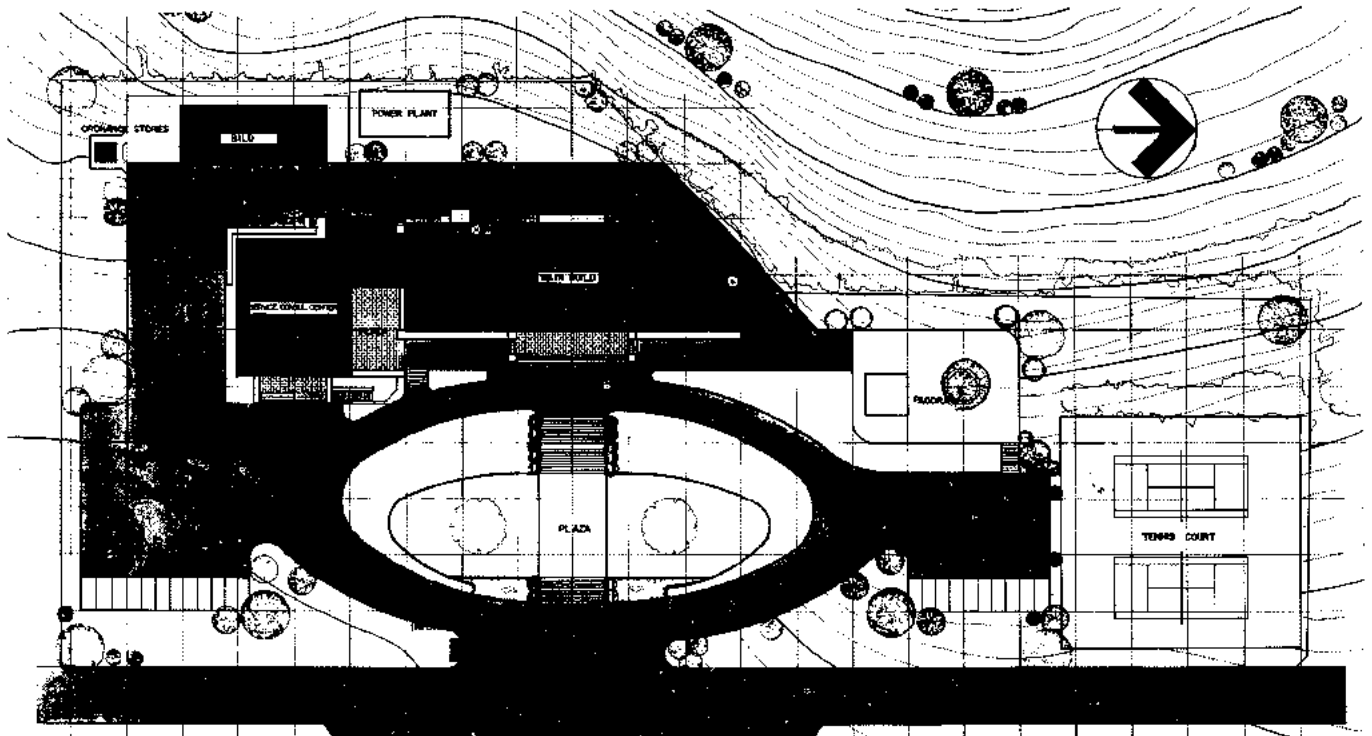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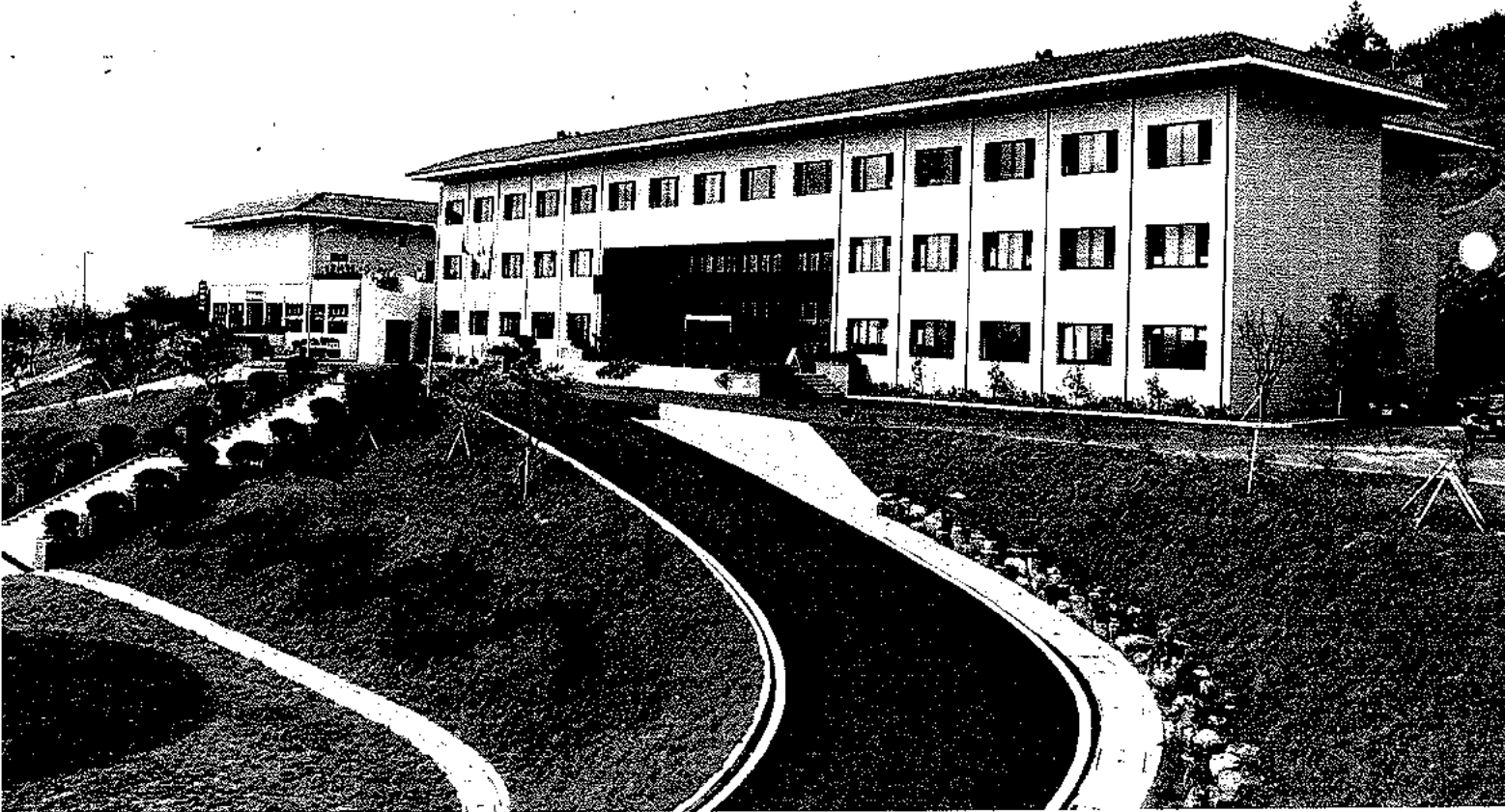


금성시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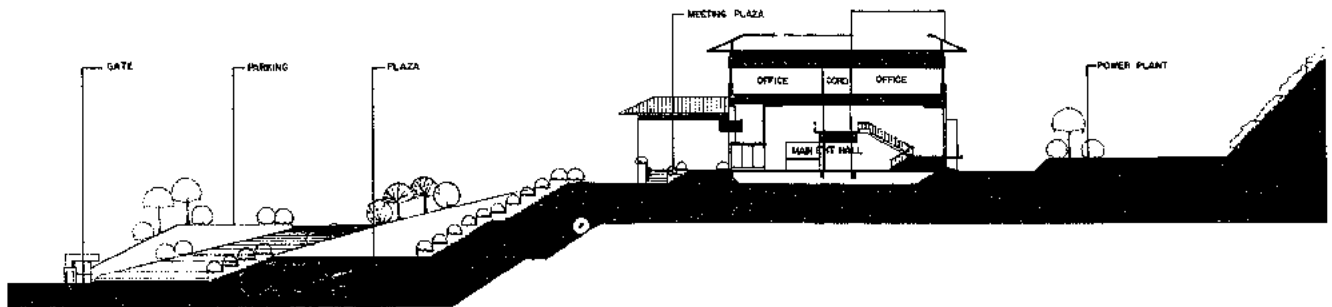
KEUM-SUNG CITY HALL

이홍수 / 신일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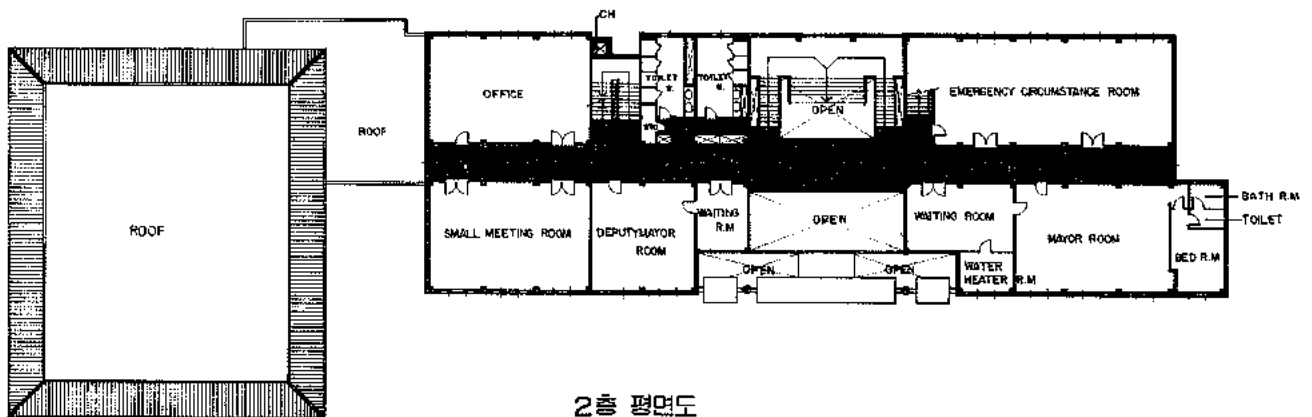
- 대지위치 : 전라남도 금성시 송월동
- 대지면적 : 18,483㎡
- 건축면적 : 2,074㎡
- 연 면 적 : 4,891㎡
- 건 패 율 : 11.22%
- 용 적 율 : 24.18%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및 절골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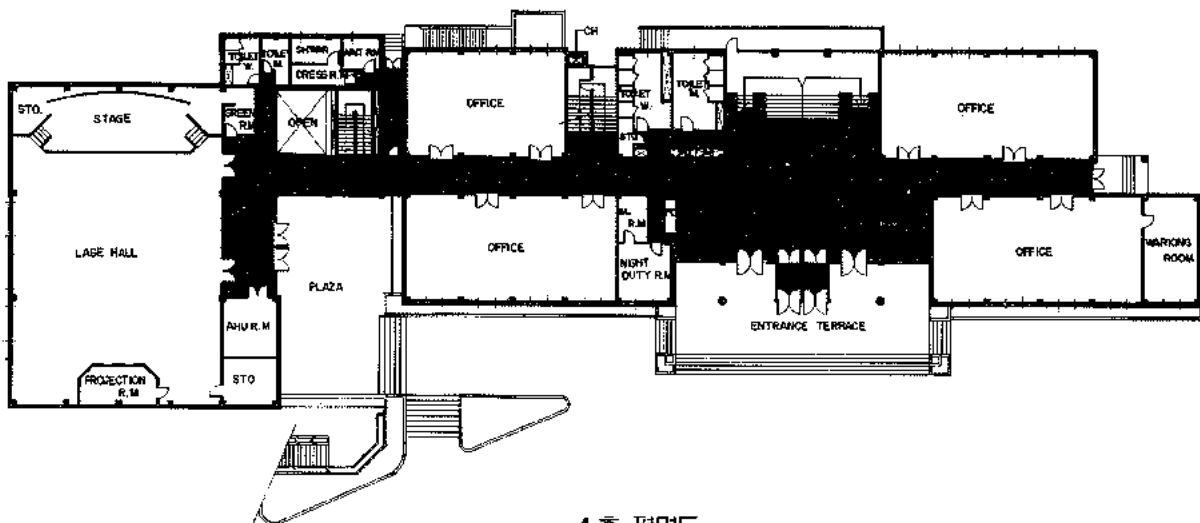
배치도



TRANSVERSE SECTION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3대를 위한 L씨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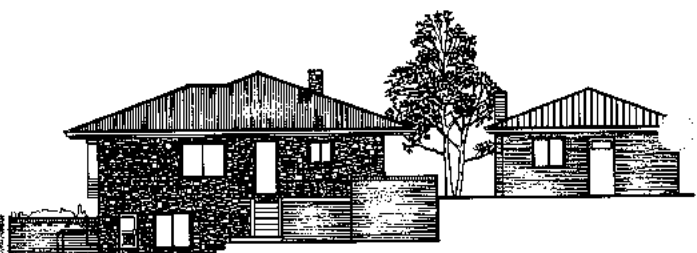
RESIDING FOR 3GENERATION

최승원 / 최승원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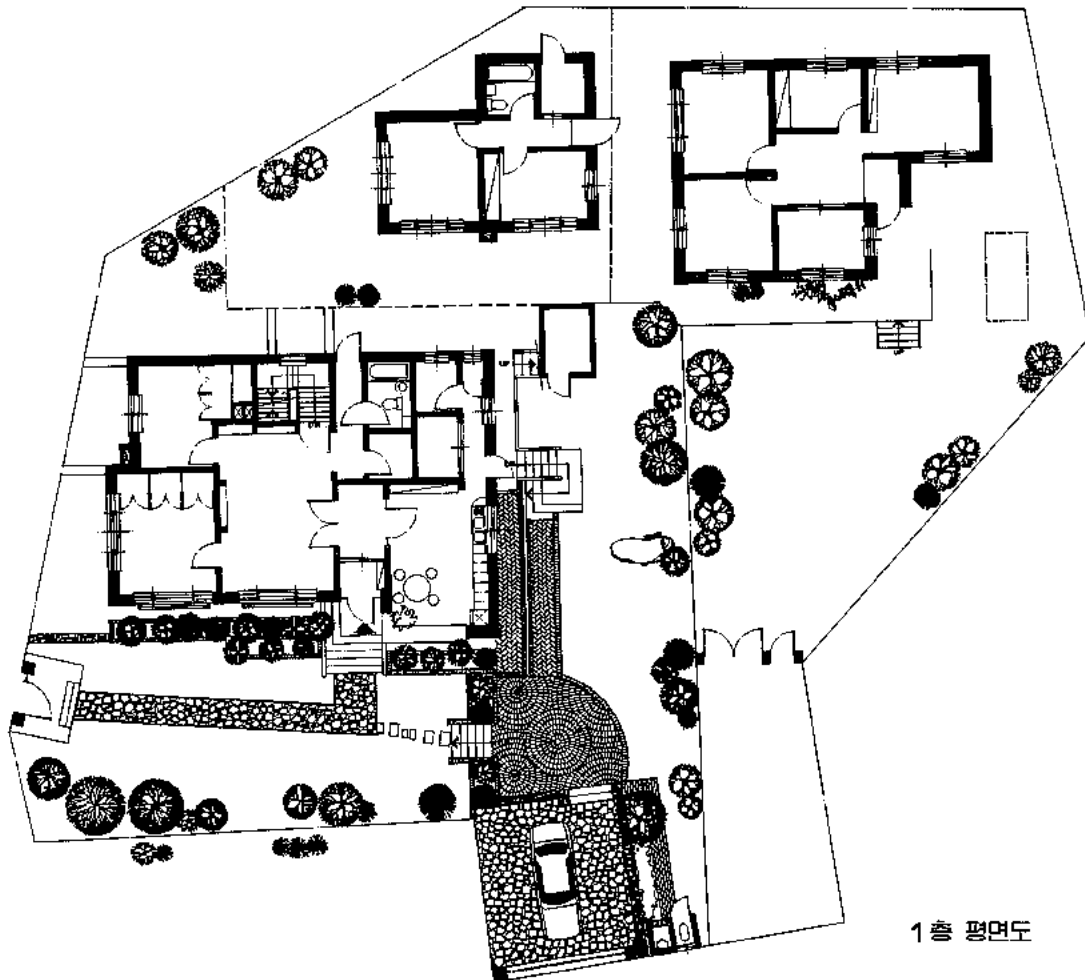
- 대지위치 :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당리
- 대지면적 : 837. 10㎡
- 건축면적 : 157. 63㎡
- 연 면 적 : 272. 64㎡
- 구 조 : R. C 조



정면도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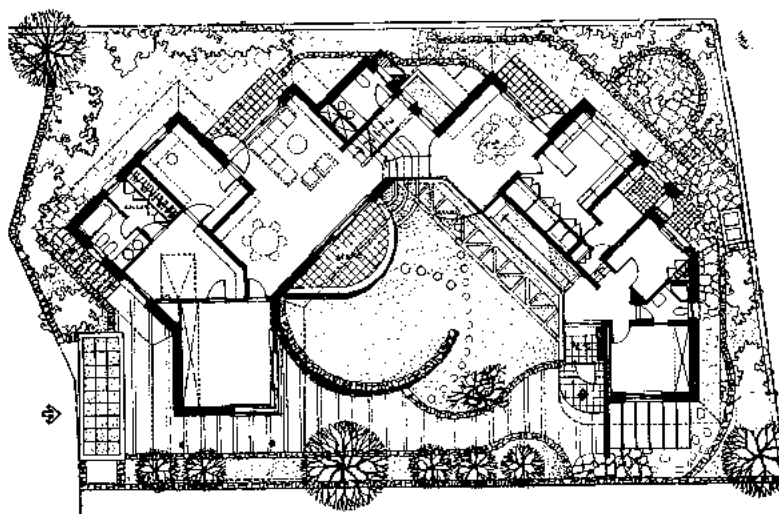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연희동 L씨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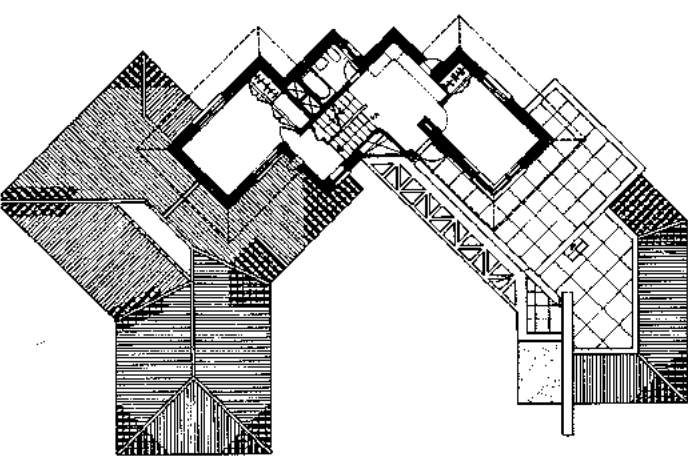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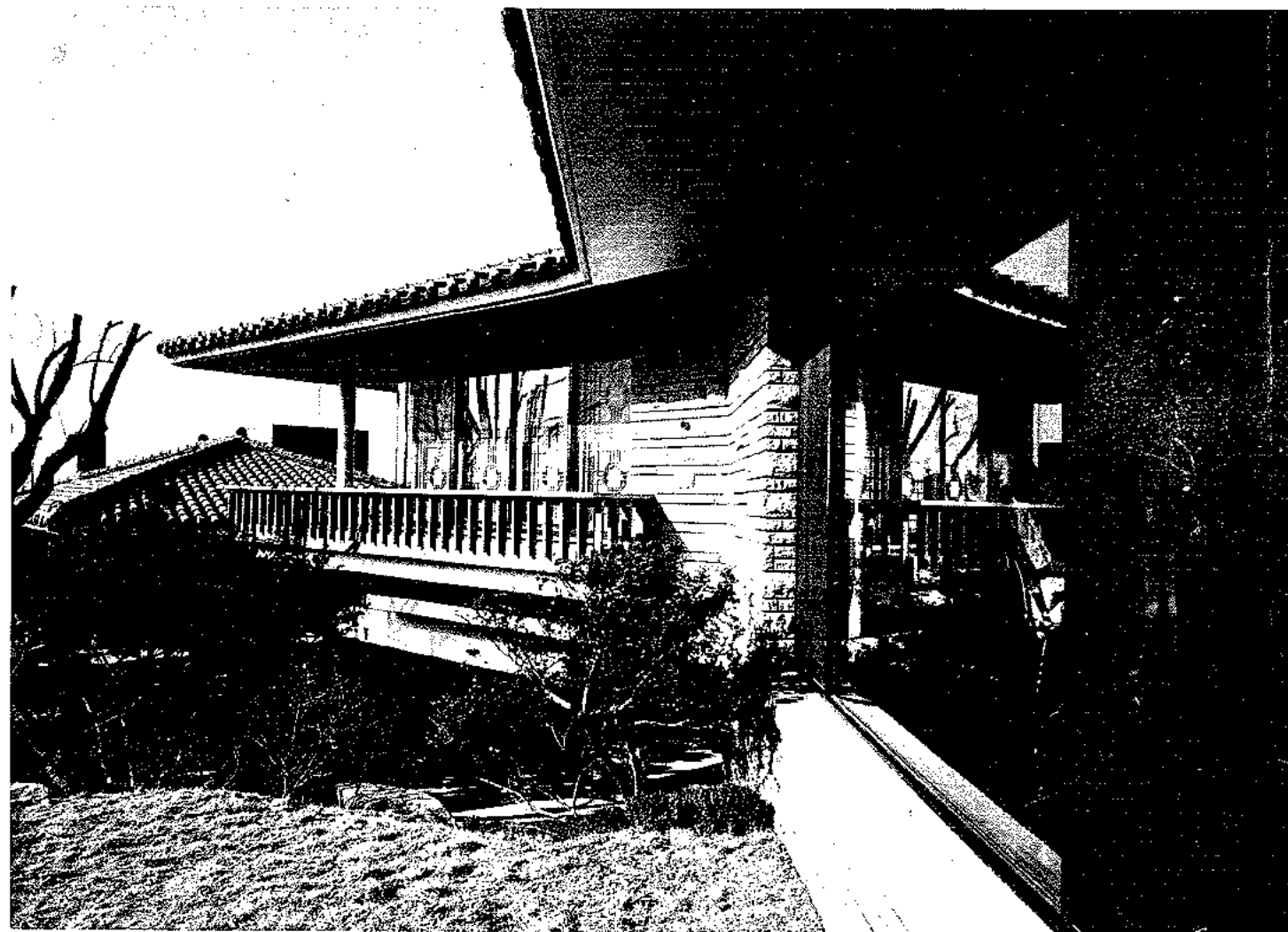
YEONHEE-DONG L'S RESIDENCE

이상현 · 안화인 / 대우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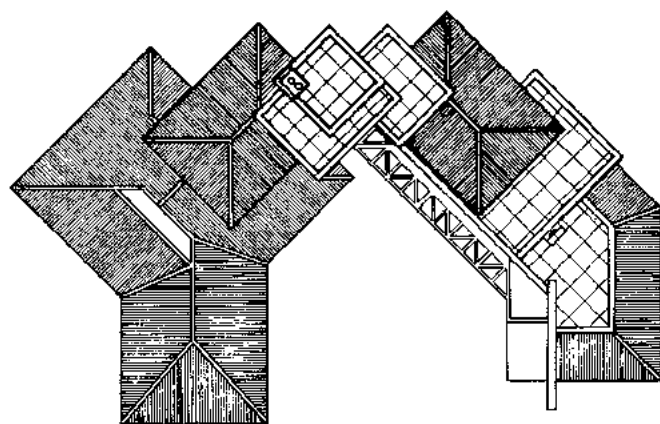
- 대지위치 :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05-25
- 대지면적 : 661㎡
- 건축면적 : 242.78㎡
- 연 면 적 : 316.26㎡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2층
- 구 조 : 조적조 및 부분철골
- 외 장 : 화강석, 스피니쉬기와



배치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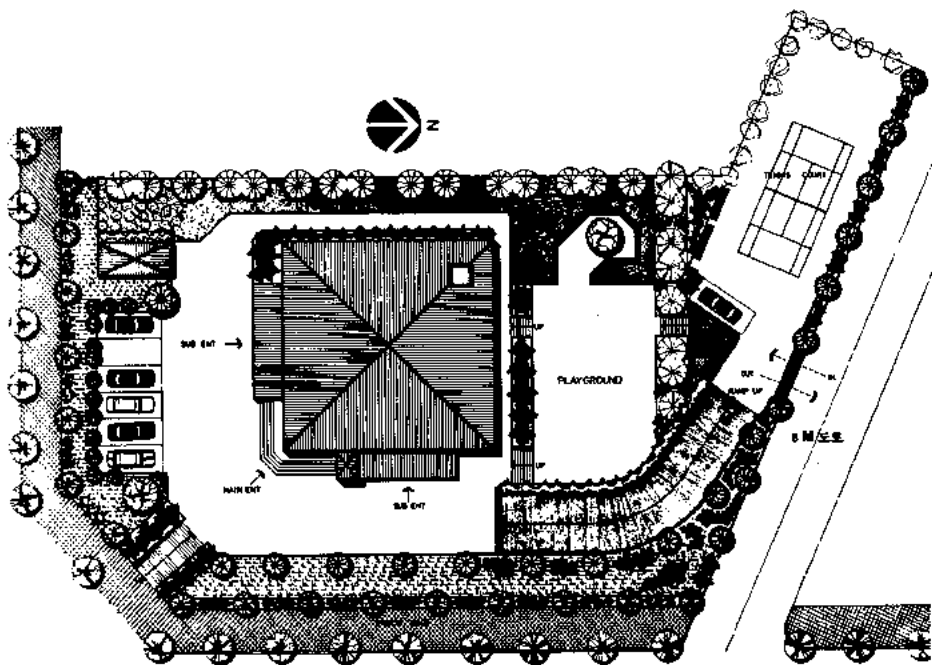
지붕층평면도

전곡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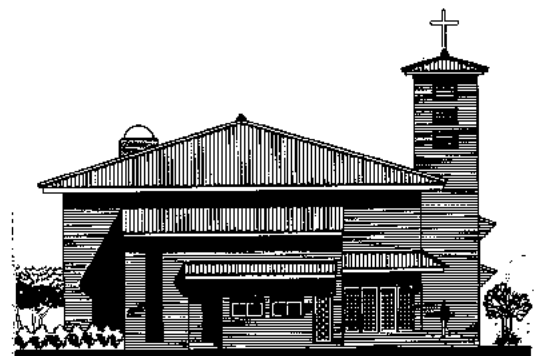
CHEON-KOK CATHOLIC CHURCH

이강식 / 아도무·완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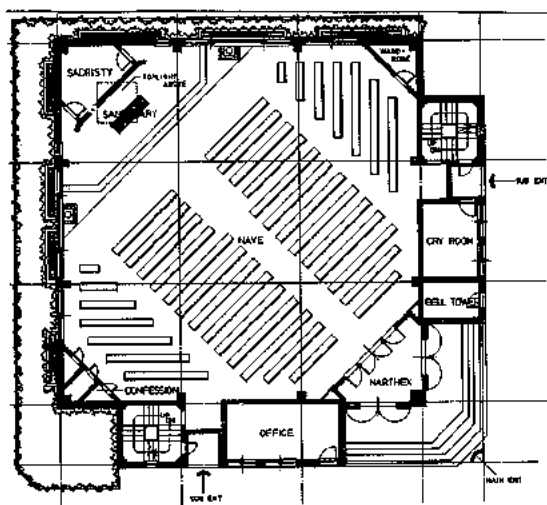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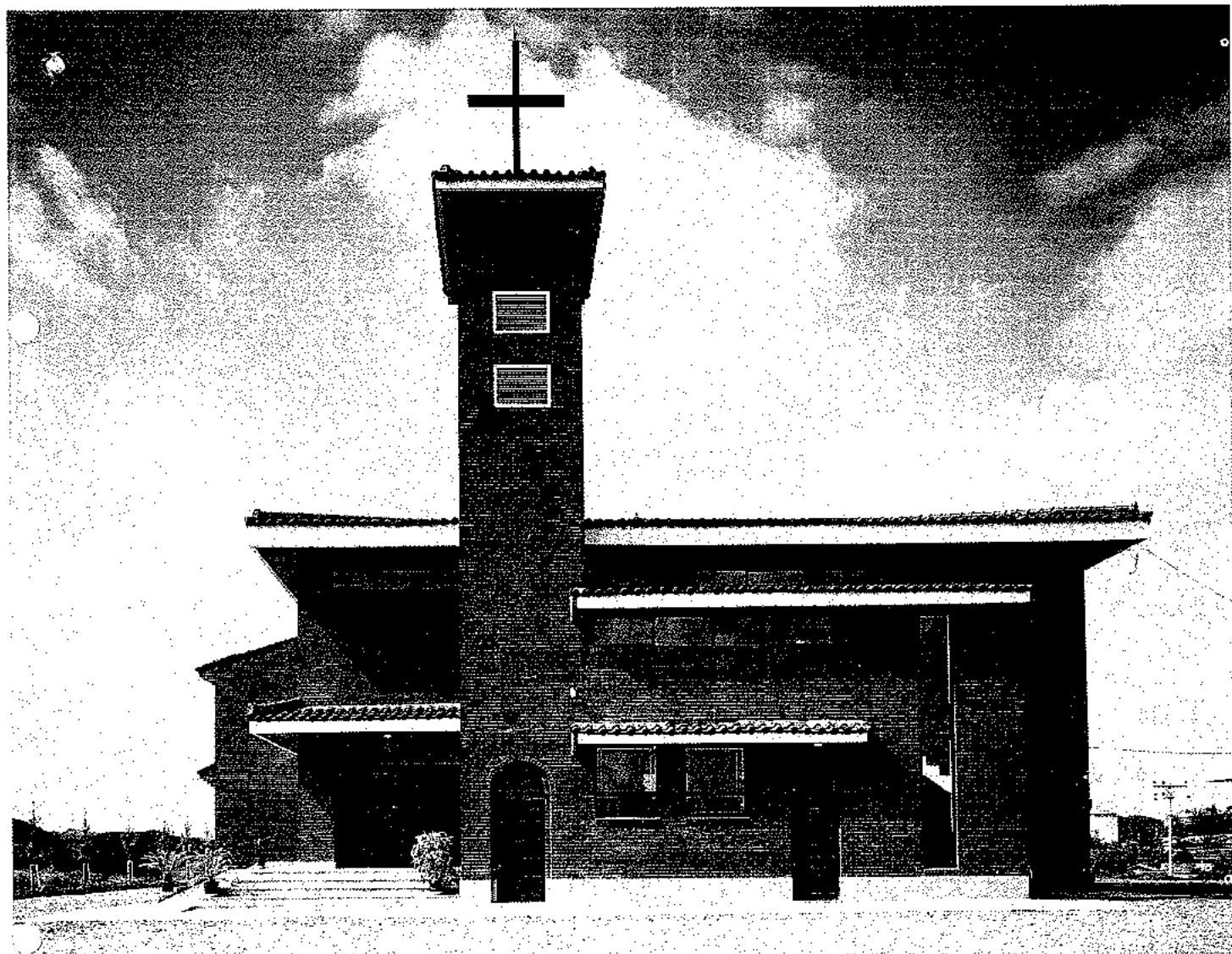
- 대지위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면
- 대지면적 : 2,946㎡
- 건축면적 : 429㎡
- 연 면 적 : 907㎡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외부마감재 : 적벽돌치장 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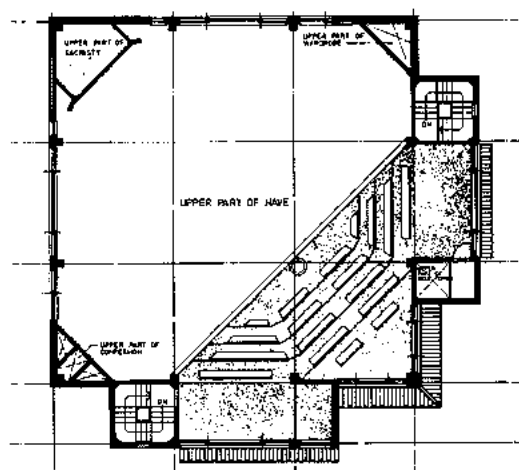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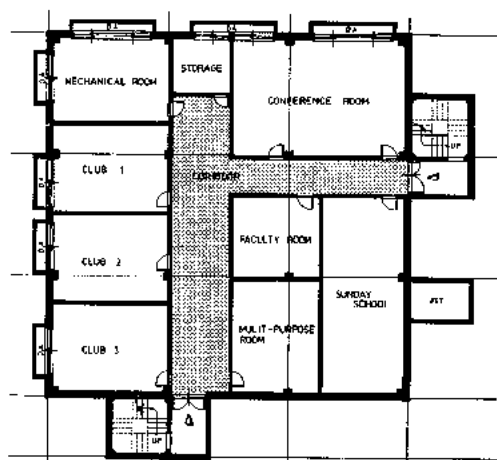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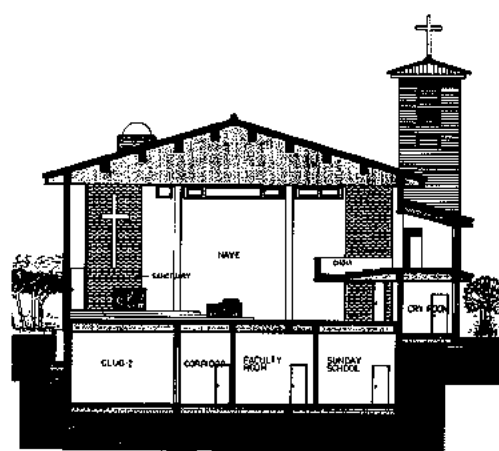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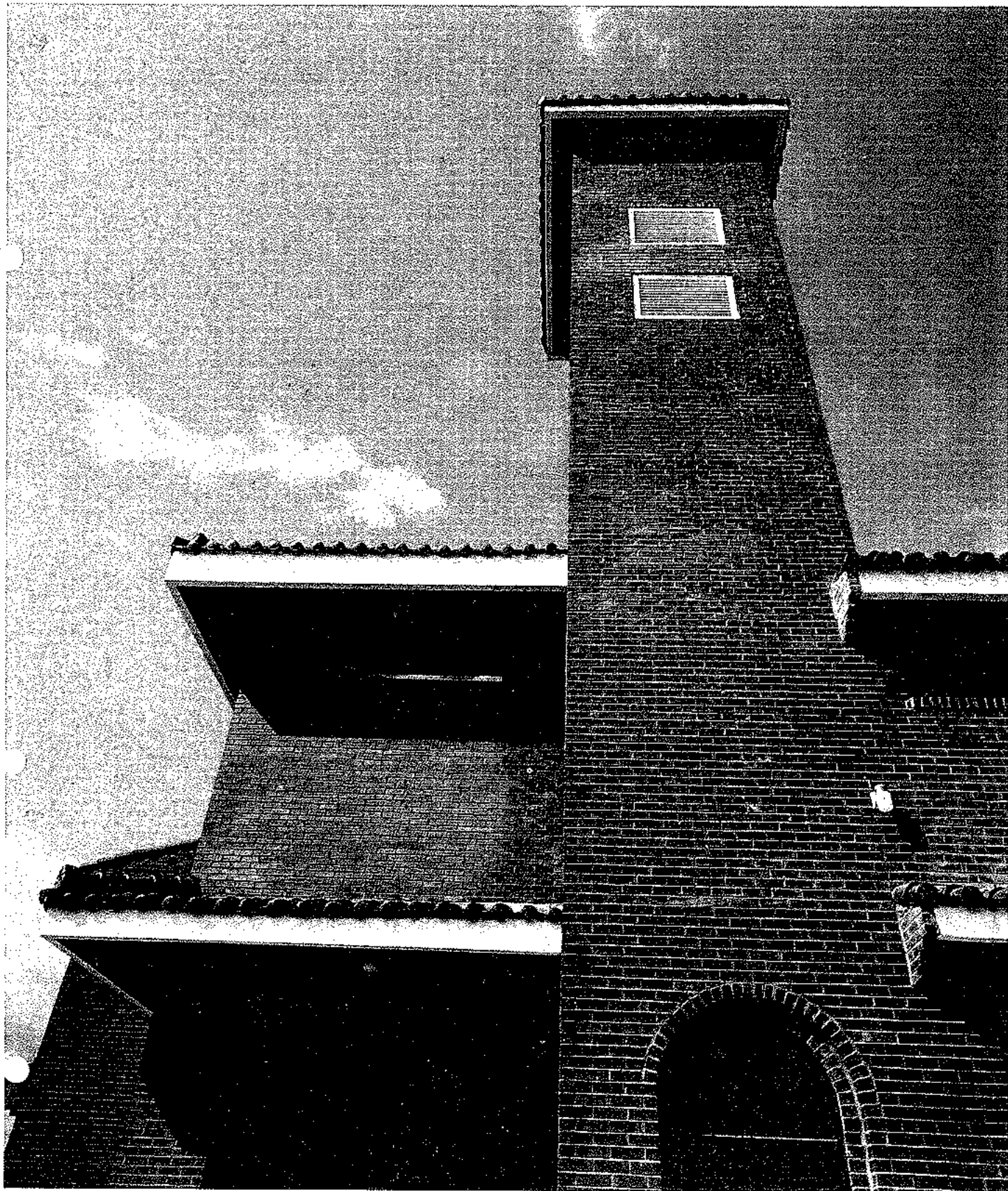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지하층평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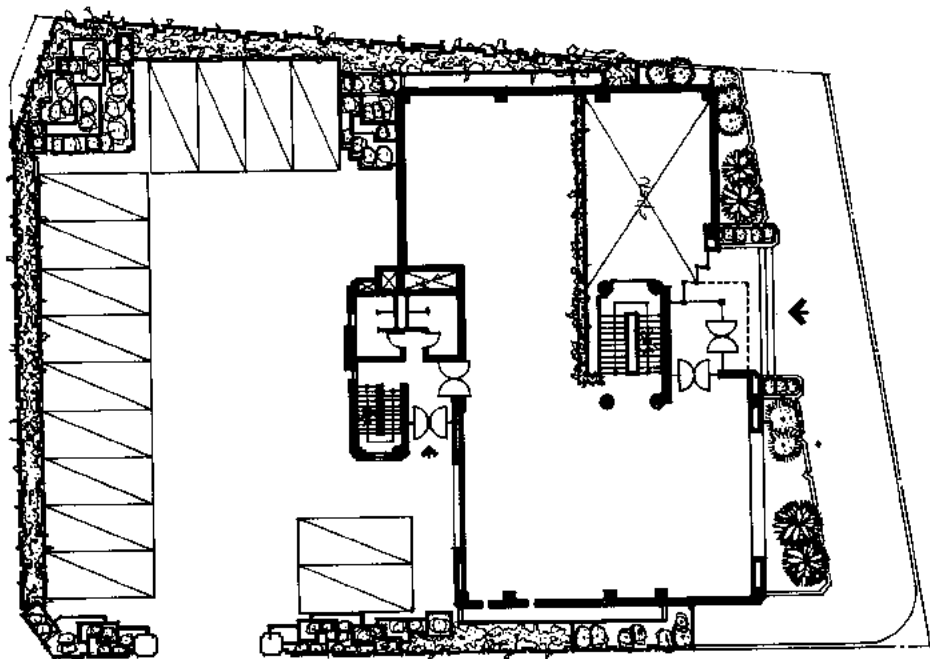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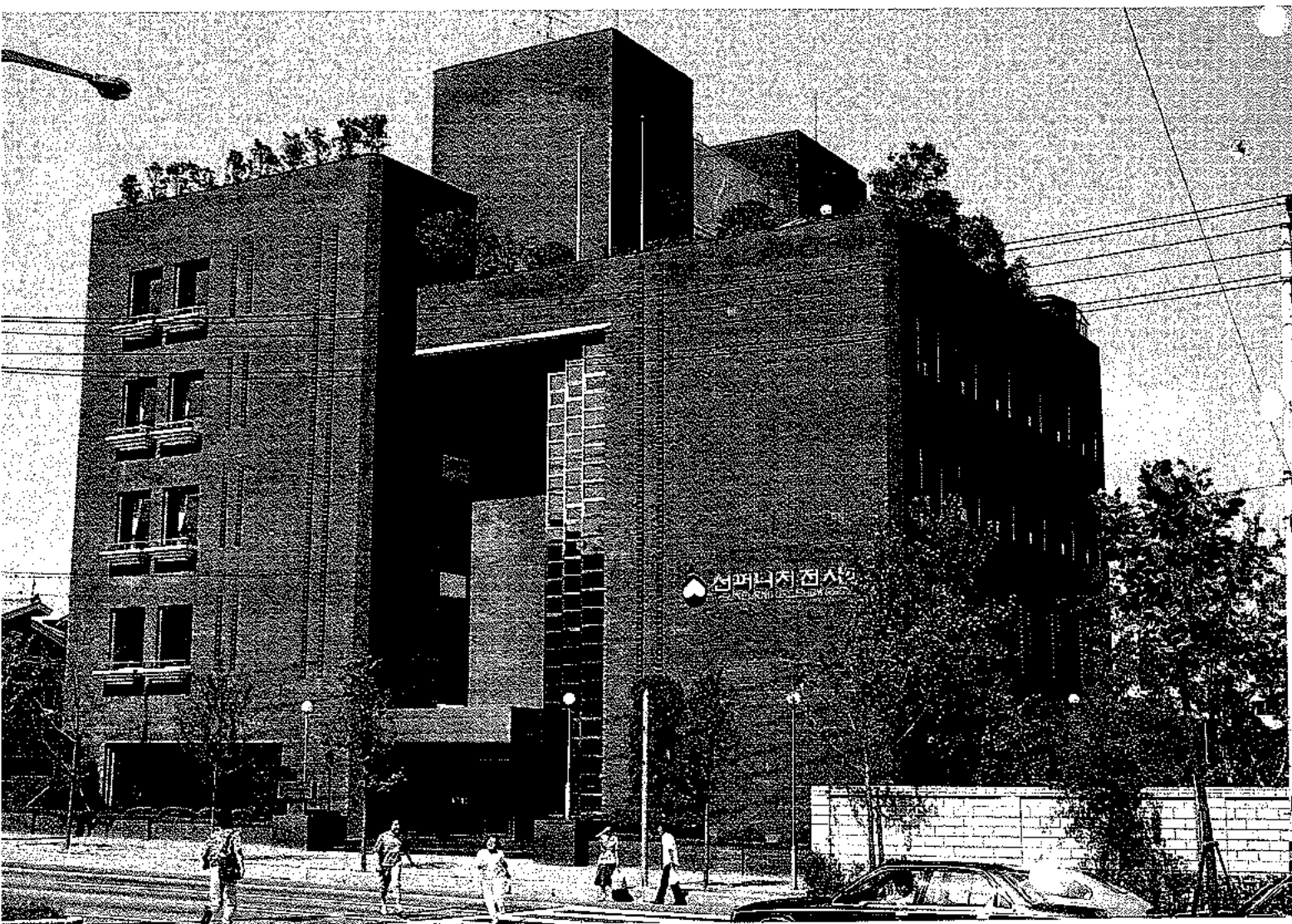


선퍼니처 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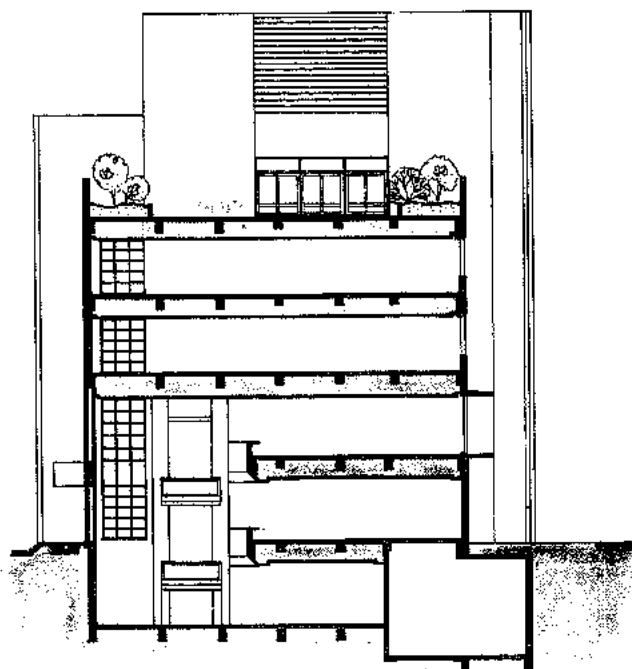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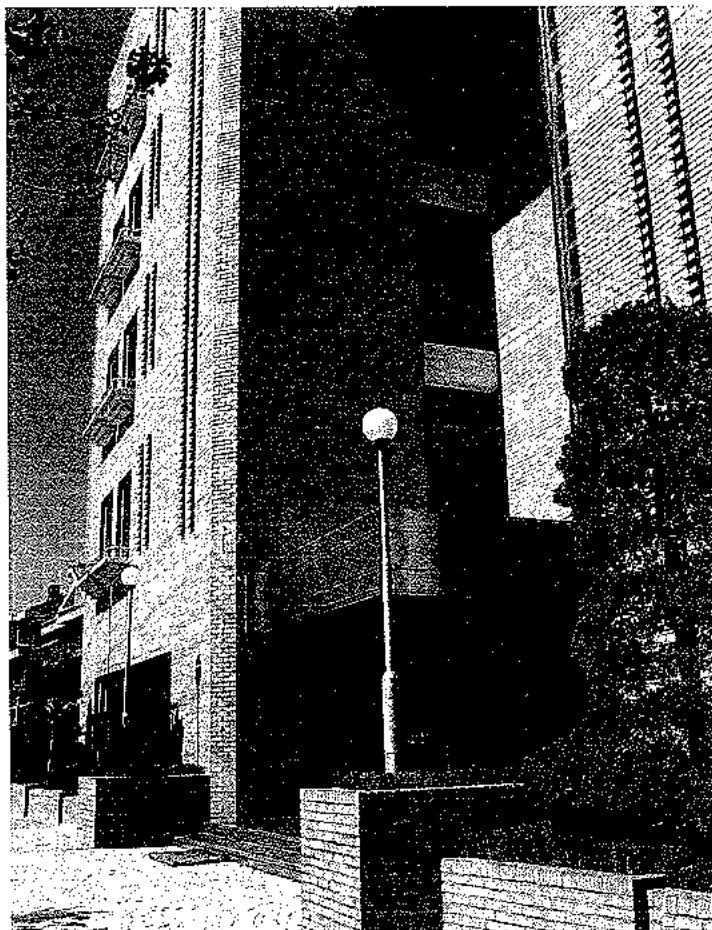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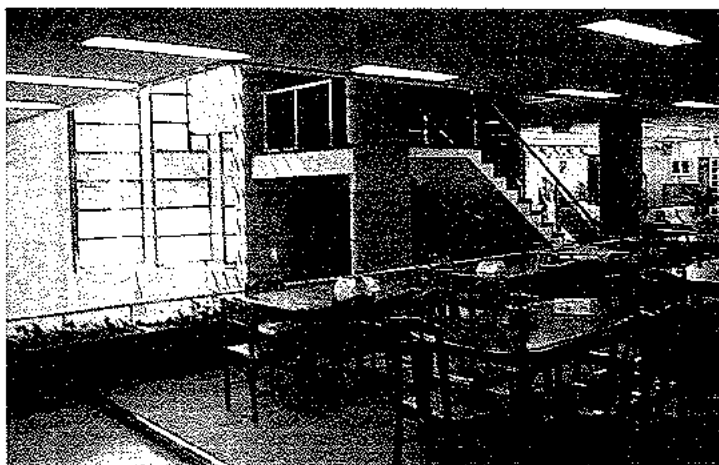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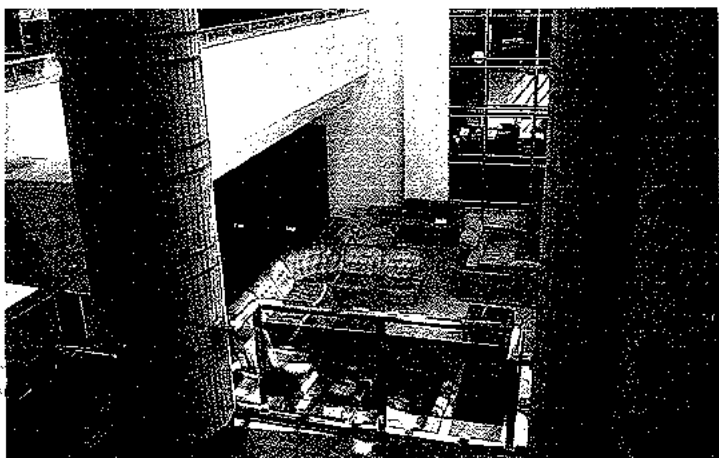
SUN-FURNITURE DISPLAY HALL

김충진 / 삼주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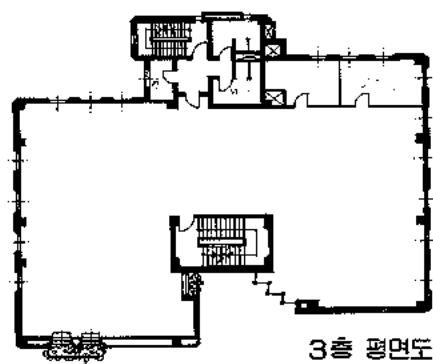
- 대지위치 : 서울 강서구 염창동 170-24
- 대지면적 : 1,470㎡
- 건축면적 : 474㎡
- 연 면 적 : 2,560㎡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5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외 장 : 붉은벽돌 치장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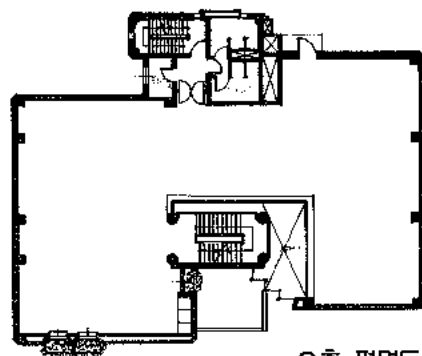
배치도



단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85년도 서울시 건축상 응모작품 모집공고

서울시내의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사 및 시공자를 포상하므로서 도서미관 조성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시키고자 아래와 같이 '85년도 서울시 건축상을 시상할 계획으로 응모작품을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상의 명칭 : '85년도 서울시 건축상

2. 시상의 종류

구분	건 축 사	시공자	부 문
금상	1 인 상패및 부상 1,000,000원	1 인 상 장	구별없음
은상	4 인 상패및 부상 각 300,000원	4 인 상 장	각부분별
동상	4 인 상패및 부상 각 200,000원	4 인 상 장	각부분별

※ 시상부문

- 단독주택 부문
- 공동주택 부문
- 상업용 또는 업무용 부문

3. 응모대상

- '84-'85 준공 또는 준공예정인 서울시 소재 건축물중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또는 대한건축학회의 추천 작품
- 추천대상은 건축사무소 등록을 필한 건축사가 제작한 작품에 한함

4. 제출기간 및 장소

- 기 간 : '85. 11. 1 - 11. 15
- 장 소 : 서울특별시 건축지도과

5. 작품 심사기간 및 심사위원

- 기 간 : '85. 12. 10 - 12. 15
- 심사위원 : 별도선정
- 시 상 : '85. 12 (예정)

6. 제출 작품 및 요령

○ 제출작품

완공사진 또는 투시도(모형제출은 임의)

배치도

평면, 입면, 주단면도

건물명, 건물개요(위치, 규모, 주위현황, 기능도등) 및 필요한 사항

○ 제출요령

작품규격은 판넬(90cm×90cm) 2-4개

작품 제출시 제출자(건축사) 명 표시는 작품과 분리 표기

7. 수상자결정

-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건축위원회 위원 3인과 위 추천 협회의 장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8. 특 전

- 수상작가에 대하여 서울시 발주 건축공사에 대한 기본 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설계용역을 수의계약 시행, 수상작 건축사에 대하여는 행정처분등의 조치를 받아야 할 경우 2 회 이내에 한하여 감면

9. 작품전시 및 장소

- '86. 1. 10 - 1. 25
- 시청홍보관

10. 기타사항 문의처

- 서울특별시 건축지도과(전화: 731-6381~4)

꿈꾸는 도시의 마술사

정 정 치
건축사사무소 합정



땅은 사람들은 흔히 우리나라의 도시를 가르켜 시멘트 덩어리라고 한다. 그리고 또 시멘트 공해라고 까지 혹평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새로 지은 집들을 가르켜 실용성이 결여된 건치레 주택이라고도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본다.

이와같은 얘기들은 우리 건축사들에게 매우 신경이 가게하는 얘기들이다.

집이란것이 원래 그시대의 주거문화를 함축있게 표현한 것이라면, 한참 세월이 지난후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창작 능력과 우리들의 시각을 어떻게 평할지 자못 궁급하고 한편 웃기를 여윌 정도로 긴장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는 싫든 좋든 오늘날 우리땅에 세워진 모든 건축물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우리의 직업이 건축뿐만 설계하고 만다면 이전 큰 과오가 아닐 수 없다.

이 시대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개념을 종합예술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네 건축사들이 공간을 중요시하는것도 모두 여기에 기인된것이 아닐까 한다.

시멘트 공해니, 시멘트 덩어리가 찬란한 21세기의 시멘트 문화로 발돋움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많은 성실한 사람들로 부터 자기집 마련의 꿈을 펼치려는 의견을 듣고, 그들로부터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받게 마련이다.

이때마다 필자는 참으로 곤혹스런 질문을 받게 마련이고 당황하는 일이 흔히 있다.

그것은 집을 짓는곳에는 항상 이웃이 있고, 이웃들의 이해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분쟁의 소지가 있기때문이다.

이 분쟁이란 새로 집을 짓는 사람과 서

로접해 있는 이웃간에 이해가 서로 얽혀 있기때문에 일어난다.

그런데 이 다툼의 배경에는 반드시 우리들인 건축사들이 있다고 생각할때 매우 심각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한다.

제반 건축법령에 따라 합법성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그들은 이들 이해관계자들에게 좀더 적극적인 조언은 커녕 작은 이익에 영합, 왕왕 분쟁의 소지를 만들어 주고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우리건축사들은 건축법령을 적용적작을 하고, 그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주와 의논하여 건축물을 축조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건축사는 집을 하나 지을 때 마다, 인접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주위 공간의 합리성에 근거를 두고 앞을 내다보며 건축주를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전자와 같은 일방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건축사는 있어서도 안되고 앞으로 있을 수도 없어야 한다.

건축물 하나 하나가 마을을 이루고, 이 마을이 모여서 도시가 이룩된다고 할 때 건축사의 시각은 보다 넓게, 도시의 기능과 주택의 기능을 조화시키는 마술사와 같은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오늘의 우리주변에는 흔히 내일이야 어떻게 되든 당장의 이익을 선호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나중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빨리 일하고 빨리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이 없지 않다.

속담에 「가는 년이 보리밭아 찢어 놓고 가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만 우선 이익을 보면 그만이라는 좋지 않은 사고방식이 결국에 많은 시행착오와 함께 새로운 「재개발」이란 오류를 낳게 마련이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건축사는 이나라 건축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일에 임해야 한다.

돌(石)의 역사가 천년을 가듯, 앞으로 시멘트 문화도 천년을 갈것이다. 천년후 아니 몇 10년후 우리들의 후배들이 오늘날의 건축물을 만든 우리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또 오늘날의 건축물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할것이다. 건축사는 모름지기 오늘날의 건축문화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접근해야 할것이다.

우리들이 선을 굶고, 벽돌의 하나 하나를 어떻게 쌓아야 한다는 지시가, 훗날 이 나라의 문화유산도 되고 재개발도 된다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서울이란 대도시를 비롯 전국의 도시의 자람이 바로 우리들의 지혜와 예술적 감각과 기능적 역할에 의해 새로운 조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잠시도 소홀해서는 안 될것이다.

집장사들이 도시를 만들고, 땅장사들이 새로운 시가지를 형성해 가는 오늘날의 모순을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창조력을 동원해서 투쟁해야 할 것이다.

내집 마련의 꿈을 가꾸는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부추켜 주고, 도시를 쌓아가는 많은 기능인들에게 긍지를 갖고 땀 흘리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다.

「찬 바람이 부는데 집의 열관리와 어디를 고쳐야 쓸모있는 집이 될까요?」

충만한 눈으로 땀흘려 질문하는 알뜰한 우리 주부님들에게 자상하고 명쾌한 답변을 주어야 하고,

「우리나라 도시를 어떻게 하면 전통을 살린 문화도시로 만들수 있느냐?」는 건축사를 꿈꾸는 젊은 학도에게 무한한 향학열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오늘의 우리가 되야 하지 않은가?

우리는 오늘도 꿈꾸는 도시의 마술사가 되어 실용성있는 건축물과 문화적 가치가 있는 조형예술을 창작해야 할 것이다.

제20회 定期總會를 맞이하여

오는 10월 23일은 우리 大韓建築士協會創立 滿 20年이 되는 날입니다.

創立 20週年을 기념하여 성대한 紀念式을 거행하고 당일 앞서 제20회 定期總會를 갖게된 것을 회원 여러분과 더불어 기뻐하여 맞이하는 바입니다.

우리協會는 20년전 오늘인 1965년 10월 23일에 建築士法에 의하여 創立會員 196명으로 구성, 출범하였습니다. 그 당시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시작하였던 우리 협회가 오늘날 2천3백여명의 대가족이 되어 이렇게 훌륭히 신축된 建築士會館에서 제20회 定期總會를 갖게된 것을 실로 대견하며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우리協會를 이 시점까지 全會員과 더불어 일관된 인내와 노력으로 基盤을 구축하고 發展시켜 오늘의 건전한 成年期를 맞이하게 한 우리 협회의 歷代 會長과 任員 여러분 그리고 代議員 여러분에게 존경과 뜨거운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建築士들은 그동안 맡은 바 建築業務의 활동을 통하여 國家와 社會發展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國民의 住生活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닦여진 이 터전을 발판으로 하여 우리 협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으며 會員의 權益伸張을 도모하고 나가서는 建築文化 發展을 이룩함으로써 國家와 社會에 봉사하여야 하겠습니다.

제20회 定期總會에는 1986년도의 事業計劃과 豫算案이 제출되며 임기가 완료된 5명의 理事와 1명의 監查가 選出 되겠습니다.

新年度의 豫算規模는 경제계의 불황에 따르는 우리들의 業務量減少 등을 고려하여 자연감소를 제외한 今年度 水準을 기준하였으며, 명년도에 실시할 것을 고려하였던 支部 特別豫算制度의 시행도 當委員會의 연구결과와 지부장회의 및 이사회에서의 종합적인 검토결과에 따라 지방회원의 豫算負擔增加를 억제하고 각지방 회원간의 負擔金 比重差 등으로 인한 異和感 조성가능성 등이 고려되어 일단 보류하였으며 대신 事業費 項目을 大目化하여 支部幹事會에서 결의하여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입안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확대 구성된 각 委員會에서는 각기 협회발전과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봉사정신으로 진지한 연구와 활동을 함으로써 많은 연구성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더욱 노력하여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가서는 각 委員會가 우리 협회를 이끌어 나가는 協會組織의 中心體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각 委員會의 活動狀況은 建築士誌를 통하여 매월 보도드린 바 있으며 오는 21, 22일의 2일간에 걸쳐 시행될 세미나도 그 활동의 일부분인 것을 자랑스럽게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금년에 개정 시행된 建築士法中 行政處分에 관한 사항에서 資格停止가 業務停止로 완화되었으며 그간 처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지하실 노출이나 2層 外部 계단설치 등 문제는 多世帶住宅의 法制定으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일면 違法事項 指適後 修正時의 처벌이 경고에서 1개월로 강화된 내용이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되나, 이는 계속 노력하여 적당한 시기에 수정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어느 時期에 다달으면 法에서 규정한 事務所의 類別이나 業務制限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들은 자유스러운 환경에서 마음껏 創作的 設計活動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되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제19회 定期總會에서 會長으로 선출되어 10個項의 協會運營方針 事項을 제안하였습니다. 그중 제1項의 設計業務研究 및 正常化는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정해진 業務報酬를 받아 우수한 設計를 함으로써 막대한 공사비 투자의 낭비를 막고 건축의 목적에 충실하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第2項의 監理制度研究 및 正常化는 監理制度研究委員會에서 연구 노력하여 이미 지난 3월에 일단 시행된 바 있으며,

第3項의 協會事業 活性化는 그중 法개정을 지난 11대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며 금년에 들어 施行令과 施行規則에 이르기까지 만족스러운 내용은 아니었으나, 일단 제정 시행되었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例年에 시행되



있던 建築士 補修教育은 研修의 이름으로 우리 會館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였고, 國際交流에 있어서도, 日本에 이어 東南亞諸國과 美國 등지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第4項의 聯合會制度施行對備는 연구위원회가 설립되어 정부의 地自制 시행시기에 맞추어 시행하기 위한 활발한 연구가 추진되어 나가고 있으며,

第5項의 歷代會長 諮問委員會는 이미 구성되어 수시로 協會運營 全般에 걸친 협의와 자문을 받고 있으며 代議員 여러 분을 정기적으로 각 지부에 모시고, 운영실태를 보고하고 당면문제를 협의하는 제도는 각 지부에 따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명년에는 年4回 예정중 2回를 豫算事業으로 책정하여 시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며,

第6項의 福祉會運營案 改善統一은 새로 구성된 복지研究委員會에서 시안이 작성되어 검토중에 있으며 노후대책의 일환인 退職年金制度 시안을 매년 임시총회시 제출하여 통과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第7項의 本協會의 體制強化는 法規委員會의 활동으로 非常勤副會長 制度의 신설과 理事數의 증원 및 필요한 각 委員會의 구성 등, 명년도 국회에서 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나가고 있는 실정이며,

第8項의 事務機構改編 強化는 본부와 서울지부 및 경기 지부간에 이미 인사이동을 시행 하였으며, 法規擔當 직원을 새로 배치하였으며 신년도부터는 지난 임시총회에서 이미 승인되었으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보류되었던 弘報專担 직원을 채용하여 弘報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며,

第9項의 豫算의 効率的 使用 및 節減은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명년에는 컴퓨터의 도입으로 모든 사무를 전산화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第10項의 新築會館의 활용문제는 本協會의 使用空間을 줄이고 1個層을 제도용품, 전문서적 판매 등 회원을 위한 편의 시설을 함과 동시에 會館의 管理費 충당을 위한 收入源化할 계획이며 講堂과 展示場 등의 이용은 외부의 각종 세미나 또는 결혼식장 등으로 점차 증가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으로서 사회적 문화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數年內에는 會館 管理費의 自給自足도 가능할 것으로 思料되어 낙관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方針事項은 신년도에도 계속 추진하여 반드시 결론을 낼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 年初의 각 支部 巡迴懇談會에서 건의되었던 사항들은 협회의 업무처리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며,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였고 앞으로 계속 노력하여 모든 문제점을 풀어나갈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일면 진정한 建築界의 風土를 조성하고 職業倫理觀을 정립해 나가며 建築不條理를 과감하게 추출하는 自律淨化를 적극 추진하여야 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들은 造形藝術人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建築士의 직분을 다하여 찬란한 이 나라의 건축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후손에게 뜻깊은 문화적 유산을 물려주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회원 상호간의 우애와 신의로 協同團結하여 스스로의 명예와 품위를 보존하며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建築士像을 정립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오늘 감회깊은 協會創立 20週年을 맞아하여 그동안 닦아온 기반과 자라난 힘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며 전진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재삼 다짐하며 끝으로 여러분 하시는 일이 萬事亨通하시고 健康하시고 家庭이 多福하시기를 기원하며 이 글을 맺습니다.

1985. 10.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吳 雄 錫

吳雄錫 會長,
日本建築士會 全國大會 參席

본회 吳雄錫회장과 申貞桓이사, 李春相 서울지부장, 宋基德 국제위원장은 10월 16일부터 10월19일까지 일본건축사회 연합회가 주최하는 제28회 建築士會 全國大會에 참석하기 위하여 KAL기편으로 출국하였다.

吳雄錫회장은 동 전국대회 석상에서 축사를 하기로 되어 있다.

ARCASIA기입 留保 조찬간담회서 합의

본 협회 吳雄錫회장은 9월12일 롯데 호텔에서 본회 임원진과 건축가협회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 참석, 당면 공동관심사를 협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아카시아(ARCASIA)에 회원국으로 가입할 것인지의 대한 협회가 있었는데 아카시아 가입은 일단 보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건축 3단계의 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건축 3단계 연합회를 발족시켜 국제관계만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연합회 회장은 3단계 회장이 아닌 건축계 증진 인사를 추대하기로 합의하였다.

多世帶住宅設計計劃案
懸賞公募 受賞者 發表

1984년 12월 31일 법률 제376호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주거유형인 다세대주택의 건축적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국민주거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적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이를 널리 보급코자 다세대주택 설계계획안 현상공모를 실시한바 지난 7월 15일부터 8월31일까지의 공모기간에 총 368명이 응모하였다. 심사는 85년 9월

14일 1차 심사를, 9월16일 2차를 9월 18일 3차 심사를 마쳤는데 그결과 확정된 당선작,佳作, 장려상(학생작품)은 다음과 같다.

다세대주택설계계획안 당선작품

	작품명(유형별)	심사결과	성 명	사 무 소 명
2 세대	외부 계단형 (규모별 3종)	당선작 당선작 당선작 가 작 가 작 가 작	배화수 오성운 윤경식 임길성 손진락 이명섭	공간연구소 오성운건축사사무소 한국유진종합건축 경동건축사사무소 신진건축 상원건축사사무소
	단 층 형	당선작 가 작	김동주 윤정태	전진엔지니어링 울산대건축과
	각세대 2층형	당선작 가 작	전예경 손진락	정원엔지니어링 신진건축
3 세대	외부 계단형	당선작 가 작	이전옥 장현숙	대우건축 (개 인)
4 세대	내부 계단형 (규모별 3종)	당선작 당선작 당선작 가 작 가 작 가 작	김송석 이종민 김창식 이종현 이세훈 임길성	환건축연구소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 삼예종합건축 건축문화설계 연구소 건축사사무소 세화 경동건축사사무소
	외부계단+편복도형	당선작 가 작	이문우 이종현	예성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설계연구소
	외부 계단형	당선작 가 작 장려상	이종현 조진형 강찬석	건축문화설계연구소 종합건축사사무소 신진 우원건축
6 세대	내부계단+외부계단형	당선작 가 작	이문우 김주연	예성건축사사무소 아 키 흥
	외부계단+편복도형	당선작 가 작	임길성 이문우	경동건축사사무소 예성건축사사무소
	내부 계단형	당선작 가 작 장려상	김석민 유은미 김우석	대호건축사사무소 이화여대 대학원 아람건축연구소

다세대주택설계 계획안 장려상(학생작품)

작품명(유형별)	심사결과	성 명	학 교 명
4 세대(외부계단+편복도형)	장려상	이한중	성균관대학교
2 세대(각세대 2층)	장려상	유영배	단국대학교
4 세대(내부 계단형)	장려상	박호관	단국대학교
4 세대(내부 계단형)	장려상	이승호	명지대학원
4 세대(내부 계단형)	장려상	신교영	충남대학교
6 세대(외부계단+편복도형)	장려상	조원익	충남대학교
4 세대(내부계단)	장려상	유재경	인하대학교
3 세대(외부계단)	장려상	최득수	인하공업전문대학

심사위원 명단

• 위원장 : 오용석(본협회 회장)

• 위 원 : 배종명(건설부 건축과장)

한규봉(대한주택공사 건설본

부장)
나상기(한국건축가협회 회장)
김희준(대한건축학회 참여이사)
이영희(본협회 이사)
조구현(본협회 실내디자인 분과위원장)

간사: 한종언(본협회 이사)

'85會員 建築設計作品 展示會 各 부문에서 총 78점 출품

본 협회 회원의 建築設計 技術 向上을 도모하고 一般의 건축에 대한 理解를 높이기 위해 建設部 후원아래 매년 실시하고 있는 회원건축설계 작품전에 78점의 정성어린 회원 작품이 출품되었다. 본 전시회는 10월23일 본 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일에 본협회 전시장에서 개막되어

서울지역 전시회를 1개월간 개최하게 되며 그후 지방순회 전시회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출품된 작품은 주거용 14점, 업무시설 26점, 교육시설 7점, 의료시설 9점, 종교시설 5점, 기타 17점으로 분류, 집계되었다.

建築세미나 개최 建築士 2차 研修도 실시

본 협회에서는 창립2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10월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건축 세미나를 개최한다. 고층건물의 설계사례 등 9과목에 걸친 세미나가 본협회 강당에서 실시되는데 건축사 연수과목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계획과 한국의 건축역사 과목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함께 실시된다.

건축세미나개최 계획표

일시	세미나 발표 주제	발표자	소속
85. 10. 21 (월)	09:30~10:2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계획	손장영	한양대학교
	10:30~11:20 고층건축물의 설계사례	전봉수	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11:30~12:20 법규위원회 발표	이문보	동국대학교
	13:00~13:50 기초구조의 시공사례	허진	한국기술사회 부회장
	14:00~14:50 도시환경 분과위원회 발표	서상우	국민대학교
	15:00~15:50 구조분과위원회 발표	조철호	전국대학교
85. 10. 22 (화)	09:30~10:20 한국의 건축역사	신영훈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10:30~11:20 한국의 건축역사	신영훈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11:30~12:20 건축행정(서울시)	최종무	서울시건설관리국장
	13:00~13:50 설계감리 분과위원회 발표	김원길	건설기술연구원 건축부장
	14:00~14:50 건축사 복지후생 발표	김영수	복지연구 분과위원
	15:00~15:50 실내디자인 분과위원회	김길홍	이화여자대학교

○후보과목: 북한건축에 관하여(정립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정식)
건축사사무소 세무행정에 대하여(지문세무사 김기천)

프대회(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서울지부가 우승하여 대형 순회배를 차지하여 서울지부의 높은 실력을 과시하였다.

'85 회원친목 바둑대회 개최

서울지부(지부장 이춘상)에서는 '85 회원친목 바둑대회 및 본협 20주년 기념 바둑대회 후보건축사 선발대회를 겸하여 9월20일 경기도 고양군 소재 세종레저타운에서 바둑 동호인 건축사 40여명과 전 임원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바둑대회를 개최하였다.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A조(1급~4급)

우 승: 김창환(김창환건축사사무소)
준우승: 정종섭(삼태종합건축사사무소)
3 등: 김관풍(서울삼미건축사사무소)

B조(5급~9급)

우 승: 민경진(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준우승: 김철홍(청백, 조흥종합건축사사무소)
3 등: 김득수(삼태종합건축사사무소)

釜山支部(지부장 黃在澤)

지부순회 골프대회 개최

본 협회 창립20주년 기념행사를 겸한 지부순회 골프대회가 지난 10월 7일 釜山支部 주최로 양산도지사 칸트리클럽에서 열렸다.

이날 골프대회에서는 본 협회 吳雄錫 회장과 임원을 비롯한 각 지부장 및 각 지부 회원 109명이 참석하였다.

이날의 개인 전적은 다음과 같다.

- 우 승 현준철(전남지부)
- 준 우 승 이종만(충북지부)
- 메달리스트 여옥동(대구지부)

관계공무원과 간담회

부산지부는 9월 6일 오후 2시부터 부산시 도시계획 국장실에서 지부장의 임원 6명과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 건

서울支部 지부장 李春相

이춘상 서울지부장 「'85필승 특전훈련」 행사 참석

지난 9월27일 대통령 각하를 모시고 삼부요인 및 군장성과 각계 인사들이 임석한 가운데 제 37주년 국군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85필승 특전훈련」에

서울 지부장이 참석하여 우리 국군의 위용을 찬양하였으며 지부 월례 회의에서 반공의식을 고취시켜 단합된 힘으로 국가에 봉사할 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전국시도 대항 골프대회 우승

지난 10월 7일 협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전국 순회 골

協會消息

축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면 주요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仁川支部 (지부장 高昌永)

정화결의대회

인천지부는 지난 9월13일 오후2시부터 지부회의실에서 회원 5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화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정화결의대회에서는, 건축사 헌장에 입각, 선진조국으로 전진하기 위하여 우리주변의 사회적 부조리를 과감히 제거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본지부 김봉섭회원의 선창으로 전회원이 결의하였으며, 또한 반공의식 고취를 위한 제2땅굴을 방unk로 합의하였다.

忠南支部 (지부장 閔榮基)

회원 친목단합행사

충남지부는 지난 9월19일부터 9월21일까지 지부장을 비롯한 회원 69명이 경기도 여주 도자기공장, 산록사, 수안보, 단양 충주댐, 부석사, 불령계곡, 포항, 경주등을 순례하는 2박3일 코스의 고적답사와 회원 친목단합 및 산업시찰을 실시했다.

濟州支部 (지부장 梁昌元)

추석절 장병위문

제주지부에서는 추석절을 앞둔 지난 9월24일, ○○기지의 해병전투 지원부대를 방문, 국도방위에 힘쓰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으로 돼지고기 2마리분과 사과5상자 등 값가 35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이날 위문반에는 梁昌元지부장을 비롯한 제주 MBC 卞職政사장, 정한건설(주) 張正彦사장, 대한요식업 제주도지부 曹傳鍾 사무국장이 참여하였다.



회원간담회 개최

제주지부는 9월17일 오후3시부터 약 2시간동안 지부회의실에서 회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梁昌元지부장은 협회창립 20주년 행사추진 상황보고에 이어 전 회원에게 세미나 행사에 참가해 줄것을 독려했으며 에너지절약 및 집소한 생

활기풍 조성에도 적극 협조하여 줄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덤핑방지에도 적극 협조하여 줄것을 당부하였으며 진지한 의견교환으로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委員會 活動

設備分科委員會

제7회 설비분과위원회(위원장 朴容

漢)가 9월2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각 전담위원

協會消息



이 연구 추진하여온 병원건축물의 위생, 전기, 소방, 공조설비에 관한연구, 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등 소형건축물에 있어 소방설비 설치방안을 연구하여 11월 회지에 게재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건축법및 건축설비 관련법에 대해서도 상호 비교분석하고 유관된 법내에서 규정을 각각 달리 정하여 회원의 업무에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는 법조항등을 연구 검토하여 회지에 게재하고 업무에 효율성이 있을시에는 관계부처에 개정 요청하기로 하였다.

건설부연구 협조 요청 사항인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에 따른 전압 및 전력 주

파수 조절장치(V.V.V.F) 설치 권장방안에 대하여 중점 논의가 있었는데 차기 회의시까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본 협회의 의견을 작성하여 반영 요청 할 계획이며 인체의 열적 쾌적환경 조건에 대하여도 손장열위원이 연구하여 회지에 발표하기로 했다.

構造分科委員會

제7회 구조분과위원회(위원장 金泰勳)가 9월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소속회원이

참석한 이날 분과위원회에서는 8 개월에 걸쳐 각위원이 분담하여 연구 진행하여 온 각 공사별 해설의 초안이 모두 작성 완료 되어 단행본의 발간을 위한 심의를 하였다.

단행본의 발간을 위해서는 초안의 가 편집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차기회의시까지 가편집을 완료하여 최종 협의기로 결의하였다.

設計監理分科委員會

제7회 설계감리분과위원회(위원장 韓鍾彦)가 9월12일 오후 4시부터 본 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한중언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전번 회의에 대한 내용설명과 금년도 연구사업 추진의 구체화방안, 협회창립 20주년을 위하여 개최하는 건축세미나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또한 금년도 연구사업계획인 건축공사 공중별 약속시 방 및 표준내역서작성 양식연구를 추진함에 따르는 문제점 및 보완점도 협의하였다.

현재 진행중인 약속시방서 연구는 당초 추진일정에 따라 금년중으로 종결지를 예정이며 표준내역서의 연구는 협의기간이 있었으므로 내년 상반기중 완료될 것으로 합의 하였다.

건축세미나 주제는 ① 회원이 설계업무를 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협조될 수 있는 사항 또는 ②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원진씨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編纂委員會

편찬위원회(위원장 李永熙)가 지난9월8일 오전 11시부터 본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9월호 합평과

10월호 편집계획(안)을 확정 하였으며 11월호 편집계획을 협의하였다.

또한 '86년부터는 새로운 건축사지로 이미지를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각 위원의 의견에 따라 각위원이 '86년 편집방향'을 수립하여 차기회의시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필요한 외국의 참고 전문서적이거나 자료는 강철구위원이 협조키로 하였다.

弘報委員會

홍보위원회(위원장 張宗律)는 9월 17일 오후 1시부터 본협회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지부에서 활약중인 건축상담 방송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본협회와 회원에 대한 집중적이고도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협의키 위해 개최한 본회의에는 전국에서 10명의 관록있는(방송건축사)들이 참석하였는데 회의가 끝난뒤에는 吳雄錫회장과 의 연석 간담회도 가졌다.

협의내용을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참석: 홍보위원장: 장종률

부위원장: 윤봉원

위 원: 정정지, 이세훈, 김기철

- 부산지부: 문용규
- 대구지부: 김화자
- 강원지부: 민병협
- 충북지부: 송인택, 이규승
- 전북지부: 전형직
- 전남지부: 류연창, 박화수
- 경북지부: 이석주
- 제주지부: 김백교

○전형직(전북지부장): 전문 작가에게 건 사를 부각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토록 노력하여 전국적인 방송망을 통하여 방송되도록 기획추진 하였으면 좋

읍니다.

○이규승(충북지부): 본부에서 법령 개정 등 관련 최신정보를 신속히 입수, 방송용 홍보자료로 공급해 주었으면 합니다.

○박화수(전남지부): 의도가 강한 다큐멘터리 보다는 부드러운 드라마를 통해 건축사상을 은연중 부각할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부가 개최하는 지부회원 작품 전시회의 홍보효과가 큰 사실을 감안, 매스컴을 탈 수 있는 각종 행사를 개최함도 홍보의 한 방안일 것입니다.

○류연창(전남지부): “건축사 사무소는 허가와는 관련없이 건축물을 설계하는 곳이다” 하는 관념을 일반인이 가질 수 있도록 홍보의 방향을 설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화자(대구지부): 매주 수요일 30분씩 몇년간 방송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 묘안이 떠오르지 않으며 여러 회원의 좋은 방안 있으면 참고자료로 기준을 요망합니다.

○윤봉원(부위원장): 방송상담자 소개시 “건축사 김화자”보다는 “대한건축사협회 대구지부 건축사 김화자”라는 소개가 대국적인 홍보의도를 더욱 충족시키는 것이므로 그렇게 소개가 되도록 방송 관계자와 협의하였으면 합니다.

○민병협(강원지부): 전파매체를 활용한 홍보효과가 강원도 전역에 파급되도록 하려면 분소와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분소와의 연계성 구축방안을 강구함이 긴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프로그램의 방송진행자가 건축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유익하고 재미있는 자료를 각 방송국에 공급해 주기를 바랍니다.

건축사협회의 행사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으면 좋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윤봉원(부위원장): 지방방송국 관계인들에게도 건축사지를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교(제주지부): 전국 네트워크를 연결, 지부 몇개소가 등장하는 다원 방송 실시를 홍보위원회에서 추진해 주시면 홍보효과가 더욱 크리라 생각됩니다.

홍보위원회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글을 공모하여 신문사나 잡지사에 투고하여 두면 그들이 필요시 활용할 것이므로 회원의 글을 다량 모집, 확보하고 건축사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송인택(충북지부): 문제은행식으로 건축사와 관련한 각 분야별 정보를 정리 수록한 정보자료집의 기획, 발간 배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문용규(부산지부): 건축사 자질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지침서를 제작 송부해주시면 좋은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석주(경북지부):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외의 뉴스에도 건축사나 건축사업자가 각광받게 될 수 있는 방안을 홍보위원회에서 연구해 주셨으면 하고 방송출연 인원수를 늘려 고정인간 출연치 않도록 유의함으로써 건축사 모두가 골고루 유능한 인재임을 은연히 인식시킬 수 있도록 유도할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國民精神教育 9代德目

뽳뽳한 韓國人

主人精神
名譽心
道德心

다함께 사는 보람

協同精神
使命感
遵法精神

나라와 겨레의
나아갈길

愛國心
反共精神
統一意志

건축관련 공무원과의 관계나 일반 시민과의 관계에 있어 스스로의 자질을 높이고 품위를 갖추도록 노력함으로써 건축사에 대한 공무원이나 일반인의 인식을 쇄신케하고 존경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관련법을 가미한 홍보를 할 것이 중요합니다.

○윤봉원(부위원장) : 기획프로인 3원방송의 실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므로 회원은 미리 자기소속 지방의 건축적 특색을 연구하여 대비하고 방송에 출연할 때는 반드시 “대한건축사협회”라는 소속명칭이 소개되도록 섭외할 것을 방송출연지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방송프로그램을 협회 홍보로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유도해야 할 경우 섭외비가 필요하다면 필요경비의 일부는 중앙에서 지원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도 종전과 같은 신문 광고대신 사회면이나 문화면에 소개기사가 게재되도록 신문 관련자와 섭외도 해야 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회원에게는 가능한한 다음 호부터 건축사지를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송부할 것입니다.

〈회장과의 간담회 내용〉

○김백교(제주지부) : 지방에서 생각 못한 좋은 홍보적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 유익한 모임이었습니다.

홍보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종 분야별 위원회에도 지방회원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누어 주었으면 합니다.

○오웅석(회 장) : 이사회에서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철(강원지부) : 이번 모임을 계기로 협회홍보의 체계가 확립되어 전국이 일제히 효율적인 홍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박화수(전남지부) : 건축사의 사회

적 대우가 의사나 변호사등 사회인사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지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를 개선한다든가 3단체 연합체를 구성한다든가 장·단기 계획의 수립, 추진으로 건축사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웅석(회 장) : 건축사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그와 관련 자질향상의 문제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되고 특히 자질 향상문제를 생각할때 학제에서 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으며 교육관계자 등과 회동의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3단체 연합회 문제는 며칠 전 “건축 3단체 조찬회” 석상에서 거론되어 3단체 총연합회 설립방안을 연구한다는 기본방침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류연창(전남지부) : 협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 고무적입니다. 홍보위원회의 활약에 큰 기대를 가져 봅니다.

○이석주(경북지부) : 방송용 자료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방송상담을 맡고 있는 전국 회원에게 통일된 자료를 제작 배포해 주기를 요망합니다.

○이규승(충북지부) : 홍보위원을 특별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인택(충북지부) : 지방 홍보예산을 본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오웅석(회 장) : 홍보위원회에서는 지방회원이 방송용 자료를 송부를 의뢰할때 속달로 신속히 지원해 줄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지방회원은 방송이 끝나면 간단한 방송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봉원(부위원장) : 지방 홍보위원으로 위촉되면 방송에 출연할 때 반드시 출연자 소개에 ‘대한건축사협회’라는 소

개말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주시 바랍니다.

○오웅석(회 장) : 이렇게 모이고 보니 우리는 새삼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전국 곳곳에서 대한건축사협회 홍보를 위해 애쓰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기획 있을 때마다 모여 좋은의견 모으게 되기를 바랍니다.

○윤봉원(부위원장) : 우리는 대한건축사협회의 홍보역군이라는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져주시 바랍니다.

○김기수(부 회 장) : 건축사협회는 아직도 객관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보다는 장기적으로 올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꾸준히 좋은 점, 고무적인 면, 긍정적인 면을 홍보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협회는 회장님의 경영방침에 따라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오늘 의 이 시점에서 볼 때 차음 기대하던 성과가 아직은 만족스럽게 나타나지는 않으나 장기적으로 기대하면서 위원회 중심 운영체제를 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회장님 생각은 지부에도 위원회가 조직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 아직은 지부에 위원회를 조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현실에서 지부에 홍보위원회를 조직한다는 데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며 다만 어느 지부의 누구를 해당지부 홍보위원으로 선임, 전국적으로 효과적인 홍보효과를 위해 전략을 숙의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위촉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윤봉원(부위원장) : 오늘회의는 건축사회관을 둘러보는 순서를 끝으로 종료하기로 하겠고 건축사 회관의 존재는 여러분이 귀향하여 방송활동을 하는데 있어 자부와 긍지의 원천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호 건축사지는 여러분에게 꼭 홍보용으로 몇권씩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인사로 가꾸자, 평량한 이웃 밝은 사회

全羅南道支部

지부장 인사



趙春元 支部長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전국 회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더욱 충만 하시길 기원 합니다.

수확의 계절 10월, 그리고 우리 협회가 창설 된지 오는 23일로서 만 20돌을 맞는 뜻깊은 이달을 맞이해서 우리 도지부의 이모 저모를 소개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더욱 감회가 새롭 습니다.

돌이켜보면 성년20년의 발자취는 어느 지부를 막론하고 결코 순탄치 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협회 발전과 회원 복지를 위하여 노심초사 하신 본협회 역대 회장님을 비롯 선배 회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지면을 통해서 마음깊이 감사 드립니다.

우리 도지부 산하 130여명의 회원 모두는 선배 회원님들의 뜻을 이어받아 합심 협력하여 보다 발전하는 협회, 보다 향상되는 지위, 보다 중대되는 복지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 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지방순례 본도지부 편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부성장과정

1963년 12월 16일 법률 제1536호로 제정 공포된 건축사법에 의거 사무소 등록을 필한 건축사를 정회원으로 하여 건축사의 품위 보전과 상호 친목 및 권익 옹호와 건축사의 건전한 발전을 통하여 건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가의 건축 정책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박영만씨외 31명이 1965년 11월 13일 지부 창립 총회를 개최하였다. 초대 지

65. 11. 13. 도지부창립총회



부장에 고 박영만씨를 선출하고 임원진을 구성 하였으며 도지부 사무실을 정육진 회원 사무실에 병설하여 업무를 개시 하였다.

1968년 5월 1일 도지부 사무실을 광주시 충장로 3가 일반 건물을 임대하여 집무하다. 1973년 1월 16일 7대 지부장을 지낸 최준화씨의 14명으로 광주 건축사 회관 건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마련 1974년 10월 화려한 기공식을 거행한 후 착공 8개월 만인 1975년 6월 7일 회관 준공과 함께 지부 사무실을 광주 건축사 회관으로 이전 하였다.

창립 당시에는 32명에 불과했던 회원이 85년도 현재 128명이라는 대가족으로 변모해 회원 서로가 공존하는 막강한 지부로 성장 하였다.

회원들의 업무량도 창립당시 8만1천 평방미터에 불과 했던 것이 1984년에는 2백11만5천 평방미터로 22배의 신장률을 기록 하였으며 지금은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의 3개 분소를 설치 업무수행의 원활을 도모하고 있으며 회원 전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건축문화 발전에 정진하고 있다.

지부운영방침

본도지부 현임원과 지부 산하 전회원은 선배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20년 동안 쌓아 올린 업적을 바탕으로 사회 일각에서 보는 건축사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우리의 자세와 위치를 정립하여 전회원이 밝고 건전한 건축 풍토 아래 조형미 넘치는 예술성을 추구 할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운영 지표를 설정하고 부단히 추진하고 있다.

첫째로 지부 산하 전체 회원의 협동 단결을 도모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목표의 달성 수단으로 회원과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회원과 접할 기회를 많이 갖고 있으며 분소 지역회원과의 순회 간담회를 수시로 가져 여러분이 바라는 문제점 해결은 물론 애로·건의사항을 파악하고 이의 해결책을 강구키 위하여 역대 지부장 등 원로 회원과의 회합

을 갖고 자문을 얻어 서로의 의견과 지혜를 모으고 있다.

둘째로 회원의 권익 옹호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협회가 해를 거듭함에 따라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보겠지만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건축사인 우리 회원들에 대하여 보는

눈이 건축 창작을 위한 작품 활동으로 보지 않고 단순 업종인 설계업자시하고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사회적 인식을 달리하게 하기 위하여 '85 전남 건축사 회원 작품전을 갖고 "매스컴"을 통한 홍보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있으며 각종 지역 사회 단체에 적극 참여하여 협회의 홍보 활동 전개로 회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권익 신장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셋째로 회원의 자질 향상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회원의 권익 신장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는 우리 스스로가 모든 면에서 건축사로서의 품격을 갖추어야 하겠다.

이는 곧 시민으로 부터 신뢰와 대접받는 길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매년 정기적으로 분소지역 순회 건축에 관한 세미나와 특별 교양 강좌 등을 개최하여 회원의 지식 함양으로 수준 높은 건축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내째로 사회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봉사 정신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협회의 사회적 지위 확보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성인 단체로서의 긍지를 갖고 사회 봉사 사업으로써 자연의 재난을 당한 불우 이주민 주택에 대한 설계지원과 불우 섬마을과 산간 오지 마을의 자매결연 사업지원, 그리고 불우 시민 돕기 등에 적극 참여하여 명량한 사회 기풍 조성의 선도적 역할을 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건전한 협회 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새로운 건축사상을 정립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역대지부장

구 분	성 명	사 무 소 명
초 대	박영만(작고)	박공무소
2 대, 3 대	정 옥 진	삼우건축사사무소
4 대	김 태 만	중합건축사사무소 신동림
5 대, 9 대	김호근(작고)	문화건축연구소
6 대, 10대	채 규 당	광일종합건축사사무소
7 대	최 춘 화	최춘화건축사사무소
8 대	배 윤 진	삼일건축사사무소
11 대	김 영 식	국제건축사사무소
12 대	임 재 식	금성건축사사무소
13 대	조 춘 원	대원건축사사무소

연도별회원 및 도서등록현황

연 도 별	회 원 수	도 서 등 록 현 황
1965	32	81,391㎡
1966	32	119,186㎡
1967	42	108,410㎡
1968	49	190,823㎡
1969	51	283,130㎡
1970	55	328,462㎡
1971	63	293,944㎡
1972	66	391,028㎡
1973	71	588,290㎡
1974	78	708,246㎡
1975	88	803,647㎡
1976	96	1,055,859㎡
1977	106	1,348,907㎡
1978	114	1,653,414㎡
1979	115	1,900,268㎡
1980	115	1,452,223㎡
1981	120	1,355,183㎡
1982	124	1,860,876㎡
1983	128	2,196,066㎡
1984	132	2,115,246㎡
1985	128	※ 85. 8 월 말 현재 회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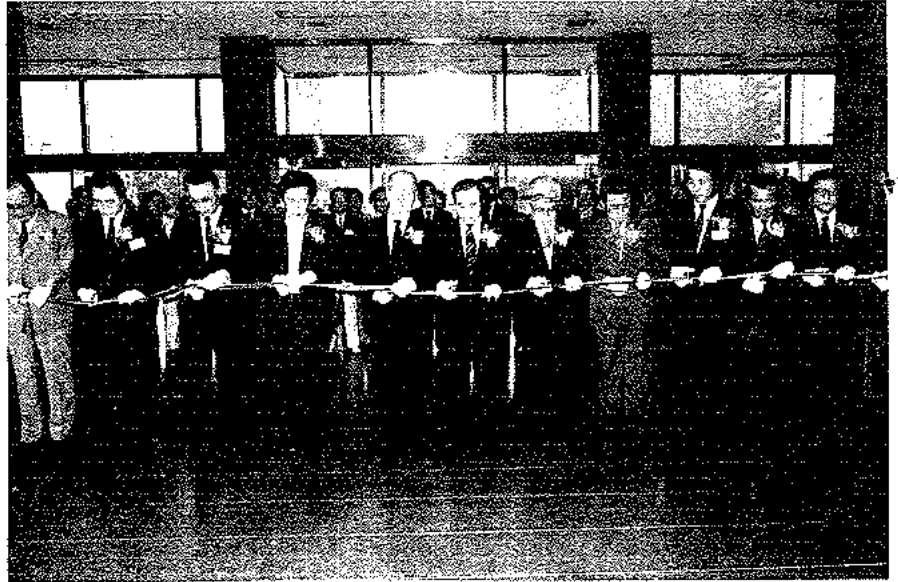
주요업무실적

본도지부가 이룩한 주요 사업 실적을 열거 하면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친목과 업무 정상화 및 복지 후생을 목적으로 1968년도에 共濟會를 설치 운영
2. 회원의 노후 대책을 위한 복리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80. 11. 25 福祉年金會 설치 운영
3. 회원의 복지 증진 및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82. 6. 28 광주 건축사 신용 협동 조합을 창립 83. 5. 11 정부 인가를 얻어 설립 운영.
4. '85 전남 건축사 회원 건축 설계 작품전을 개최하여 관람객에게 건축 작품 활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고 건축 설계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함으로써 회원 작품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

합과 아울러 홍보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협회와 건축사의 인식을 한층 높임으로써 우리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

5.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화합에 부응코자 새마을 사업 계획을 수립 섬마을과 자매 결연을 맺고 매년 새마을 사업비(1,000,000원) 및 선물을 전달 하였으며 특히 83년도에는 자매 마을인 낙도 어린이 33명을 광주에 초청하고 회원 가정에 민박하며 여러가지를 관람시켜 낙도 어린이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고 금년에는 산간 오지 마을과 자매 결연을 맺고 새마을 사업비를 지원하여 마을 주민의 자립 의욕을 고취 시키는데 이바지.
6. 지역 관계 공무원과 건축 행정에 관한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 함으로써 건축 부조리 척결에 앞장서고 회원과의 유대 강화를 도모기 위한 건축 업무 지역 순회 세미나를 매년 연례행사로 개최.
7. 보조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조원 및 건축사보 보수 교육 실시.
8. 직업 윤리관을 고취시켜 건전한 건축 풍토를 조성코자 회원 정화 활동 사업 전개.
9. 설계도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 회원 2인 1조가 되어 설계도서 검토제 실시.
10. 건축 행정에 관한 시민봉사에 기여하고 협회 홍보를 통한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건축 행정 상담실 운영.
11. 명랑사회 기풍을 조성코자 불우 이웃돕기 운동 및 농촌 일손 돕기 운동 전개.
12. 회원 해외 시찰을 통해서 건축 정보와 기술 교류로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동남아 시찰 실시.
 - 대상국 : 대만, 홍콩,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일본 (6개국)
 - 시찰여비부담 : 도지부 회원 복지 년금에서 전액 부담
 - 시찰기간 : 12박 13일
 - 시찰인원 : 년차별로 실시하되 85년 10월말경 1개반 (20인) 출국 예정으로 여권 수속 중임



85. 6. 20~25. 85전남건축사회원 작품전



지역순회 건축업무세미나(목포분소 개최)

임 원 현 황

직	위	성	명	사무소명
지 부 장		조	춘 원	대원건축사사무소
간 사		박	영 회	무등건축사사무소
간 사		송	양 석	한미건축사사무소
간 사		최	수 일	백제건축사사무소
간 사		정	재 경	종합건축사사무소 신진
감 사		김	성 현	시대건축사사무소
감 사		오	갑 윤	함동건축사사무소
목포분소장		김	용 무	현대건축사사무소
순천분소장		강	인 수	세원건축사사무소
여 수		구	천 모	구천모건축사사무소

建築士の 當面課題



문화 추대회원

金熙春

大韓建築士協會는 금년 10월에 2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그동안 건축계의 발전을 위하여 努力하여 온 건축사 여러분과 士協會 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 두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量」에서「質」의 시대로

上協會가 창립 발족한 1965년부터 1985년 오늘까지 20년간 우리나라는 주로 양적인 발전을 하여 왔다. 현재 우리나라 GNP도 \$ 2,000으로 그동안 몇배씩 성장하여 이제 중진국으로 발돋움함과 동시에 선진국으로 도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때 우리는 선진국의 체험을 살려서 시행착오없는 계획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質的 향상없이 量的 확대만을 추구한 결과는 오히려 마이너스 현상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을 결정적 과월에 몰고 갈 우려가 있다고 세계의 여러 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다. 그 예로서 세계 도처에서 환경오염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호소되고 있는 형편이다.

GNP는 연간 총생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이며 축적 자원에 대하여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 자원속에는 현재까지 좋은 瞻望物이나 쾌적한 自然物은 물론 물·공기·태양(日照조건)은 제외되고 있다. 「量」에서「質」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동안 간갈했던 새로운 자원을 인식해야 할 필요성에 도달하게 된다.

금·은·철·우라늄만 자원인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 그 자체가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인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푸른 지구라고 하는 오아시스는 그동안 너무도 많은 혜택을 우리에게 주어왔기 때문에 그 큰 은혜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양적 일변도의 확대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자원을 침식 당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 都市는 量的 확대의 상징으로서 또한 문명의 상징으로 생각하여 왔으며 인간이 아무 문제없이 살수 있다고 믿어 왔다. 그러나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안이한 개념은 전복되었으며 앞으로의 都市環境은 인간이 살수 있는 환경, 인간이 살기에 충분한 환경, 인간생활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서 그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과제가 주어지고 있다. 따라서 도시의 자원의 요소도 확대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의 도시환경을 살펴 보면 하나 하나의 建築은 우수한 것도 많다. 그러나 전체적 도시환경으로 볼때 이미 천혜의 자원을 많이 침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손실될지 모른다. 이 자원을 지켜야 할 의무는 우리들에게 있다고 본다.

建築士는 環境汚染의 誘發과 個人の利權과를 交換하지 않는 명료한 비전을 가지고 영웅주의적 작가 의식보다 겸허한 環境創造家로서의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전통을 이어 가지

전통이란 시간의 흐름과 함께 형성된 특정한 지역 속에 내재하는 어떤 질서의 흐름을 의미한다.

특히 文化史의 측면에 있어서 전통은 당대에는 물론 후세에 있어도 공감할 수 있는 고유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 전통이 형성된 지역의 범위안에서 시간을 초월한 生動하는 感受性의 체험을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술적 전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에 있어서 傳統論議는 1960년대에 이르러 범세계적인 한 潮流를 형성하고 있다. 주로 國際主義에서 상실된 로칼리티를 어떻게 建築的 手法로 재현하는가 하는 것이 논쟁의 초점이었다. 한국에 있어서도 1960년대에 비로소 建築 傳統論議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 배경은 상기한 국제주의에 대한 반동으로서의 범세계적 추세인 로칼리즘 建築運動 線上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민족주의적 내셔널리즘에 의한 모뉴멘탈리티의 요구와 관광대상물로서의 효과에 목적을 둔 것이라고 보겠다.

건축에 있어서 전통논리를 形態的 表現으로서만 구현하고자 하는 이상의 사례들이 속출하면서도 그 논의는 전개되어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 古建築의 고유한 형태적 요소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태도
2. 전통의 현대적 해석을 裝飾的 手法에서 찾고자 하는 태도
3. 형태적 표현상의 전통추구는 무의미하며 內面的인 精神性을 발굴하고자 하는 태도
4. 현대에서는 오로지 오늘의 여건만을 생각하자 하는 傳統 無用論

그러나 어떠한 한국건축의 傳統要素는 크게 세가지로 그 특성을 찾아 볼 수 있다.

1. 全体的인 構成을 企圖
 2. 人間的 스케일에 置重
 3. 과장없는 大凡하고 率直한 表現
- 이상의 뜻을 구성적 사실로 인정해야 할 것이며 복고취향적 내셔널리즘에 근거한 傳統論議는 현대적 傳統論議가 태동되기 위한 과도적 사실로서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

진정한 건축에 있어서의 傳統은 작가가 그 내면에 축적된 것이 분해된 결과로서의 자연스러운 창조적 표현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라이트"나 "알토"는 이러한 작가의 내재하는 풍

토성의 자연스러운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傳統繼承이란 과거의 답습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평가를 거쳐 현대화 시키는 작업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건축은 그 시기의 그 작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창조적인 것이

어야 한다.

우리 민족의 정서속에서 생동하는 시간을 초월한 建築思想과 哲學을 발견하고 그것을 現代의 建築言語로 표현하는 작업이 또한 미래에 이어질 현대의 전통을 수립하기 위한 建築士의 노력이 절실히 요망된다.

젊은 建築家들에게



韓國建築家協會 會長
羅 相 紀

우리나라 建築近代史를 논한다면, 해방 이후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며 그간의 다사다난했던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볼때 50년대, 60년대, 70년대 및 80년대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각각의 시대적 배경과 건축문화의 특징은 다르지만 지금 우리는 그 모든것을 바탕으로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지고 예술문화 창달에 정진하고 2,000년대의 도약을 위해 지속적 성장에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생각한다.

文化란 人間的 價値實現으로 향한 노력의 척도이다. 藝術은 역시 人間의 精神的 像의 직접적인 척도인 것이다. 민족의 예술문화란 한 민족의 정신적 像이며 한 민족의 價値像인 것이다. 우리가 후세에 물려주려는 것은 지금 쌓아 올리는 가치의 내용과 민족적 정신 내용인 것이다. 위대한 건축유산들 후세에 물려주고 계승케 함으로써 역사를 면면히 지켜 발전시켜야 하겠다.

지금 우리는 극도로 발전된 기계문명속에서 건축문화창달에 정진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나라 건축발전에 관하여 근대 40년 간을 돌이켜 볼 때 오늘의 모든 건축활동은 놀랄만한 발전을 가져왔다.

우선 50년대에는 한국동란 직후인 관계로 인하여 건축의 3대요소인 構造, 意匠, 設備를 고루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意匠의 측면은 물론이고 設備의 측면인 냉방, 심지어 난방, 위생설비(수세식 화장실)마저 갖추지 못한 채 민족 최악의 시대에서 우리 건축가들은 그 많은 시련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며 이에 도전하여 꾸준히 발전시키고 노력하여 왔다. 그 결과 6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싸이 트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 경제도 5개년마다 수립하는 計劃經濟로 국가경제 재건에 박차를 가하여 경제발전과 아울러 우리 건축계에도 침체되어 있던 경기가 회복이 되어 건축가들의 활약과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하게 되었었던 것이다.

특히 60년대 말에는 군데군데 고층건물이 건설되기 시작하였으며 본격적인 도시활동이 태동되게 되었었던 것이다. 7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가경제발전이 고도로 성장됨과 때를 같이하여 사무실 床面積의 수요가 급증케 되고 아파트 등 주택건설, 호텔 등 상업건축의 急増 등으로 70년대에는 건축경기가 절정에 이르르게 되었다. 때를 같이하여 中東國家들

에게 建設熱生 등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건설한국의 붐을 여지없이 과시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때에 비로소 建築의 三大要素를 가꾸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건축물의 수준이 향상되었던 것이다.

특히 70년대 중반부터는 급증하는 차량대문에 주차장이 없는 건물은 그 가치가 없고 조경은 의무화 되었으며 실내공간은 그 어느때 보다도 앞을 다투어서 보다 나은 내부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많은 실내장식가들의 활동이 있었다. 또한 70년대 초반부터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급증하는 建築面積 所要에 대처하기 위하여 都市再開發法을 마련하여 노교화된 도심조재개발을 촉진케 하였으며 停車場法을 제정하여 주차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건축가들의 역할은 건축의 삼대요소 뿐만 아니라 주차장, 조경, 그리고 실내장식 등이 필수조건으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국제적 수준으로 도약하였던 것이다. 특히 80년대에 들어서면서 86아세안 게임과 88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로서 우리 건축가들은 체육 그 자체보다도 建築文化의 창달이 그 어느때 보다도 시급하게 되었으며 국제적으로 널리 알릴때가 도래하였던 것이다.

지금 우리는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건축활동을 하고 있으나 엄격히 말하면 아직 미숙한 점이 많고 도시 구석 구석을 살펴볼 때 아직은 국제적수준에 끌어올리기에는 너무나 요원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한 두가지 아니다. 우리는 큰것 보다는 작은 것부터 걸치레 보다는 정기가 담긴 알찬 건축작품 창조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다.

이와같이 근대 40년 동안에 우리나라 건축 발전의 발자취를 볼때 그 속에는 허다하게 수척스런 일들이 있었다. 그 중 한가지 예만 들어보면 우리 건축가들 사이에는 뜻하지 않게 작품활동을 하는데 입찰을 한다든가 덤핑을 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이러한 행위들은 예술문화창작 활동을 하는 건축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와같은 관계로 고민하고 있는 건축가들은 하루 속히 이러한 태두리속에서 벗어나서 초연히 건축가다운 고고함을 지키면서 오직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정진하여야 하겠다.

우리는 일제치하에서 해방된지 40년이

지난 오늘 건축가 개개인의 자기 건축작품에 대한 태도는 있어도 어떤 시기에 있어서 한국의 입장을 뚜렷히 할만큼 선명한 建築哲學의 일단조차 엿볼수 없어서는 않되겠다. 물론 그것이 정립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模索의 노력은 있어야

할줄 안다. 그 模索 자체가 목적을 달성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이 길을 위하여 우선 건축가들 자신이 자만과 자기도취와 편견을 버리고 사색할 줄 아는 태도가 앞서야 하겠읍니다.

의심을 갖곤 한다. (건축가는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가라고 말하지만...)

특히 건축주의 평범한 아이디어나 절실한 요구사항을 대할 때, 나의 알파한 전문적 처방이 과연 자연스러운 것이고, 보편적 처리 방법이었느냐를 반문하게 된다. 설계자로서의 좁은 마음을 버리고 그저 있는 현상의 것들을 자연스레, 구성하고 종합하여 주는 것 뿐이다. 이렇게 건축사로서 나의 역할을 파소평가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전문인이 이 역할을 할 종합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생각하면 건축사로서 나의 역할을 자부할 때도 있다.

건축사란 어떤 조형의 스케일이나 인간 행위 등을 정확히 상상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하겠다.

여러 상황의 행위를 가정하여 보조선을 긋고, 앞선 생각으로 경험을 얻어 내어 제시하고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상 디자이너가 여름에 겨울 옷을 구상해야 하듯, 설계자도 도면위의 집에서 벽난로의 따뜻함과 장작 냄새의 구수함을 느낄 수 있겠다.

몇 백배나 확대되어 나타날 결과물에 대한 기대나 궁금증, 어떤 경우는 약간의 두려움 마저 느끼는 버릇이 나에겐 있다. 아직도 정확한 상상력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실제의 건축물이 생각보다 커보이기도 했고, 작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또 잘못 가정된 보조선으로 빚어진 모순들을 현장에서 대하면 아픈 마음으로 차선책을 찾아야 했던 일...

다만 그런 시행착오나 상상력의 그릇됨이나, 보조선의 오차가 근소해 지기를 바라며 계속 시도할 뿐이다. 이런 시도가 내 몫의 역할을 해내기를 바라면서...

성년식을 축하하며



종합건축사사무소 (주)범건축
유 원 재

이제 협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협회가 드디어 성년이 된 것을 자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엿한 성년으로서 건축사의 사회적 인식은 아직도 미흡하다 하겠다. 우선 건축사란 말이 널리 익숙하지 않고, 건축사의 역할도 건설기술 전문인의 것과 많이 혼동되어 있다. 이런 사회적 인식을 정착시키는 것은 모든 회원들이 회원수에 비례한 자기 몫 만큼의 역할에 달렸다고 하겠다.

나는 한 건축물의 설계, 감리 과정을 통해 건축주로부터 현장의 기능공까지의 각 분야의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갖는다. 이런 만남에서 나는 건축사의 사회적 인식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으려 한다.

특히 건축주와 건축사는 한 건축물을 통해 서로를 충분히 잘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다.

예를 들면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명이나, 도면이나 그림 등을 통해 상상하고 있던 것들이 완성된 건축물의 실체를 느끼며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건물을 이용하면서 설계자의 흔적과 의도를 거의 정확히 느낄 수 있겠다.

어떤 면은 설계자의 욕심으로 Over Design이 된 것도 있고, 반면 더 매만지어 해결했어야 할 부분도 있겠다. 또 어떤 경우는 새로운 설계의도가 실현되지 못함을 건축주는 자기의 아집을 후회하고, 설계자는 설득과정에서 지쳤던 자기를 싫어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건축주는 자기 관념 속에서 편안하기를 바라지만, 설계자의 선험적 노력에 의한 새로운 경험들을 완성된 건축물에서 즐기게 된다면 기뻐할 것이다.

나는 건축사의 법적 기능을 제외하고는 가끔 내가 건축전문인 인가? 하는

가정에서 뿌린정직 사회에서 꽃핀신뢰

바른마음 바른자세 다져지는 신뢰사회

建築士波動



源一綜合建築士事務所

安 箕 泰

建築士法 制定에 따른 建築人들의 輿論

第1回 建築士資格試驗 實施는 建築人들로서는 最大의 關心 事였다. 1964年 歲暮를 앞둔 분주한 가운데에도 各識場에서, 또는 크고작은 建築人들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應試에 대한 話題가 萬發하여 외문과 가우 속에 제각기 다가올 展望에 대해 염려의 一色이다.

建築三團體인 大韓建築學會, 韓國建築家協會, 建築士協會 等 各其 關係要路와 활발한 접촉이 있었으며 主로 建築士法改正에 대한 輿論이 분분할 때이다. 建設部와 三團體의 會合, 또는 各 團體別 理事會를 통해 決議된 案을 建議, 便情, 請願 等 多角的인 活動을 하였으며 이러한 와중에 士法 改正으로 因하여 試驗日字가 延期되게 이르렀다.

當時 建築家協會에서 作成한 請願書를 통해 當時 動向의 一面을 엿볼 수 있다. (骨字만 발췌요약)

建築士法の 改正을 請願함

(1963. 12. 16 法律 第1536號)

1. 現行建築士法은 拙速立法過程의 犠牲物이다.
2. 同法の 잘못된 點은 이러하다.
 - 1) 建築士法の 主된 規律對象인 現在 建築設計 및 監理業務에 從事하는 建築士法(設計家)의 大部分에 對해서는 그 權益保障마저도 소홀히 하면서 建築代書士에게는 無理하고도 過分한 特惠를 附與했다.
 - 2) 建築士(設計家)와 建築行政書士를 混同했다.
 - 3) 不合理하고도 違憲이다.
 - 4) 不法團體를 새建築士協會의 繼承團體로 規定했다.
3. 設計圖書登錄制를 撤廢하라.
4. 建築士全體의 建築士協會가 되게 하라.
5. 結論(改正骨字) (以下省略)

1964年 5月

社團法人 韓國建築家協會

會長 金 熙 春

以上과 같은 事項들을 비추어보아 當時 法改正의 어려움을 實感케 한다. 建築士法の 關心이 높아지면서 뜻있는 建築人들과 관련團體에서는 關係法을 스스로 살펴보기에 힘을 기울였으며 建設部案 最高會議案 等を 주의깊게 分析하기도 했다.

參考로 關係法條文을 索引해보면 다음과 같다. (條文內容생략)

1. 서울特別市 建築代書士 規則(1955. 4. 13, 規則 第58號)
 - 第1條 (朝鮮代書士取締規則 第58號)
2. 行政書士法(1963. 3. 5, 改正公布 第1288號)
 - 第2條 (許可)
3. 社會團體登錄法(1963. 3. 12, 改正法律 第1304號)
 - 第3條 (登錄節次), 附則 第1條(施行田)
4. 國家關連最高會議布告 第6號(1961. 5. 22 公布)
5. 建築士法(1963. 12. 16, 法律 第1531號)
6. 改正社會團體登錄法(1963. 12. 12, 改正法律 第1485號)
 - 第2條 (適用排除)
7. 建設業法
 - 第16條 (技術者에 對한 免許)
8. 建築士法
 - 附則第1條 (施行日)
 - 附則第2條 (建築士免許에 대한 特例)
 - 第22條 (設計圖書의 登錄)
 - 第33條 (會員)
 - 第7條 (建築士의 免許) 等

試驗實施公告와 建築人들의 움직임

1965年 새해에 접어들면서 산발적으로 靜中動의 建築人들이 1965年 3月 10日字 서울新聞에 掲載된 公告文을 接하게 된다.

「建築士資格試驗實施再公告

第1回 建築士資格試驗을 다음과 같이 實施함을 再公告함

1965年 3月 10日

掲載日字	新聞社名	記事性格	内 容(제목)	備 考
1965. 3. 10	서울신문	廣 告	建築士資格試驗實施再公告	建設部長官
4. 19	京郷新聞	廣 告	聲明書	全國 建築同人會
4. 21	京郷新聞	記 事	建築士資格試驗 「보이콧」 學士建築家들 모여 同人會 만들고 決議, 行政書士에게 준 特惠 철회하라고	
4. 21	日刊 經濟新聞	記 事	一部應試者들 試驗委員 「메모」 合意說에 反撥 “合格者 4 百名線”으로 內定	
4. 22	서울新聞	廣 告	建築士資格試驗施行案內	建築士資格 試驗委員會
4. 23	東亞日報	記 事	建築士試驗拒否 千名의 學士들 「連判狀」運 動, 行政書士特惠에 不滿	
4. 24	産業經濟 新聞	記 事	一部試驗을 拒否, 少壯建 築士들 施行令에 不滿품고	
4. 23	日刊 經濟新聞	記 事	建築士試驗全員 「보이콧」 全國建築同人會서 決意 大邱地方서도 同調	
4. 24	東亞日報	투 고	建築士資格試驗 根本的 再 檢討를	大韓住宅公 社研究室長 安 秉 義
4. 26	大韓日報	記 事	國家試驗 「보이콧」 工大建 築科나온 500余名 建築士 法 改正 요구하고	
4. 26	京郷新聞	記 事	大學出身들 「보이콧」 팅빈 建築士資格試驗場	
4. 28	朝鮮日報	記 事	建築士試驗을 拒否 7 百余 名이 條件에 不滿품어	
4. 26	法律新聞	記 事	建築士資格試驗이 말뚝	
4. 29	서울新聞	社 說	建築士試驗是非 - 政府는 法을 그대로 實施해야한다-	
4. 29	大韓日報	「뉴스의 키」 난	國家考試에도 特惠나 建築士試驗 「보이콧」 波紋	
5. 1	朝鮮日報	社 說	第一回 建築士資格考試와 國家考試制의 體面問題	

建設部長官 全 禮 鎔

追加接受期間은 1965. 3. 20日까지이며 試驗日字는 1965.
4. 25日로 되어 있다.

公告文이 發表되자 應試對象者들이 술렁이기 시작하면서 各
種모임이 빈번해 졌으며 當局의 더욱 具體的인 움직임도 엿
볼 수 있었다. 차질없는 施行을 위하여 建築三團體와 元老 重

□ 筆者註 □

이 글은筆者가 參與하였을 當時를 회고하면서 保管하고 있던
資料를 中心으로 作成한 事實의 記錄이다. 建築界의 至大한 關心
事였던 만큼 各界人士가 處해있던 立場에 따라 觀點의 視角과 見
解가 서로 다를 수 있겠으나筆者가 參與했던 側의 立場에서 行
하여진 事項들을 言及한것 뿐이며 當時의 當局, 또는 客觀的인建
築界人士, 言論界, 一般人士들의 見解는 다를 수도 있겠다.

20年의 時空差의 흐름속에 當時의 行爲의 正當性을 世상 主張
한다거나, 結果를 論하려 함도 또한 아니다. 다만 當時의 事實을
記錄하려는 데에 이 글을 쓰는 뜻이 있다 하겠다.

20年後인 作今의 現實은 昔을 거꾸오면서 健全하게 發展하여
오늘의 大 “大韓建築士協會”로서 國家發展의 큰 바탕이 되었음을
多幸으로 여길 뿐이다. 當時 混亂스런 事態에 對하여 當局과 關
係人士에게 謝意의 뜻을 表하면서 한때 이나라 젊은 建築人들이
氣概를 세웠다는 點도 집고 넘어가 볼 意義는 있겠다. 이러한 試
練이 오늘에 이름과 來日의 發展에 敎訓이 될 것으로 믿는다.

※(本文에 人名尊稱은 略하며 必要에 따라 職名만 使用키로 함)

1965년 4월29일 서울신문사설

서기1965년4월29일 (목요일) [2면]



鎮建築人을 招致하여 現實여건을 說明하는가 하면 또한 當局
의 強한 뜻을 밝히기도 했다.

1965年 4月 初 建築法公布以來 처음으로 實施하는 第1回
建築士試驗의 應試者들을 다루게 될 試驗委員과 應試者數가
맞혀졌다.

建築士法施行令 第14條(委員會의 組織) 規定에 依하여 試驗
問題 出提와 口述試驗銓衡委員이 된 委員名單은 다음과 같다.

委員長 建設部次官 崔鍾聲



음시기부자들이 집결하는 모습 (교문쪽)



시험장 입구에서 음시기부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험집행관
(우측 첫번째 徐正雨 局長, 네번째 金在哲 위원)

徐正雨(建設部國土保全局長), 洪思天(住宅公社理事), 田敬鎮(國防部施設局長), 金亨杰(서울工大建築科長), 洪鵬義(漢陽工大建築科長), 鄭寅國(弘大建築科長), 李均相(大韓建築學會會長), 宋旼求(韓國建築家協會會長), 金熙春(서울工大教授), 張起仁(漢陽工大教授), 愼武賊(前交通部施設局長), 金舜河(建築士協會會長), 崔銑(國會建設業專門委員), 金在哲(서울美大講師), 金澤辰(東亞大工大學長)

한편, 集計된 應試者數는 1,898名 이었으며 法令改正으로 延期措置한 後 接受된 應試者로 443名이 된다고 建設部 集計가 나왔다.

試驗日을 10余日 남겨놓고 試驗拒否者側은 더욱 모임이 잦아지고 都下各新聞紙上에 連日 報導되기 시작했다. 그 內容을 要約 整理해보면 다음과 같다.

建築同人會의 結成

數個月間에 걸쳐 職場別, 出身學校別 單位로 散發的인 活動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다. 求心體를 組織하여 體系的인 活動

이 展開되어야 할 시기에 이른 것이다. 共間數次 利用하여 왔던 乙支路5街 所在 廣仁빌딩 4層 正一建築(代表 宋基德) 內에 事務室을 두기로 하고 大單位는 亦是 여러차례 提供받아 왔던 鍾路禮式場(신모 提供)을 利用하기로 양해가 되었으며 推進人員의 措成도 形成되어 갔다. 當時 參與人을 모두 列舉할 수는 없겠으나, 參與度가 높은 사람들이 主動이 되어 本格的인 活動을 시작하기 위하여 大單位 集會를 열기도 하였으며 1965年 4月 15日 19:00時 鍾路禮式場에서 體系있는 集會로서는 처음 있는 모임이었다. 數百名의 同調者들이 參席한 가운데 성황리에 기세를 올렸다. 當時에 記錄된 日誌를 보면 다음과 같은 內容의 集會였다.

開 催 者: 建築同人會

日 時: 1965年 4月 15日 19:00時

場 所: 鍾路禮式場

進行事項: 1. 開會人事(安箕泰)

2. 經過報告 및 要旨說明(張永壽)

3. 補充說明(宋基德)

4. 對策樹立(張永壽, 安箕泰)

5. 決議文採擇

6. 決議文朗讀(李廷德)

7. 各大學 및 在京地方大學代表 選出

8. 開會宣言

15日의 大集會를 起點으로 몇일 남지않은 나날이 술가쁘게 이어졌다. 日誌를 中心으로 活動內容의 一面을 적어보면

16日(金)

9 시: 南地茶房

參 席 者: 張永壽, 丁海喆, 金元弼, 康在明, 李鍾金, 全明鉉, 安箕泰

會合內容: ○K新聞社記者會見 ○學會 및 家協會, 理事會 및 總會開催建議, 決議事項 傳達 ○D新聞社 記事資料 傳達 ○試驗拒否時의 法的 저촉여부 및 其他 處理問題

19時: 正一建築事務室

參 席 者: 李東煥, 李昌植, 吳昌熙, 安曠培, 張永壽, 李鍾金, 宋基德, 康在明

會合內容: ○聲明書文案 作成 및 委員名單 選定方法 ○名稱確定 ○學會 家協會 理事會反應 여부 ○午前集會의 經過報告 ○個別活動 報告 ○活動事項分理(聲明書 作成, 關係要路 訪問, 各界人士 座談會 準備 署名方法, 言論放送社訪問等) ○財源問題 ○名稱確定(假稱 全國建築同人會 建築士法 改正推進委員會)

17日(土)

19時: 正一建築

參 席 者: 宋基德, 丁海喆, 李昌植, 張永壽, 崔善用, 李東煥, 吳昌熙, 張時昌, 安箕泰

會合內容: ○聲明書內容 檢討 ○代表團 및 推進委員 名單選定 ○聲明書 廣告豫約 ○分擔活動物 報告 ○銓衡應試者 및 銓衡委員 접촉 方案

18日(日)

14時: 大都茶房

參席者: 李廷德, 張永壽, 安箕泰

16時: 正一建築에서 合流

參席者: 李昌植, 李鍾金, 康在明

會合內容: ○聲明書 最終確定 ○全般的인 活動事項 再檢討

19日(月)

10時: 東洋茶房

參席者: 李昌植, 朴冕洙, 吳昌熙, 尹道根, 丁海喆, 李廷德, 安箕泰

會合內容: ○面談 豫約된 新聞社 訪問(K新聞 D日報) ○新聞掲載 聲明書 引受 및 發送準備 ○家協會訪問(金壽根, 韓昌鎭相議) ○洪鵬義教授 訪問

20日(火)

14時: 東洋茶房, 22時: 正一建築

參席者: 宋基德, 吳雲東, 吳昌熙, 張永壽, 朴冕洙, 尹道根, 李東煥, 康在明, 李廷德, 安箕泰, 俞景哲, 張時昌

會合內容: ○關係要路 訪問結果 報告 ○地方活動點檢 ○21日 活動事項 分擔委任

21日(水)

○金亨杰 教授 大廳都에서 面談(李廷德, 宋基德, 李東煥, 朴冕洙, 吳雲東)

○鄭寅國 教授 孝子洞自宅 訪問

(尹道根, 朴冕洙, 宋基德, 李鍾金, 安箕泰)

○洪鵬義教授 원효로自宅 訪問

(吳昌熙, 尹道根, 宋基德, 安箕泰)

○訪問結果 討議 및 活動事項 再檢討

以上과 같이 몇일 동안의 活動相을 엿보았지만 試驗日(25日)까지 계속된 움직임은 날이 갈수록 더욱 활발이 떠나갔으며 全國에 波及되어 大邱를 先峰으로 光州, 全州, 釜山, 大田等地에서 연판장이 속속 同人會 事務室로 到着되었다. 正一建築과 鍾路禮式場의 모임도 여전히 계속되었다.

建築同人會의 運營

當時 短時日間이지만 全國建築同人會의 組織 및 運營實態를 살펴보면 各己 生業에 從事者들로서 그리 한가한 便은 못되는 처지여서 意志만으로 서로 격려하며 同調하는 사람들이 大部分 이었으며 몇몇 委任받은 사람들이 主導해 나가는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大集會時마다 數百名씩 雲集하는 현상은 그만큼 各自의 重要性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同人會의 人員措成을 보면 代表團 15名 企劃委員 4名 推進委員 100名으로 構成하였으며 代表團(名單, 聲明書 參照)은 對外的인 活動 및 모임의 主導를 하였고 推進委員(名單, 聲明書 參照)은 代表團을 보좌하며 각기 나름대로 活動하였고 企劃委員(李昌植, 李廷德, 張永壽, 安箕泰)은 會의 運營 및 企劃, 綜合分析 對策等의 業務를 담당하였다.

財源問題는 會要條로 기부금으로 充當하였고 代表團과 一般會員을 區分하여 액수의 차이를 두어 基準을 마련하였으며 支出은 廣告費等 공공성이 있는 名目에서만 使用했고 交通費 食代 等은 各自負擔 하였다.

持히 唯一建築과 正一建築에서는 厚한 기부금을 보내주어 많은 힘이 되었으며 4月 15日 부터 5月 1日 까지의 支出總額이 69,000원 이었음을 밝힌다.

聲明書 全文

本文 筆者註에 言及한 바와 같이 試驗拒否에 對한 事由는 說明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當時의 뜻이 이 聲明文에 表現되어 있다.

聲 明 書

建築物의 質的向上과 建築士의 品位保全을 爲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聲明한다.

우리 建築人은 其間屢次에 걸쳐 建設部 當局에 建築士法 및 同施行令의 改正을 建議 請願했으나 當局은 法令의 矛盾點과

접수대의 한산한 모습(시험장쪽)



등반 시험장



不當性を是認하면서도 이리 強行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에指摘하는 矛盾點과 不當한 特惠措置를 排除하는 法令의 改正이 없는한 四月二十五日에 施行할 第一回 建築士資格試驗은 勿論 앞으로 一切의 建築士資格試驗을 拒否할 것을 滿天下에 聲明하는 바이다.

一、建築許可書類 作成程度가 主業務인 行政代書士 資格에 高度의 技術을 必要로 하는 建築士의 資格을 口述銓衡 또는 書類銓衡으로 資格을 附與함은 不當할 뿐 아니라 建築士法 制定 目的에 違背된다. 따라서 最小限 一般應試者와 同等한 試驗을 치루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二、建築界의 大家 및 有能한 重鎮에게 特典을 附與함은 當然하나 莫然히 經歷年限에만 基準하여 特惠를 준다는 것은 不當할 뿐 아니라 建築士의 質的低下를 招來케 된다. 따라서 普偏妥當性있는 基準이 要求된다.

三、現法令대로 試驗이 實施되면 不當한 特惠措置로 因하여 特惠를 받는 一部 無資格者 들에게 資格을 주게되어 建築士의 品位低下는 勿論 國民生活 및 國家將來에 끼칠 惡影響이 多大함으로 우리는 萬不得已 應試를 거부하고 法令의 改正을 積極 推進하는 바이다.

1965年 4月 15日

代表團

釜山大學校 出身代表：徐瑞澤

서울大學校 出身代表：李廷德，宋基德

全南大學校 出身代表：康在洪，朴春祥

朝鮮大學校 出身代表：李鍾金，崔英會

靑丘大學校 出身代表：金仁鎬，金炫山

忠南大學校 出身代表：李炳洙，崔德宗

漢陽大學校 出身代表：吳雲東，吳昌熙

弘益大學校 出身代表：尹道根，朴晝洙

推進委員

姜周烈，姜昌根，姜泰運，姜興植，桂明直，郭東洙，權五增，權重斗，權泰植，金南喆，金基準，金光俊，金德龍，金德在，金東明，金善均，金時亨，金煥燦，金英哲，金英勲，金龍八，金元弼，金仁起，金寅培，金仁錫，金正湜，金正澈，金鍾明，金宗根，金正起，金俊容，金澈會，金平坤，金夏鎮，金學善，金德鎮，南宮琮，羅顯球，馬春景，朴得洙，朴命吉，朴漢錫

白光允，宋蘭燁，愼國範，申東立，沈慧庚，安箕泰，安暎培，嚴圭用，吳炳台，禹相烈，元正洙，元鍾煥，劉圭成，尹炳陽，尹太鉉，李康泰，李昊基，李大成，李東煥，李丙海，李相基，李商淳，李用夏，李元均，李在悅，李宗相，李昌植，任性奎，林 靖，張攝浩，張時昌，張永壽，張潤植，張鍾健，張宗律，全明鉉，鄭道泳，鄭洙麟，鄭宗華，鄭鎮成，趙昌杰，趙昌翰，趙成來，朱京在，朱鍾元，池承燁，崔祥均，崔碩文，崔善用，崔莊雲，崔在明，崔綱鎮，河榮圭，韓鍾彥，咸炳鮮，黃漢柱，洪萬基，洪性哲

서울特別市 中區 乙支路5街 190 廣仁빌딩 4層 1號室

電話 ⑤2 - 1583

假稱 全國建築同人會

建築士法令改正推進委員會

試驗場 光景

1965年 4月 25日 試驗日은 다가왔다. 9時부터 시작되는 試驗인데도 8時에 試驗場인 新堂洞所在 漢陽工高 校庭에는 많은 응시자들이 삼삼 오오 염려스런 表情으로 환담을 나누고 있었다. 긴급 대표단 회를 열고 現場對策을 論議한 결과 試驗 拒否 同調人들을 校門쪽 校庭에 대오를 정리하여 조용히 연좌해 있기로 했으며 人員이 많은 關係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宋基德과 吳昌熙가 各其 한 그룹씩 맡아서 先頭에 서서 한시간이 넘도록 연설을 계속하여 자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必死의 외침이 저절할 정도이다. 후일 무슨 말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제정신이 아니어서 모르겠다 한다. 집고 넘어갈 일은 應試하고자 하는 사람은 自意대로 試驗場行에 防害가 되지 않도록 하였음을 밝힌다.

試驗時間은 이미 한시간이 넘게 지났고 徐正雨局長, 朴瑛夏 係長, 金在哲委員長 關係人士들이 現場수습책을 마련하는듯 運動場에 선채 구수회담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應試拒否者들은 전혀 동요없이 연좌는 계속되었으며 應試者는 겨우 한반에 2,3名 程度여서 拒否者側으로는 豫想했던대로 큰成果를 보았다고 자찬이 한창이던 중 崔善用이 急한 傳言이라며 死色이 되어 말하기를 모기관에서 現場에 出動할 것 같다는 것이다.

建築士資格 試驗實施再公告

建設部長官 全禮鎔

一九六五年三月十日

一、追加接受期間
一九六五年三月二十日까지 延期함

二、試驗日期
一九六五年四月二十五日(八時부터 시작)

三、試驗場所
大邱地區 大邱市 漢陽工高 校庭
金州地區 金州工高 校庭
※口述試驗은 試驗場에서 實施함

四、分區
第一區 釜山 釜山大學校
第二區 大邱 大邱大學校
第三區 金州 金州大學校
第四區 仁川 仁川大學校
第五區 京畿 京畿大學校
第六區 全南 全南大學校
第七區 忠南 忠南大學校
第八區 江原 江原大學校
第九區 濟州 濟州大學校
第十區 光州 光州大學校
第十一區 大田 大田大學校
第十二區 蔚山 蔚山大學校
第十三區 大邱 大邱大學校
第十四區 金州 金州大學校
第十五區 仁川 仁川大學校
第十六區 京畿 京畿大學校
第十七區 全南 全南大學校
第十八區 忠南 忠南大學校
第十九區 江原 江原大學校
第二十區 濟州 濟州大學校
第二十一區 光州 光州大學校
第二十二區 大田 大田大學校
第二十三區 蔚山 蔚山大學校
第二十四區 大邱 大邱大學校
第二十五區 金州 金州大學校
第二十六區 仁川 仁川大學校
第二十七區 京畿 京畿大學校
第二十八區 全南 全南大學校
第二十九區 忠南 忠南大學校
第三十區 江原 江原大學校
第三十一區 濟州 濟州大學校
第三十二區 光州 光州大學校
第三十三區 大田 大田大學校
第三十四區 蔚山 蔚山大學校
第三十五區 大邱 大邱大學校
第三十六區 金州 金州大學校
第三十七區 仁川 仁川大學校
第三十八區 京畿 京畿大學校
第三十九區 全南 全南大學校
第四十區 忠南 忠南大學校
第四十一區 江原 江原大學校
第四十二區 濟州 濟州大學校
第四十三區 光州 光州大學校
第四十四區 大田 大田大學校
第四十五區 蔚山 蔚山大學校
第四十六區 大邱 大邱大學校
第四十七區 金州 金州大學校
第四十八區 仁川 仁川大學校
第四十九區 京畿 京畿大學校
第五十區 全南 全南大學校
第五十一區 忠南 忠南大學校
第五十二區 江原 江原大學校
第五十三區 濟州 濟州大學校
第五十四區 光州 光州大學校
第五十五區 大田 大田大學校
第五十六區 蔚山 蔚山大學校
第五十七區 大邱 大邱大學校
第五十八區 金州 金州大學校
第五十九區 仁川 仁川大學校
第六十區 京畿 京畿大學校
第六十一區 全南 全南大學校
第六十二區 忠南 忠南大學校
第六十三區 江原 江原大學校
第六十四區 濟州 濟州大學校
第六十五區 光州 光州大學校
第六十六區 大田 大田大學校
第六十七區 蔚山 蔚山大學校
第六十八區 大邱 大邱大學校
第六十九區 金州 金州大學校
第七十區 仁川 仁川大學校
第七十一區 京畿 京畿大學校
第七十二區 全南 全南大學校
第七十三區 忠南 忠南大學校
第七十四區 江原 江原大學校
第七十五區 濟州 濟州大學校
第七十六區 光州 光州大學校
第七十七區 大田 大田大學校
第七十八區 蔚山 蔚山大學校
第七十九區 大邱 大邱大學校
第八十區 金州 金州大學校
第八十一區 仁川 仁川大學校
第八十二區 京畿 京畿大學校
第八十三區 全南 全南大學校
第八十四區 忠南 忠南大學校
第八十五區 江原 江原大學校
第八十六區 濟州 濟州大學校
第八十七區 光州 光州大學校
第八十八區 大田 大田大學校
第八十九區 蔚山 蔚山大學校
第九十區 大邱 大邱大學校
第九十一區 金州 金州大學校
第九十二區 仁川 仁川大學校
第九十三區 京畿 京畿大學校
第九十四區 全南 全南大學校
第九十五區 忠南 忠南大學校
第九十六區 江原 江原大學校
第九十七區 濟州 濟州大學校
第九十八區 光州 光州大學校
第九十九區 大田 大田大學校
第一百區 蔚山 蔚山大學校

그러나 代表團이 責任질 것을 이미 覺悟한바 있으므로 동요된 이 없도록 다짐했다.

解散을 宜言하고 各己 돌아가기 시작했다. 俞景哲 林靖等은 모처럼 大學同期들을 만나게 되었다며 무리를 지어 떠났으며 市外電話를 통해 報告받기를 地方에서도 상당수가 시험을 포기하였다고 傳한다.

餘瀝

4月25日 試驗拒否 사태로서 同人會가 即時 해산된것은 아니다.

4月26日 銓衡대상자들의 試驗場所인 樂園洞 建國大學에 訪問하여 시위를 벌였으며 서로 親分이 있는 處地에서 어색하기 이룰때 없었다. 그후 5月1日까지 殘務를 處理하고 그간의 勞苦를 서로 위로하면서 해산하였다.

本文에 밝힐수 없는 逸話를 다 記載하지 못함을 아쉬워 하면서, 關係要路 및 建築三團體 各學校의 스승 元老, 先輩 建築人士들을 訪問하여 請願 陳情, 호소, 說得 等 중창무진 活動하는 過程에서 많은 실례와 누를 끼쳤음을 回想하면서 特히 大學同期인 當時 建設部 實務者였던 朴瑛夏를 吳昌熙와 本人이 建設部로 訪問하여 論爭을 벌인일은 若冠의 朴係長이 建國初有의 大任을 遂行하는 立場을 協助는 못하나마 強力反對 하였음은 當事者로서 甚히 유감스럽게 여겨졌음은 當然한 일이라 하겠다. 또한 拒否意志를 끝까지 지켜온 李昌植外 多數의 建築人에게 송구스럽기만 하다.

끝으로 京鄉 各地에서 同調하였던 建築同人 여러분의 發展을 기원하면서 保存된 當時 資料中 全羅北道, 慶尙北道, 全羅南道, 以上 三箇道의 建築人士들의 署名된 連判狀 名單을 記錄하면서 이 글을 끝맺는다.

○全羅北道

朴棟珪, 張明洙, 金東圭, 盧載璵, 朴鍾九, 南宜佑, 黃秉吉, 申恩國, 蘇在乙, 金龍一, 朴大永, 金平卓, 曹基天, 李豐世, 李大載, 柳應玖, 李賢, 李金承, 吳進祿, 黃義秀, 高台坤, 宋基略, 朱光植, 金浩信, 崔松輝, 朴玄龍, 李晴雄, 梁克承, 白炯鍾, 崔相勲, 申金澈, 金池柱, 權桓徹, 朴京輝, 洪錫仲, 吳明輝, 최병인, 조재수, 羅載柱, 金常雄, 閔玄圭, 鄭龍雄, 趙庸吉, 吳殷鐸, 한상균, 朴英實, 방해선, 李鍾根, 李俊喆, 李昇秀, 朴進雄, 조승우, 김현지, 鄭坦

○全羅南道

朱政一, 趙祥一, 郭容式, 李正男, 鄭鏡喆, 金滿植, 朴東培, 洪 岩, 鄭亨培, 全鍾憲, 玄俊鉄, 尹桔鎬, 梁東鉉, 宋蘭輝, 崔龍範, 任性奎, 柳然旭, 裴晴秀, 崔景遠, 車貞載, 金洙俊, 鄭炳文, 孫淳杉, 柳龍柱, 李一廷, 金鍾仁, 李鍾萬, 姜阮喆, 金鍾誨, 朴泰洙, 林東烈

○慶尙南道

金仁鎬, 金炫山, 石庸吉, 許主烈, 李明浩, 盧學柱, 李鳳錫, 鄭慶雲, 李鍾萬, 白濟賢, 金學洙, 金鍾允, 黃 樛, 金斗榮, 金一鎭, 曹尚出, 文龍浩, 李大一, 李重雨, 吳友七, 權宅鎭, 全相益, 尹永道, 金正在, 李仲燮, 李源孝, 曹基永, 趙子庸, 李忠彦, 丁海錫, 金台宗, 安承在, 金漢弼, 權純道, 韓錫寅, 俞炳保, 宋石憲, 林斗炫, 崔在龍, 李德雨, 金吳源, 金泰鳳, 尹泰植, 韓文大, 朴海權, 張守植, 趙淳熙, 權正夫, 吳 一, 朴幸佑, 鄭賢洙, 李完馥, 朴奉春, 李善泰, 徐正淳, 崔慶林, 박무희, 朴治昊, 朴根龍, 임용택, 具相泰, 李靖熙, 金潤芽, 白燦業, 柳亨薰, 白完基, 金國坤, 李守正, 朴文赫, 盧奎萬, 李 權, 李亨錫, 朱成九, 孫炳棋, 金昌坤, 이병청, 朴重守, 金鎭龍, 許東國, 李東根, 金元相, 李吉鎭, 徐錫均, 金元相, 權泰植, 張求坤, 金粉蘭, 徐春源, 金采夏, 金載勝, 金永萬, 張 清, 玄祺煥, 李相遠, 張權澤, 吳潤鉉, 鄭景國, 朴基俊, 朴吉鉉, 金允根, 金在晟, 張容浩, 金相洪, 申鉉式, 白 健, 金忠三, 李晉炯, 李時浩, 韓永吉, 李相起, 徐光德, 盧泰教, 張仁龍, 蔡商信, 金武鍾, 李錦蘭, 申洪範, 李光烈, 李熙贊, 李時浩, 朴永元, 金元植, 李英基, 崔吉雄, 朴夢龍, 咸夏基, 金鍾淵, 秋英植, 安大一, 李相琦, 李元煥, 鄭秀澤, 白相基, 徐正伯, 金秀雄, 裴清澤, 李義景, 金善雄, 權完燮, 金尚茂, 韓昌根, 南仁植, 尹哲俊, 金基鎬, 尹 哲, 裴基浩, 徐正俊, 朴鍾訓, 金相光, 金正錫, 崔鍾烈, 金起峰, 李敬熙, 司空太權, 金鍾周, 金貞姬, 朴宰河, 李鍾準, 卞弘哲, 金教雄, 張重吉, 安柄康, 朴相東, 洪聖生, 金光雲, 嚴泰郁, 尹貞守, 金學秀, 玄雲鳳, 金學烈, 張泳秀, 具珍玉, 金錫基, 韓成龍, 金茂郁, 梁龍鎬, 朴基壽, 朴魯燮, 裴吉秀, 柳基周, 李裕吉, 鄭信圭, 崔炳允, 金永泰, 鄭源喆, 朴永孝, 尹春赫.

全國建築同人會
建築士法改正推進委員會

代 表

尹吳李金李康李鎭
道雲炳仁劉在延瑞
崔東洙鎬金洪德輝
朴吳樹金崔林宋
呂昌權安美亞越
洪熙泰山會祥德

聲 明 書

4월 19일자 경향신문에 게재된 전국건축동인회 명의의 성명서

國家試驗「보이콧」

工大 建築科 나온 5百餘名

建築士法개정요구하고

「보이콧」이란 무엇인가?
「보이콧」이란 무엇인가?
「보이콧」이란 무엇인가?
「보이콧」이란 무엇인가?
「보이콧」이란 무엇인가?
「보이콧」이란 무엇인가?
「보이콧」이란 무엇인가?
「보이콧」이란 무엇인가?
「보이콧」이란 무엇인가?
「보이콧」이란 무엇인가?

4월 26일자 대한일보에 게재된 기사

建築士誌의 創刊과 發展

1. 建築士誌의 創刊

「建築士」誌의 沿革을 크게 두 갈래로 兩分된다. 舊協會에서 發刊하던 「建築士」와 건축사법에 의거 설립 인가된 특수법인체로서의 現 建築士協會가 刊行한 「建築士」가 그것이다. 시간적으로 나누면 1965년 10월 23일 이전과 이후가 된다.

그러나 이 두 會誌는 同一한 冊子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冊의 性格이나 體制가 같기 때문이다.

「建築士」誌는 그동안 몇차례의 題號變更이 있었다. 그 年度別 變更 題號는 다음과 같다.

創刊號(1963. 9) 建築士→新建築士
(1966. 7)
'67. 4 新建築士→建築界
'68. 1 建築界→건축사
'69. 1 건축사→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建築士」는 創刊 이래 다섯번 씩이나 그 題號를 變更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85년 11월로 通卷 200號의 誌齡을 맞는다. 그동안 休刊과 隔月刊 時代도 있었고 여러가지 어려운 事情이 많았었지만 꾸준히 이어온 傳統있는 會誌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기에 부족함이 없는 建築士誌라 믿는다.

1) 「建築士」誌의 創刊 目的

大韓建築士協會의 事實上 創設者와 같은 故 金舜河 初代會長은 두 번의 創刊 辭를 썼다. 한번은 1963년 9월 1일 創刊된 「建築士」誌의 創刊辭이며 또 한번은 1966년 7월에 創刊된 「新建築士」誌의 創刊辭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協會誌의 創刊目的은 1963년도 판 「建築士」의 卷頭言인 〈創刊에 즈음하여〉라는 글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겠다.

「歐美先進國에서나 이웃 나라에서는 數十數萬을 헤아리는 各樣色의 建築雜誌들이 發刊되고 있는 反面에 우리나라에서는 大韓建築學會誌인 「建築」을 除外하고는 이렇다할 建築에 關한 雜誌가 하나

도 없으니 이 어찌 우리 建築人들의 羞恥가 아닐 수 없으며 國家의 威信가 體面에도 關係되는 重大한 問題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大韓建築士協會가 發足한지 相當한 世月이 經過하였음에도 不拘하고 이제껏 「建築士」誌 發刊을 하지 못함을 甚히 遺憾으로 生覺하여 오던 中 今般 關係 當局을 비롯하여 斯界 著名人士 여러분의 格別하신 聲援과 우리 會員들의 精誠어린 努力의 結晶으로 드디어 「建築士」創刊을 보게된 것은 時期에 알맞는 一大快事라고 生覺지 않을 수 없으며 國民 여러분과 더불어 기쁜 마음 무엇이라 形容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보면 當時의 建築界 상황과 建築界에서 무엇이 必要했던 가를 잘 알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建築士」가 탄생된 원인이며 創刊 目的인 것이다.

다음으로는 1966년 7월 10일 發行字 「新建築士」誌 創刊辭인데, 새로운 協會가 創立되고 난 뒤의 일로서, 協會誌의 出刊이 얼마나 어려웠던가 하는 점을 역력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諸般 豫算關係

上 會誌發刊을 協會 發足後 半有年이 되도록 끌어 오던 次 그 重要性에 비추어 더 以上 遲延시킬수 없어 會誌出版의 登錄認可를 서둘러서 그 發行可를 얻게 되어 編纂委會 여러분의 努力으로 創刊號를 내놓게 되었음을 會員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며 自慰합니다. 內容에 있어서 豫算上 事情으로 會員 여러분의 期待에 미치지 못한 點이 많을줄 아오나 協會의 經濟的 事情이 將次 潤澤하게 되는 過程을 따라서 漸次的으로 改善 補完하여 앞차고 燦爛한 會誌가 되기를 祈願합니다.

爲先 會誌의 發行體制는 隔月 發行으로서 여러분의 惠諒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會誌의 題號는 編纂委員 諸位의 議決로서 「新建築士」라 이름 지어졌고 會誌內容의 記事는 政治的 觀念乃至 理論等은 排除하고 다만 建築技術을 爲始한 建設行政의 建設的인 批判과 建議等を 다루며 會誌內容의 重點은 否等 建築士가 다루는 業務에 있어서 建築의 發展을 爲한 學理的 探求, 施工技術의 啓蒙, 創作活動의 現況, 作品設計 또는 竣工된 建築物(構造物, 記念碑等) 包含의 評論, 實務(設計 및 整理) 經驗記等の 掲載가 될 것이며 아울러 會員의 動態 各支部의

〈表 1〉

책 명	발 행 일	등록일자	등록번호	편집검발행인
建築士	1963. 9. 10	1963. 8.	가 제1236号	金 舜 河
新建築士	1966. 7. 10	1966. 5. 12	바 180号	金 舜 河
建築界	1967. 3. 31	1967. 3. 23	바 제 216号	張 起 仁

〈表 2〉

구 분	제 호	면 수	발 행 인	편 집 인
1967. 9	建 築 界	59쪽	張 起 仁	安 仁 模
1967. 6	建 築 界	88쪽	張 起 仁	安 仁 模
1967. 9	建 築 界	78쪽	張 起 仁	安 仁 模
1967. 11	建 築 界	63쪽	金 在 哲	康 晉 參
1968. 1	建 築 士	64쪽	金 在 哲	康 晉 參
1968. 3	建 築 士	73쪽	金 在 哲	康 晉 參
1968. 5	建 築 士	84쪽	金 在 哲	康 晉 參
1968. 7	建 築 士	64쪽	金 在 哲	康 晉 參
1968. 9	建 築 士	68쪽	金 在 哲	姜 大 雄
1968. 11	建 築 士	88쪽	金 在 哲	姜 大 雄
1969. 1~11	建 築 士	75쪽	金 在 哲	金 在 哲

相互連絡等 親睦을 爲한 報道狀況과 讀者를 爲한 慰安記事로서 隨筆類 및 創作時等도 些少한 面數를 割受할까 합니다。」(중략)

또 한번의 創刊號라고 할 수있는 것은 「建築界」(1967. 3)인데 이 책에는 따로 創刊辭가 없는 것으로 보아 「新建築士」의 續刊 정도에 지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세 冊字의 등록과 발행인등은 <表 1>과 같다.

2. 「建築士」誌의 發展

「建築士」는 여러가지 過程을 거치면서 成長 發展해 왔다. '65년도 이전의 사단법인체로서의 大韓建築士協會가 만들었던 「建築士」를 별도로 제외하고 특별법인체로서의 大韓建築士協會가 刊行한 「建築界」에서 부터 本 會誌의 發展 단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隔月刊 時代(1967. 4~1969. 12)

이 時期에는 4×6倍版으로 隔月刊誌를 刊行하였다. 이 時期의 每月別 誌面數와 發行人 및 編輯人은 <表 2>와 같다.

이 隔月刊 時代 3년 동안이 「建築士」誌로서는 가장 어려웠던 時期였다. 誌面이나 發行部數, 紙質 등도 좋지 못하였고 그간 題號도 세번씩이나 변경시키는 불안정함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外型上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무렵의 「建築士」는 하나밖에 없는 建築 代辦誌로서 많은 일들을 하였다. 그 내용들을 일별해 보면, '67년도版 「建築界」에는 大韓建築士協會 第一回 定期總會 開催에 관한 記事가 머릿글로 나와 있어, 새 協會가 結成되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는 大韓建築士協會의 定款을 볼 수 있는데, 「建築界」는 이러한 產婆 역할을 훌륭히 해내었다. 이 定款은 1965년 10월 23일 창립총회에서 제정, '66년 1월 29일 제 1 회 임시총회에서 2 차로 改正되어 제정 공포된 것으로 총 7章 56條로 돼 있다. 初創期의 「建築士」誌는 體制面에서 빈약한 반면에 내용면에서 알

찬 일을 많이 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둘째, 月刊 時代(1970. 1~현재)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冊의 體制가 조금씩 달라진다. 종전까지 사용하던 갱지나 모조지가 아닌 고급 지질에, 그것도 文字 中心에서 寫眞 中心의 책이 된다. 책의 스타일이 달라지고 편찬위원들이 바뀐 것이다.

비싼 잡지가 있고 셋씩이나 기관지들이 있었는데도 건축계에는 정보가 막연하고 자료가 없었다.

건축가들이 모두 바쁘신 탓도 없지 않았으나 실지는 너무나 없어 모두 게을렀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정보와 자료가 없으니까 같은 노력을 되풀이 하게 되고 같은 실패를 거듭하게 되어 결국은 평범하지도 못한 것들 만을 만들게 되고 어이없는 시행착오만 반복해온 것이다.

국내 건축정보란 것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계기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시작되었으나 이번은 처음이어서 자료가 우선 없었다. 앞으로는 표준 상세, 시공도면 작성의 기본기법, 계획기준, 설비기준 등 실지의 제작에 필요한 자료들과 새로 세워지는 건축물들의 자세한 내역들을 취급할 것이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편찬위원회

가히 혁신호라고 할 수 있는 1970년도版 「建築士」에 실린 편집위원들의 편집 방향이다. 이때는 題號도 「건축사」라는 한글表記를 사용하였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KAA JOURNAL(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Architects)을 더 즐겨 썼다.

이때의 편찬위원들은, 한창진, 이정덕, 최창규, 한정섭, 이해성, 유경철, 박고석, 정인국, 강명구, 김석철.

회원 등이었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일반 잡지 성격을 띤 「建築士」誌에서 보다 전문적인 建築誌를 표방하고 나섰다. 때문에 주된 내용들이 作品 中心이었고 새로운 外國 作品을 소개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 하도록 편집이 되었다.

1970년 한 해 동안은 畫報와 圖面 中心의 冊字가 만들어졌고, 版型도 크라운版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때 다시 한번 登錄變更이 있는데, 등록변경일은 1970년 1월 8일, 등록번호는 제라-1251호이며 발행인 겸 편집인은 강명구 會長이었다. 同時に 지금까지의 隔月刊에서 月刊誌로 그 發刊日을 앞당기게 되는데, 이것은 「建築士」가 成長 發展하는 커다란 계기가 된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대 발행인과 편찬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70년>

발행인: 강명구

편찬위원: 한상진, 이정덕, 최창규, 한정섭, 이해성, 유경철, 박고석, 정인국, 강명구, 김석철, 나상진

<71년>

발행인: 강봉진

편찬위원장: 서정달

편찬위원: 김만성, 김진일, 안인모, 유경철, 이승우, 이정덕, 이종문, 최창규, 함정호

<72년>

발행인: 강대웅

편찬위원: 김만성, 김진일, 안인모, 윤태현, 이승우, 이정덕, 이종문, 이창민, 한정섭

<73년>

발행인: 강대웅

편찬위원장: 안영배

편찬위원: 김만성, 안인모, 원정수, 유희준, 윤태현, 이승우, 이창민, 이홍수, 한정섭

<74년>

발행인: 한창진

편찬위원장: 오웅석

편찬위원: 김인석, 김정기, 마춘경, 송종석, 유경철, 유희준, 윤도근, 이정덕, 이창민

<75년>

발행인: 한창진

편찬위원장: 이승우

편찬위원: 김인석, 김창서, 마춘경, 신국범, 유경철, 윤도근, 이문보, 이정덕, 한용섭

<76년>

발행인: 이 규 복
 편찬위원장: 김 두 섭
 편찬위원: 김인석, 김진일, 신현식,
 유경철, 윤도근, 이문보,
 한용섭

<77년>

발행인: 이 규 복
 편찬위원장: 김 두 섭
 편찬위원: 김인석, 김진일, 신현식,
 안기태, 유경철, 이경희,
 이문보, 황일인

<78년>

발행인: 강 봉 진
 편찬위원장: 유 경 철
 편찬위원: 안기태, 오창희, 윤도근,
 이경희, 이문보, 정일영,
 황일인

<79년>

발행인: 김 두 섭
 편찬위원장: 김 정 철
 편찬위원: 오창희, 윤도근, 윤봉원,
 윤태훈, 이경희, 이문보,
 이정덕, 홍성목

<80년>

발행인: 김 두 섭
 편찬위원장: 김 정 철
 편찬위원: 김봉훈, 오창희, 윤도근,
 윤봉원, 이경희, 이문보,
 홍성목, 홍순인

<81년>

발행인: 구 윤 희
 편찬위원장: 김 정 철
 편찬위원: 김봉훈, 오창희, 윤도근,
 윤봉원, 이문보, 장석웅,
 홍순인, 황일인

<82년>

발행인: 구 윤 희
 편찬위원장: 박 상 호
 편찬위원: 이명호, 강전희, 박용환,
 이영일, 김한근, 김기철,
 강철구, 조동영

<83년>

발행인: 김 지 태
 편찬위원장: 박 상 호
 편찬위원: 이명호, 강전희, 박용환,
 이영일, 김기철, 강철구,
 남 일, 김기석

<84년>

발행인: 김 지 태

편찬위원장: 이 영 희
 편찬위원: 여홍구, 이규복, 강전희,
 배종명, 이영일, 강철구,
 김기석, 김 린

<85년>

발행인: 오 용 석
 편찬위원장: 이 영 희
 부위원장: 김 린
 편찬위원: 강철구, 김기석, 서천식,
 김기웅, 여홍구

3. 「建築士」誌의 現在

「建築士」는 1967년 4월 부터 1969년 12월호까지 통권 16권 밖에 出刊하지 못했던 隔月刊의 体制에서 벗어나 1970년 1월호 부터는 4×6倍版에서 국제적 건축지 규격인 菊倍版型으로 版型을 改定하였다. 表紙面 역시 지금까지의 古建築物에서 現代建築物로 그 이미지를 바꾸었다.

80년대에 이르러서는 發行部數 또한 크게 伸張되어 5,000部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會員數의 증가와 더불어 自然스럽게 伸張되어온 숫자이겠으나 長足の 발전을 거듭 해 온 成年 「建築士」誌의 現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 「建築士」를 통해서 본 建築界의 裏面史

1963년 9월 「建築士」創刊號의 첫 章을 보면 目次보다도 먼저 大韓建築士協會의 「마-크」 해설이 나온다. 解説者는 協會 安仁模 理事인데, 배지의 설명이 끝난 다음 “이 배지의 직경은 13mm이며 重量은 7 分重의 純金으로서 배지 裏面에는 일련번호가 새겨진(순금을 보장하는 두 글자 “純金”도 새겨져 있음) 貴重한 것이며 영구히 퇴색치 않는 金色은 대한 건축사협회인 여러분의 발전과 영구한 행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믿는다.”는 해설이 있다. 이때의 協會 마-크는 (그림 ①)과 같았다. 1967년 4월 「建築界」創刊號 表紙에는 協會 마크가 (그림 ②)처럼 돼 있다. 또 '85년 1월 現在 協會 마크는 (그림 ③)과 같은 것이었는데, '85년 1월 社告를 통해 마크를 다시 現상 공모하였다. 그러나 당선작을 얻지 못하고 종전에 사용하던 마크에서 微调

화 장식을 뺀 마크를 (그림 ④) 사용하기로 하였다. (※ ① '63. 9月號 19page 참조. ② '67. 4月號 표지마크 참조. ③ '85. 1月號 2page 참조. ④ '85. 3月號 27page 참조)

協會誌를 통해서 본 本協會 마크의 간략한 變遷史다. 이 하나만으로도 建築士協會 20년이 한 눈에 보이는 듯하다. 變換한 것은 協會 상징인 마크 뿐만이 아니다. 會員들이 發表하는 作品들이나 海外 建築家들의 紹介 作品 역시 變하고 있어 時代와 더불어 諸建築 樣式이 달라지고 있음이 한 눈에 드러나 보인다.

協會誌 「建築士」는 이제 이 모든 歷史를 한꺼번에 간직한 채 成年 20年을 맞았다.

2) 「建築士」誌의 現在

大韓建築士協會誌 「建築士」는 1985년 11월호로서 通卷 200號가 된다. 發行人과 편찬위원은 다음과 같다.

發行人: 吳 雄 錫
 編輯委員長: 李 永 熙
 副委員長: 金 麟
 委 員: 姜 哲 求
 : 金 琪 碩
 : 徐 千 植
 : 金 其 雄
 : 呂 鴻 九

現在 「建築士」는 100페이지 내외의 지면을 會員 作品, 論壇, 協會消息, 支部巡禮, 특집, 좌담회, 연구논문, 자료, 기타 欄으로 구분하여 편집하고 있다.

「建築士」는 登錄番號 第라-1251, 登錄日字 1967년 3월 23일로서, 發行部數 5,000부, 每月 15日을 發行日字로 문화공보부 정기간행물 심의를 받는다. 종이는 고급지를 쓰며 原色을 사용한 오프셋 인쇄를 하여 뚜렷하고 선명한 색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편집은 出版事業部에서 도맡아하며 國內 有一의 協會 기관지로서, 또는 建築專門誌로서의 品位를 向上시키기 위하여 最上의 努力을 하고 있다.

「建築士」誌는 創刊 이래 誌齡 200號에 이르는 現在에 이르기까지 몇번에 걸친 登錄變更과 體質改善을 거듭하면서 辛苦의 아픔을 딛고 成長을 거듭하여 왔듯이 協會 發展과 더불어 더욱 成長 發展할 것이다.

會員 作品展

大韓建築士協會는 1965년 10월 23일 創立總會를 가진 지 滿 6個年後인 1971년 10월 建築大祭展을 가졌다. 또한 建築士의 偉業과 凡國民的 凡社會의 建築士에 대한 新 認識과 市民의 啓蒙을 위한 이 祭展의 一環으로 「建築大賞」 制度를 마련한 바 있다.

建築人의 優秀성을 보다 빛내기 위하여 優秀한 作品을 施賞코저 마련한 이 建築大賞 制度는 해를 거듭할 수록 建築人의 功績과 權益을 더욱 더 周知시켜주고 있으며 會員 相互間 創作熱을 북돋아 주는 계기가 되어 이 賞의 進가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本賞은 會員들의 作品을 응모 받아서 審査委員會의 決定을 거쳐 施賞, 展示하게 되어 있는 바 1982년 제 8 회 때 부터는 지방순회 전시를 하기에 이르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1) 作品展示會 실적과 회기별 建築大賞 受賞者와 作品名은 다음과 같다.

第 1 回 (1971. 10. 18)

• 住居建築賞

作品名: 朴氏의 집

作家名: 安英培 (安英培建築研究所)

• 産業建築賞

作品名: 韓獨산업 (주)

作家名: 金寬豐 (김관풍건축연구소)

文化建築賞

作品名: 경북체육관

作家名: 金仁鎬 (大亞建築設計研究所)

• 公共建築賞

作品名: 光州市民會館

作家名: 李 琇 (宇一建築研究所)

• 紀念建築賞

作品名: 忠南 金산 七百義塚從容詞

作家名: 張起仁 (三成建築設計事務所)

• 住居獎勵賞

作品名: 張氏의 집

作家名: 李德雨 (綜合建築研究所)

• 産業獎勵賞

作品名: (馬山) 韓일합섬섬유공업 주식회사

作家名: 許善行 (부산건축설계사)

• 紀念獎勵賞

作品名: 이디오피아 紀念塔

作家名: 金煥燦 (天一建築研究所)

第 2 回 (1975. 10. 23)

• 大 賞

作品名: 國立劇場

建築士名: 李喜泰 (李喜泰建築研究所)

• 協 會 賞

作品名: 노량진교회

建築士名: 金正湜 ((株) 正林建築)

• 優 秀 作

作品名: 大邱市民運動場

建築士名: 尹泰植 (大邱 合同建築)

作品名: 住 宅

建築士名: 金孝一 (慶南圓都市建築研究所)

• 入 選

作品名: 住 宅

建築士名: 俞景哲 (三六建築研究所)

作品名: 大邱 MBC + 서울塔

建築士名: 張宗律 (建友社建築研究所)

作品名: 大邱 靑少年會館

建築士名: 柳文大 (大邱 · 合同建築)

作品名: 서울 神學大學

建築士名: 李好璉 (三元社建築設計事務所)

作品名: 住 宅 (2點)

建築士名: 金錫徹 (建築設計事務所 아끼반)

作品名: 住 宅

建築士名: 洪哲洙 (韓國建築文化研究所)

作品名: 崇田大學校 學生會館

建築士名: 金寬豐 (서울合同技術公社 · 金寬豐建築研究所)

作品名: 休 憩 室

建築士名: 金石崙 (濟州 · 金石崙建築設計事務所)

作品名: 出版文化會館

建築士名: 洪淳寅 (大宇建築研究所)

作品名: 住 宅

建築士名: 李鍾實 (韓國建築技術研究所)

第 3 回 (1977. 10. 31)

• 大 賞

作品名: 세계가독교통일신령협회

청파동교회 신축공사 설계

設計名: 李喜泰 (엄·이건축(주))

• 協 會 賞

作品名: 이선생 주택

設計名: 金寅培 (강희설계사무소)

• 優 秀 賞

作品名: 태평양화학 본사

設計名: 金奉勲 (신신건축연구소)

作品名: 강선생 주택

設計名: 權泰植 (합동건축공사)
 作品名: 금풍개발 사옥
 設計名: 韓昌鎭 (한정건축)

第4回 (1978. 10. 31)

- 協 會 賞
 作品名: 영동 L씨택
 設計者: 黃一仁 (진원사건축연구소)
- 優 秀 賞
 作品名: 단국대학교 梵亭體育館
 設計者: 金仁錫 (우신건축연구소)
 作品名: 한일은행 포항지점
 設計者: 金枝泰 (삼화건축)

第5回 (1979. 11. 13)

- 大 賞
 作品名: 한국종합전시장
 設計者: 金正湜 ((주) 정림건축)
- 協 會 賞
 作品名: 한국증권거래소
 設計者: 李丞雨 ((주) 종합건축설계사무소)
 作品名: 정동제일 감리교회
 設計者: 金正湜 ((주) 정림건축)
- 優 秀 賞
 作品名: 동송동 P씨택
 設計者: 洪순인 (대우건축연구소)
 作品名: 남천동 H씨택
 設計者: 柳光弘 (한국건축연구소)

第6回 (1980. 10. 30)

- 大 賞
 作品名: 鷺梁津教會
 設計者: 李起範 (都市建築)
- 優 秀 賞
 作品名: 住 宅
 設計者: 俞景哲 (綜合建築)
 作品名: 病 院
 設計者: 尹承重 (元都市建築)
- 獎 勵 賞
 作品名: 호 텔
 設計者: 黃一仁 (綜合環境 一建)
- 入 選
 作品名: 病 院
 設計者: 金宗根 (汎亞建築)
 作品名: 빌 딩
 設計者: 金大魯 (韓美合同建築)
 作品名: 社 屋

設計者: 金錫澈 (金錫澈建築)
 作品名: 應 舍
 設計者: 金正湜 (正林建築)

第7回 (1981. 10. 29)

- 大 賞
 作品名: 임씨 주택
 設計者: 洪淳寅 (대우건축연구소)
- 協 會 賞
 作品名: H씨 주택
 設計者: 黃一仁 (종합환경연구소 일진)
 作品名: 동국대 경주분교사회관
 設計者: 金仁錫 (종합환경연구소 일진)
 作品名: K씨 태양열주택
 設計者: 金孝一 (원전건축연구소)

第8回 (1982. 6. 14) - 순회 전시

- 大 賞
 作品名: MBC 여의도 스튜디오
 設計者: 金正湜 ((주) 정림건축)
- 最 優 秀 賞
 作品名: 충무로 기념관
 設計者: 張錫雄 (아도무 건축)
- 優 秀 賞
 作品名: 조선 인터내셔널 사옥
 設計者: 俞元在 (건축연구소 場)
- 獎 勵 賞
 作品名: 제네랄 호스피탈
 設計者: 愼國範 ((주) 한양엔지니어링)
 作品名: 계명대 도서관
 設計者: 鄭時春 · 金忠鎭 (정주건축)
 作品名: 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
 設計者: 金仁鎬 (대아건축)

第9回 (1983. 8. 8) - 순회 전시

- 大 賞
 作品名: 육군박물관
 設計者: 金重業 (김중업건축)
- 最 優 秀 賞
 作品名: 근로청소년회관
 設計者: 金孝一 (원전건축)
- 優 秀 賞
 作品名: 한은 인천지점
 設計者: 金正澈 (정림건축)
- 獎 勵 賞
 作品名: 한미수교 100주년 탑
 設計者: 姜錫元 (구룡가건축)

作品名: 경동교회
 設計者: 金壽根 (공간연구소)
 作品名: 삼익유치원
 設計者: 林八岩 (동인건축)
 作品名: 동강학원
 設計者: 柳然旭 (유한건축)
 作品名: 외은 대전합숙소
 設計者: 李永熙 (희림건축)
 作品名: 태화소평
 設計者: 李龍欽 (일신건축)
 作品名: 구인사 사천왕문
 設計者: 張起仁 (삼성건축)
 作品名: 삼성동 H씨택
 設計者: 宋光燮 (환건축)

第10回 (1984. 9. 13) - 순회 전시

- 大 賞
 作品名: 용평리조트 컴플렉스
 設計者: 金寬旭 (대호건축연구소)
- 最 優 秀 賞
 作品名: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設計者: 權泰容 ((주) 정림건축)
- 優 秀 賞
 作品名: 갈현동 소나무집
 設計者: 柳春秀 (공간연구소)
 作品名: 계명대학교 학생회관
 設計者: 林八岩 (동인건축)
 作品名: 도예가 원고수대
 設計者: 崔勝元 (퇴출건축)
- 獎 勵 賞
 作品名: 단국대학교 난파기념음악관
 設計者: 金仁錫 (건축연구소 일진)
 作品名: 부산시 총론탑
 設計者: 金重業 (김중업건축연구소)
 作品名: 논산 H씨택
 設計者: 金奉燮 (신화건축설계사무소)
 作品名: 목욕탕 및 주택
 設計者: 柳然昌 (미도 & 류건축연구소)
 作品名: 용인성당
 設計者: 李起範 (주·도시건축)
 作品名: 흥성상호신용금고 사옥
 設計者: 李相憲 (대우건축연구소)
 作品名: 호텔 낙산비치
 設計者: 李仁守 (목전종합건축사무소)
 作品名: 국립경상대학교 학생 및 교수회관
 設計者: 黃一仁 (건축연구소 일진)

「사회와 나」

박수원

경남지부 사무국장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BC 384-322)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닌 생활인으로서의 인간을 의미하는 두말할 여지가 없다. 생활인으로서의 존재의 배경을 사회에 둔 것이다.

그러면 사회라는 이 배경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고하여 자연히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다. 즉 자연적인 힘이 아닌 인위적 힘에 의해 형성되며 그 역할은 결국 너도 나도 아닌 우리가 담당해야 한다는 논리를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너와 나인 우리는 동일한 사회에 공존하기 때문이다.

하기에 우리는 사회인으로서의 존재적 본연의 가치 추구를 위한 보다 조직적이고 튼튼한 생활바탕 구축에 스스로 참여하여야 하며 동시에 누려야 하는 공존의 존재일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인임을 자처 하면서도 그속에서 누리려 했을뿐, 누리야 할 바탕 구축을 위한 공존의 역할의식에서 벗어나려는 자기당락의 모습에 젖어왔다 할 것이다. 또한 너와 나의, 가치 추구의 바탕인 사회의 구축과 유지를 위한 참여 의식이 전제되지 않는 한, 아무리 누리려 발버둥치고 아우성을 쳐도 그것은 몽상이며 착각이자 스스로 사회인이 아니라는 현실 부정이고 자기 부정일 뿐이다. 다시말해 누리고자 하는 의식 앞에는 사회라는 현실적 바탕이 전제되어야 하고 또 지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회를 지탱하게 하는것은 무엇이며 그 역할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질서라고 생각한다.

질서는 기계를 돌아가게 하는 톱니바퀴와 같은 것이다. 질서, 즉 톱니바퀴의 역할은 바른편으로 돌아야 하는 것과 왼편으로 돌아야 하는 것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그것을 어기거나 멈추면 기계는 서야한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질서가 깨어지면 사회는 지탱되지 못하며 너와

나의 생활의 리듬이 깨어져 버린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기관차는 레일 위에서, 배는 물위에서 가야만 하듯 나는 내가 설 자리에 서야 하고, 너가 앉아야 할자리에는 너가 앉아야 하며 돌아서 가야할 길과 기다려서 건너야할 길이 있다. 이것이 질서이자 사회를 지탱하는 원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함께 가꾸고 지킬때만 누림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우리의 젖줄인 자연을 생각해 보자. 타계하신 노산 이은상 선생께서 쓰신 시 중에 “가고파”가 있다. 이 시에 김동진 선생이 곡을 붙여 우리 가곡으로 널리 불려지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가슴 한 구석을 쫓 하게 울려주며, 옛 동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곡이다. 이 가곡의 배경은 말할것도 없이 馬山의 앞 바다를 말한다. 그러나 지금은 푸르고 잔잔하며 고향의 숨결이 뛰노는 그 바다의 정취를 찾으려도 찾을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일 뿐이다. 하기가 나이든 분들의 이야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세상은 많이 변하고 달라졌다. 인심이, 생활이, 주위 환경이 그렇고 사회가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마산 앞바다도 그런 것이라면 그저 그만인 것일까. 그러나 이 바다의 죽음을 앓아서 바라볼 수만 없어 한 때는 마산 청년회소소 주관으로 마산만(灣) 살리기 운동이 전개 되기도 했지만, 회생에는 엄청난 예산과, 시민의 깊은 각성과,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울 여름은 무던히 길고 무더웠다. 그 바다에 몸을 담그고 더위를 식히고, 밤이면 별빛 고이는 해변에 앉아 너를, 나를, 세대를 이야기 하며 피곤을 풀어야 했을 우리 스스로가 그 바다를 죽이고 외면한채, 또 다른 山河를 그리며 시와 버스과 고속 버스 터미널로 무거운 배낭의 발걸의 줄을 이어야만 했다. 이처럼 역력한 이음배반의 모습속에 커가는 사회 참여와 공존의 결핍의식, 그것이 어찌 문제 그것으로만 남아야 하는 것일까. 이제 어찌 마산 앞바다와 마산 시민에 국한된 現實일까. 울 여름 얼마나 많은 山河와 바다가 비지땀을 흘리고, 물살을 앞으면서도 슬한 너와 나를 포용하고 누리도록 베풀어 주었던가. 하

기야 개중에는 그것도 부족하여, 설악산이 왜 서울에 있지 않고 그 먼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에 있어야 하며, 남해의 홍도가 인천쯤 있을 일이지 왜 남쪽 끝에 있어야 했는지에 대한 불평과, 시원한 바람과 그늘, 맑은물이 유지되게 땅 흘러가꾸고 키워온 참여자의 노고에 대한 한마디 감사하는 마음은 고사하고라도 얼마나 버리고 훼손하고 왔는 지, 이제 여름이 떠나는 이 길목에서 우리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왜, 그것은 나만이 누려야할 山河와 바다가 아니기 때문이며, 우리가 함께 가꾸고 누려야 할 터전이며 젖줄이기 때문이다. 한강이 되살아난다고 좋아들 한다. 당연히 그럴 일이다. 그러나 그를 위해 쓰여진 예산이 과연 외채와는 무관한 것일까. 생태계의 파괴를 안타까워 하며 취재반의 카메라가 山과 江을 누벼야 하고 어찌다 마음속에서 치위졌던 철새의 모습이라도 보이면 죽었다 살아난 아들딸의 대함보다 그 기쁨의 도가 더함을 본다. 결국 우리가 돌아갈 곳은 自然임을 대변하는 뜻이 아닐까. 미래 지향의 차원에서 새로운 研究와 개발에 소요된 외채 일지언정 우리의 어깨는 실로 무거운 것일진대, 스스로 짓밟고 훼손한 자연복구 예산 염출에 머리를 싸야하는, 누워서 침뱉기식의 잘못된 의식구조의 책임을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돌려 보았자 결국은 사회구성원인 너와 나에게 돌아올 뿐이다. 눈먼 장님 개천 나무람은 애교로 받아 들일 수가 있지만, 7·8월 피약벌에 비지땀을 흘리며 등이 활처럼 휘어지도록 중일을 허덕이는 그 전경을 나와는 무관한 너로만 외면하면서 山과 江을 해집고 누비며 짓밟아 훼손한 책임회피의 의식구조는 애교일수 없는것이 우리의 現實이며, 불식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리산이 물살을 앞는 전경이 TV 화면으로 신문으로 몇 차례나 나왔던 것을 잊을수가 없다. 설악산이, 남해의 홍도가, 멀기는 하지만 현재의 그 자리에 위치한 것은 아무리 生覺해도 다행할 뿐이다. 너와 내가 함께 가꾸지 않고 누리려면 한다면 설악산도, 지리산도, 홍도도 언젠가 폐허와 죽음의 바다가 되지 않을까 두렵다.

우리는 사회라는 같은 배를 탄 것이다. 좋은 그 누구를 위하여 우는 것이 아님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다세대주택현상공모 심사를 마치고



- 심사위원장 - 오 용 석 (본협회 회장)
- 심사위원 - 배 중 명 (건설부 주택국 건축과장)
- 심사위원 - 한 규 봉 (대한주택공사 건설본부장)
- 심사위원 - 나 상 기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 심사위원 - 김 회 준 (대한건축학회 참여이사)
- 심사위원 - 이 영 희 (본회 이사)
- 심사위원 - 조 구 현 (본회 회원)
- 간 사 - 한 중 언 (본회 이사)

- 일 시 : '85. 9. 25(수) 14:00시
- 장 소 : 본 협회 회의실

사 회-다세대 주택 현상 설계 계획 안 공모를 마치고 심사위원들의 3차에 걸친 신중한 심사끝에 최종 작품을 선정 하였습니다.

이에 본 협회에서는 당선작 14점, 가작 14점 및 장려상 10점을 포함한 38작품을 선정 하였으나 장려상 8작품을 제외한 30작품을 현행 법규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책자를 발간하여 건축사 회원 및 일선행정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도를 11월 중에 간행할 계획이며 오늘은 여러 심사위원들께서 심사 하였던 과정에서의 소감과 아울러 앞으로 바람직한 다세대 주택의 방향을 조언하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좌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인사 말씀과 아울러서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 장-모두 바쁘실텐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며 그동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우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건축법이 개정되었으나 사실상 그동안 많이 지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뒷받침이 미흡했던 관계로 한때는 무효건물로 취급되기까지 했던 그러한 내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 그동안 법을 개정해 주시는데 수고를 많이 해주신 건설부 배과장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은 심사에 주신 결과 내용에 대한 심사평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인사 말씀을 마칠것읍니다.

사 회-그러면 먼저 건설부에서 오신 배과장님께서 다세대 주택의 법령 개정 배경 및 심사 소감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배 중 명-다세대 주택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서울 시내에 있는 단독 주택으로 허가 받은 건축물들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니 주거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되따랐읍니다. 즉 단독 주택으로 지어서 공동주택으로 변형되는 일종의 건축법상의 구조 또는 용도 변경이 되는 위반사례와 위반사항이 발생되기 때



한중언

문에 용도 변경이 되따르는 문제등이 발생됩니다. 이렇듯 공동 이용하게 되는데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찾다가 나타난 것이 다세대 주택이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소규모 공동 주택에 대한 완화 조치라고 보는 것이 정상적인 표현이지요.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은 구분해서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무언가 명칭이 있어야 하겠는데 이런 측면에서 다세대 주택이란 용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소규모 공동 주택이란 용어를 다세대 주택으로 명칭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는 단독 주택과 거의 비슷한 성격을 띠고 토지 이용율을 높이고 각각의 임대해서 사는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개선 하자는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세대가 들어가는데 있어서 세대수를 10세대 20세대로 그대로 인정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다세대 주택이 공포될때 논의의 문제가 됐었는데 10세대가 넘을 경우 주택 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사업 승인 대상이 되서 거기서는 다세대 주택을 적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므로 실제적으로는 2세대에서 9세대까지가 해당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면을 놓고 보았을 때 앞으로 GNP가 높아진다할지라도 소규모 공동주택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그리고 분양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현행 건축법상에 분양을 할 수 있다, 없다하는 말을 쓸수는 없지만 판리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 시행령은 없고 내무부 규칙만 남아 있지만 '84. 4. 10 법률 3725호로 집합주택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이 2년후에 유효하게 되어 있으니까 '86. 4. 10 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에 여러사람이 소유권을 갖게되는 경우에는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 됩니다. 그렇다면



배종명



한규봉



나상기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을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 1) 세대간의 경계벽을 내화 구조로 해야 한다.
- 2) 2동 이상인 경우 인동간의 거리는 현행 그대로 적용
- 3) 대지안에 공지를 띄우는데 단독 주택은 50cm이지만 다세대 주택은 2m를 띄어야 한다.
- 4) 처마끝을 띄우는 문제는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0.5m를 띄어야 한다.
- 5) 경계 거리에 차면 구조 설치
- 6) 건축물의 내장도 불연재료등을 설치
- 7) 대지안의 통로도 2m를 확보
- 8)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
- 9) 주거전용 지역안에서는 3세대까지만 허용
- 10) 준공업 지역안에서는 건축할 수 없다.

등을 몇가지 종류로 다세대 주택과 단독 주택과의 차이점을 말씀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단독 주택과 같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다세대 주택은 공동 주택보다는 다소 완화 됐지만 단독 주택보다는 약간 강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한 규 봉-다세대 주택이란 이론만 보더라도 이것은 공동 주택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래 취지가 세대별로 개별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자는 것이며 집 2-3채를 소유할 수 있는 재력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주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이 2가지 측면에서 시작 됐다고 저는 봅니다.

다세대 주택이라는 제도 자체가 주택의 분류를 아주 흐트러 놓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다세대 주택이 연립 주택이나 다른 기존 형태에 주택하고 다른 것이

없이 그냥 운영되어 나간다고 할 경우 일반 연립주택인 경우보다도 단지 집을 짓는데 편리하게 해 준다는 식으로 나간다면 상당히 어떤 문제점이 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사를 통해 당선작(결정작)에 대하여는 11월중에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이전에 다세대 주택이라 하는 것을 연립주택하고는 어떻게 다른가(규제사항 등)를 먼저 확실히 구분하여 인식시키고 도면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문제점들을 해결 하기 위하여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대지 하나에는 건물 1동밖에 못들어간다는 원칙을 꼭 정해줘야 하겠고 그다음에 1동에는 지금 현재 건물 1동 면적을 100평을 상한선으로 정한 것 같은데 나는 그것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다시 한번 고려하여 정하고 셋집으로 줄 수 있는 구분을 3세대까지만 살수 있는 것으로 한정을 짓고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반드시 단독주택에 가깝도록 기술적으로 유도를 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연립 주택이라든가 테라스하우스같은 유형은 완전히 전멸되어 버립니다. 만일 건축주가 나는 집을 몇 가구 더 지어서 세를 놓겠다하면 별문제가 안되지만 집장사하는 사람들이 집을 짓는 경우 상업적인 면에서 영리만 추구하는 다세대 주택으로만 눈을 돌린다면 연립주택은 거의 건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쪽이 주택 정책적인 측면에서나 순수한 건축적인 측면에서 유리한지 현재로서는 전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금과 같은 상황으로 그대로 진행되었을 때에 아마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 보다 더 큰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협회에서나 전설부 측에서는 나중에 오는 문제점들을 예상

해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이번에 지침도를 만들면서 책자 뒤에다 부록으로 관계법령, 관계시행령, 조례등과 여러가지 좋은 말씀 해주신 것을 포함해서 실어 다세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높일 작업입니다.

한 규 봉-그것은 다 좋은데 이 상태로 가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예를들어 500평 땅을 1동씩 6세대를 지을 수 있게 다 분할해 가지고 집 짓는 것을 어떻게 막겠느냐는 것입니다.

배 종 명-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로도 2세대나 3세대를 모아 땅을 잘라가지고 한 대지안에 집을 짓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한 규 봉-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공동주택이라 해가지고 연립 주택을 짓던 사람들이 연립주택을 짓는 것보다 다세대주택을 짓는 것이 규정이 완화되고 더군다나 6세대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러면 1단지로 1,000평을 가지고 10개로 분할해서 짓는것이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배 종 명-동일 대지안에 한 사람의 이름으로 지어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규 봉-집을 지을 때 10개로 분할해서 그중 한개를 허가받아 지어가면서 다음번 것을 순차적으로 허가내어 짓는 데는 도리 없습니다. 일선에서 그것을 막을 재간도 없고 건축사들에게도 설계할 때 그렇게 요구할 때 그것을 경관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하고 건축사들이 설계를 거부할 그런 형편도 못됩니다.

사 회-지금 현재에도 일부 한 건물 3세대를 들어 갈 수 있도록 집을 지어서 세를 주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세대주택이 아니라 설계비를 아끼려고 한



이영희



조구현



김희훈

대지가 남아가지고 한 사람이 여러 세대를 지은 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질의가 온 것이 있는데 지금 내용과는 좀 다른 하지만 이렇게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막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협회에서 아직 막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한위원회에서 이번엔 심사 소감도 아울러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규 봉-심사상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심사 작품을 대했을 때 이것이 다세대주택이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전에 전설부에 있을 때도 일부지방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단독주택을 지으면서도 이에 셋집을 짓겠다고 생각하고 부엌 할 자리를 창고로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다세대주택이라는 이름 자체도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전에 그렇게하던 것을 합리화 시켜준다는 그런 제도, 더 나아가서 조금전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재력있는 사람들이 몇 세대 더 지어가지고 주택문제 해결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심사에 임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1~2개가 그런 경우가 나올까 말까하고 나머지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을 합친 그런 상태에서 도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의 현상설계작품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 잘못 되어 있다 이렇게 어느 쪽을 택할 자신이 없습니다.

사 회-저도 심사과정에서 작품을 보니까 연립주택의 축소판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나위원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 상 기-다세대주택이라는 용어 자체가 처음 나온 얘기가 되어서 저는 연립주택 정도로만 생각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택을 흔히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Highrise House, Low House, Duplex House, Twin House, Single

House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다세대 주택을 놓고 보면 2호연립 Semidetached House가 있는데 나는 여기서 Low House냐? Twin House냐? Duplex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의 흡사하게 나왔습니다. Duplex는 무어냐 하면 아래층에 한 세대가 살고 옆집에 한 세대 살고해서 아래층에 2세대가 살고 위의 바깥 계단으로 올라가서 한 세대, 그리고 옆으로 한 세대 이렇게 해서 종합 4세대가 사는데 각기 현관이 다르죠 이러한 형태를 Duplex 라 하는데 저 소득층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토지의 공동배분으로 해서 서로 협동해서 양해 하면서 사용 할 수 있게 되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것(다세대주택)과 그곳(미국의 경우)의 경우와 차이가 있는 것은 미국은 주택단지 조성을 하기 때문에 도면을 향한 부분,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기타 뜻대로 많은 주택이 도로를 향해서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세대의 경우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이 주택이 설계되어있어 도시계획적인 차원이나 단지 계획적인 차원에서 많은 주택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똑 같은 것이 한 채 지어가지고 도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단지조성이 상당한 모순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제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마흠 하었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작품을 보면 거의 단독주택에다 하나를 더 올려서 Duplex처럼 4채를 만드는 형식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의 실정으로 보아도 앞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냐 생각 합니다. 그 다음에 Twin House하면 똑같은 집이 한쪽과 한쪽이 방화벽을 사이에 두고 두 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작품에선 그러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Semidetached House(두채 한집)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만 두 채를 붙여서 건축된 형태를 말하는데 그런 작품들이 나오지 않고 그저 단독주택을 붙여놓은 느낌 밖에 들지 않는데 경제성이 없지 않느냐? 다세대주택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취해진 형태인데 연립주택 형태와 별 차이가 없고 단지 경계선 하나만 두고서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면 불과 한 2~3m 정도의 대지가 절약이 된다고 할까요? 그래가지고는 경제성 있는 형태의 주택이라 볼 수 없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작품들은 다세대 주택을 겨냥한 계획작품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Low House에 대한개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니냐 생각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연립주택이죠. 이것은 각자 소유의 정원이 있고 자동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Car Part)이 현관쪽을 향해서 반드시 있게 되고 현관을 들어서게 되면 주간 사용 면적이 있고 그 곳에서 바로 정원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개념의 형태인데 이런 개념없이 우리가 하는 것은 Apt.를 축소시킨 스타일이다. 다시말해서 아래층에 있는 사람은 이것이 2층을 독립시켜서 따로 1세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2층에 산 사람은 바로 나와서 정원을 사용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라함은 개인 소유성이 있는 단독 형태가 연립으로 나와 있는 개념의 형태가 나와야 하는데 이것은 그냥 5층 Apt를 2층 3층에서 잘라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의 이미지나 모든 조건은 Apt보다 나아야 할 텐데 우리나라에서의 연립주택은 반대로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여러 세대가 모여사는 다 세대주택이라고 평하는 개념을 어떻게 규명되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축 시험회나 건설부가 이러한 개념을 확실히



오동석

히 해 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이 필요 합니다.

지금 작품을 보면 2세대나 4세대나 6 세대나 전자에서 말한 독립성이 유지되 지 않는 이상 다 마찬가지 입니다. 즉 아래층에 사는 사람만 편리한 것이고 위 층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Apt에 사는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 경우를 보면(미국) 개별적으로 100평 200 평 되는 그런 단독주택에 살고있는 사람 은 전 인구의 1%정도 밖에 안된다고 알 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런 다 세대의 형 태를 띤 주택에서 살고있는 시점 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이번에 여 러가지 좋은 안을 발표하기 위해 건축사 협회나 건설부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 는데 일단 혼동을 막기 위해서 각 주택 의 특징이나 개념을 확실히 구분해 놓고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읍니다. 개념의 원칙이 정립이 되지 않고는 다세대주택 이라고는 원칙의도에서 벗어나 방 뜰여 서 세를 놓는 결과 밖에 초래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경제 발전 과 아울러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될 우 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문제가 무엇이나 하면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에 사 는 사람들은 윗층에 사는 사람들과 주 택의 불합리한 구조동이 나타난다면 문 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 사회적인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다 세대 하고는 완전히 독립될 수 있는 그 런 형태가 정립되어 이루어져야 좋지 않 을까 생각됩니다.

사 회-다세대주택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 개념, 사회적인 측면까지 좋은말 씌 해 주셨읍니다. 그러면 이위원님이 작품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영 회-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다세대주택에 대한 개념

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작품 내용 에 대해서 말씀 드릴까 생각 합니다. 저 는 다세대주택의 개념을 저 나름대로 이 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채의 단독 가옥 에 여러 세대가 새 들어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한옥 한 채가 있다면 안방에는 소유주가 살고 문간방에는 또 다른 세대가 세들어 한 채의 가옥에 4~5 세대가 살고 있는 데,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주 거환경과 가구당의 독립성을 보장 해 보 자는데 법 제정의 취지가 있지 않나 생 각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응모된 작품의 전반적인 성향이 연립주택의 축소 판에 지나지 않았읍니다. 이런 내용을 도집화 해서 사실상 다세대주택의 참고용도집이 되겠느냐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러나 현 재로서 작품을 선정했고 선정된 작품을 보고 있지만 다세대주택의 개념 자체가 달리 해석되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그리고 작품을 검토 해본 결과 전체적으 로 작품의 소감을 말한다면 우리 주변에 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의 것들 뿐입니 다. 이번것이 아이디어 공모인 만큼, 보 다 새로운 디자인 어프로치라든지 최소 한의 내부공간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좀 다른 구조재의 제안이라든가 이런면에 대해선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합 니다. 규격화 되고, 경량화된 최소 두께 의 기본구조를 벽돌외의 보다 경제성 있 는 재료를 찾아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면 계획에 있어 전반적으로 Compact한 공간기능 배분이 아쉬웠읍 니다. 소형 주택이니 만큼, 최소 필요 공간에 대한 분석, 입체화된 다목적 가 구 계획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합 니다. 20평 전용 면적에 욕실의 크기가 2.4x2.1m로 배분 했다면 상당한 Space가 낭비 아니겠읍니까.

또 한가지 대지 환경·조건에 대한 고려 가 대개의 응모작품에서 결여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다세대주택이라함은 도시 형 주택인데 대지 조건 역시 좁은 것으 로 가정 할 때 그에 따른 적합한 유형을 제시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작품에 나 와야 하는데 그 근본 취지를 벗어나 자 연 녹지지역이라든가 농촌지역이나 맞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작품들이 많았읍니 다. 그리고 전체적인 입면처리라든가 선 처리가 지나치게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합 니다. 즉 입면을 위한 도면처리가 너무

많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사 회-상당히 좋은 작품이 나올 줄 알고 대지 조건이라든지 세대별 유형별 규정도 하지 않고 자유스럽게 계획을 해 서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여러심사 위원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현상을 주관한 위원회에서 좀 비좁은 점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은 마지막까지 심사를 열심 히 해 주신 조 구원 위원님께 말씀 부탁 드립니다.

조 구 원-전반적으로 정책적인 문제, 건축 법규상의 문제, 도시 계획적인 문 제등은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 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 하겠읍 니다. 우선 다세대주택에 대한 현상 공 모시 협회에서 조건을 제시 할 때도 누 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객관 상 있는 대지를 준다든가 이런점이 이루 어 지지 않은 것이 우리협회에선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건축가들이 작품을 하면서 Approach하는 방법이 대체로 좀 출렁하지 않았느냐, 우선 Approach하기 위해선 대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대지 문제라든가 식구 수 라든가 하는 대전제가 있고나서 그것을 좁혀 나 가는 식으로 작품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작품을 해 나가는 순서를 보 면 평면부터 짜놓고 그 평면에 맞추어서 대지의 레벨을 정하고 그 다음에 대지의 조건을 역지로 만드는 형태가 많았읍니 다. 그런 결과 평면이라든가 입면이 단 독주택을 2채 내지는 4채를 합하는 형 태가 아니면 Apt나 연립주택 일부분을 떼어온 형태, 이런 형태로 작품이 이루 어진 느낌을 받는 것이 좀 아쉽다 할 수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다세대주택을 만 들었을 때에는 무주택의 서민층을 위해 서 나온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 됩니다마 는 이것을 입법을 할 때는 서민을 위해 서 했습니다만 이것이 서민들만이 이용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심사하 는 과정에서 보면 이것은 악용 될 경우 의 소지가 많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됐읍 니다. 좀 Detail한 면을 보면 배치 하는 데 양면도로가 있는 것으로 가정해서 배 치한 작품들이 많은데 실세상 이런 대지 조건을 갖추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읍 니다. 즉 현관이 북쪽, 남쪽에 하나씩 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다 보 니까 인동이 상당히 무질서 해 집니다.

외관으로 보아서 단독주택인지 하나의 다세대주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에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Human Scale에 관한 문제가 전반적으로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Space Program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안방은 3평인데 화장실이 2평 이상이 된다고 집은 25평인데 지하실을 분할 해 놓고 보니까 지하실이 세대당 돌아가는 면적이 20평이 됩니다. 이런 것은 공사비의 안배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설비에 관한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건축설비에 관한 문제는 너무나도 상식 이하의 작품이 많다. 예를 들어 화장실의 위생기구의 배열이라든가 부엌의 주방기구 배열문제, 연탄 보일러실을 만들면서 연탄 저장창고는 전혀 고려가 안된 상태, 옥상의 물탱크실의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임구 뿐만 아니라 Tank를 수리 할 수 있는 공간 배려가 전혀 안되어 있는 이런 Detail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배치 문제에 있어서 거실이 가구 배치등의 여건은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단순히 통로의 역할 밖에 되지 못하는등 여러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한다면 요구 사항도 구체적이며 좀 더 객관적인 조건이 제시됐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협회 자체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사 회-상당히 Detail한 면까지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러면 다음은 김위원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 회 춘-나는 다세대주택이라함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중간형태가 아닌가 생각 했는데 배과장의 법적해석을 들어보니 이것은 하나의 연립주택의 축소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다세대주택의 성격을 뚜렷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입니다. 즉 다세대 주택의 의도를 어디다 두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도면에 대한 심사라든가 제출하는 사람의 의욕이 확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 회-서두에 배과장께서 다세대주택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개념, 배경 등을 말씀해 주셨음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다세대 주택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배위원장께 한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배 중 명-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정리를 더하고 연구해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더 보완 하겠습니다.

건물의 Life Cycle하고 사람의 Life Cycle에서 다세대주택이 어느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신혼 부부인 상태, 거기서 자식이 생겼을때, 다음에 더 나아가서 자식이 장성했을때 이런 인간의 Life Cycle, 그것에 따르는 건물의 Life Cycle, 이 두 관계는 상호 연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재 법에는 한계가 넓이와 2세대 이상이라는것 외에는 별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만, 우선 1차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토지 이용율의 측면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는 형편이고 건축물의 규모와 세대수 규모에 따른 규제는 각각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지금 주택정책과와 연구해야할 과제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회원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작품 자체가 그렇게 높은 수준이라고 볼수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다소 만족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입니다. 이번 현상설계는 하나의 시발점이고 가능하다면 협회에 권장하고 싶은 것은 협회 스스로 좋은 회원들이 많으니까 실제로 좋은 패턴을 만들어서 다시말해 사협회에 대표작이라 할수 있을 만큼 법의 해석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선도해주는 측면에서의 작품이 나와서 이것이 다세대주택이라 하는 예시로서 권장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 회 춘-제가 대지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되는 것이 한가지 있는것은 주택을 본인이 사용한다든가 임대해 줄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분양했을 경우 구조적인 면이나 배치적인 면을 보았을때 아래 층에 사는 사람이 좋은 조건을 점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처럼 세대가 Apt.의 축소판이라 함은 분양하는 경우를 생각했을때 문제점이 많습니다. 현재 계획을 보면 분양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 회-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협회 회장이며 심사위원장이신 오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회 장-먼저 120여 작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좀더 많은 작품이 나와서 여러가지 형태의 충분한 소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의도에 미치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구체적인 개념을 토대로 현상공모를 시도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다세대주택이란 말이 나왔는가를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 제가 서울시 지부장으로 있을때 주택의 불법 건수중 다세대 유형을 가진 주택이 60%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현실이라면 사실상 이러한 유형을 제재하면서 불법화시키는 것보다는 좀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시키는 것이 보다 좋은 방침이 아니냐 하는 의도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건축주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집장사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주에게 권장하여 집을 짓게 되는데 이것이 실제 단독주택이 아니라 몇세대가 살수 있는 다세대 유형의 떠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현실이 뒷받침되고 합리화시켜보자는 의도에서 생겨난 것이 다세대주택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본 협회에서는 다세대주택의 의미를 3세대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번두리 지역의 재개발을 위한 주택 정비지구를 위한 다세대 의미로 보고 현상설계 공모를 하였는데 작품을 보니 이 정도면 중상층을 위한 설계가 아니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려운 난민을 위한 다세대주택이 정립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즉 재개발을 요한 다세대주택의 지침 도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협회 자체도 현상설계를 진행함에 있어 좀 미숙한 점도 없지는 않았읍니다. 너무나도 많은 유형의 대지 면적이나 건축면적등 규제 사항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점을 발판으로 좀더 명확한 현상공모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사 회-오늘 좌담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좌담회를 마칠것읍니다.

전출

□ 강원지부=△권혁조회원/건축사사무소원전사/영월군영월읍영월리956-7/85. 8. 1/서울

□ 서울지부=△연진명회원/연진건축사사무소/중구장충동1가56-17/85. 8. 7/경기파주읍읍읍리1리97-4

△김종현회원/종합건축사사무소정인/강남구청담동1/85. 9. 2/경기평택읍평택리17

△강영순회원/건축사사무소청우/강서구신정동772-63/85. 9. 6/경기의정부시의정부동197-3

□ 경기지부=△황용연회원/황용연건축사사무소/가평군가평읍읍내리458-1/85. 8. 30/인천남구주안동

□ 경남지부=△김현배회원/영남건축사사무소/경남마산시중앙동2가3-6/85. 9. 16/서울

전입

□ 강원지부=△이관승회원/대흥건축사사무소/강릉시임당동127-3/85. 7. 30/서울

□ 서울지부=△조원식회원/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용산구이촌동300-27/794-3373

△권혁조회원/두성건축사사무소/구로구구로동1-1/846-8816/85. 9. 5/강원

△박금식회원/건축사사무소진성/강남구개포동상업업무지역1-2/555-1005/85. 9. 10/전남

□ 경기지부=△박재만회원/박재만건축사사무소/부천시역곡동215-15/64-6117/85. 8. 17/충북

△연진명회원/연진명건축사사무소/파주군금촌읍읍읍리29-3/85. 8. 26/서울

△백광운회원/백광운건축사사무소/경기도연천군연천읍차탄리34/4-1051/85. 8. 23/서울

△강영순회원/강영순건축사사무소/외정부시의정부동197-3/3-3557/85. 9. 23/서울

△김종현회원/김종현건축사사무소/평택군평택읍평택리17/52-6202/85. 9. 12/서울

□ 인천지부=△황용연회원/대신건축사사무소/인천남구구월동332-21/424-0040, 427-2379/85. 9. 16/경기

발세

□ 서울지부=△김광한회원/김광한건축사사무소/강서구화곡동987-2/85. 8. 16/지병

폐업

□ 경기지부=△박노선회원/박노선건축사사무소/부천시십곡동164-15/85. 7. 26

△김용만회원/김용만건축사사무소/안양시안양동511-8/85. 7. 26

□ 전남지부=△박광진회원/박광진건축사사무소/전남보성군별교읍별교리625-61/85. 6. 26

□ 경기지부=△박상옥회원/박상옥건축사사무소/외정부시의정부동198-22/42-7333/85. 7. 27

□ 서울지부=△백학원회원/삼풍, 동서합동건축사사무소/영등포구여의도동44-13/794-8341/85. 9. 16

會員動靜

△구성모회원/구성모건축사사무소/영등포구대림동990-80/846-0207/85. 9. 26

재입

□ 서울지부=△홍문유회원/종합건축사사무소정인/강남구청담동1/85. 7. 30/542-5851/서울

△김태욱회원/효진종합건축사사무소/동작구사당동1031-28/583-9118/85. 8. 7/서울

△김성동회원/(주)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영등포구여의도동25-11/782-8727/서울

△김학근회원/종합건축사사무소진축/강남구방배동811-1/599-2237/서울/85. 9. 2

△채규남회원/(주)석우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강남구방배동795-18/

591-4623/85. 9. 24

변경

□ 서울지부=△강봉진회원/건축사사무소국보건축/종로구관훈동198-16/733-5917

△방규상회원/세진건축사사무소/강동구길동458-5/471-9500

△정연석·김상규·이백길회원/무애서로건축사사무소/강남구도곡동552-14/552-7997, 552-0880 1

△정진식회원/정진식건축사사무소/도봉구공릉동617-6/976-1836

△황문택회원/금호건축사사무소/성동구자양동626-6/444-0310

△최상식회원/성주건축사사무소/도봉구우이동5-13/904-6656

△강효석·김충진·황명균회원/삼주종합건축사사무소/강남구반포동612-140/593-3193

△한충일·김남수·신명수회원/종합건축사사무소(주)진양건축/종로구관훈동198-1/732-1481

△강기재·유원재·박상돈회원/종합건축사사무소(주)범건축/강남구신사동573-2/544-4723

△강영철회원/코리아엔지니어링(주)/중구서소문동58-9/757-9939

△김만성회원/연합건축사사무소/중구충무로5가20-40/269-5333

△김형석회원/한국환경종합건축사사무소/영등포구여의도동53-12/783-2515

△오성근·박성규·김무연·김문규·이후관·강홍규회원/종합건축사사무소하나그룹/강남구방배동752-16/599-6277~8

△허자·조규찬·김득수·서현진회원/삼미종합건축사사무소/영등포구당산1가308-2/634-3112, 633-9567, 634-3464

□ 인천지부=△송진호회원/청송건축사사무소/남구주안1031/424-1246

□ 강원지부=△손준섭회원/강원건축사사무소/홍천군홍천신장대리43-22/2591

□ 충북지부=△조종관회원/홍수전건축사사무소/괴산군증평읍교동28/4-3546

□ 경북지부=△전재기·하진광회원/한국건축사사무소/포항시죽도동66-9

△조해식회원/조해식건축사사무소/포항시죽도동611-7

外部環境設計

— 住宅庭園 —

崔 紀 秀

서울市立大學 造景學科 教授

주거생활이란 주택에서 기거하는 사람들이 최대한의 편안함, 행복, 안전과 안정을 기대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이것에 덧붙여서, 주택의 배경이나 첨가물로서 혹은 주택 내부에서 창문으로 통해 본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내부적인 기능을 밖으로 끌어내어 생활의 편리함과 쾌적한 분위기를 외부환경에서 창출해 내는 것이 정원일 것이다.

1. 정원의 의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원의 의미는 주택의 외관적인 가치를 높이고 실내에서 국한된 주거생활을 외부공간으로 연장하면서 자연과 접하는 기회와 식생의 성장을 관찰하는 현대인의 취미로서 주거생활내에 존재하는 공간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했던 정원이라는 용어는 중국의 영향을 입은 원림(園林), 문정(問庭), 임천(林泉)이나 정원(庭院)과 같은 유사한 의미에서 비롯된 것 같다. 정(庭)은 원래 궁중(宮中)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사해(辭海)라는 책에 「堂階前也」라고 주석을 붙여 놓은 것을 보면 후세

에는 건물 앞에 뜰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 것 같으며, 원(園)은 설문(說文)이라는 책에 과일나무나 채소를 심어 가꾸는 자리로서 울타리에 의해 둘러싸인 곳을 지칭했다.

서양에서 사용하는 정원의 의미는 히브리어의 gan과 oden이나 eden의 결합어로서, gan의 의미는 울타리 즉 위요의 뜻을 함축한 방어 혹은 보호로서의 의미와 oden이나 eden은 즐거움 또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에서 유래된다. 또 자연적이거나 문화적인 환경의 차이에 따라 낙원의 장소이거나 채소밭, 잔디가 깔려있거나 물과 초목의 식물이 있는 곳을 일컬었다. 이로 미루어보아 동·서양에서 정원이란 즐거움과 기쁨 혹은 실용적인 면과 미적인 면을 고려하여 성장하는 식물과 그것을 미화시키기 위해 상징적인 시설물을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은 장소라고 할 수 있다.

2. 정원의 계획

모든 계획은 문제점의 도출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정원을 만

들기 위해서는 호외실(戶外室)의 기능, 가족을 위한 옥외 시설 및 공간, 주택에서 창문을 통해 내다보는 아름다운 조망, 정원 관리의 용이성과 이웃과의 관계 등에 대한 의문점에서 시작된다. 정원계획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부지 그 자체, 주택 구조물과 주위 환경, 그리고 그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다(그림-1).

가장 중요하고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주택과 정원이 얹혀지는 토지이다. 이것은 온도, 강우, 습도, 일조시간, 동결기간등과 같이 인간에게 민감한 반응을 주고, 외부공간에서 활동행위의 결정과 식물의 생육환경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지형적인 문제는 경사에 따른 강우에 대한 고려와 사람들의 이동하는데 안전과 균형을 부여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토양의 상태도 식물의 성장과 배수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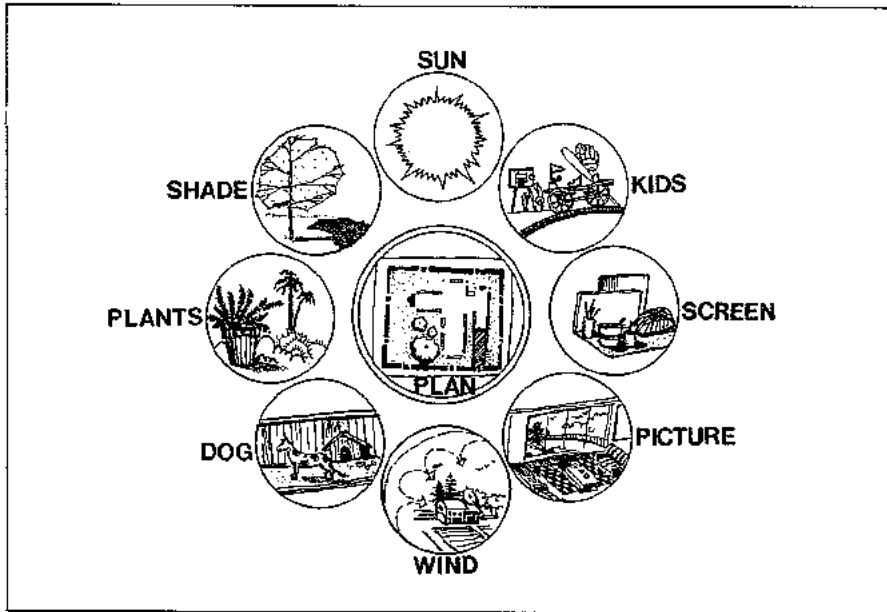
주택의 형태, 재료, 배치상태와 주택이 얹혀진 부지의 모양은 정원의 형태와 재료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주택의 평면과 주택이 갖고 있는 각 기능적인 위치는 외부공간의 기능을 부여한다. 주택이 위치한 사회적, 문화적, 시각적인 외부환경은 정원설계의 내·외부적인 영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차폐요소를 결정하게 한다.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성별과 나이에 따른 구성은 정원에 기능을 부여하는 요소가 된다. 나이에 따른 외부공간은 이용하는 방법이 7년을 한주기로 하여 변화하므로 그에 부응되는 시설이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가정을 구성하는 사람마다 취미나 외부공간을 대하는 태도가 틀리므로 잘 파악해 두어야 한다.

이러한 설계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조사하여 조정설계가 모든 것을 느꼈을때 정원의 기능에 따른 공간을 분할하므로써 훌륭한 설계가 나올 수 있다.

3. 정원의 기능

주택의 기능을 크게 분류하면, 생활공



〈그림-1〉정원설계에 고려할 사항

간, 서비스공간과 침실공간으로 나누어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욕망이나 욕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외부공간도 대문에서 현관까지 공공의 접근 공간, 일상 기증거리의 단란한 외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사소한 집안 일을 하는 작업공간과 조용한 실내 분위기를 갖추게 하고 혼자 사색할 수 있는 사적(私的)인 생활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면적인 공간은 연속적인 내·외부의 단위로서 상충되지 않도록 계획되고 설계되어질때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는 것이다. 주택이 제공할 수 없는 기능을 외부공간의 설계 요소가 서로 상호 보완하므로써 만족한 주택이 되는 것이다. 하나의 연속된 과정에 의해서 주택과 정원이 계획되어야 많은 문제점을 제거 할 수 있다(그림-2).

4. 정원의 형태

대지에 따른 특성, 이용자에 대한 고려와 외부공간에 대한 기능이 결정되면 그에 따른 정원 형태를 결정하여야 한다. 형태를 결정하는데 「토마스 처취(Thomas Church)」의 원칙을 소개하면 첫째로 고객의 욕구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

켜주기 위한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둘째로 정원에 사용 할 재료와 유지관리의 측면에서 형태를 선정할 수 있으며, 위의 두가지로 형태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순수예술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형태를 구성하는 수법은 크게 직선식과 곡선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직선식은 기하학적인 구조를 가지며, 구조물적인 정원요소를 이용하는 수법과 기하학적인 형태를 가지면서 식물재료를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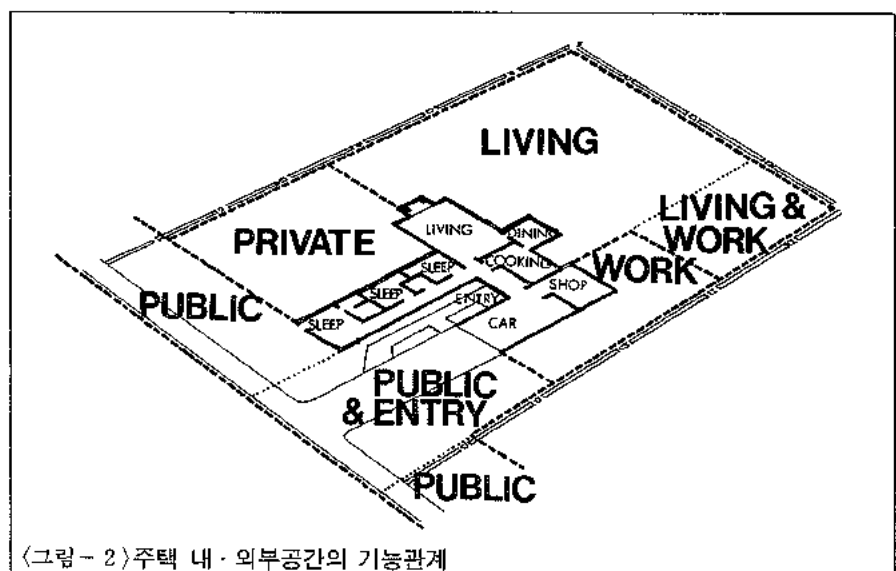
하는 방법이 있다. 곡선적인 방법은 풍경식 정원수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간의 구획과 정원재료등이 자연미가 나도록 비직선적으로 구성된 정원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하는 재료와 공간 창출의 방법에 따라 시각적인 즐거운 경험과 이용하는데 편리한 쾌적한 정원 형태를 만들수 있다. (그림-3과4).

5. 정원의 세부구조

소유자의 취미에 따라 정원내에 판 부분과는 판이하게 다른 구조와 분위기를 낼 수 있다. 평지나 완만한 경사지에 적당한 크기의 암석을 배치하여 그 사이사이에 높은 산악지대에서 볼 수 있는 키작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초화류나 관목류를 심어 산악지대에서 볼 수 있는 분위기를 재생시킨것과 같은 암석원(岩石園, rock garden), 들국화나 도라지꽃과 같은 들에서 자라는 야생초를 적당히 섞어 심어 자연스럽게 꾸며 놓은 정원을 야초원(野草園), 그 지방의 임상을 정원내에 재생시킨 것을 임상정원(林相庭園)과 장미원등을 만들어 정원 전체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장식할 수 있다.

① 수직적인 요소

수직적인 요소는 이용자의 눈 높이에 해당되는 대상물이므로 정원의 공간을



〈그림-2〉주택 내·외부공간의 기능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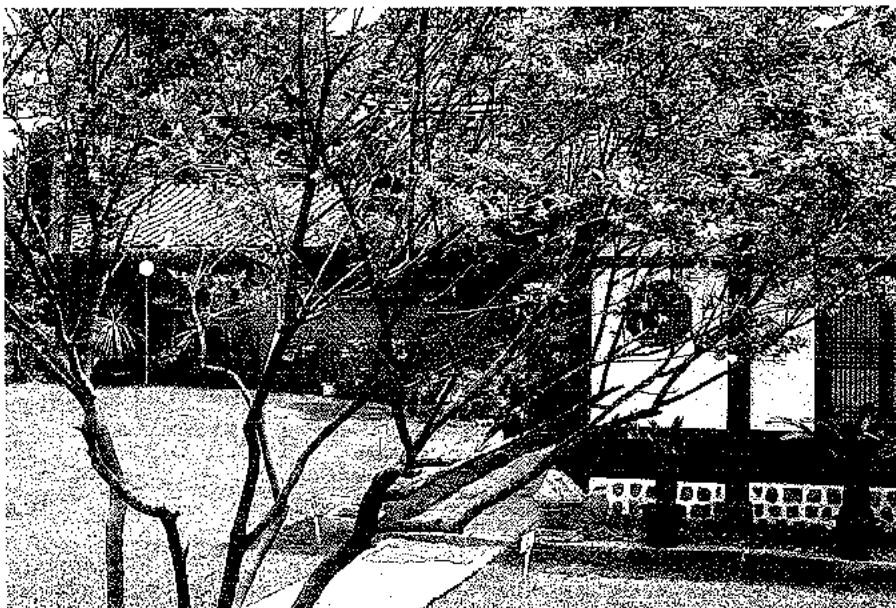


그림 - 3. 한옥구조에 다목적 기능의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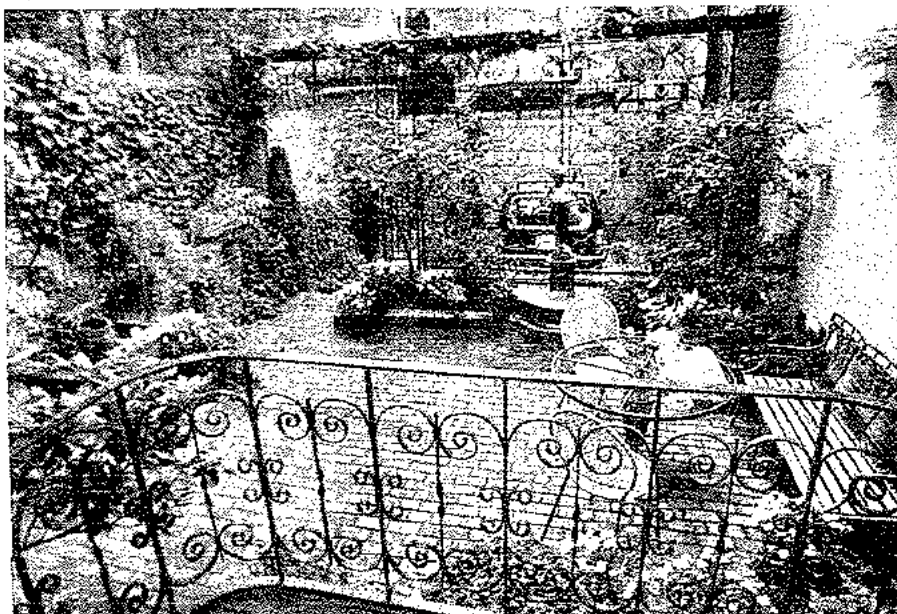


그림 - 4. 경질바닥재로 꾸며진 주택정원

형성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먼저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와 대문이다. 울타리는 정원을 한정하는 요소로서 산울타리를 하여 전부 자연스러운 수목재료를 사용한다든가 투시형 담장을 통해 통행하는 보행인과 같이 아름다운 정원을 함께 나누는 경우도 있으며, 주택의 사적인 공간을 강조하여 구조물로서 차폐시키고, 넝쿨식물에 의하여 자연스러움을 보여주게 한다(그림-5). 물론 한국 고유의 사교석이나 벽돌

에 문양을 주어 담 자체가 하나의 조형물이 되게 하는 수도 있다. 대문은 한옥형식인가 양옥형식인가에 따라 재료나 형태도 틀릴 것이며, 사람만의 통행을 위주로 하느냐 자동차도 통행하느냐에 따라 크기도 다를 것이다.

정원내에서 수직적인 요소 중 중요한 것은 기능에 따라 공간을 부여하기 위한 칸막이 벽과 같은 것이다. 사적(私的)인 분위기 연출에 따라 투시 혹은 반투시, 또는 눈 높이에 따라 차폐정도를 다르게

결정하는 것이다. 수목재료를 사용하든가 건축재료를 사용하건 간에 눈이 쉽게 머무르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설계하여야 한다. 수직적인 요소로는 정원등이나 조각물을 사용하여 정원의 축점 역할 뿐 아니라 강조로서도 사용된다.

②수평적인 요소

수평적인 요소란 바닥재료를 선택하며 그에 따라 지반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배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공간의 이용에 따라 바닥재료의 마모상태를 고려하여 연질의 재료와 경질의 재료 중에서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동선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은 당연히 경질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관리의 용이 정도에 따라 또 견물 외벽의 재료나 패턴에 따라 바닥재료나 패턴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정원공간은 좁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 목적에 여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 유지면에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 하더라도 잔디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잔디만 깔으면 무미진조한 기분을 주므로 회화적인 터치로 징검돌의 형태를 갖추어 단순함을 깨뜨리는 것도 바람직하다.

외부공간 요소 중 물도 자연스러운 분위기 창출에 큰 역할을 한다. 물은 용기에 담아두어야 하는 액성의 성질때문에 바닥처리나 단(端)처리 부분은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의 성질을 이용하여 벽천을 구상할 수 있다. 또 물은 동선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에 따라 공간을 분할할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물속에 물고기를 기르므로써 분수로서 물의 자연스러운 분출을 첨가시켜 더욱 흥취를 줄 수 있다.

지표면에 시각적인 질감을 다르게 하기위해 지피식물이나 야생초를 심을수 있으며, 잔디와 구획을 지어 심으면 정돈된 곳에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낼 수 있다.

③천정적인 요소



그림 - 5 덩굴장미를 올린 담장

정원의 진정한 요소는 그들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며, 그것은 수목 한그루의 수관 폭 자체이거나 건축구조물인 퍼골라이다. 퍼골라는 일반적으로 등나무나 능소화 같은 것을 얹어 정적인 공간을 만드는데 사용하지만, 격자 무늬의 판재를 사용한다면 받을 구조체 위에 올려 놓아 그늘이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6. 정원수의 선택과 배식

정원내에 식재되는 교목 및 관목을 정원수라고 부른다. 정원수는 인공적인 재료와 달리 자연성을 지니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원내의 자연적인 모습을 재생시키는 재료로 쓰이는 만큼 지나친 가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때로는 다듬은 나무(Topiary)와 같이 인공적으로 수형이 만들어지는 수가 있기는 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수종의 특성에 알

맞는 형태를 일정한 한도내에서 만드는 데 지나지 않는다. 어떠한 의미에서 수목만큼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것은 없으나, 그것은 또한 그것대로 판물질로는 얻을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재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목이 생물로서 지니고 있는 많은 특성을 먼저 알아두어 자연과 인간과의 융화 혹은 정원과 자연과의 조화를 관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원수는 부지가 갖고 있는 특성과 건축물의 형태와 재료에 따라 수목의 수형, 수간의 모양과 색채, 수관, 꽃의 색채 등을 고려한 관상(觀賞)이나 실용적인 면에서 가치가 있으면서, 그 지방의 풍토에 적응하는 힘이 강하고, 이식하기 쉬운 수종을 택하는 것이 좋다.

정원수를 적당한 자리에 서로 어울리도록 심는 것을 배식이라고 한다. 형태의 구성, 위치 및 실용적인 면을 고려해

서 식재하는 정형식의 방법과 표현이나 식물의 생태를 살려 사실적으로 식재하는 자연식의 방법이 있다. 정원의 공간내에서 수목 상호간에 리듬이나 반복 혹은 강조를 줄 수 있는 수종이나 위치를 택하면 된다.

배식할 때에는 한 그루라도 필요 이상의 나무나 필요 이상의 큰 나무, 필요 이상의 비싼 나무를 심을 필요는 없다. 높이 뿐 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수종을 섞어 놓으면 잡다하게 보이고 명쾌한 분위기를 주지 않는다. 값 비싼 나무는 정원의 1~2 그루면 충분하고 다른 나무와 잘 조화되도록 배식하여, 값 비싼 나무로서의 아름다움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재적소로 식재된 나무만이 최대한의 아름다움을 발휘할 수 있다. 생김새를 비롯해서 개성적인 아름다움이 우수한 수종을 살릴 수 있도록 장소와 주위와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都市再開發事業의 推進方向

— 都心問題 解消方案을 中心으로 —

秦 哲 薰

서울特別市 都市計劃局 再開發課 係長

I. 序 言

도시재개발사업은 주민 스스로 組合을 구성하거나 주민의 同意아래 노교, 불량한 지구의 기능을 회복하고 공공시설을 확충하여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위한 都市環境改善事業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재개발사업은 도시기능적 측면에서 토지 이용상태의 혼잡을 해소하고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용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空間을 利用하게 되는 효과뿐만 아니라 획지구묘가 영세한 대지를 정비하여 토지를 집약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經濟的 利點때문에도 그 필요성은 계속 강조되어 왔다.

事業施行節次는 크게 3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재개발구역이 지정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都市計劃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결정되는데 까지가 사업준비단계이다.

그 다음 시행단계는 시행인가 신청기간을 고시하고 시행인가 신청을 받아 공람을 한 후 시행인가와 건축허가, 주민의 분양신청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는 2 단계 절차가 있다. 3 단계는 공사가 완료되면 분양처분하고登記와 清算을 하게 되면 재개발사업은 완료된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와 토지소유자간의 상충되는 개발의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개발사업은 눈에 띄게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데 현시점에서의 도시재개발사업을 평가해 봄으로써 도시환경개선측면, 주민의 수익성보장측면, 다른 산업분야와의 경제부문간 균형유지문제 등을 고려,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아래에서는 서울의 도심문제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도심재개발사업의 동향과 실태, 시행상 문제점을 분석한후 앞으로의 정책대응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都心再開發事業 動向과 實態

서울의 都心再開發區域은 32개 구역, 420개 구역, 시행면적은 185만㎡로서 도심면적의 23.2%에 이른다.

'85년 9월 현재 事業完了地區는 41개 지구, 진행중인 곳은 67개 지구로서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아 보면 완공 단계에 있는 건축물이 13개 지구, 공사중이 34개 지구이고 20개 지구는 착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완료지구보다 시행중에 있는 지구가 많은 이유는 '83년과 '84년에 사업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인데 사업완료지구의 내역은 표1과 같다.

업무용빌딩 건축이 활발한 사유를 살펴보면 재개발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건축규제완화와 제3개발자 지정등의 행정지원을 들 수 있다.

또한 경제구조적 요인으로는 생산설비부분의 전망이 명확하지 않으나 건설부문은 안정적인 투자로 보는 민간경제의 흐름과 해외건설 부진에 따른 건설회사의 유휴인력과 장비활용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建築動向을 볼 때 진행중인 재개발사업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신규사업은 급격히 감소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전반의 침체에 원인이 있겠지만 사무실 과잉공급에 따른 수익성 결여로 인하여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完了地區와 進行地區를 합한 108개 지구중에 91개지구가 업무시설, 8개지구가 판매시설이고 숙박시설, 공동주택 등이 7개지구로서 시행지구의 84%가 업무시설인데 용도별 면적현황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재개발사업의 시행지는 都市再開發法 제9, 10, 11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나 공사 또는 제3개발자로 되어 있는데, 토지주들이 일정기간동안 개발하지 않을 경우 주택공사나 土地開發公社의 신청에 의하여 公社가 시행할 수 있으며 주민과 公社 등의 개발의사가 없을 경우는 시행면적의 1/2 이상 토지의 소유권을 가진 자나 시행면적의 2/3 이상의 소유자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사업비의 1/10 이상의 현금·보증보험증권 등을 예치한 자가 제3개발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표3에서 보면 기업참여가 59개지구, 조합 또는 개인이 시행하는 곳은 38개지구, 公社는 4개지구임을 알 수 있는데 기업에서 많이 참여하게 된 이유는 우선

기업의 대형화에 따른 자체사육을 확보하고자 하는 욕구와 소규모 토지소유자는 투자능력부족으로 인하여 참여보다는 토지를 매각, 현자가 이상으로 실익을

얻으려는 경향에 기인한다고 분석되는데 재원확보와 사업수행능력, 기술제공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도 계속 기업에서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1〉 都心再開發事業 完了地區 現況

구 분	지구수	면적 (천㎡)	지 구 명 (건 물 명)
대 상	420	1,851	
완 료	소 계	41	204
	'80이전	5	194
	'80 년	11	35.9
	'81 년	4	36.5
	'82 년	5	21.0
	'83 년	4	16.2
	'84 년	5	17.3
진 행 중	'85 년	7	57.7
	진 행 중	67	314.0
미 시 행	312		

〈표2〉 都心再開發事業 用途別 現況

구 분		계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등
완 료지	지구	41개 지구	30개 지구	8개 지구	3개 지구
	면적	115	83 *사무실용 면적 58	8	24
시 행 지 구	공사중	47개 지구	43개 지구	2개 지구	2개 지구
	면적	150	132 *사무실용 면적 92	6	12
미 착공	지구	20개 지구	18개 지구		2개 지구
	면적	72	61 *사무실용 면적 42		11
계		108개 지구	91개 지구	10개 지구	7개 지구
		337	276 *사무실용 면적 192	14	47

〈표3〉 再開發事業主體別 現況

구분	계	기업체	공공기관	연립기관	금융	조합	공사	개인
지구수								
총 계	108	59	1	3	3	27	4	11
완 료	41	21	1	1		14		4
진 행	67	38		2	3	13	4	7

Ⅲ. 事業施行上의 問題點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상 문제점은 事業推進側面, 都市計劃의側面, 經濟的側面으로 크게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첫째, 事業推進上 문제점으로는 시행자가 많은 자본의 투자에 따른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폐율과 용적율을 최대한 적용하므로써 건축계획상 합리성이 결여된 채 고층화, 대형화하게 되는 점을 들 수 있다. 군소 토지주들이 사업참여를 기피하고 시행자에게 토지를 감정가액 이상의 고가로 매각하려는 경향때문에 사업시행이전보다 지가가 크게 상승하게 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고 토지소유자간의 참여동의나 매입협약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사업추진의 장기화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지금까지 4대문대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면 철거 재개발방식으로 시행하여 현재의 單核都市를 多核化 하려는 도시구조 개편방향과 연계성이 결여되어 도심문제의 가중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되어지고 있다.

업무용 건축물 위주의 개발로 도심교통량이 증가되고 주간활동인구의 증가로 공공시설에 대한 負荷가 커지고 있어 지역균형개발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지고 있다. 또한 재개발구역으로만 지정된채 사업이 장기화되는 곳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과 노후화의 가속이라는 역기능도 노정되고 있다.

셋째, 경제정책측면에서는 업무용 빌딩의 과잉공급 현상을 빚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설비투자재원을 잠식하게 되어 생산에 직접 관련된 투자재원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 문제는 도심재개발사업뿐만 아



울지로 2가 16·17地區 再開發事業(大韓住宅公社)

나라 건설업 전반의 분야와 제조업분야와의 산업관련분석에 의하여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여 규명될 일이지만 건설업이 갖는 관련산업의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에 대하여 제조업분야에서 지나친 편견을 가지고 우려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보며, 민간상업용 건축물을 억제함으로써 경제부문간의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하는 구상에는 경제운영상의 한계가 있다고 본다. 다만, 일부 대기업에 의한 임대경용 대형건물의 경쟁적인 건설이나 건축성수기중 건축자재수급의 불균형과 가격파동 문제, 서비스부분의 기대수익율이 높아진데 따른 유흥업소의 급격한 증가추세 등의 문제는 경제운영의 전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1인당 사무실 점유면적이 협소한 기존의 사무환경을 감안할 때 공실율의 문제는 경기활성화와 주요한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최근 경기동향을 분석해보면 사무실 공실현상은 일정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형건축물의 경우 設計用役을 외국에 의뢰하거나 화장석 등의 외장재와 집섬보드 등의 내장재를 수입하여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점도 국세수지에 악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IV. 都心再開發事業의 對策方向

都市開發의 기본방향은 多核都心개발로 도심문제에 대하여 도시구조적으로 해결하는데 두어야 한다.

4대문내 중심의 개발을 지양, 영등포·청량리 등 부도심지역의 개발계획을 확정하여 연차적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야 하며 부분재개발 등 개발기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21층 또는 연면적 30,000㎡ 이상인 업무시설은 재개발사업 또는 도시설계에 의한 계획일 경우 수도권정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교통유발효과와 인구유발효과를 엄격히 심사하여 승인을 억제해 나갈 계획에 있다.

재개발사업에 대한 租稅減免惠澤으로 양도세, 법인세, 특별부가세, 취득세, 면허세 등의 감면되는데 이것이 사업촉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행지구내의 막대한 공공용지 부담을 사업시행자가 감수하고 있는 현재의 재

개발제도에서는 세제상 지원은 계속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일반지구보다 건폐율과 용적율을 완화 적용하고 있는 건축기준상의 혜택은 일반지구와 형평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개발촉진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줄여 나감으로써 사업시행자 스스로 업무용빌딩 수급상한 및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여 도심개발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

건물용도를 결정할 때에도 전문기관의 경제마케팅 분석을 거쳐야 하며 사업계획결정전에 도시설계기법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검토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건폐율·용적율·층수 등의 골격을 정하기에 앞서 개발구상, 토지이용계획, 녹지공간체계, 동선처리계획, 교통처리계획, 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 등 공급처리시설계획, 기존건축물의 처리계획, 조경계획 등의 도시설계적 지침이 세워져야 한다.

도시재개발사업의 계획체계는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는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이 보완, 정비되고, 중간계획으로서 구역단위의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시행계획으로서 지구별 도시설계가 작성되어 3단계 계획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져야 비로서 도시계획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고 사업시행을 위한 건축계획의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여 줄 수 있게 된다. 지역별 특성을 부여하여 주고 적절한 복합용도를 수용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도시설계 과정을 통한 재개발사업일 경우에 가능하게 된다. 불요불급한 외국산자재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외자재 성능검사제와 사용시 승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에 설계용역을 의뢰할 경우에도 사전 승인제를 실시하여 설계용역의 외국 의뢰문제에도 제동을 걸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본다. 해외에서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국내법규 적용등을 엄격히 하여 시간적·경제적인 불이



서소문3지구(동방생명보철) 再開發事業으로 造成된 綠地空間

익치분을 하는 것도 하나의 간접규제방법이 될 것이다.

업무용 빌딩의 과잉공급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은 도시계획적 또는 건축행정적인 대응보다는 비업무용 빌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재산세 과표를 현실화하는 등 세제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부동산보유를 통한 불로소득을 줄이도록 하는 부동산종합대책과도 관련지어져야 할 것이다.

V. 結 語

도시문제는 어느 특정분야의 한 가지 처방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미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있다.

서울의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많은 불량지역이 정비되고 수준 높은 도시면모를 갖추게 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데 앞으로는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수도서울의 중추관리기능을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유경제체제에서의 재개발사업은 원

칙적으로 民間主導下에 土地所主者의 의사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재개발 촉진이 좌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행정청에서는 도심에 필요한 시설, 도심에 적절한 시설의 수요와 규모를 공급할 수 있고 그 시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재개발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정비, 보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대상지역 이외의 도심부 전반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단위 개발방향 설정과 지구간의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라 하겠다.

도심 4대문내의 개발에 대하여는 7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규제강화론」과 「규제완화론」이 동시에 대두되어 오면서 시대상황에 맞추어 관련시책들이 수차례에 걸쳐 변경되어진게 사실이며 이러한 상반되는 두가지 주장은 도시정책상 혼선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도심 건축물의 층수와 용적기준이 변경되는 동안 근원적인 문제는 「市民을 위한 空間造成 노

력」이 민간부문이든 공공부문이든 다 같이 결여되었다는 점이며 이 점을 깊이 반성하여야 한다.

도시재정비를 통하여 얻어지는 개방공간, 녹지 등은 지구간의 연계성을 긴밀하게 하여 보행자 공간으로 확보해 나가고 도심공원이 부족한 현실에서는 대규모사업지의 공개공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 휴식시설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종전의 개발사례를 분석해 보면 우선 양적 수요를 충족하는데 그치고 도시수준 향상을 위한 행정청, 사업시행자, 계획참여자 등의 양식과 관심부족을 보게 되어 아쉬운 점이 많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첩경은 거창한 구호나 계획보다는 결국 시민과 도시관계당사자들이 도시를 사랑하고 도시공간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구체적이고 실현성있는 노력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하겠다.

人體의 熱的 快適環境條件

孫 章 烈

漢陽大學校 教授·工學博士(본협회 설비분과위원)

머 리 말

建築室內環境의 創出에는 두가지의 다른 면모를 볼수 있다. 하나는 좋은 環境을 만든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合理的·經濟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에너지의 절약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어 그 목표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합리적·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할수 있으나 環境이란 다른 하나의 목표에서는 質의 低下를 초래하기 쉽다.

인류 역사상 建築環境은 꾸준히 향상되어 왔고 에너지 문제로 인하여 인류역사의 흐름이 거역되어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에너지 절약을 實現하면서 環境의 質을 유지하여 建築環境工學의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環境의인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熱的環境과 人體와의 관계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서술한다.

1. 人體의 熱生産과 熱放散

人體는 노동에 의해 體内に 축적된 에

너지를 消費하고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에너지를 生産, 補給하는데 이것을 에너지代謝라 한다. 에너지代謝量은 인간의 노동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空腹時 누워 있는 安靜狀態에서 에너지消費量은 약 53Kcal/h로 이것을 基礎代謝라 한다.

人體로부터의 熱放散 經路 및 熱放散量의 比率은 環境상태에 따라 다르고 이것은 추위와 더위의 감각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인 熱放散 및 熱環境의 要素를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熱放散은 主로, 輻射(Radiation)·傳導(Conduction)·對流(Convection) 및 水分蒸發(Evaporation)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중 수분증발에 의한 熱放散은 폐와 피부면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적당한 溫度를 초과하게 되면 땀을 통하여 수분에 의한 熱放散量이 증가하게 된다.

2. 溫熱環境의 評價

人體의 熱的平衡을 나타내는 式은 다음과 같다.

$$M = \pm R \pm C \pm E \pm S$$

단, M: 에너지代謝量[Kcal/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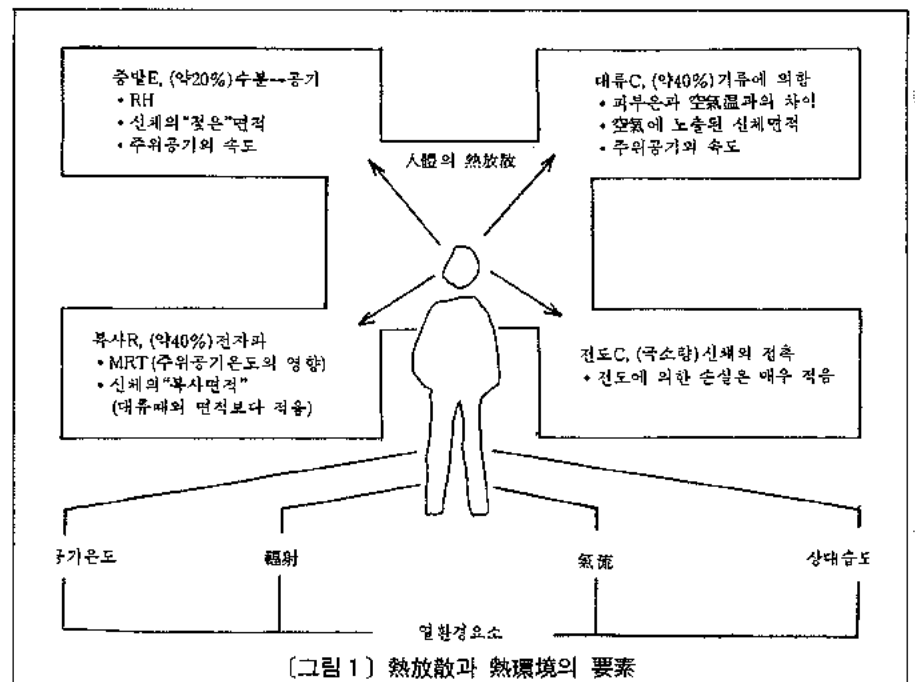
R: 輻射에 의한 熱放散[Kcal/h]

C: 傳導·對流에 의한 熱放散[Kcal/h]

E: 水分蒸發에 의한 熱放散[Kcal/h]

S: 人體内に 축적된 熱量[Kcal/h]

에너지代謝와 熱放散이 平衡을 이룰 때, 즉 위의 식에서 $S = 0$ 일때의 熱環



境을 熱的中性點(Thermal Neutral Point)이라 하며 이 상태에서는 더위와 추위에 대한 느낌을 가지지 않는다. 快適感覺은 中性點으로부터 左右 幅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熱中性帶(Zone of Thermal Neutrality)라 한다. 또 열 평형식을 空氣調和의 입장에서 人體를 시스템(System) 적으로 해석하긴 하나 생리적 요소를 통일된 尺度로 나타내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人體의 熱放散에 영향을 미치는 熱環境要素에는 氣溫(Air Temperature)·濕度(Humidity)·氣流(Air Motion)·輻射熱(Heat Radiation) 등이 있고, 熱環境의 評價를 위하여 열환경요소인 氣溫 Q·氣流 V·주위벽체의 表面溫度 R (MRT)·상대습도 Y를 조합하는 각종 指標가 있으며 이것에 의하여 그 환경에 대한 人體의 溫熱感·快適感 또는 熱放散量과 關係를 判斷한다.

즉, 指標 $I=f(Q, V, R, Y)$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일반적인 溫熱環境의 評價方法은 다음과 같다.

(1) 카타온도계(Kata Thermometer)
: $I=f(Q, V)$
미풍속계로 이용, 냉각력을 나타내는것.

(2) 글로브온도계(Globe Thermometer) : $I=f(Q, V, R)$

특히 복사환경을 측정

(3) 作用溫度(Operative Temperature, OT) : $I=f(Q, V, R)$

이론적, 공학적, 열교환 이론에 의거함.

$$OT = (\alpha_c \theta_a + \alpha_r MRT) / (\alpha_c + \alpha_r)$$

θ_a : 기온(°C)

α_c, α_r : 대류 및 복사에 의한 열전달율 (Kcal/m²h°C)

(4) 有效溫度 또는 實効溫度(Effective Temperature, ET) : $I=f(Q, V, Y)$

실험결과를 도표화한 것으로, 미국에서 많이 사용함. 상대습도 100%, 無風狀態가 기준임.

(5) 修正有效溫度(Corrected Effective Temperature, CET) : $I=f(Q, V, R, Y)$

유효온도를 개량하여 복사의 영향을 판단함.

(6) 新有效溫度(New Effective Temperature, ET*) : $I=f(Q, V, R, Y)$

ASHRAE가 개발한 것으로 상대습도 50%가 기준

(7) 불쾌지수(Discomfort Index, DI) : $I=f(Q, Y)$

$$DI = 0.72(Qd + Qw) + 40.6$$

Qd: 乾球溫度(Dry Bulb Temperature) (°C)

Qw: 濕球溫度(Wet Bulb Temperature)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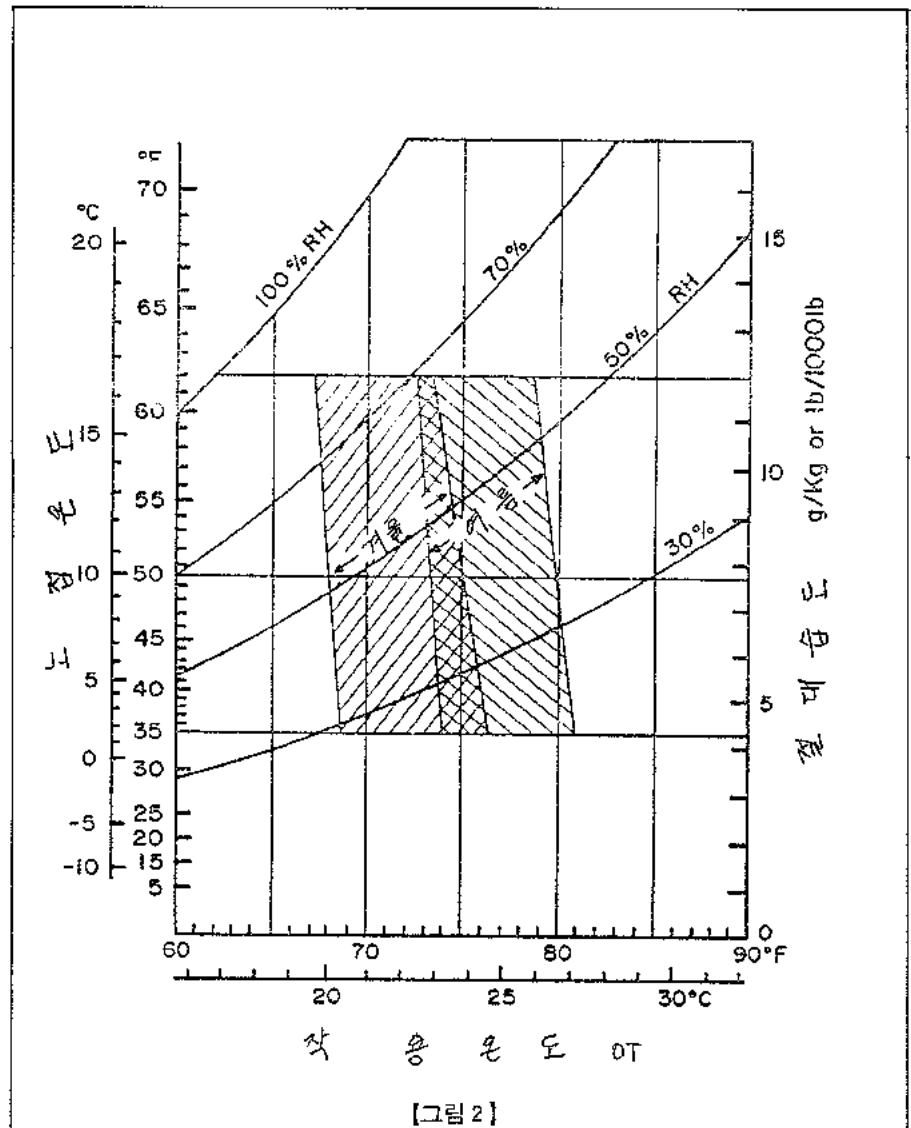
DI=70일때 在室者の 10%가 불쾌

DI=75일때 在室者の 50%가 불쾌

DI=80일때 在室者の 100%가 불쾌

3. 快適條件의 變化

室內溫熱環境의 쾌적조건은 在室者の 주관적인 것이며, 人種, 性別, 연령, 체격등의 天性的 요소, 건강 및 영양상태, 생활이력 등의 신체적 요소, 着衣量, 作業強度 등의 現場의 요소 등의 여러가지



요소에 의한 個人差가 크다. 그러나 이들 주관적인 요소를 각종의 실험을 통하여 평균화, 표준화하여 在室者の 쾌적 조건을 통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가능하며 또한 必要한 일이다.

1923년 ET(Effective Temperature, 유효온도) Scale이 Houghton, Yaglou에 의하여 만들어졌는데 1961년 Nevins에 의해 ET의 쾌적조건은 1923~1941년 사이에 18℃에서 20℃로 상승하였다. DBT(Dry Bulb Temperature, 건구온도)는 1900년에는 18℃~20℃였던 쾌적 범위가 1960년에는 24℃~26℃로 상승하였다. 이것은 의복, 생활양식, 쾌적기대감의 변화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1950년대에 이르러, ASHRAE는 ET Scale에 대해 再評價키로 하였으며, 1960년에 Koch 등은 DBT 18℃ 이하에서는 상대습도 60%까지는 습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1966년 Nevins 등은 가벼운 복장을 한 720인의 피실험자를 통하여 온도에 의한 쾌적선은 Houghton과 Koch의 중간이 알맞다는 것을 주장했다.

Winslow 등은 Yaglou, Houghton의 Warm- Comfortable- Cool에 대하여 Pleasantness- Unpleasantness의 Scale을 소개하였고, 最近 生理學者들은 쾌적감(Sensation of Comfort)과 온열감(溫熱感: Sensation of Temperature)은 각각 생리학적, 물리학적이란 다른 근거에 의한 것이며, 두 요소는 따로따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SHRAE Comfort Standard 55~81은 溫熱의快適(Thermal Comfort)을 “온열환경에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는 心的상태”로 정의함으로써 이 二重的인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의 예측쾌적선도에서는 쾌적감을 “출지도 덥지도 않은 상태(neither slightly warm nor slightly cool)”로 정의하고 있다.

ASHRAE의 Handbook은 New

ET(ET*)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대습도 50% 선상에서 쾌적감을 평가하고 있다. 이 線圖는 Nevins, Rohles 등의 Kansas주립대학의 연구가 기초로 되었다.

덴마크의 Fanger는 人體와 環境간의 熱平衡式을 기초로하여 人體의 쾌적과 작업강도, 착의량, 온열환경조건, 평균피부온도, 發汗量의 관계를 방정식으로 표시하고, 방정식 중의 각 상수는 실험적 해석에 의하여 결정하였다. 쾌적방정식은 계산이 複雜함으로 Fanger는 實用을 위하여 식을 계산함으로써 쾌적선도로부터 쾌적조건의 결함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ASHRAE는 일반적인 작업 및 着衣상태에서 습도로 露點溫度 tdp를 사용하여 作用溫度 t와 新有效溫度 ET*의 쾌적범위로 다음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

겨울철: 露點溫度 tdp=20.2~24.6℃
일때 t=19.5~23℃, ET*=20~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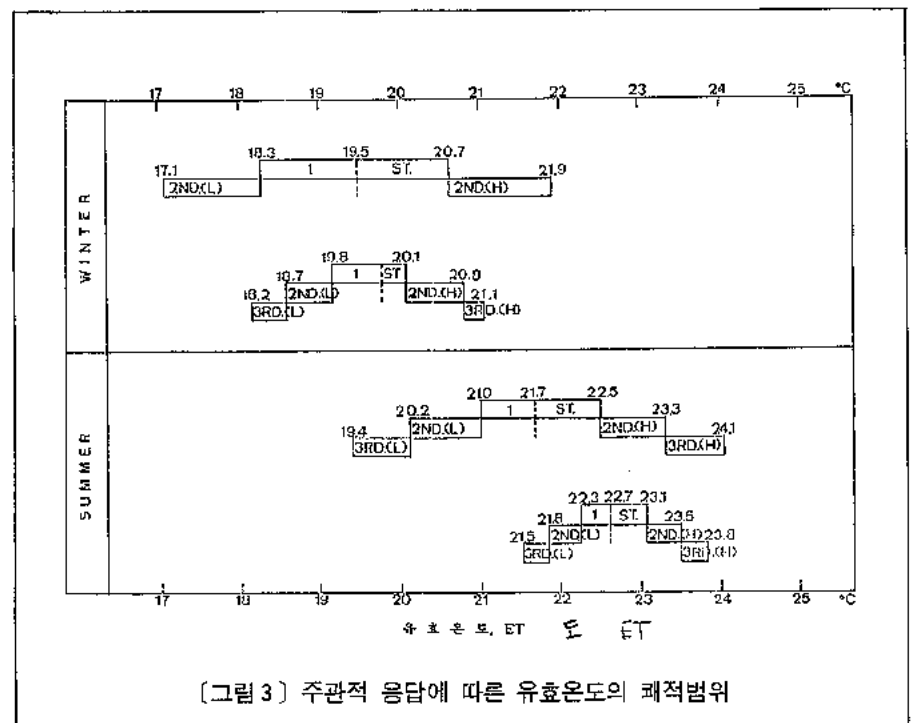
여름철: 露點溫度 tdp=23.2~27.2℃
일때 t=22.6~26℃, ET*=22.8~26.1℃

4. 快適環境에 관한 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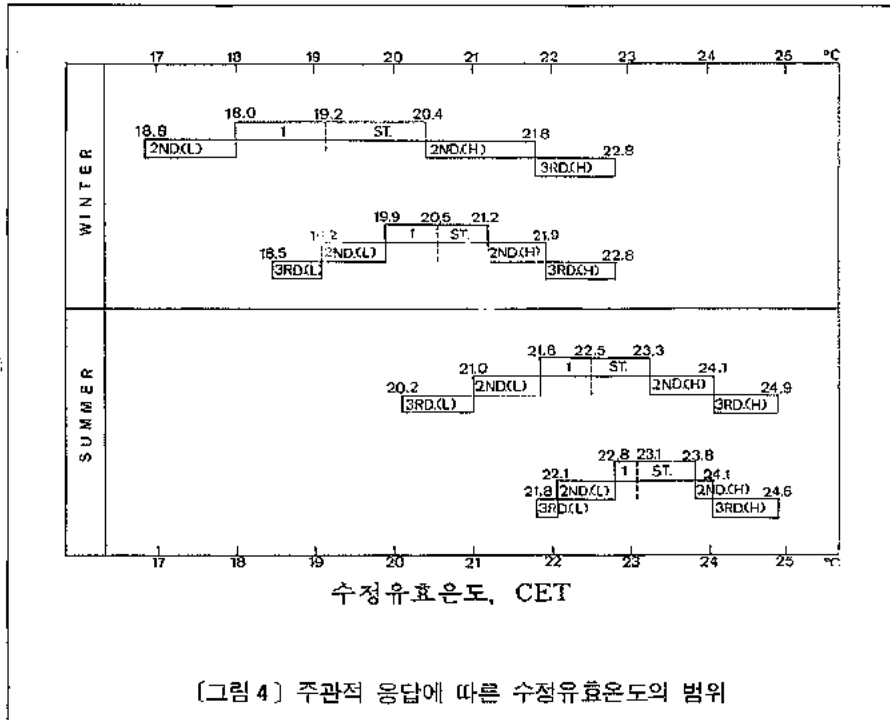
溫突의 衣食생활에 익숙하여온 우리나라 사람의 특수한 주거형태 등을 고려할 때, 室内溫熱環境에 대한 熱的感度도 外國人과 다른 특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대한 研究가 미흡한 상태이어서 外國의 研究結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實情이다.

최근 熱的快適環境에 대한 研究가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서서히 시작되어 이에 관한 論文이 수편 발표되고 있다. 그중 漢陽大學校 建築設備環境工學研究室을 중심으로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研究의 主題: 溫突暖房方式에 있어서 쾌적온열환경에 관한 研究
- 2) 研究의 目的: 溫突暖房方式에 있어서 쾌적온열환경 범위설정에 관한 기초 자료의 제시



[그림 3] 주관적 응답에 따른 유효온도의 쾌적범위



3) 研究의 범위와 方法: 온돌시험 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溫熱環境測定 및 被験者의 反應에 對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4) 研究의 結果

(1) 人體代謝量 1 Met, 衣服熱抵抗值 1.1 clo, 氣流速度 0.1 m/s, 相對濕度 30~40% 일때, 室温 17.5~24.5℃에서 溫熱中性感을 나타내며, 이는 바닥輻射熱의 影響으로 對流暖房方式에 의한 基準值 보다도 낮은 下限값을 보여 준다.

(2) 適正바닥 溫度의 範圍는 30.6~38.8℃로서, 外國의 立式生活 方式에 의한 研究結果에 비해 높은 범위를 나타낸다.

(3) 皮膚溫은 손등, 발등, 이마중 발등이 가장 낮으며, 局部不快感을 일으키는 가장 큰 發生部位가 된다. 또, 全身溫熱感이 中性範圍일 때, 바닥溫에 對한

不快感의 反應이 높았다.

(4) 室温이 熱의 中性 範圍이고 壁體溫度가 均一할 때, 輻射溫度는 바닥溫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線型回歸式은 $y = -10.1 + 0.7x$, 決定係數 r^2 은 0.856이다.

(5) 輻射溫度에 의한 部位別 適正表面溫度의 範圍는 바닥溫도와 壁體溫度의 조합으로 構成할 수 있다. 室温이 中性範圍일때, 輻射溫도의 許容 上限값은 17K이며, 壁體溫도의 下限값은 17℃, 바닥溫도의 範圍는 30.6~38.8℃가 된다.

(6) 유효온도(ET)와 수정유효온도(CET)에 따른 쾌적범위는 [그림 3, 4]과 같고, 季節別 快適基準 溫度는 暖房期 ET 19.6℃, CET 20.5℃ 冷房期 ET 22.7℃, CET 23.1℃이고 中間期는

ET 22.1℃, CET 22.0℃이다. 이때 平均 衣服量은, 暖房期 0.9 clo 冷房期 0.6 clo이며 代謝量은 全 季節을 통해 1.0 Met이다.

5. 앞으로의 전망

建築物에서 에너지 절약이란 現時代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확실한 근거도 없이, 에너지 절약이란 명분하에 環境의 質을 저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建築에서 패시브 시스템(Passive System)의 이용과 건축설비의 기술개발을 통하여 에너지절약을 도모하며, 동시에 環境의 質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이 추구하여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점점 室內空間에서 거주하는 時間이 증대되고, 아울러 環境에 대한 人間의 反應이 민감해지는 추세에 있어서 이에 관한 研究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관련논문】

1) 孫章烈 外: 某印刷工場檢査作業場內溫熱環境의 空間分布 및 評價, 日生氣誌 17 (2), 1980

2) 孔聖勳, 朴相東, 孫章烈: 住宅의 溫熱環境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第4卷 第1號, 1984年 4月

3) 尹龍鐵, 朴相東, 孫章烈: 輻射暖房時不均等輻射場이 溫熱感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第4號, 第2號 1984年 10月

4) ASHRAE: ASHRAE Hand book, Fundamentals, 8, 1985

5) ASHRAE: ASHRAE Standard 55-1981

建築用語에 대한 有感 3題

朴 淵 瑞

第1題. 建築士の「士」에 대한 有感

우리나라의 각 종 資格·免許에 대한 명칭을 보면 전문분야를 나타내는 名詞 아래에 士(技術士), 師(醫師), 員(看護員), 者(指定文化財修理技術者), 人(支配人) 등의 여러가지 語尾를 어떤 규정이나 기준없이 제각기 편리한 대로 붙이고 있으며, 이는 건축에 관한 자격 면허에서도 마찬가지로 建築士, 建築施工技術士, 建築技師, 建築製圖技能士, 指定文化財修理技術者, 指定文化財修理技能者 등에서 보는 바와같이 士, 師, 者 등의 語尾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는 建築士, 技術士, 稅務士, 公認會計士, 公認鑑定士, 公認中介士 등에서 보는 바와같이 「士」字의 語尾를 사용하는 명칭이 절대다수이고 그 다음으로 「師」字를 사용하는 명칭이 약간 있으며 員, 者, 人을 사용하는 명칭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국어사전을 보면 士, 師, 員, 者, 人에 대한 接尾語로서의 뜻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놓고 있다.

- 士-명사아래 붙어서 그 것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 師-그 일에 숙달하거나 전문적인 사람임을 나타내는 말.
- 員-어떠한 명사아래에 붙어 그 일에 관계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
- 者-명사아래 붙어 어떤 사람 또는 그 일에 능통한 사람이란 뜻을 나타내는 말.
- 人-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뜻을 나타내는 말.

위에 나열된 뜻을 보면 5개의 명칭에 대한 語尾의 차이를 느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員, 者, 人보다는 士, 師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마도 「士」와 「師」가 員, 者, 人보다는 훨씬 품위가 있

어 보이는 모양이다. 「員」은 원래는 한 고을의 수속을 칭하는 말이었으나 현대에 와서 최하위직 공무원의 職名語尾로 사용되면서 낮은 신분을 지칭하는 語感을 주고, 「者」는 국어사전의 뜻 그대로 사람을 가리켜 알잡아 이르는 말의 語感을 주며, 「人」은 너무 평범하고 포괄적인 대중을 지칭하는 語感을 주지만, 「士」는 士·農·工·商의 첫째인 선비의 신분을 지칭하는 語感을 주며, 「師」는 만인의 존경대상에 속하는 스승의 語感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士·師를 員, 者, 人보다 더 즐겨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士」와 「師」 중에서는 어렵고 걸끄러운 스승보다는 어질고 학식도 갖추었으며 유연해 보이는 선비가 더 보편적이기 때문에 「士」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언젠가 國家技術資格法의 立案에 참가한 담당자에게 왜 자격의 명칭을 技術士는 「士」字로, 技師는 「師」字를, 技能士는 다시 「士」字로 그 칭호의 語尾를 표시하였는가 하고 물었더니 특별한 뜻은 없고 단순히 칭호간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분한 것이라고 하였다.

아무려나, 資格·免許에 대한 制度는 士·農·工·商의 「工」·「商」과 일부의 「農」분야에 대하여만 있고, 「士」, 즉 선비들이 갖고 있던 학문에는 資格·免許에 대한 制度 자체가 없으며, 이들이 갖고 있던 학문을 오늘날에 계승하여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지칭할 때에도 「○○士」라는 표현 대신 「○○家」 또는 「○○者」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매우 아이러니컬한 현상이다.

“건설부장관의 免許를 받아 건축물의 設計 또는 工事監理 등의 업무를 행하는 자”로 建築士法에 정의되어 있는 建築士는 면허의 명칭 語尾를 「선비士」字를 사용하고 있는 말하자면 「건축선비」인 셈이다. 각종 資格·免許의 명칭어미에 그

적부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立案者들이 마구 「士」字를 사용하고 있어 선비의 품위가 들쭉날쭉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선비에 대한 뜻은 변함이 없으리라 본다. 옛날에는 건축이 단순히 住居할 곳을 세우는 것으로 끝났는지 모르지만 건축에 대한 門外漢인 筆者가 알기로도 오늘날의 건축은 종합적인 學門을 포괄하는 분야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는 都市와 農村의 건물들을 보면 우리나라 건축의 발전정도를 實感하게 되어 뿌듯하기 한량없으나, 한편으로 볼 때 한결같이 劃一的이고 외국 것과 닮은 건물형태의 無特徵, 마무리구조의 粗穢, 우리 고유의 美的인 감각의 不存化 등이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급속한 성장에 따르는 過渡期的인 현상이겠지만 옛 선비들이 아끼고 사랑하던 우리 고유의 건축형태 중 아름다운 것을 더 많이 되살려 現代建築에 보다 많이 살아 숨쉬도록 할 수 있는 第1의 사람은 누구일까. 명칭어미에 붙은 「士」字가 지닌 선비의 矜持가 「건축선비」들의 마음에 더 깊이, 그리고 더 크게 숨쉬기를 바라고 싶다.

第2題. 建築法規上の用語에 대한 有感

우리나라의 각종 法律들을 보면 부끄러운 애기이지만 같은 목적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웃 日本의 法律을 내용의 구성뿐만 아니라 用語·文章까지 그대로 引用 내지 模倣하여 制定된 것들이 상당수에 달하며, 심지어 어떤 것은 마치 同種의 日本法律을 그대로 번역하여 公布한 것 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法律도 소위 日本式 用語의 표현을 군데군데 引用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오늘날에 있어서 日本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선 나라이고, 또한 그네들의 실정이 우리와 같은 東洋圈이어서 유사성이 많기때문에 그 들의 것을 특히

많이 받아들일 수 있지도 않느냐고 한다면 그만이겠지만 그 인용이나 模倣의 정도도 보아 너무 지나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노파심인지는 모르지만 이는 日帝 35년의 被支配에 따른 從屬의 殘滓를 벗어나지 못한 결과가 크게 영향을 미친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여하간 우리의 制度를 短期間 내에 확립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그 들의 것을 引用하고 模倣하였더라도 우리의 表記法이 확립된 이상 하루 빨리 우리식의 表現法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筆者가 필요가 있어 建築法規를 둘러본 결과 建築法 역시 소위 日本式의 간재가 군데군데 눈에 띄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建築法 중의 어려운 전문용어는 문외한인筆者보다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여러분들이 더 잘알 것이므로 디피디즈가 가당치 않아 피하지만 일반적인 용어는 어떠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사용되는” 또는 “쓰이는”의 뜻을 나타내는 “供하는”이 언제까지 우리의 法律 속에 살아 숨쉬어야 하는가. 또 보자. “모르타르”가 언제까지 “몰탈”로서 표기되어 있어야 하는가. 外來語 表記에 대하여는 특히 亂脈을 이루고 있어 옳은 표현이 거의 없으며 심지어는 建築法, 建築法施行令, 建築法施行規則의 상호간에서도 표기가 각기 틀리고 있는 실정이다. 놀라운 것은 우연한 기회에 현재 시행 중인 建設部告示「자동차 셔터의 기준」을 보았더니 近年에 공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告示의 제목이「자동차 샷타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었다. 日本人들이 과거 한 때 “is that — ?”을 “이스 뎃도 — ?”로 角이 지게 발음하던 式의 외래어 표기가 버젓이 우리의 公式 文書에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는 이 수치심을 어디에다 감추어야 할 지 몰라 언짢은 기분을 금할 수가 없었다. 工業系 高等學校 教科書에 잘 표기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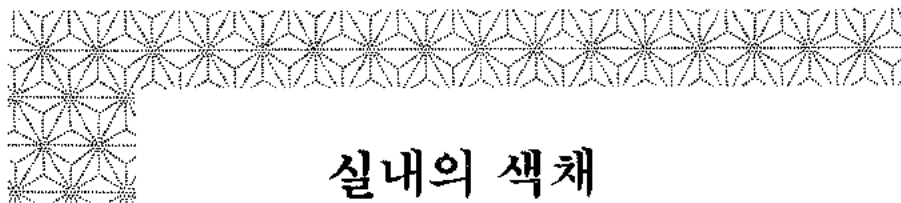
있는 우리의 標準用語와 外來語 表記은 고등학교에서만 사용토록 된 高校生 專用物이 아닐 것이다. 現在 施行 中인 建築法이 日帝 治下인 1934년에 制定된「朝鮮市街地計劃令」중에서 건축부분에 관한 法令을 참고로 하여 제정·공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工事現場에서는 日本式 用語가 더 활개를 치며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었거나 없다고 하더라도 한 나라의 法은 그 나라의 얼굴이다.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참다운 우리 얼굴로 다듬어야 할 義務가 있다. 따라서, 건축에 관한 우리의 얼굴은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建築人들이 책임지고 다듬어 내야 할 것이다. 建築法規를 올바르게 施行하고 施行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건축에 관한 우리의 얼굴을 다듬는 것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싶다.

第3題 「맨션」과 「빌라」에 대한 有感

大都市의 고급주택가인 新興開發地를 지나가다 보면 10년전만 해도 전연 생소하던「○○맨션」또는「○○맨션 아파트」, 「○○빌라」라고 쓰여진 住宅團地의 명칭이 자주 눈에 띄고 갈수록 그 빈도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말하자면 大邸宅形의 구조로 된 아파트(맨션: mansion), 큰 別莊式의 住宅(빌라: villa)이라는 뜻인 모양인데, 産業의 發展에 따라 소득이 높아지므로 인해서 생활의 향상으로 더욱 넓고, 고급스러우며, 인락한 住居空間을 갖고자 하는 인간의 欲求를 充足시켜 주기 위하여 생긴 것일 것이다. 그런데, 아파트가 아무리 크고 좋더라도 大邸宅이라는 뜻을 나타내는「맨션」이라는 用語가 과연 아파트 간판 용어로서 어울리며, 그것도 外來語로서 表現하여야만 멋이 있고 일반 아파트와의 구분을 그러한 表現으로서 지어 좋은 아파트에 산다는 것

을 誇示하여야만 하는가가 의문스럽다. 또, 住宅이 아무리 넓고 風致있게 꾸며졌더라도 大都市내에 있는 住宅에 큰 別莊이라는 뜻을 나타내는「빌라」라는 用語가 과연 住宅 간판 용어로서 어울리며, 「맨션」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外來語로서 表現하여야만 멋이 있고, 일반 住宅과의 구분도 그러한 表現으로서 지어 좋은 住宅에 산다는 것을 誇示하여야만 하는가도 역시 의문스럽다. 본시 邸宅이라는 말은 옛날에는 王侯將相들이 사는 집을 일컬었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규모가 아주 큰 집을 일컫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토끼장 모양의 아파트가 아무리 크고 좋더라도 邸宅이라는 表現에 어울릴까. 또, 別莊이라는 것은 시골이나 郊外의 경치 좋은 곳에 있는 것이 제격이지 아무리 넓고 風致있게 꾸며졌더라도 大都市내에 있는 住宅에 가당키나 한 表現인가. 실제로 大邸宅에 속하는 집은 大邸宅이라는 表示조차 하고 있지 않을 것이며 아담한 別莊에는 別莊이라는 表示가 눈을 땀고 봐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誇示欲이 人間 欲求의 버릴 수 없는 한 단면이므로 설사 그 欲求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表示를 하더라도 하필이면 外來語로 表示하여야만 직성이 풀리는가. 階層間的 위화감을 덜 주는 좋은 우리 말은 없는지 모르겠다.

住宅團地名에「맨션」이나「빌라」라는 表現을 사용하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던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남이야「맨션」이라고 쓰던「빌라」라고 쓰던 무슨 상관이나고 한다면 더 할 말이 없지만 國民階層間的 위화감을 직접 노출시키면서까지 그러한 表現을 써 시기심 많고 호기심 많은 인간의 欲求를 충동질 하는 알뜰한 商術이 눈에 보이듯 선하다. 아름다운 우리의 國民性과 우리말을 더욱더 가꾸고 다듬어 나가길 바라고 싶다.



실내의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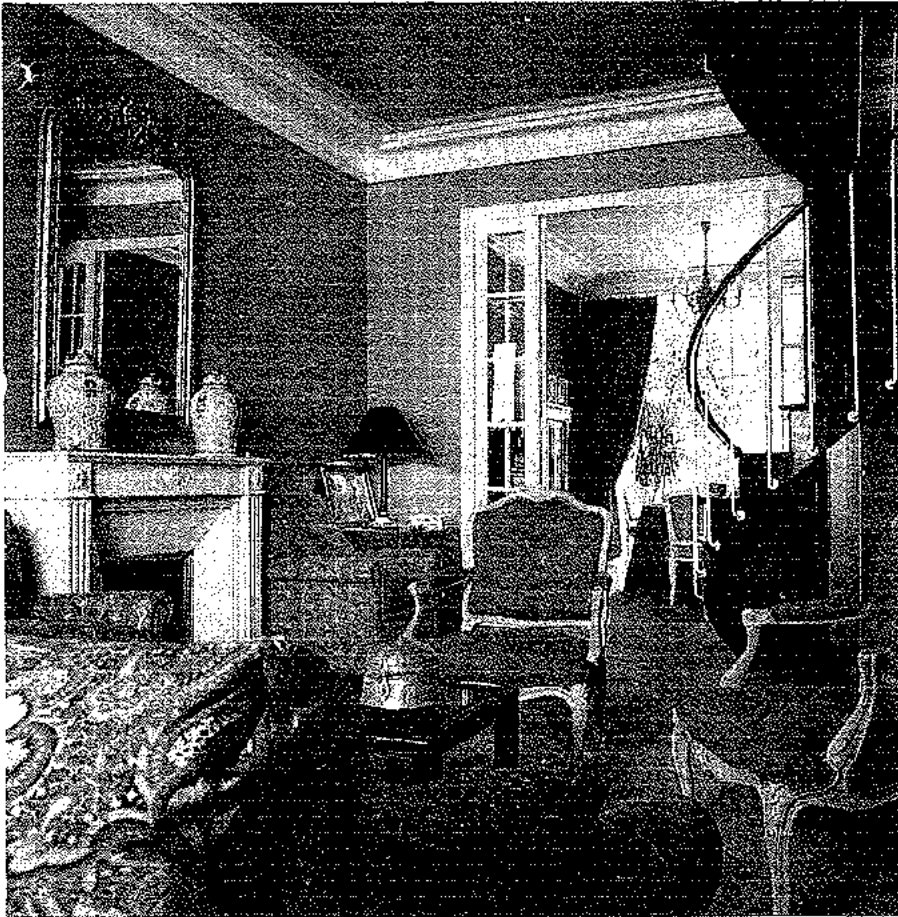
조 성 렬
큐빅디자인연구소 대표

주택건축의 인테리어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주택의 내장색은 최근에 와서 외장색 못지않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택내의 색채연출은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정서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서 거주인의 성격과 교양정도를 나타내 주기도 한다.

실내의 색채를 결정할 때에는 먼저 바닥, 벽, 천장과 같은 실내운곽의 전체색조를 결정한 뒤에 세부적인 배색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 실내의 색채는 사용색들의 통일, 조화, 안배에서 색의 연출효과가 생긴다.

실내의 색은 유채색 계열로 그 특징을 강조할 수도 있고 특별한 색감을 나타내지 않는 무채색 계열로 표현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실내는 무채색 계열로 느껴지는 엷은 색이 큰운곽으로 되어 왔으나 차츰 색의 개성미를 강조한 유채색 실내가 늘어가고 있다.



실내 분위기는 배색효과에 의해 쉽게 바뀌어지며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집칠을 다시하는 등 색채를 바꾸는 것으로 주택의 인상은 참신하게 바뀌게 된다.

색이 주는 의미는 미묘하고 큰 것이어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느낌이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인테리어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할 때가 종종있다.

실내의 색조를 어떤 방향으로 계획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선풍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주택의 실내에는 항상 사용하는 생활공간인 만큼 권태나 짜증, 싫증이 나지 않고 쾌적하고 능률적인 공간으로 꾸며져야 하기 때문이다.

주택의 실내에 적합한 색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평소에 색채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색의 속성 및 색의 온도감, 중량감, 거리감, 경연

감 등 색에 대한 시각적, 심리적 반응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실내의 색채는 그 방의 용도와 면적, 실내 조명 등을 고려하여 기본 배색에 들어가야 한다.

때때로 실내 배색에 의해 좁은 방이 넓게 보이기도 하고 어두운 방이 밝아지기도 한다.

작은 방은 밝고 연한색으로 벽을 칠했을 때 넓어 보이며 천장을 높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벽보다 밝은 색을 칠하는 등의 상식을 가지고 배색에 임하는 것이 좋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어두운 방의 밝은 노랑은 그것이 마치 햇빛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것이다.

실내에 있어서 색을 조화시킬 때 인근색 조화의 실내, 무채색 조화의 실내, 원색 조화의 실내, 보색 조화의 실내 등으

로 뚜렷한 성격을 가진 배색연출을 하면 개성적인 인테리어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색채조화의 효과가 생긴다.

주택에서 색은 전체인상으로서 또는 액센트의 일부로서 그 역할이 매우 크다. 주택 내외부의 색은 사용재료 자체에서부터 다양하게 나타난다. 벽돌이나 타일 그리고 돌의 경우도 재료의 질감보다는 우선 색으로서 나타난다.

주택에 사용된 재료의 색감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자연색이 나는 목재, 갈포지, 마직 등으로 마감된 실내에서는 일상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나 색감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러한 실내에서는 부분적으로 강조색을 쓰는 것이 좋다.

●안정감을 주는 인근색 조화

인근색으로 실내를 조화시키면 실내의 분위기를 쉽게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근색은 색상과 채도의 차가 적으므로 여러가지 색과, 서로 다른 몇가지 패턴을 혼용할 수 있으며 재료를 쉽게 선택할 수 있어서 좋다. 그러나 내장재, 커튼, 시트커버 같은 것이 가구, 장식물 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므로 주조색이 제한을 받게 된다. 커튼, 시트커버, 테이블보들은 계절별로 갈아쓸 수 있도록 몇벌 준비하여 인근색으로 배색하면 더욱 다양한 실내 분위기를 낼 수 있다.

실내를 인근색으로 조화시킬 때 특히 유의해야할 것은 채도의 차를 심하게 하지 말 것과 무채색을 적절히 배치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은은한 색조화의 안정된 실내 분위기의 유지와 개성적인 배색효과를 위해서이다.

이렇게 쾌적하고 능률적인 공간으로 꾸미기 위해서는 안정감을 주는 실내배색으로서 색의 가짓수를 줄이고 배경색을 중간색으로 하는데 착안하며, 주택에서 방마다 다른 색배합을 하게 되면 안

정감을 주지 못하므로 집 전체의 색을 통일시키면 싫증도 나지 않고 안정된 분위기를 얻을 수 있다.

●온화함을 주는 실내

실내에 들어섰을 때 우리는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이든 차츰 파악하게 되는 것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한 실내의 이미지를 느끼게 된다.

실내에 들어섰을 때 느끼는 첫 감상은 「집에 온 느낌」 「살 곳에 온 느낌」 같은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흔히 온화함을 주는 실내에서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 인간의 생활 공간으로서의 실내는 쓸쓸한 곳, 무표정한 돌의 이미지가 아닌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는 온화한 곳이어야 하는 것이다.

실내의 느낌이 따뜻한 것이 되도록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실내 색상에 착안해야 한다. 따뜻한 색으로 실내를 마감하고 온화한 색상의 가구집기를 배치함으로써 온화한 실내 분위기를 낼 수 있게 된다. 베이지색, 계란색, 오렌지색, 밤색, 붉은 색 등은 따뜻한 색들이다. 따뜻한 색 계열의 색상과 백색을 대비시킨 실내는 밝고 온화한 분위기를 내준다.

온화한 실내 분위기를 위해서 실내조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따뜻한 빛을 내는 백열등 조명과 따뜻한 색 커튼을 통해 투사된 자연채광은 실내를 온화하게 만들어 준다.

●배색효과가 돋보이는 실내

실내의 색조화는 많은 색들중에서 몇 가지의 한정된 주제를 선택하여 그것들을 적절히 구성하였을 때 생겨난다. 실내에 사용할 색의 수를 줄여야 다른 장식품과의 조화유지가 쉬우며 산만한 분위기가 생기지 않는다.

배색의 효과는 색채배합에 있어 어떤

색을 강조하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소파 또는 침대커버, 벽의 부분적인 면, 장식품 등에 액센트를 주면 활기가 넘치며 돋보이는 실내가 될 수 있다.

실내의 배색 계획은 그 방의 용도, 기능, 위치, 밝기, 조명 등을 고려하여 주조색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어울리는 강조색을 사용하는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보색조화

보색조화는 주택의 실내에 적용하기는 힘든 색조이나 앞선 시대 감각과 강한 변화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간에 적합한 배색이라고 하겠다. 보색대비는 전체 실내에 적용시키기는 힘들나 부분적인 곳에 배색을 하면 실내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회화적인 벽면구성, 공간 그라픽에는 보색조화의 효과가 높다.

보색의 배색효과는 특정색조의 실내보다도 더 강하기 때문에 전위적인 느낌을 주기도 한다.

보색대비의 대표적인 색은 적색과 초록색, 청색과 오렌지색이다. 색환을 따라 보색대비가 수없이 이루어지지만 위에 말한 두가지 원색조의 보색대비가 가장 강력하다.

보색대비의 실내에서도 완전히 보색관계만으로 색조화를 이루게 하지는 않는다. 보색대비가 주축이 된 실내에서도 흑색, 백색 등 채도차가 있는 색 등을 배치하여 실내의 안정감을 유지시켜야 한다.

●원색조화

개성적인 실내. 화려한 실내공간을 만들기 위해 원색을 실내에 적용하기도 한다. 원색조의 실내는 그 강렬한 색감으로 인하여 실내의 이미지가 뚜렷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원색조의 실내는 실내연출에 있어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원색이 배경으로 된 실내에서의 가구는 무채색 계열의 것이 쉽게 조화를 이룬다. 백색이나 점점의 가구가 대체로 잘 어울리게 되는 것이다.

원색조의 실내에서도 전체 실내의 색조를 이루는 주색과 장식의 포인트가 되는 대비색은 구분된다. 주색이 되는 색상은 실내의 큰 비중으로 존재하며 대비색은 장식효과를 위해 가미된다.

이때에 찬색 속의 따뜻한 색, 뜨거운 색 속의 찬색이 강렬한 원색대비를 이룬다. 차고 시원한 청색조의 실내에서는 빨강, 노랑 등의 뜨거운 색 대비가 효과적이다.

●적색과 백색의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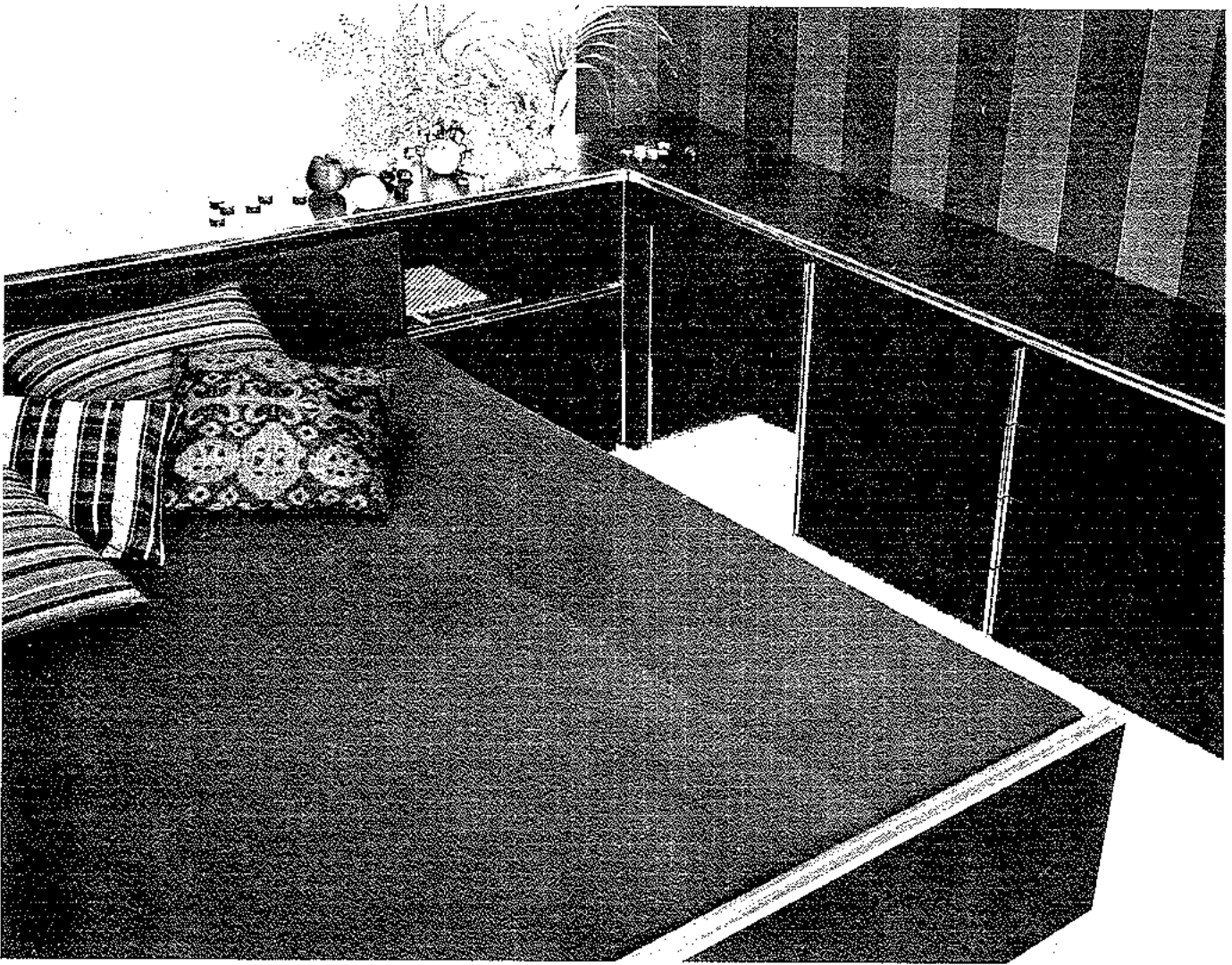
개성적인 실내를 만들기 위해 무채색인 흰색에 원색의 빨강을 대비시키면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게 된다.

또 적색조의 실내에서 백색의 장식문양을 대비시키거나 백색면을 안배시키면 실내의 특성이 강해진다. 즉 적색과 백색은 어느 경우에서나 서로 좋은 대비를 이룬다는 것이다. 적색이 강렬한 이미지를 풍기는 반면에 백색은 무채색의 극치로서 모든 색을 중화시켜 버린다. 적색과 백색의 관계는 면과 선, 문양과 면, 면 속의 레터링 등으로 대비되면 보다 세련미를 갖게 된다.

●적색을 포인트로 한 실내

아주 단순한 실내에서도 색이 주는 인상은 매우 강하여, 사소한 색의 배려가 실내를 풍부하고 이채롭게 해주기도 한다.

한가지 색으로 조화를 이룬 실내에 대비되는 다른 색을 포인트로 사용하는 것은 극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 바닥, 벽, 천장 그리고 가구가 주조를 이룬 어두운 실내에 빨강으로 된 전화받침대



든지 출입문 근처의 쓰레기통, 선반상의 장식초가 포인트를 이루면 실내의 긴장감과 주목을 집중시키는 파격을 가져다 준다.

이렇듯 실내에 흐르는 침묵은 작은 집하나, 가냘픈 한개의 선에 의해서도 깨어날 수 있는 것이다.

●특정 색조의 실내

특정한 색을 정하여 실내 전체에 적용시키는 경우는 일반성은 없지만 특별한 취미를 살리고 싶거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자 할 때 그 효과가 크다.

특정색을 정하여 실내장식을 할 때는 가능한 한 그 속의 모든 것들을 동일색

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색조의 실내에서는 한 가지 색으로 통일시키게 되므로 그 단조로움을 커버하려면 디자인과 패턴을 다양화해야 한다.

〈흰색〉

백색은 어느 색에나 잘 어울리므로 실내연출이 손쉬우나 더러움이 잘 타므로 청소하기 쉬운 재료를 선택한다.

백색의 실내는 시원한 느낌을 주나 너무 차고 딱딱한 느낌을 주므로 그 점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실내 조명을 백열등으로 한다.

〈적색〉

붉은 색조로 실내장식을 할 때는 안정되지 못한 분위기가 될 우려가 있기 때

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흰색, 회색, 검정의 무채색과 베이지, 크림색 등은 붉은 색을 돋보이고 안정되게 해 주며, 핑크 또는 오렌지색은 홍조의 실내에서 서로 조화될 수 있는 훌륭한 대비색이다.

〈노란색〉

노랑의 실내는 밝고 환하며 따뜻하고 명랑한 느낌을 주는 효과가 있다. 노랑을 실내에 사용하면 시각적인 온도감의 상승효과와 면적의 확대효과를 가져다 주는 이점이 있다.

〈청색〉

청색조의 실내에는 바다를 연상시켜 주는 색으로 시원하며 심오한 느낌을 주게 된다. 계절감을 고려하여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에 찬색 계통인 청색을 실내에

도입하는 것이 좋으며 햇빛이 잘 안드는 북향의 어두운 방 같은 곳에서는 삼가는 것이 좋다.

청색을 주색으로, 녹색을 보조색으로, 그리고 빨강과 핑크를 장식포인트로 각각 배색한다면 색감에 의해 생기에 넘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넓고 다소 허전해 보이는 방의 한벽을 어두운 청색으로 계획하면 그 방은 전보다 무게가 있는 방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원근감이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을 옅은 청색에서 점진적으로 짙어져 가는 청색으로 배치하면 깊이있는 실내가 된다.

〈무채색〉

흰색-회색-검정에 이르는 무채색을 주조로 한 실내에서는 가구의 커튼, 장식물이 화려하고 다양해도 조화를 쉽게 이룰 수 있다.

무채색조 실내의 단조로움을 커버하기 위해서 장식벽을 강렬한 배색으로 한다든지 바닥과 천장의 마감재를 달리하거나 바닥과 가구를 구분시킨다. 이때에 주의할 것은 서로 다른 색조의 연결부분을 깨끗이 처리해야 하는 일이다.

무채색조의 실내 디자인은 멋과 격조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복고조의 색채

복고조 실내의 특성은 실내색 한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인테리어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가 복고풍으로 적용됨으로써 완성된다.

복고조의 실내 색조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칙칙하고 탁하며 바랜색을 일부러 만들어 내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가리앉은 화려한 색을 쓰는 경우이다. 전자는 실내의 선과 가구들이 원목질감을 내는 경우가 많으며, 후자는 실내의 선을 밝은 베이지색 등으로 살린다.

●은빛으로 꾸민 실내

금빛, 은빛하는 것은 귀금속의 빛을

뻗 색상을 일컫는 말로서 먼저 화려한 것을 연상하게 된다. 그러나 인테리어 디자인의 재료로 쓰여지는 금과 은은 비철금속에 금도금, 은도금을 한 정도의 것에 지나지 않으며 난간, 가구의 장식, 조명기구등 실내의 특정한 부분에만 쓰여지고 있다. 건축사를 보면 궁전, 왕실, 무도회장같은 화려한 실내에 금과 은 장식을 많이 썼던 것을 알 수 있다.

은빛의 현대적 개념은 중세기의 그것과 다른 것인데, 은빛을 내는 실내 마감재료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용도의 제한성이 없고 넓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은빛 내장재는 인쇄된 종이 벽지, 알루미늄 판재, 은도금 판재, 멜라민 수지판, 은빛 섬유, 은빛 비닐제품 등이 있다.

은빛 내장재의 색상을 보면 크롬 도금의 광택판, 반광택 은빛의 알루미늄, 은사로 짠 섬유의 질감, 은분 도장판, 순은색 도금판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순은색 도금판이 가장 깊은 맛을 내는 은빛이라고 할 수 있다.

은빛으로 꾸민 실내에서도 대비색을 적절하게 씌으로써 은빛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다. 백색, 흑색, 적색, 청색은 은빛의 좋은 대비색이다.

●조명에 따른 실내색

실내의 색채를 계획할 때에는 광원에 따라 색이 달라져 보이기 때문에 조명을 고려해야 한다. 백열전구는 황색에 가까운 빛을 내며 형광등은 푸른색에 가까운 빛을 낸다. 색채 계획을 할 때는 자연광선이나 조명 광원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시험해 보고 배색에 임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백열등과 형광등은 실내 색조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조명원이다. 형광등은 조도가 높으나 태양빛 반응과 큰 차이가 생겨 색상조명에는 부적당하다.

실내 공간이 따뜻하고 정감이 흐르게 하려면 백열등 조명을 해야 한다. 백열

등 조명원은 천과 종이의 등갓에 투과되면 더욱 온화한 빛을 낸다.

●색입체의 실내연출

면과 입체의 차는 실제보다 시각반응으로 느끼는 것이 훨씬 크다.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는 유한적인 것으로 인식되며 그것은 곧 입체적인 것이다.

실내 배색에 있어서 용적감을 높이고 뚜렷한 입체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색입체 효과를 도입한다. 색입체는 색으로 나타나는 면을 대비시켜 각각 다른 면의 존재를 확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표현한다. 즉 실내의 네 벽면이 이어진 것이지만 색상차를 두어 분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런 경우 색대비 효과가 좋은 초록과 노랑, 브라운색과 오렌지색, 파랑과 노랑 등으로 배색이 되면 색입체의 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색입체의 효과는 면과 선, 선으로 형성된 입체의 배색에서도 생길 수 있다. 색입체를 위한 대비색으로서 가장 강렬한 것은 흑과 백이다.

인테리어디자인은 일상생활의 변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패션과같이 빠르게 달라져 가고 있다. 인테리어디자이너는 실내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과학을 도입하는가 하면 감성적 실내 분위기를 위해 새로운 디자인, 재료의 개발 등으로 기존 패턴을 깨고 대담한 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동안 본 란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인의 입문, 디자인의 요소, 디자인의 원리, 기능별 실내의 특성에 따른 연출 등 인테리어 디자인의 일반론과 작론을 연재하였다. 이 란의 의도가 소기의 성과를 조금이라도 거두었기를 바라며 앞으로 다른 기회가 있을 때에 보다 긴요한 정보와 디자인의 케이스 스터디 등을 통하여 건축과 인테리어 디자인의 코오디네이트 및 응용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원고가 게재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한국현대건축의 양식분류를 위한

시론

김 경 수
(명지대 건축공학과 교수)

I. 변화와 흐름

제3 공화국으로부터 현재의 제5 공화국까지 약 25년간의 한국건축의 상황을 양식분류를 통해 정리해 보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그것을 현대라고 규정할 수 있든 없든간에 이 시기는 우리의 주변에서 구체적인 사료로서 또한 우리의 나날의 일부를 구성하면서 살아있는 것이다. 현재 생존해 있는 많은 건축계 인사들의 업적과 자취로서 이 기간은 우리의 현재를 비추주고 있으며 또 우리의 미래를 한정하기도 한다. 우리들 자신이 깊이 연루되어 있는 한국건축의 현대사가 정통한 역사로서 정립되기 위해서는 이 시기를 연구하는 인력과 사료의 정리 및 누적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야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정리작업에는 반드시 일정한 수준의 이론 내지는 분류의 틀이 필요하다.

현재란 항상 무한대의 자료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으로서 모든 이론체계를 배제한 순수한 사료란 불가능하다.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일단 최근의 수많은 건축물들 중에서 일정수의 작품을 선정해내는 일 그 자체가 하나의 건축관이나 이론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증적인 자료의 수집·정리와 가설적인 거시적 조망 및 분류작업은 선후를 가리기 보다는 서로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역사 서술의 어느 단계에서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한국 현대건축의 여러 경향들을 분류·기술하고 그 의미를 파악해 보려는 시도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60년대 이래 한국건축의 여러 양태들을 통해서, 형태와 의미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양식론적 틀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나가는 작업이기도 하다.

여기서 그러한 형식분류와 해석이 단

순히 형태나 인상에 관심을 국한시키게 된다는 비판을 생각해 보자. 건축의 의미와 가치가 구체적인 건축물의 이면이나 바깥에 존재한다는 외재론자의 입장에서는 건축물의 형태란 그러한 외적 힘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로서 나온 것일 뿐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을 수 없다. 마르크스주의 비평가나 프로이트를 신봉하는 입장이 그 예가 된다. 건축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적 제 역학관계들을 통해서만, 또는 건축가나 건축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잠재의식에 숨어있는 힘들을 통해서만 그 의미가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들이 일말의 진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축물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설명해 주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무력하다는 사실은 영국의 철학자 로저 스크러튼이 그의 저서〈건축미학〉¹⁾ 및〈미적 이해〉²⁾ 등에서 잘 드러내 놓고 있다. 물론 스크러튼이 견지하고 있는 보수주의적 정치철학과 그로부터 연유하는 서구의 고전주의 건축양식에 대한 옹호를 그대로 우리의 처지에 대입해서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고 있는 인간의 문화적세계—인위적 질서가 인간의 자연스런 질서로서 정착되는 전통이 존중되고 사회의 공유가치, 공동문화가 확보되는 사회—는 외세와 급격한 산업화의 격변속에서 우리가 잃어온 것들의 가치를 되새기는 데에 충분한 계기를 제공해 준다. 어찌 되었든 내부의 기능 또는 문제해결 과정의 끝에 건축의 형태가 따라오게 된다는 기능주의적 건축개념으로는 형태나 외관이 갖는 의미를 밝혀주지 못할 뿐 아니라 서구 근대 건축이 그러했듯이 인간의 건축환경을 역사와 전통이 탈색된 삭막한 것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다.

II. 양식론 : 합리와 낭만의 스펙트럼

한국의 현대건축을 그 양식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그 속에 양식이라고 부를 만한 흐름들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작가의 개인적 양식이건 한 집단 또는 시기의 교의와 형식의 체계로서의 양식이건, 건축의 양식이란 어느정도 일관성과 의미를 갖는 형식 원리 및 모티프들의 체계라 할 것이다. 또한 양식은

그러한 형식 및 요소들의 반복과 창의적 사용이 그 사회의 어느 계층이 갖는 규범 또는 세계관과 얽혀서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드러내 주는 것이어야 한다. 때로 작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공유하여 그 속에 살면서 별로 의식함이 없이 그에 따른 양식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건축사상의 주요한 양식들은 그렇게 자연발생에 가까운 생성 발전과정을 보여왔다. 건축가들이 의식적인 주의주장들으로써 집단적 운동의 형태로 건축양식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은 실상 근세이후의 일이다. 특히 낭만주의 미학의 영향을 깊게 받은 근대운동가들에 이르러서 건축은 기존의 삶의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미래의 생활양식을 담을 새로운 건축양식(그들의 주장으로는 反양식)을 의식적으로 탄생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건축양식의 전개에 건축가 개인의 의식을 전제조건으로 날아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건축가의 작업방식은 각각 특유의 성격을 지닐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건축가는 자신의 기질과 능력의 방향을 따라 자신에게 가장 편하고 의미로운 작업과정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관이 우세한 작가라면 자신의 작품을 많은 말로 설명하기 보다는 제삼자의 질문에 적절히 성실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 그러한 반응과 작품이 갖는 특성이 서로 유의미하게 연결되는가 여부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이 (또는 작가가) 양식을 갖는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칙론이다. 우리의 현실은 건축가들의 더욱 활발한 자작비평과 발언이 필요한 단계로 본다. 많은 경우 자기작품에 대한 침묵이 뚜렷한 건축적 관점에 의한 작업과정이 결여된 결과이거나 자신의 건축적 전체에 대해 책임지기를 귀찮아하는 데에서 취하는 태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시대의 이념들간의 대립으로부터 건축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건축양식의 분류도 그러한 이념체계를 도외시킬 수 없을 것이다. 19세기의 리얼리즘의 등장을 관념론 및 낭만주의와의 대비로 분석하는 학자²⁾도 있거니와 건축에 있어서도 대체로 그러한 분류를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획학의 이념적 배경을 자본주의 진영

의 관념론과 사회주의 진영의 마르크스주의 유물론으로 나누고 관념론적 계획이론을 다시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로 나누는 그리스의 건축가 마리오스 카미스의 방식³⁾이 그럴 듯하다. 이때 이들 세 부류의 세계인식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며 현재로서는 그들 사이에는 거의 절충의 가망이 없다. 이 세 종류의 기본관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합리적 관념론(객관주의) → 보수주의: 질서와 위계가 세계를 보는 근본 개념이며 합리주의적 건축미학에 연결된다.

2. 비합리적 관념론(주관주의) → 자유주의: 자유와 개혁을 통해 세계의 진보를 추진하며 낭만주의적 건축 미학과 관련.

3. 유물론(마르크스주의) → 사회주의: 모순과 계급을 의식하고 투쟁으로써 이상을 추구하는 反건축미학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추상적 수준의 구분이 건축의 여러 경향들 속에 단순화된 형태로 직역되지는 않는다. 그 기본적인 관점들이 서로 얹히고 때로는 혼동된 채로 다양한 건축적 흐름들로 드러나기 때문에 실상 이렇게 원초적인 분류에 간단히 포섭될 수 있는 작품이란 극소수의 예외가 되기 마련이다. 이제 구체적인 한국현대건축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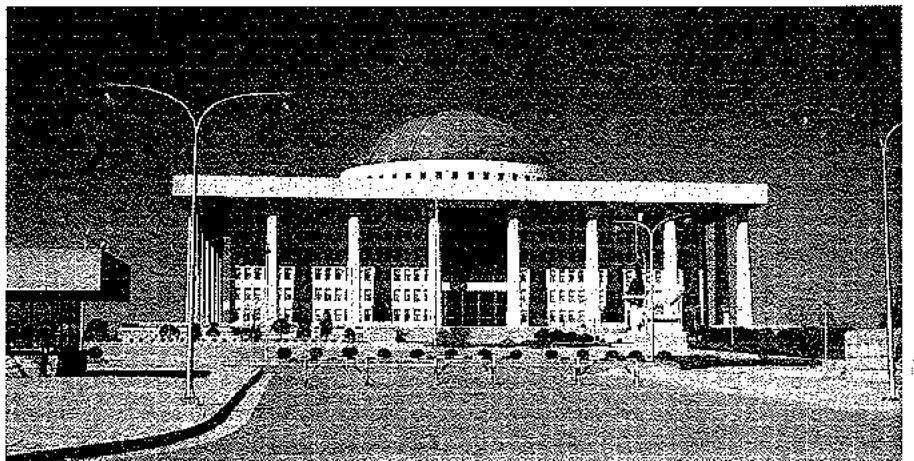
(*가 붙은 것은 미담사 건물임. 공간지 8402의 연표를 참조할 것.)

III. 합리주의적 건축

합리란 이성에의 합치를 말한다. 합리주의는 이성이 수증할 수 있는 질서와 조화를 이 세계의 원리로 파악하며 또한

그러한 질서를 따라 건축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려 한다. 감정의 가변성과 불확실성에 대해 불신하면서 명료하고 정밀한 체계속에 안정된 세계관을 견지한다. 고전적 합리주의가 추구하는 명증성은 수학과 기하학에서 그 모범을 찾는다. 가장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완전성은 기하학적 질서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서구건축의 유구한 맥으로서 이어져 온 고전주의 건축의 체계가 전체에 온 비례론이나 조화의 법칙, 형식미의 원리들은 모두 그러한 관점으로부터 발생된 것이다. 고전주의 건축은 형식과 외관이 우주와 인간의 질서를 함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설계에는 엄격한 규준과 문법에 대한 지식이 전제가 된다. 그 속에서는 “올고, 그른” 양식에 대한 판단이 있게 되며 형태가 갖는 의미에 대해 서로 소통가능한 해독법이 교육된다. 보자르의 교육체제는 바로 그러한 고전적 건축교육의 전형으로서 영국과 일본을 거쳐 우리에게도 일부 전달되었다. 설계의 원리로서 가르쳐지는 균제나 절제 등의 형식적 규칙들은 고전적 규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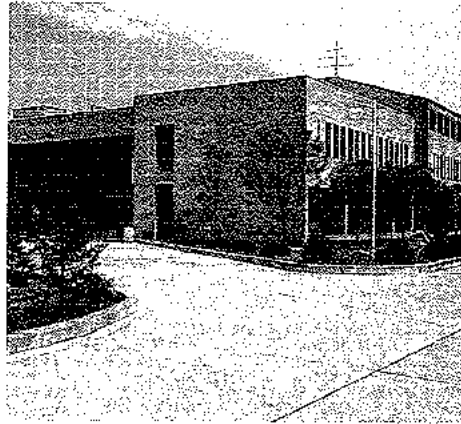
외관과 형식보다는 건축의 내용 측면에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기능적 합리성, 기술적 합리성 등을 추구했던 근대건축과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19세기 말의 리얼리즘⁴⁾ 건축 등에 있어서는 이성이 찾아내야 할 질서가 당대의 현실(reality)에 있음을 강조한다. 이들은 건축가가 대결해야 할 문제들이 그 시대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특히 물질적 제조건들이 부여하는 현실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던 것이다. 근대건축이 나치에 의해 좌익의 세력으로 타기되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유물적 입장과 관련되었



III-1. 고전주의적 합리주의 / 국회의사당 (김정수 외)

던 것이다. 실상 이러한 리얼리즘은 어떤 뚜렷한 양식을 제시한다기 보다는 기존의 양식이 현실에 부적절함을 비판하는 반양식적 경향을 띠게 되며 좀더 극단화 시킬 경우 반미학적 건축으로 귀결된다. 근대건축사의 서술들속에서 이들 근대건축가들이 합리주의자들로 명명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합리”라는 말이 어느 정도로 하나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서 쓰여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인간의 “합리” 또는 이성의 기준이 무상하게 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여기서는 건축의 양식들을 분류하기 위한 근거를 논하고 있으므로 반미학주의의 건축도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적 형태들을 특성화시켜 보면서 일정한 경향을 갖는 양식으로서 분류해 보려는 것이다. 주지하다싶이 그로피우스 자신은 바우하우스 운동이 하나의 양식으로 고착되는 것을 거부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건축은 근대운동의 한 시대를 보여주는 추상적 양식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작가들의 신념과 주장으로서의 주의와 그들의 작업결과로서의 건축물의 양식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따를 수 있는 것이며, 이 점에서 양식분류는 건축가의 의도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합리주의 건축은 위의 두가지 방향을 포괄하여 분류되는 것이 낭만주의 건축과 대비하여 우리의 이해를 선명히 해 줄 것으로 보인다. 즉 고전주의적 합리주의와 근대주의적 합리주의로 대별하고 그로부터 분파되는 여러 경향들을 조망해 보는 것이 간결하다. 왜냐하면 유물론적 경향의 반미학주의 그 자체는 건축의 형태문제를 무의미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런 주장이 그대로 하나의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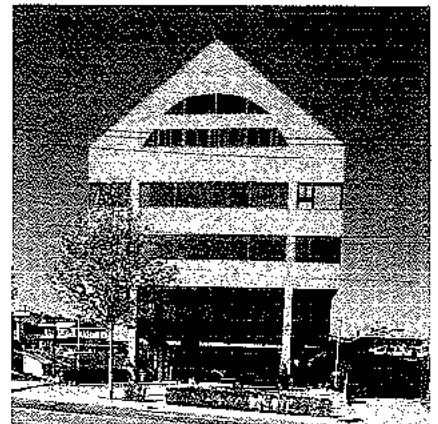
IV-2. 빛과 침묵의 양식
한일은행종합연구소원 (원도시)

으로 번역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입장은 그 주장 보다도 드러난 결과로서의 건축형식에 주목하여 양식분류를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1. 고전주의적 합리주의

고전주의는 양식이 아니고 규제원리라고 보는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여기서는 일단 서구 고전주의 건축의 몇 가지 양식요소들을 근거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법(Order)이나 비례분석, 시각교정 등의 근본 원리를 추구한 작품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대칭성을 고수하고 열주의 질서를 강조하거나 기단·몸체·지붕의 3부구성을 의식한 것 등은 사무소건축 등에서도 나타난다. 열주의 기념성을 과장하여 권위나 위엄을 표현하는 관료적 성격이 극대화되는 경우 나치독일이나 재국주의시대 일본의 전체주의적 양식(동경전물회관 1941)에 근접하게 된다.

1-1. 고전적 질서의 추구(추상화) : 국립극장, 부산시립박물관(이희태), 연세대중앙도서관(김정수), 명지대 명진당



IV-3. 탈근대적고전주의
주제 / 한 빌딩 (유원재)

(최춘환)

1-2. 관료적 고전주의(전통과 위엄) : 세종문화회관(엄덕문), 국회의사당(김정수 외), *세종대왕기념관(송민구)

1-3. 고전절충의 형식주의 : 강원대 중앙도서관(오웅석), 서울대법률도서관(신원건축), 예식장 백악관 등

1-4. 근대형식의 고전주의 : 삼일빌딩(김중업), 대한화재해상보험 사옥, 태평양건설 사옥(원도시건축), 고대과학도서관, 충남대도서관, 증권거래소(이승우), *국립중앙도서관(위형복)

2. 근대주의적 합리주의

이들의 합리성의 기준은 당대의 현실적합성 여부에 달려있다. 주로 경제적·물질적 현실을 중시하기 때문에 형식 자체는 자유롭다고 할 수 있으나 그들의 반미학에도 불구하고 양식화의 경향을 보인다. 초기에는 커튼월을 중심으로 한 국제양식과 미적인 자의식을 절제한 실용주의(무장식 면구성)를 보였고 극소 추상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2-1. 실용주의(반미학) : 과학원(이승우), 배재빌딩(안영배), 동방빌딩(1974, 박춘명), 서울대학생회관(원정수), 위례상고(황일인), 고대구로병원(정립건축), 과천·개포·고덕도서관(주택공사)

2-2. 커튼월 주제 국제양식: YMCA(김정수), 조흥은행 본점(이천승 외), 코리아호텔(박춘명), 삼일빌딩(김중업), 효성재 2 빌딩·동성빌딩·대우문화센터·대우증권(김중성)

2-3. 콘크리트투벽 주재 : 서부역사, 서울대중앙도서관(이승우), 육사우당도서관(김중성)

2-4. 극소 추상 경향: 서울대 강당(이승우), 산업은행 삼척지점(김기석),



III-2. 근대주의적 합리주의 /
대우증권사옥(김중성)



IV-1. 후기근대적양식 / 한국
개발연구원 국제연수관(정립)

IV. 합리와 낭만의 사이

고전주의, 근대주의, 낭만주의의 특성들을 동시에 보여주거나 어느 하나를 극대화시켜 본래의 의미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가고 있다. 때로는 표피적인 유희로 끝나기도 하나 특히 1980년대에 들어와서 젊은 건축가들의 활발한 시도가 드러나고 있다.

1. 후기 근대적양식(기술표현)

교보빌딩, 영등포 신세계백화점(김창수), *홍성상호신용금고(이상현), 한일은행 본점(원도시), 목포시청사, 상업은행동래지점 전북대도서관(김기웅), *국민은행전산본부(공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연수관, MBC여의도 스튜디오, 창원새마을회관, 한국은행 인천·울산지점(정림), 부산고속터미널, 대한생명 63, 건축사협회관(송광섭), *자하빌딩(공간) 보루네오가구 종합전시장(김원)

2. 빛과 침묵의 양식(킨의 영향?)

한일은행 종합연수원(원도시), 충북대 공학교육관·농학(홍순인), 경상대 교양학관(최관영), 울산대 교수연구동, 사랑의 교회(황일인), 인구보건연구원(우경국), 상명여대 본관(김기석)

3. 탈근대적 고전의 주제

한양대 박물관(이해성), 울산대 문수관(황일인), 한빌딩(유원재), 삼운빌딩, 이화여대 중앙도서관(정림)

4. 탈근대적 질층과 공간

피닉스호텔, 태능국제사격장, 성대수원 학생회관·도서관, 수원 한인 컨트리클럽(원도시), 한국은행 강릉지점(원정수), 한국은행 청주지점(김기웅), 강릉대 정문(엄이), *용평휴양시설(김관욱), 성불수녀원·성당(김원)

5. 낭만적 근대주의(?)

신화빌딩, 두손화랑, 온양 민속박물관, 조인자빌딩, 가든테라스(김석철), 경상대 교수학생회관(황일인)

V. 낭만주의적 건축⁶⁾

합리주의가 정적인 질서체계를 지향한다고 하면 낭만주의는 反체제적이며 역동적 성격을 강조한다. 논리와 분석으로 다할 수 없는 신비와 무한의 세계, 불확실하고 모호하며 기록이 심한 과정의 일

부로서 끊임없이 유동하고 있는 운동과 변화가 인간의 조건이라고 본다. 지성과 대비되는 감정의 표현 또는 유발이 조형의 주요목표가 되며, 분할되지 않는 연속체로서 구상되는 작품의 소재로 환상과 미지의 것들이 동원되기도 한다. 꿈, 자연, 역사의 기억, 이국적이고 피기한 것 등 모든 다양한 요소들이 도입된다. 문법이나 규칙보다는 개인의 특수한 것, 독창적인 것을 강조하며 천재의 영감을 본받아 직관을 보다 소중한 것으로 여긴다.

계획에 있어서의 합리주의가 이성의 보편성을 토대로 대안들의 선택에 객관적인 선택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는데 반해, 낭만주의자는 근본적으로 주관주의를 견지하면서 객관주의의 독단성 및 한계를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체제에서 소외된 계층과 부합되는 상대주의를 강조하면서 인도주의적 입장을 표방하기도 하나 극단화할 경우 부정부주의에 귀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이 구체적인 건축형식으로 반영되는 경로는 합리주의에 대해 반명제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바 근제보다는 역동성을 드러내며 불분명한 윤곽과 공간의 유동 및 관입등의 방법을 쓴다. 부정형과 곡선(비기하학적인)을 즐겨 사용하며 대중의 기억이나 연상작용을 노려 과거 역사적 건축형식이나 이국적인 요소들을 끌어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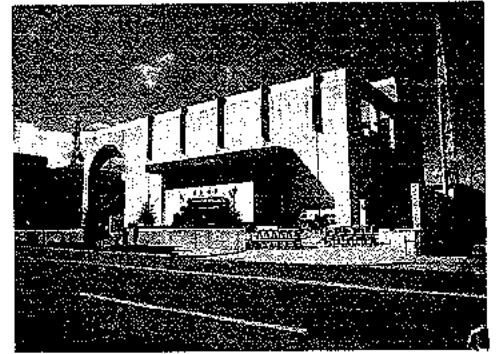
1. 개성과 형식의 추구

개인의 자유와 환상을 추구하는 낭만주의자는 모든 기존의 조형에 대해 대립의 자세를 취하면서 최초의 것, 유일한 것을 그리려 한다. 이 경우 주위의 문맥은 거부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기 쉬우며 기존의 건물들과는 과격하게 대조되거나 소외된 모습으로 고립되기도 한다. 때로 정서에 호소하는 표현성이 극대화되어 피기한 형태를 보여주는 예도 있다.

1-1. 표현주의: 도큐호텔, 쇼핑센터 태양의 집, 교육개발원 신관, *이강홍덕(김중업), 경동교회(김수근), 이화여대 과학관(정림)

1-2. 조소적 조형: 자유센터, *위커힐 힐담바(김수근), 제주대 본관(김중업), 구 서울공대도서관(김희춘), 대구 종합문화예술회관(김인호)

1-3. 브루탈리즘: 한국일보사옥, *광



IV-4. 탈근대적 질층과 공간 / 한국은행강릉지점(원정수)



IV-5. 낭만적 근대주의 / 한양가든 테라스(김석철)



V-1. 개성과 형식의 추구 / 쇼핑센터 태양의 집(김중업)



V-2. 역사와 전통, 지역성의 암시 / 한국미술관(김중업)



V-3. 자연과 인간적 규모 / 상명여대남관(김기석)

명시청사(김수근), 수운회관(정인국), 일신제강(정림), *에너지관리공단(엄이)

1-4. 감각·형식주의 : *타워호텔해피홀(김수근), 연세대학생회관(김정수), 강남고속터미널, 형주빌딩(이강식), 장충동SD빌딩, 예수성심성당(강석원), 미래내설령탑집(조성렬), 반포성당(유희준), 중앙대 영신기념관(김호)

2. 역사와 전통·지역성의 압시

근대건축의 반역사주의와 보편성을 추구하는 국제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도시 환경은 낭만주의자들에게는 모든 추함의 전형으로 보인다. 과거의 것에 대한 향수와 동경은 역사주의 내지는 복고주의로 나타나며, 민족과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지역주의·리얼리즘은 합리주의와 연결되기도 한다.

2-1. 역사주의(현재의 재료를 통한 변형) : 불란서대사관, 한국미술관(김중업), 부여박물관, 진주박물관(김수근), 경주박물관(이희태), 정신문화연구원(김회춘), *충무공기념관(장석웅), 전주 시청(김기웅), 동국대 경주분교 도서관, 인문관, 기숙사(김인석)

2-2. 복고주의 : 서울여성본관(조승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묘지 현충관 관리사무소(강봉진), 한국의집, 반도조선 아케이드 정문(장기인), 전주역사(신무성), 전주 공설운동장(엄이)

2-3. 지역주의 : 서울 가든호텔(황일인),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목포 향토문화관(김홍식)

3. 자연과 인간적 규모

거대하고 살벌한 도시에 대하여 아늑하고 인간적인 것, 작은 것, 자연적인 것에 대한 찬미가 대두된다. 작은 것들의 모임으로서 복합적인 구성을 이루며 내외부공간의 자유로운 연결 등 공간의 연출이 다양하다. 조적조의 형식을 주로 활용하며 때로 벽돌에 의한 표피적인 장식화에 그치는 경우도 있고 로마네스크적인 고풍을 드러내기도 한다.

3-1. 벽돌의 양피구성 또는 형식화 : 백상기념관, 출이회관, 길목전시관, 박달빌딩, 우리마당연작, 상명여대 남관(김기석), 충북대 사회과학관, 출판문화회관(홍순인), 석탈(류광홍), 오감도(문신규), 찻집 애플(송광섭) 등, 한강교회(김원), 미술회관, 지방행정회관, 샘터사옥(김수근), *엄이건축사옥(엄이), 전

주 서문교회, 정동제1감리교회, 모토로라 새마을회관(정림), 연동교회(한정섭), 성북동 천주교회(홍철수)

3-2. 유기적 공간구성 : 서울대 예술관, 공간사옥, 수포소공원(김수근), 울산대학회관, 반월공단복지회관(황일인), 중앙대 안성학생식당(공일근), 한국은행 인천연수원, 성대 수원 학생회관(원도시), 외환은행 제2합숙소(김기웅), 통도사 컨트리클럽(엄태우)

Ⅶ. 양식의 복합과 생성

합리와 낭만의 양극을 설정하고 그 사이에 여러 경향들이 자리잡도록 하려할 때 항상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는 작품들이 등장하게 된다. 그러한 이탈의 빈도가 높아질 때 하나의 새로운 양식 또는 기존양식의 위대한 종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포착하게 될 수도 있다. 뮐러의 이래 건축양식론에 있어 이원적 주기를 받아들인 여러 건축가들은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 사이의 주기적 변동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법칙으로서 받아들이고 그에 의해 현재를 진단하려 하였다.²⁾ 그러나 본고의 합리와 낭만의 양분법은 그러한 법칙론적 역사관과는 무관하게 현재의 건축적 상황을 기술하기 위한 도구로서 채용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류는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정밀한 범주로서 확립되기 이전 단계의 개괄성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세부분석이 진행되면서 보다 엄밀하고 명확한 양식의 명칭으로 정립되기를 기대하게 된다. 그것이 단순한 명목상의 분류로 그치지 않고 건축가의 작업과정 속에 작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참조틀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문제작들이 탄생되고 우리의 건축가들이 더욱 분명하게 자신의 건축적 입장과 설계개념을 드러내는 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주】 1) Roger Scruton(1979), <The Aesthetics of Architecture>, Methuen & Co. 런던, 김경수역(1985) <건축미학> 서광사

2) Roger Scruton(1983), <The Aesthetic Understanding>, Methuen, 런던·뉴욕

3) Jan Bruck(1982), <From Aristotelean Mimesis to 'Bourgeois' Realism>, <Poetics> 11(1982), pp.189~202

4) Marios Camhis(1979) <Planning Theory and Philosophy>, Tavistock Publications, 런던·뉴욕

5) Linda Nochlin(1971) <Realism> pp.209~247

6) <건축과 환경> 8508의 <건축적 낭만주의> 특집을 참조할 것

7) 김경수(1983) <건축사 및 비평의 과학성 문제에 관한 고찰 : 역사주의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공간> 8303, pp.81~87

新刊案内

'85 改訂版

要約 建築諸法規
解説

蔣東燦 編著
技文堂 發行
定價 9,000원

建築設備의 基礎

1

최근들어 건축물이 고밀화·고급화됨에 따라 건물을 설계할 때, 건축계획뿐만 아니라 設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보다 質이 좋은 생활 공간, 쾌적한 거주환경을 설계하기 위하여 건축 설계자로서 알아야 할 建築設備의 기초사항에 대하여 몇회에 걸쳐 소개 할 예정이다.

金 信 道

서울市立大學·助教授·工博

I. 空氣調和의 개요 및 기초사항

1. 공기조화의 개요

1. 1 空氣調和의 의의 및 대상

空氣調和(Air Conditioning)란 室内的 溫度, 濕度, 氣流, 清淨度를 조절하여 거주자의 생활 또는 물품의 생산·보관등에 알맞게 室内環境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室内을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는 것을 暖房, 冷却시키는 것을 冷房이라 하여 空氣調和와 구별할 수 있다.

(1) 溫度조정: 실내의 공기를 냉각 또는 가열하여 일정하게 한다.

(2) 濕度조정: 실내의 공기를 가습 또는 제습을 하여 공기중의 수분함유량을 조절한다.

(3) 氣流: 溫·濕도를 일정하게 조정 한 공기를 실내에 균일하게 분배하고, 그 상태를 유지한다. 기류속도가 빠르면 인체는 냉감을 느끼고, 느리면 침체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실내의 기류는 0.12~0.25m/sec 정도가 적합하다.

(4) 清淨度: 공기중에 부유분진(먼지), 담배연기, CO_2 나 CO 등 유해가스, 냄새, 세균등을 제거하여 室内공기를 허용농도 이하로 유지시킨다.

〈표 1-1〉은 건축법에 규정된 공기조화시 실내청정도를 나타낸다.

〈표 1-1〉 공기조화시 실내청정도

구 분	기 준
부유미립자	공기 1m ³ 에 0.15 mg 이하
Co 가스함유량	10ppm 이하
Co ₂ 가스함유량	1000ppm 이하
상대습도	40~70%
기류속도	0.5m/sec 이하

이러한 室内의 공기조건을 유지함으로써 재실자의 쾌적감부여, 건강유지, 작업능률향상등이 공기조화의 의의라 할 수 있다.

1. 2 空氣調和의 종류

空氣調和 設備는 설치목적에 따라 쾌적용 공기조화(Comfort air conditioning), 산업용 공기조화(Industrial air conditioning), 의료용 공기조화(Medical air conditioning)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쾌적용 공기조화는 실내 거주자의 쾌적도와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한 설비로써 사무실, 주택, 학교, 상점, 극장, 식당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산업용 공기조화는 공장의 제품생산, 창고의 물품보관등에 적합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자부품생산, 제약, 식품·제과, 섬유공장, 농수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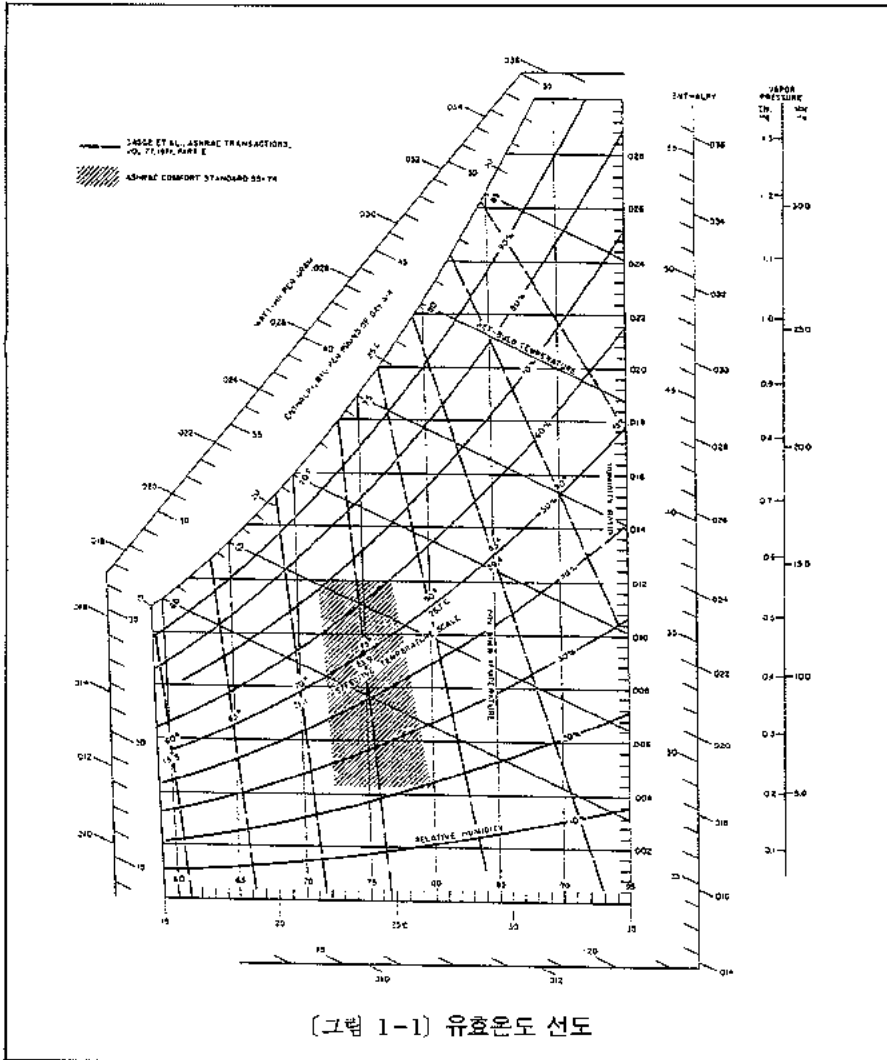
보관창고 등에 설치된다. 의료용 공기조화는 병원의 수술실, 입원실과 같이 의료활동과 환자를 대상으로 계획된 설비이다.

(1) 쾌적용 공기조화(Comfort Air Conditioning)

일반적으로 사람의 쾌적감은 溫度, 濕氣流速度, 輻射熱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쾌적감의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로는 유효온도 ET (Effective temperature), 수정유효온도 CET (Corrected effective temperature), 신유효온도 ET* (New effective temperature) 등이 쓰인다. 유효온도란 기류속도가 0.125m/sec 인 실내의 온습도조건에 따라 人體가 느끼는 쾌적감을 이와 동등한 느낌의 쾌적감에 대하여 포화상태에서의 공기온도만으로 나타낸 것이다. 유효온도가 동일하다고 하여 반드시 같은 정도의 쾌적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쾌적감은 溫度에 가장 민감하지만, 다소 온도가 높더라도 濕도가 낮을 경우 피부에서 땀의 증발작용에 의해 시원하게 느껴진다. 또한 약간 더운 상태에서 적당한 바람이 있다면 역시 시원하게 된다. [그림 1-1]은 인간의 쾌적범위를 유효온도 ET로 나타낸 것이다.

(2) 산업용 공기조화

산업용 공기조화란 공장의 제품생산 과정이나 공산물, 식품등의 보관을 위하여 실내를 최적상태로 유지하는 설비



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목적 이외에도 작업환경의 개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중요시됨에 따라 쾌적용 공기조화와 산업용 공기조화의 구별이 불명확해 졌다. 특수한 공장이나 창고의空調設備를 제외하면 개략적인 실내 온도도 범위를 유지할 수 있으면 된다.

(3) 의료용 공기조화

의료용 공기조화란 환자를 위한 설비으로써 병균들의 제거까지를 고려하게 된다. 특히 관절, 뇌, 심장수술이나 백혈병, 화상환자등의 병실에서 외부의 잡균에 의한 감염을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유전자공학의 발달과 더불어 신뢰성을 위한 특수 공기조화나 동식물 실험에서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기조화등이 있다. 이런 특수 공기조화를 바이오클린룸(Bio Clean Room), 바이오하자드(Bio Hazard) 대책이라고 한다.

2. 공기조화 냉난방 설비를

위한 기초 지식

2. 1 温度와 熱

温度는 차가움(冷)과 더움(熱)을 표시하는 척도이며, 일반적으로 섭씨온도(°C), 화씨온도(°F), 절대온도(°K) 등으로 나타낸다. 熱은 에너지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절대량을 표시하는 erg 또는 J(Joule)이 있지만 건축설비에서는 보통 칼로리(cal) 또는(kcal)를 사용한다. 760mmHg 압력에서 1g의 물을 14.5°C에서 15.5°C로 상승시킬 때의 熱량을 1cal로 나타낸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주로 BTU(British Thermal Unit)를 사용하며 1kcal는 3.97B.T.U 정도이다.

질량 1kg인 물체의 온도를 1°C만큼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熱을 比熱(Specific heat)이라고 한다. 또한 어떤 물체든 중량과 比熱에 따라 熱을 함유할 수 있는 熱량이 다르며, 이를 熱容量(heat capacity)이라 한다. (열용량=비열×중량) 열용량이 큰 재료는 가열

또는 냉각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열용량이 큰 重量構造體는 輕量構造體에 비하여 熱의 이동과정에서 시간적인 지연현상을 나타낸다. 이를 타임랙(Time lag) 효과라고 한다. 단열재, 축열재등의 재료의 열적 특성은 熱容量을 갖고 설명할 수 있다.

2. 2 물질의 상태변화와 顯熱, 잠열

물질은 보통 고체, 액체, 기체상태로 존재하며, 서로 상태변화를 한다. 물질의 상태 변화를 위해서는 熱의 공급이나 제거가 필요하다. 물질의 상태가 변화할 때 일정한 壓力에서라면 熱이 작용하여도 온도의 變化는 없다. 이때 작용한 熱을 잠열(Latent heat)이라고 한다. 또한 어떤 물체에 熱을 가했을 경우 물체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며, 이때 작용한 熱을 顯熱(Sensible heat)라 한다. 따라서 0°C에서 물과 얼음이, 100°C에서 물과 수증기가 동시에 존재하며 기온이 0°C가 되었다 하여도 곧 얼지는 않는다. [그림 1-2]는 물질의 상태변화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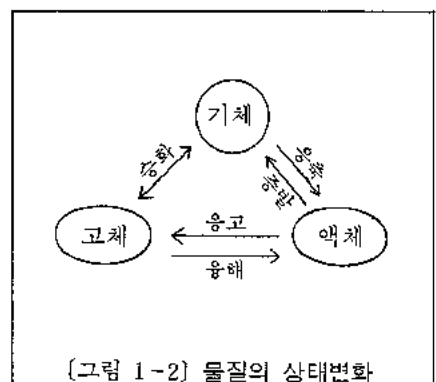
3. 熱의 이동(傳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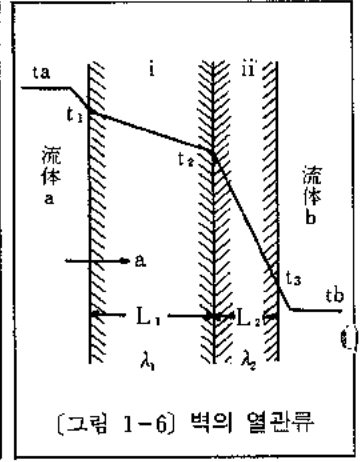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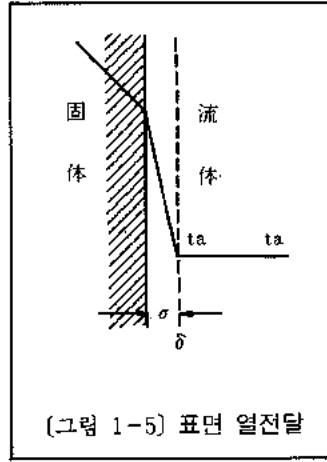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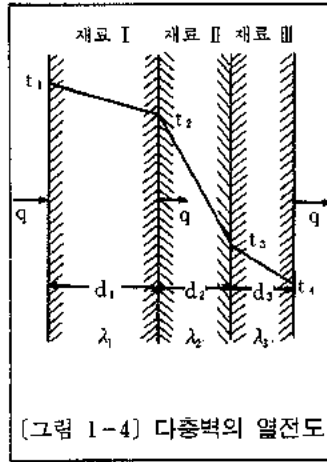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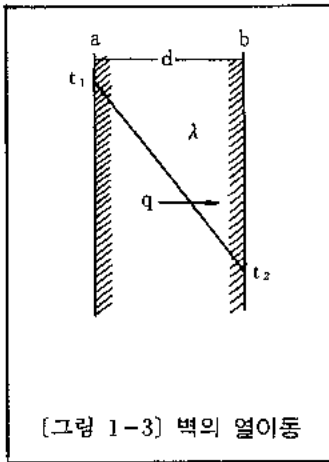
3. 1 傳熱의 종류

傳熱에는 복사(radiation), 대류(Convection), 전도(Conduction)의 3가지 기본종류가 있으며 熱의 이동은 이들 요소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1) 복사(radiation)

모든 물체는 절대 0도(0°K)가 아니라면 복사열을 방출하고 다른 물체로부터 복사열을 받는다. 복사열이 물체표면에 入射하면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흡수하며, 나머지는 투과한다. 흡수된 열에너지는 물체의 온도를 상승시킨다.





복사열은 물체의 온도, 표면상태등의 특성에 따라 독특하게 작용한다.

(2) 대류(Convection)

공기는 열을 받으면 밀도가 적어지고 가벼워져 상승한다. 반대로 차가워지면 밀도가 커지고 무거워져 하강한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 열이 공기와 함께 이동하는 현상을 대류라고 한다. 유체를 강제로 이동시켜 열을 운반하는 경우를 강제 대류라고 하며, 밀도차에 의해 자연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자연대류라고 한다.

(3) 전도(Conduction)

물질의 이동이 없이 온도가 서로 다른 인접물체 사이에서 고온의 분자로 부터 저온의 분자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傳導라고 한다.

3. 2 열전도 이론

열전도 이론은 定常狀態와 非定常狀態로 나누어 진다. 定常傳熱은 벽체 내부의 온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벽을 통과하는 熱은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해석하는 것이며, 非定常傳熱은 벽 내부의 온도 분포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상태로 해석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定常狀態의 傳導이론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기본식

벽을 이동하는 열은 벽면적(A)과 온도차(Δt)에 비례하고 벽두께d에 반비례한다. [그림 1-3]과 같은 벽을 통과하는 열은(1-1)식과 같다.

$$q = \lambda \times \frac{t_1 - t_2}{d} \times A \text{ [kcal/h]} \dots\dots$$

(1-1)식

여기서 λ는 열전도율[kcal/mh℃]로써 물질의 열특성을 나타낸다.

(2) 多層壁의 열전도

[그림 1-4]와 같이 여러가지 재료로 구성된 벽체에서의 이동열량q는 다음과 같다.

$$\left. \begin{aligned} \text{재료 I에서, } q_1 &= \lambda_1 \times (t_1 - t_2) / d_1 \times A \\ \text{재료 II에서, } q_2 &= \lambda_2 \times (t_2 - t_3) / d_2 \times A \\ \text{재료 III에서, } q_3 &= \lambda_3 \times (t_3 - t_4) / d_3 \times A \end{aligned} \right\} \begin{array}{l} (1- \\ 2) \text{식} \end{array}$$

여기서

λ₁, λ₂, λ₃: 각 재료의 열전도율
d₁, d₂, d₃: 각 재료의 두께
t₁, t₂, t₃, t₄: 각 표면의 온도
A: 벽의 면적

식(1-2)를 정리하면 식(1-3)과 같다.

$$q = \frac{t_1 - t_4}{\frac{d_1}{\lambda_1} + \frac{d_2}{\lambda_2} + \frac{d_3}{\lambda_3}} \times A \dots\dots \text{식(1-3)}$$

$$= \frac{t_1 - t_4}{R} \times A$$

$$\text{여기서 } R = \frac{d_1}{\lambda_1} + \frac{d_2}{\lambda_2} + \frac{d_3}{\lambda_3}$$

: 열저항[h℃/kcal]

3. 3 열전달

벽표면 부근의 공기는 거의 움직임이 없으며 이러한 공기막을 경계층 또는 경계막이라고 한다. [그림 1-5]와 같이 벽의 표면과 부근공기사이에는 온도차가 있으면 열의 이동이 발생하며, 이를 熱傳達(heat transfer)이라 한다. 이때 공기층의 열이동 특성을 표면 열전달률 α라고 한다.

벽경계층에서 이동하는 열q는 식(1-4)와 같다.

$$q = \frac{\lambda}{\delta} (t_1 - t_a') A \dots\dots \text{식(1-4)}$$

여기서 λ: 공기의 열전도율

δ: 경계층 두께

t₁: 벽표면 온도

t_{a'}: 벽 부근 공기온도

그러나 δ는 기류에 따라 변하며, 이때의 t_{a'}를 구하기가 곤란하므로 일반적으로 벽주변온도 t_a와 표면열전달률 α(α = λ/δ) [kcal/m²h℃]를 이용하여 식(1-5)를 이용한다.

$$q = \alpha (t_1 - t_a) \times A \dots\dots \text{식(1-5)}$$

3. 4 열관류

[그림 1-6]과 같이 벽체의 양표면 부근의 온도가 다르면 열은 고온측으로부터 저온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열의 이동과정은 流體a로부터 열전달, I, II, 를 통한 열전도, 流體b에서의 열전달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이러한 열의 이동을 열관류라고 한다. 열의 이동을 벽과 경계층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식(1-6)과 같다.

$$\left. \begin{aligned} \text{벽의 열전도: } q &= \frac{(t_1 - t_2) A}{d_1/\lambda_1} \\ &= \frac{(t_2 - t_3) A}{d_2/\lambda_2} \end{aligned} \right\} \text{식(1-6)}$$

$$\begin{aligned} \text{경계층의 열전달: } q &= \alpha_a (t_a - t_1) A \\ &= \alpha_b (t_3 - t_b) A \end{aligned} \dots\dots \text{식(1-6)}$$

식(1-6)으로부터 식(1-7)과 같은 열관류식을 얻을 수 있다.

$$q = \frac{(t_a - t_b) \times A}{1/\alpha_a + \frac{d_1}{\lambda_1} + \frac{d_2}{\lambda_2} + 1/\alpha_b} \dots\dots \text{식(1-7)}$$

$$\text{여기서 } K = \frac{1}{R} = \frac{1}{\frac{1}{\alpha_a} + \frac{d_1}{\lambda_1} + \frac{d_2}{\lambda_2} + \frac{1}{\alpha_b}} \text{ [kcal/m}^2\text{h}^\circ\text{C]}$$

K를 열관류율(또는 열통과율)이라고 한다.

환영합니다 신입 회원



□ 鄭用植 / 20. 1. 20 / 서울 /
경성고등공업학교건축공학 / 흥
일종합건축사사무소 / 성동구구
의동246-16 / 452-1971~3



□ 金盆鉉 / 42. 5. 21 / 서울 /
한양대학교건축과 / 신세대종합
건축사사무소 / 용산구한남동683
-130 / 792-2497



□ 李大亨 / 42. 8. 20 / 서울 /
서울대학교건축과 / 종합건축사
사무소향건축 / 강남구삼성동34
-9 / 545-9500



□ 柳弘基 / 51. 4. 13 / 홍익대
학교건축공학 / 동남아종합건축
사사무소 / 서울중구다동131 /
778-0429



□ 金奭根 / 52. 10. 15 / 충북 /
대전공업고등전문학교건축과 /
천일건축사사무소 / 청주시서문
동3-5 / 52-9750

□ 李柱權 / 56. 12. 15 / 서울 /
한양대학교건축공학, 한양대학
원건축구조 / 세한·진종합건축
사사무소 / 서울중로구통의동108
/ 725-85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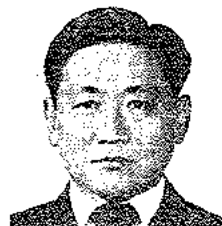
□ 李廷根 / 46. 3. 27 / 연세대
학교, 서울대학원건축, 영국에딘
버러대학원건축사회학 / 종합건
축사사무소아키반 / 종로구동승
동1-132 / 764-3072



□ 權益大 / 50. 6. 25 / 서울 /
부산공업고등학교 / (주)한정건
축종합건축사 / 서울을지로 4가
310-68 / 269-4415



□ 裴鍾淳 / 38. 11. 26 / 경기 /
한양대건축과 / 배종순건축사사
무소 / 경기의정부시의정부동18
0-1



□ 柳載壽 / 46. 7. 21 / 전북 /
연세대학교건축공학과 / 대림산
업(주)설계실 / 서울중로구수송
동146-12 / 730-8221 ☎ 566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11,75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대주택건설재원의 조달) 법 제5조제1항에서 “국민주택기금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중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 자금의 합산액을 말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올림픽복권 발행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중 국민주택기금 관리기관에 교부되는 금액
3.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제3조 (임대주택건설자금의 지원조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건설에 장기저리로 용자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과 상환기간은 건설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택지의 개발 및 공급) ① 건설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당해 연도에 공급할 택지중에서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용 택지의 공급비율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개발공사별로 정하여 매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택지의 공급비율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개발·공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공급하는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택지를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우

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5조 (토지의 환매절차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그 토지를 매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의 건설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환매특약을 하고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 또는 임차한 자가 그 토지위에 임대주택의 건설을 착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그 토지를 매수 또는 임차한 자로부터 그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건설을 지체없이 착수할 것을 촉구하여야 하며, 촉구후 6월을 경과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토지를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6조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5년을 초과하여 분양제한기간을 정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제한기간 내라도 건설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시장(서울특별시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가 임대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임대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받아 임대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제7조 (임대조건외의 신고대상)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임대주택”이라 함은 일단의 토지에 집단을 이루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호수이상의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8조 (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장·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기존임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촉진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설·공급 또는 관리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정이유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84. 12. 31. 법률 제3,783호) 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기금중 정부의 출연금, 올림픽복권자금 중 일부 및 채권입찰제의 실시로 조성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자금을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장기저리로 융자하도록 하고, 융자되는 자금의 이자와 상환기간은 건설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영 제2조 및 제3조).

나. 건설부장관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

국토지개발공사별로 그 해에 공급할 택지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용 택지의 공급비율을 정하여 해마다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개발공사는 공고된 택지의 비율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개발·공급하도록 함(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

다.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을 5년으로 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관철하기 어려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여전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도록 함(영 제6조).

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는 대상인 20호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1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료·자대보증금·임대기간등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관할,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임대조건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과하는 과태료의 부과절차를 정함(영 제7조 및 제8조).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보건사회부령제771호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조 (공중목욕장의 종류)영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목욕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목욕장

가. 공동탕

나. 가족탕

다. 한증막

2. 특수목욕장

가. 사우나탕

나. 터키탕

다. 헬스클럽의 부대시설인 목욕탕(욕실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일반수영장

4. 특수수영장(헬스클럽의 부대시설인 수영장으로서 수영조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목욕장의 등급은 별표2의 공중목욕장의 등급기준에 따라 갑등급과 을등급으로 구분한다.

제11조제1호아목 내지 파목을 각각 차목 내지 거목으로 하고, 동호에 아목·자목 및 너목을 각각 나목과 같이 신설한다.

아. 원수 및 욕조수의 수질검사를 연 1회이상 공공시험기관에 의뢰하고, 그

검사성적서를 업소내에 비치할 것. 다만, 원수를 수도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아니할 수 있다.

자. 발한실(증기실 또는 건열실을 말한다)의 상부온도는 그 구조가 습식일 경우에는 섭씨 60도 내외로, 그 구조가 건식일 경우에는 섭씨 80도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발한실의 안과 밖의 벽면에 온도계 및 발한방법, 이용시 주의사항등에 관한 게시물을 붙여놓을 것

너. 도지사가 정하는 휴일 및 영업시간을 준수할 것

제11조제2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한증막에서 한증을 위한 포대를 사용할 경우 포대는 완전히 찢소독하고 씻어서 건조시킨 다음 사용하도록 할 것

사. 안마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제11조제3호 가목 내지 라목을 삭제하고, 동호의 마목 및 바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하되, 나목(종전의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의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한다.

나. 사우나탕 및 헬스클럽의 부대시설인 목욕탕에서의 입욕객을 위한 안마

(맛사지 및 지압을 포함한다)는 공동탈의실을 겸한 휴식실에서 또는 개별밀실로 구획되지 아니한 안마실에서 하도록 할 것. 이 경우 안마사는 안마사에 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 자격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다. 영업소안에서 음란·퇴폐·도박행위를 하거나 묵인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우나탕 및 헬스클럽의 부대시설인 목욕탕에서는 이성입욕보조자를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11조제4호의 제목중 “수영장”을 “일반수영장 및 특수수영장”으로 하고, 동호 라목중 “의료인 1인이상”을 의료인 및 수영 안전지도원 각1인이상”으로 하며, 동호 아목중 (5)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자목 및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일반세균검사는 욕수를 동시에 여러장소에서 10명이상 채취하여 1밀리리터당 200이상의 세균이 검출된 것이 전 검사의 15퍼센트 이하일것

자. 수영조안에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상태를 항상 검사하게 할 것

차. 비색기·청명도판등 간단한 수질검사기구를 비치하여 수시로 자체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할 것

제13조중 “별표2의 기준”을 “별표3

의 검사지도중점사항 및 채점기준"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지도 기록부에 기재한 후 이를 당해 업소에 비치하게 하여야한다.

제14조의 제목 "행정처분기준"을 "행정처분의 기준등"으로 하고, 본문중 "별표3과"를 "별표4와"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 및 기간등을 기재한 공고문을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아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행정처분대장)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을 [별표4]로, [별표2]를 [별표3]으로하고,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3] (중전의 별표2) 검사지도 중점사항 및 채점기준중 "1. 일반목욕장(공동탕 및 가족탕)"을 "1. 일반목욕장(공동탕·가족탕 및 한증막)"으로하고, "2. 특수목욕장(한증탕 및 터키탕)"을 "2. 특수목욕장(사우나탕·터키탕 및 헬스클럽의 부대시설인 목욕탕)"으로 하며, "3. 수영장"을 "3. 일반수영장 및 특수수영장"으로 한다.

[별표4] (중전의 별표3)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증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중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증탕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시설형태에 따라 이 규칙 별표1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한증막 또는 사우나탕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별도의 안마실이 있는 경우 안마실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별표1]중

사우나탕의 다. (2)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개수하여야 한다.

제3조 (헬스클럽의 부대시설인 목욕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헬스클럽의 부대시설인 목욕탕(욕실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특수수영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헬스클럽의 부대시설인 수영장(수영조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특수수영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관한 행정처분은 중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영업을 양수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전의 양도인이 중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아니한다.

[별표 1] 공중목욕장의 시설기준(제3조)

1. 공동탕

구 분	시 설 기 준
가. 구 조	(1) 현관 탈의실의 출입구, 탈의실 및 욕실은 각각 남녀별로 구별하여야 한다. (2) 탈의실 및 욕실은 목욕장 밖으로부터 투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욕 실	(1) 바닥면적은 26.4제곱미터(읍·면의 지역에 있어서는 16.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바닥은 콘크리트로 하여 그 표면은 도자기, 돌, 인조석 또는 물발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 바닥면적의 20분의 1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구조상 이 기준에 의한 설비가 곤란할 때에는 필요한 기계설비에 의할 수 있다. (4) 벽과 천정은 열기 및 습기에 대하여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나무·알미늄 또는 프라스틱 재료로 된 적정수의 물통 및 갈판을 비치하여야 한다. (6) 오수의 배출구를 설치하여 욕실안에서 사용한 물의 배출이 용이하도록 하고, 오수조는 욕외에 설치하되, 내수재를 사용하여 악취의 발산, 오수의

	침수등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7) 수세식 소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바닥면적 5제곱미터당 냉·온 수도전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9) 냉·온 수도전으로 된 샤워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0) 발한실을 설치할 경우 그 바닥면적은 욕실 바닥면적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면적 이하고 하고, 출입문을 높이 1.6미터 이상 폭 0.6미터 이상으로 하되, 실내를 투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욕 조	(1) 바닥면적은 3.3제곱미터(읍·면의 지역에 있어서는 2.0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깊이는 6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내부는 콘크리트로 하되, 타일등 내수용자재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4) 최하부의 적당한 곳에 욕조내의 물을 완전히 배출시킬 수 있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상단의 적당한 곳에 냉·온 수도전을 설치하여 입욕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탈 의 실	(1) 바닥면적은 욕실면적의 10분의 7에 상당하는 면적(읍·면의 지역에 있어서는 13.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시 설 기 준
	(2) 바닥은 나무, 리노븜등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양탄자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입욕자의 의류 및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자물쇠를 부착한 적당한 수의 옷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바닥면적의 20분의 1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구조상 이 기준에 의한 설비가 곤란할 때에는 필요한 기계설비에 의할 수 있다. (5) 탈의실 안에 입욕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욕자의 탈의 및 착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입욕자를 위한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입욕자를 위한 음료수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마. 변 소	(1) 바닥면적은 1.44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탈의실과 연결하되, 수세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외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하거나 환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현 관	(1) 바닥면적은 5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입욕자의 신발을 넣어 보관할 수 있는 적당수의 신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기 타 부대시설	(1) 기관실, 보일러실 및 연료지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상당한 면적과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제·연소진 처리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상당한 면적과 그와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3) 폐수열 회수장치등 적절한 에너지절약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욕조수를 순환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 족 탕

구 분	시 설 기 준
가. 구 조	가족탕은 개실로 구획하여 설치하되, 욕실과 탈의실을 구분하고, 외부로부터 투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욕 실	(1) 냉·온 수도전, 샤워시설 및 세면기를 설치하고 물통 및 깔판을 비치하여야 한다. (2) 1. 공동탕의 나의 (2) 내지 (6)의 기준에 의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 욕 조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그 상단에는 입욕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냉·온 수도전을 설치하며, 최하부의 적당한 곳에 욕조안의 물을 완전히 배출시킬 수 있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탈 의 실	1. 공동탕의 라의 (1) 내지 (4)의 기준에 의한다.
마. 변 소	수세식으로 하고,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외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하거나 환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한 증 막

구 분	시 설 기 준
가. 구 조	1. 공동탕의 가의 기준에 의한다.
나. 한 증 막	(1) 바닥면적은 16.5제곱미터(욕·면의 지역에 있어서는 13.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한증막은 내화벽돌 또는 기타 내화성재료로 반원 추형으로 축조하되, 두께는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한증막의 출입문은 높이 1미터 폭 8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되 내부를 투시할 수 있어야 하고 2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 욕 실	(1) 바닥면적은 26.4제곱미터(욕·면의 지역에 있어서는 16.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냉수 및 온조욕조는 각각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냉·온수도전을 3조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4) 샤워시설을 3조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 1. 공동탕 나의 (2) 내지 (6)의 기준에 의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라. 탈의실 및 휴식실	(1) 바닥면적은 26.4제곱미터(욕·면의 지역에 있어서는 16.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수세식변소를 시설하여야 한다. (3) 1. 공동탕 라의 (2) 내지 (7)의 기준에 의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4) 충분한 수의 포대를 배치하여야 하며 포대는 자연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마. 기타시설	1. 공동탕의 사의 (1) 내지 (2)의 기준에 의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4. 사 우 나 탕

구 분	시 설 기 준
가. 위치 및 구조	1. 공동탕의 가의 기준에 의하되, 숙박업법에 의하여 허가받는 호텔(관광호텔을 제외한다)·여관 및 여인숙이 있는 건축물내에는 개설할 수 없다.
나. 욕 실	(1)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야 한다. (2) 냉·온 수도전 6개이상, 냉·온 수도전으로 된 샤워시설 6개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발한실은 욕실 바닥면적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으로 하고, 출입문은 높이 1.8미터 이상 폭 0.7미터 이상으로 하되, 실내를 투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3.3제곱미터 이상의 온수욕조 및 냉수욕조를 설치하고 욕조상단 적당한 곳에 냉·온수도전(냉수욕조에는 냉수도전)을 설치하여 입욕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1. 공동탕의 나의 (2) 내지 (7)의 기준에 의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 탈의실·휴식실 및	(1) 탈의실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야 하고, 휴식실은 따로 설치할 경우 50제곱미터이상의

구 분	시 설 기 준
안마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여야 하며, 개별 밀실로 구획되어서는 아니된다. (2) 안마실을 따로 설치할 경우 그 바닥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개별밀실로 구획에서는 아니된다. (3) 바닥은 나무, 리노륨등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입욕자의 휴식에 필요한 기온, 짧은 속바지를 비치하여 활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5) 1. 공동탕의 라의 (3) 내지 (7) 의 기준에 의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라. 변소·현관 기타 부대시설 등	변소는 1. 공동탕의 마의, 현관은 1. 공동탕의 바의, 기타 부대시설은 1. 공동탕의 사의 기준에 의한다.

5. 터 키 탕

구 분	시 설 기 준
가. 구 조	(1) 관광사업법에 의한 숙박업소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소에 설치하되, 개실로 구획하여야 한다. (2) 바닥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욕 실	(1) 욕조·옷장·세면기 및 냉·온수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1. 공동탕의 나의 (2) 내지 (6) 및 2. 가족탕의 다의 기준에 의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3) 입욕자의 발열을 촉진하는 한증함을 설치하되, 그 내부는 입욕자가 증기배출구와 직접 접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공동발한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4. 사우나탕의 나의 (4)의 기준에 의한다. (5) 욕실의 출입문은 높이 1.8미터이상 폭 0.7미터이상으로 하고, 높이 1.2미터로부터의 상부에는 0.3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를 끼워야 한다. (6) 입욕자가 휴식할 수 있는 적당한 휴식시설을 하여야 한다. (7) 조명은 20룩스이상으로 하고, 조명용 전등은 1개의 스위치로 전부를 점멸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변 소	욕실이 설치되어 있는 각층에 남·여별로 구별하여 수세식으로 설치하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외부와 접하는 창문 또는 환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대기실등	(1) 대기실은 적당한 면적을 보유하고 입욕자가 대기하는데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의자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신발장은 현관 기타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기 타 부대시설	기관실, 보일러실, 연료저장장 및 재·연소잔 처리장은 1. 공동탕의 바의 기준에 의한다.

6. 헬스클럽의 부대시설인 목욕탕

구 분	시 설 기 준
가. 구 조	1. 공동탕의 가. 의 기준에 의한다.
나. 욕 실	1. 공동탕의 나. 의 기준에 의한다.
다. 욕 조	1. 공동탕의 다. 의 기준에 의한다.
라. 탈 의 실	1. 공동탕의 라. 의 기준에 의한다.
마. 변소 및 현 관	1. 공동탕의 마. 및 바. 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본래의 주된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변소 및 현관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기 타 부대시설	1. 공동탕의 사. 의 기준에 의한다.

7. 일반수영장

구 분	시 설 기 준
가. 수 영 조	(1) 바닥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물의 깊이는 0.9미터 내지 2.7미터로 하고, 수영조의 벽측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용 또는 경기용 수영장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물의 정화설비는 순환여과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4) 바닥과 벽면은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하고, 바닥은 15분의 1 내지 20분의 1의 경사로 하여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심이 1.7미터 이상이 되는 곳은 더 급한 경사로 할 수 있으나 함정을 이루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최하부의 적당한 곳에 수영조의 물을 완전히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를 설치하되, 배수구에는 일정한 크기의 고형물질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철망장치를 하여야 한다. (6) 수면에 뜨는 찌꺼기의 제거 및 일정한 수면유지를 위하여 수영조의 벽면에 배수하는 물받기기 장치로 4.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고, 이 장치를 넘어 배수되는 물은 순환용 펌프로 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물의 유입구 관과 유출구 관의 배관설비는 물이 계속하여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주변의 통로의 폭은 1.2미터이상(헨드레일을 설치할 경우에는 1.2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으로 하고 수영조로부터 외부로 경사지도록 하거나 기타의 방법을 강구하여 오수등이 수영조로 침수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도약대가 있는 수영장에 있어서는 도약대의 돌출부의 최단 부분으로부터 3미터 범위의 수영조의 수심은 2.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0) 도약대는 주름잡이, 고무판등을 덮어서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실내수영장에 도약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천정과 도약대 사이가 4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구 분	시 설 기 준
나. 탈의실·세정장및 변소	(1) 수영자가 수영조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탈의실 변소, 세정장을 순서로 거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탈의실 및 세정장은 남·여별로 구분하여 외부로부터 투시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바닥면적의 20분의 1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구조상이 기준에 의한 설비가 곤란할 때에는 필요한 기계설비에 의할 수 있다. (3) 탈의실에는 수영자의 의류 및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자물쇠를 부착한 적당한 수의 옷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세정장의 바닥은 콘크리트등으로 하고, 냉·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샤워시설과 수도전을 각각 수영자 50인당 1개이상 설치하고 상당수의 물통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절기에만 개장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온수 샤워시설 및 수도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변소는 남·여별로 구별하여 수세식으로 설치하되, 남자용 소변기는 수영자 60인당 1개이상, 대변기는 소변기 5개당 1개이상으로 하고, 여자용 변기는 수영자 40인당 1개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변소의 바닥은 콘크리트등으로 하고 충분한 환기 시설과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실내수영장 또는 야간수영을 하는 수영장의 수면 기타 주요장소에는 100룩스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 기타시설	(1) 수영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구명대동 인명구조장비를 비치하고 감시탑을 설치하여 수상 안전요원 3인이상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2) 응급환자의 발생시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구조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8. 특수수영장

구 분	시 설 기 준
가. 수 영 조	7. 일반수영장의 가. (2) 내지 (1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수영조의 깊이는 이용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적절한 깊이로 할 수 있다.
나. 탈의실·세정장및 화장실	7. 일반수영장의 나. 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본 영업을 위하여 탈의실, 세정장 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기타시설	7. 일반수영장의 다. 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2]

공중목욕장의 등급기준 (제 4 조)

업 종	등 급	시 설
공 동 탕	갑등급	욕실면적 45제곱미터이상 발한실 6.6제곱미터이상 냉수욕조 1개이상 고온수욕조 1개이상
	을등급	욕실면적 45제곱미터미만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 터키탕, 헬스클럽의 부대 시설인 목욕탕	갑등급	
	을등급	
일 반 수 영 장	갑등급	수영조 3개이상 수영조면적 330제곱미터이상
	을등급	수영조 3개미만 수영조면적 330제곱미터미만
특 수 수 영 장	갑등급	
	을등급	

<이하 별표 생략>

한번두번 이긴약속 두고두고 불신산다

「建築士」誌 掲載 會員論文 總目錄

제 목	필 자	월호	페이지
농어촌 주택구조와 생활	김 진 천	67. 4	36
방수제 "Asphalt"에 대하여	최 영 수	"	38
조립식 Precast Concrete 건축물	김 정 수	67. 6	17
설계경기의 기본적 고찰	이 승 우	"	45
생활환경의 변화와 건축	박 윤 성	67. 9	34
한국건축계의 당면문제	정 인 국	"	44
도시주택 공급방안의 고찰	홍 사 천	"	51
건축법의 미비점	김 희 춘	67. 11	27
건축의 사고방식	홍 봉 회	"	30
건축사의 설계공정제도와 관리의 신기법	이 승 우	"	34
현대 건축과 고(古)건축	장 기 인	68. 1	25
外注는 역사와 반역행위다	김 중 업	68. 3	39
건축사의 필수응용 물리학①	진 행 범	"	41
건축사의 필수응용 물리학②	진 행 범	68. 5	21
미국 건축의 역사적 배경	김 희 춘	"	30
도시 재개발	홍 사 천	"	51
건축사의 필수응용 물리학③	진 행 범	68. 7	17
한국 고(古)건축의 양식기원	이 정 덕	"	23
굴뚝의 설계	장 기 인	"	27
古尺에 대한 小考	강 봉 진	"	33
미터법의 小考	홍 성 목	"	37
건축과 규격조정에 대하여	김 규 석	"	49
건축사의 필수응용 물리학④	진 행 범	68. 9	17
인간공학과 건축①	박 윤 성	"	23
공기조화론	김 동 숙	"	29
색채성질과 새로운 고찰	이 해 성	"	36
건축물의 방수에 대하여	홍 봉 회	"	40
도로에 대한 고찰	김 희 춘	68. 11	21
건축자재로서의 목재	김 시 형	"	27
재료-용력-변형	한 성 권	"	34
실내 의장의 마감재료	주 남 철	"	36
주 생활과 색채	윤 일 주	"	45
온돌개량과 효율	김 기 태	"	49
인간 공학과 건축②	박 윤 성	"	54
원자력 발전소 건설	김 정 수	"	64
도시계획 이념	박 병 주	"	70
방사선 시설계획에 있어서(I)	송 민 구	69. 1	27
온돌공사와 가스(I)	장 기 인	"	30
고층건물의 구조와 시공	김 한 섭	"	34
경량구조	홍 성 목	"	37
출입문	김 동 숙	"	44
재료검사(I)	신 형 범	"	46
광화문 복원에 대하여(II)	강 봉 진	"	50
고층화에 따른 공법의 동향	김 형 결	69. 3	34
건축재료 도로(II)	김 희 춘	"	39
방사선 시설에 대하여(II)	송 민 구	"	42
현대건축의 입문	임 영 배	"	52
현대건축의 사적고찰(I)	강 봉 진	"	56
도시계획과 지가변동에 관한 고찰	김 진 성	"	62
건축의 이념	강 두 석	"	68
미국의 주택생산에 필요한 노동량분석	홍 성 목	69. 5	52
한국 건축의 사적 고찰(2)	강 봉 진	"	64

제 목	필 자	월호	페이지
건축의부공간의 미적 구성	이 명 호	69. 7	33
건축의 체험	윤 일 주	"	40
주택 대량생산에 위한 과정	이 정 덕	"	50
한국건축의 사적 고찰(完)	강 봉 진	"	66
T. L. SHELL의 응력해석	임영배·김수곤	"	74
한국 건축의 이두식술어에 대한 소고	강 봉 진	69. 9	23
건축의 체험(2)	윤 일 주	"	26
방사선 시설에 대하여(3)	송 민 구	"	34
Matrix법에 의한 보의 응력해석	신문철·이수곤	"	47
국산시멘트의 품질시험에 대하여	홍 봉 회	"	56
건축의 체험(3) (完)	윤 일 주	69. 11	4
우리나라 목재창호의 구조적인 개량점에 관하여	김 문 한	"	29
유공량(有孔梁)의 설계	신 종 순	70. 1	53
창 문	나 상 진	"	55
미술평론가가 본 한국건축	오 광 수	70. 2	58
시시한 구조계획 형성한 구조계산	이 창 남	"	60
조적조 구조연구	국립전설연구소	"	65
시공도면의 방법	편 집 부	70. 3	52
주거의 면적기준	조 영 무	70. 4	55
도시계획과 시가지 지반고	신 문 철	70. 5	66
시민아파트	이 종 금	70. 6	52
농촌 공동체 연구	김 석 철	70. 9	10
주택과 국민성	임 동 권	70. 12	10
고층건물 인제(抑制)해제를 위한 나의 소고	서 정 달	"	15
각종빈집 화재의 피난 및 구조상의 기본대책	홍 봉 수	71. 1	10
아스타일 시공법	안 길 성	"	76
내가 본 중국 건축	김 용 호	71. 2	67
경제개발과 주택문제	문 병 집	71. 3	3
도시방재와 건축	박 원 호	"	5
개발도상국 도시의 공해방지정책	안 기 회	"	8
형률조립식에 의한 일체식 콘크리트 건물의 구축방법	조 영 식	"	73
도시와 현대건축	강 병 기	71. 4	6
서울식 건축상황	박 용 숙	"	34
서울시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문제 해결방안	이 춘 배	"	39
건축분야에 있어서 전자계산기의 이용법(1)	이 종 술	71. 5	3
일반 주택계획(1)	윤 도 근	"	9
고대 서양의 주택	주 남 철	"	12
분묘정화조에 대한 근본연구	윤 태 현	"	21
건축기술의 체계	이 종 회	"	40
건축분야에 있어서 전자계산기의 이용법(2)	이 종 술	71. 6	5
일반 주택계획(2)	윤 도 근	"	16
고층 건물의 필요성	김 형 만	"	22
수조관	원 정 수	"	28
新시공관리 시스템의 전개(I)	한양대학교실	"	57
일반 주택계획(3)	윤 도 근	71. 7	30

제 목	필 자	월호	페이지
新시공관리 시스템의 전개(2)	한양대기획실	"	37
건축공간개념의 발전 및 그방향	강 회 조	"	49
해방이후 우리 주택의 변천	강 봉 진	71. 8	4
도시공간에 연출하는 전달상태	김 진 일	"	9
일반 주택계획(完)	윤 도 근	"	20
전통미의 표상화문제	유 희 준	"	27
新시공관리 시스템의 전개(完)	한양대기획실	"	32
한국건축 과학에 대하여	강 봉 진	71.9. 10	6
현대 건축의장에 대하여	엄 덕 문	"	15
새로운 건축재료에 대하여	홍 봉 회	"	17
건축사의 사회적 지위와 사명에 관하여	최 창 규	"	22
건축 공해에 관하여	김 희 춘	"	25
건축 행정에 관하여	박 원 호	"	26
鋼구조제산기준에 관한 소고	김 덕 재	"	36
동기 콘크리트 공사에 있어서 온도조정의 효과에 관하여	노재선·유용교	"	47
건축과 공해	윤 정 섭	71. 11	29
건축가와 구조기술자	함 성 권	"	33
경제성 건축의 전환점	김 근 덕	"	36
지하철 건축의 심초공법에 관한 연구(I)	신 현 식	"	39
건축법 이외의 규정	박 우 하	"	53
도시공해와 실내환경	박 윤 성	71. 12 72. 1	6
鋼구조제산기준에 관한 소고	김 덕 재	"	12
지하철 건축의 심초공법에 관한 연구(II)	신 현 식	"	15
설계사무소의 조직과 운영	편 집 부	"	42
콘크리트나 몰탈면에 발생한 열폭을 지우는 방법	박 우 하	"	85
고층건물 방재	김문희·이용찬	72. 2	6
고층빌딩의 유지관리	장 기 화	"	12
농촌주택의 환경	김 진 일	"	21
가사공간 계획과 그 활용	황 현 순	"	32
한국 건축사상 연구(1)	김 홍 식	"	41
절점이 부분강접합인 교량의 응력 해석에 관한 역사적 고찰(1)	김 형 결	72. 3	2
건축 음향의 중요성	공 일 곤	"	12
효율적인 구조설계법(1)	조 철 호	"	17
대도시의 위락공간 배치에 관한 연구	이 정 식	"	40
한국 건축사상 연구(2)	김 홍 식	"	48
민족적 리얼리즘 건축	김 강 조	"	66
국립극장 음향설계	최 병 호	72. 4	4
절점이 부분강접합인 교량의 응력 해석에 관한 역사적 고찰(2)	김 형 결	"	18
효율적인 구조설계법(2)	조 철 호	"	39
효율적인 구조설계법(完)	조 철 호	72. 5	33
지하철 정거장 시설설계 계획	박 윤 욱	"	43
상점가 간판의 배색에 관한 연구	김 진 일	"	7
집합주택에서의 個와 全体	박 선 길	"	49
현행 건축법에 있어서의 문제점	김 한 섭	72. 6	2
Nomogram과 철근콘크리트의 설계(1)	김 택 진	"	10
공업단지 시설계획의 기본구상	유 병 립	"	36
생물과학으로서의 건축	홍 용	"	50
현행건축공사 표준품셈의 문제점(1)	장 기 인	72. 7	2
학교 건축의 사적(史的)고찰	이 호 진	"	6
건축가없이 세워진 건축물(1)	조 창 립	"	15
공기 조화시설의 기초와 방식	박 용 한	"	21
고층건물의 방화 및 피난(1)	신 태 식	"	46
위반 건축물의 방지와 그 대책	오 광 수	"	65
건축공사 표준품셈의 문제점(2)	장 기 인	72. 8	2
건축가없이 세워진 건축물(2)	조 창 립	"	14
건축계획을 위한 부재단면가정(1)	조 철 호	"	21

제 목	필 자	월호	페이지
Nomogram과 철근콘크리트 설계(2)	김 택 진	"	37
고층건물의 방화 및 피난(2)	신 태 식	"	53
수해저지대의 건축문제	박 병 주	72. 9	9
서울의 도시개발과 홍수문제	김 태 립	"	15
건축가없이 세워진 건축물(3)	조 창 립	"	20
건축공사 표준품셈의 문제점(3)	장 기 인	"	26
건축계획을 위한 부재단면 가정(2)	조 철 호	"	39
현대 건축의 제3세대	오 광 수	"	43
도시공간에 연출하는 전달상태	김 진 일	72. 10	9
강당 음향설계	최 병 호	"	37
Nomogram과 철근콘크리트 설계(3)	김 택 진	"	42
건축계획을 위한 부재단면가정(3)	조 철 호	"	46
도시계획에 있어서 그린벨트의 필요성	윤 정 섭	72. 11	30
주거환경의 평가와 문제점	박 윤 성	"	37
한국 고도읍(古都市)의 공간구조	최 병 선	"	42
지하공간 이용의 도시개조안	오 광 수	"	65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내화성	김 형 결	72. 12	24
건축계획 노트(1)	김 광 문	"	36
전기온수설계와 공사(1)	박 석 탁	"	25
농촌주택에서의 작업공간	지 순	73. 1	38
전기온수의 설계와 공사(2)	박 석 탁	"	42
강구조(鋼構造)의 내화성	김 형 결	73. 2	10
건축가의 사회관	윤 태 현	"	16
도시계획에서의 규제와 통제(1)	신 동 해	"	42
농촌주택계획의 이상적인 최적규모에 관한 연구	전 남 대	"	66
현대교회건축 소고(小考)	김 정 철	73. 3	24
도시계획에서의 규제와 통제(2)	신 동 해	"	40
콘크리트의 고강도화의 경향	오 창 화	"	47
소주택 외관 Design에 대해	김 용 팔	73. 4	31
건물계획에 있어서의 컴퓨터사용(1)	이 문 섭	"	35
농촌주택의 열관리 구조에 따른 계획설계와 자재개발	이 중 관	73. 5	28
Youth Hostel 건축(1)	김 용 팔	"	40
건축계획에 있어서의 컴퓨터사용(2)	이 문 섭	"	52
도구와 환경	유 병 립	"	58
실내장식에 관한 색채	엄 성 관	"	77
미관지구 설정의 의의와 실제	정 인 국	73. 6. 7	30
환경의 의미	노 용 회	"	42
가변풍량(可變風量)방식	박 용 한	"	45
주거환경과 조경계획을 위한 요소	장 기 화	73. 8	12
통근권역의 확대	이 상 순	73. 9	11
현대 미국사무소 건물의 유동식 공간환경	배 만 실	"	32
공기음향설비와 건축설계	최 병 호	73. 10	21
이상도시론(理想都市論)	최 병 선	"	46
건물화재와 소방법	이 지 연	73. 11	13
소방설비의 구조·성능·관리	최 진	"	17
농재부락계획에 선행하는 집주화의 고찰	김 진 일	"	28
한국 건축문화의 특징	윤 장 섭	74. 1	18
방화에 대한 소고(小考)	이 지 연	"	24
설계사무소의 경영과 운영(1)	김 익 래	74. 2. 3	10
위험물에 관한 해설	이 지 연	"	30
철근콘크리트 보의 설계(1)	조 철 호	"	55
한국상류주택 서론	정 인 국	74. 4	10
설계사무소의 경영과 운영(2)	김 익 래	"	17
건축의 교육문제	윤 도 근	"	22
병원계획과 면적배분	김 동 규	"	38
건축계의 내일의 전망	송 민 구	74. 5	4

제 목	필 자	월호	페이지
건축사의 장래	정 인 국	74. 5	6
건축사와 건축·건설기술자의 한계	김 기 태	"	8
건축사의 직능과 사회적 책임	이 명 환	"	10
철근콘크리트 보의 설계(2)	조 철 호	74. 6	22
Pert & CPM의 개요(上)	안 경 한	"	28
복합 건축론	박 춘 상	74. 7	17
건축물의 모형을 설계	(연)국립건설	"	22
현대주택 정원의 흐름과 설계	김 동 원	"	31
Pert & CPM의 개요(下)	안 경 한	"	37
한국의 주택수급 실태와 전망(上)	최 상 철	74. 8	13
고층건물의 미래상	(연)국립건설	"	19
한국의 주택수급 실태와 전망(下)	최 상 철	74. 9	20
철근콘크리트 보의 설계(完)	조 철 호	"	36
한국 건축개관	김 수 근	74. 10	2
한국 현대건축의 미학	박 용 숙	"	9
주택의 정인	박 상 호	"	15
도시공동주택	유 영 진	74. 11, 12	23
건축구조설계 및 적산자료화에 관하여	조 철 호	"	35
건물 진동 방지 설계	국립건설연구소	"	39
상가건물의 Facade에 대해	김 진 일	75. 1	19
지붕 방수공사를 실행한 예와 대책	안 인 모	"	24
Anchor Bolt 설계	김 창 서	75. 2	19
도시 조정 설계	이 문 섭	75. 3	5
조립철관 용접시의 바름(Strain)	김 창 서	"	23
방지와 교정법	"	"	"
평면 프레임의 응력분석을 위한	이 동 근	"	36
실용적 Computer Program	"	"	"
빌딩설계와 에너지 절약	편 집 부	75. 4	9
건축의 에너지 절약과 태양열 이용	"	"	16
새로운 도시교통 system의 전망	이 상 순	"	21
교육변천과 건축에 미치는 영향	정 진 수	"	27
우리들의 옛건축과 그 현대화	박 용 숙	"	33
서양건축의 양식비교(박공벽)	편 집 부	"	46
주거기능에 대한 고찰	이 문 섭	75. 5	16
우리들의 옛건축과 그 현대화(完)	박 용 숙	"	23
도시계획과 건축가	편 집 부	"	35
한국 건축의 특성에 대하여	주 남 철	75. 6	5
도시조직의 분석과 설계방법	주 종 원	"	14
한국의 역사와 그 구조	신 영 훈	"	22
구조물의 조립화에 관하여(1)	정 일 영	75. 7	5
프리캐스트 건축구조의 설계 원리	김 덕 재	"	11
시가지 형성과 도시설계 및 건축계획	윤 정 섭	75. 8	6
공장 건축 계획	김 진 일	"	11
소방법과 건축법	김 진	"	20
한국 고(古)건축미의 원천	송 민 구	75. 9	4
구조물의 조립화에 관하여	정 일 영	"	15
주택의 열관리와 그 문제점	이 중 관	"	30
한국 고(古)건축의 평면의 비례	송 민 구	75. 10	49
한국의 營造尺度	윤 장 섭	75. 11, 12	9
한국의 건축적 전통	김 회 춘	"	19
多 Span 變斷面柱에 山形架構의 實用解에 관한 연구	함 성 권	"	22
Sides Way가 생기는 剛構造의 Moment 분배법 완전해법	김 택 진	"	26
건축산업화와 조립식 건축방식	이 갑 조	"	36
建築・室内・様式	윤 도 근	"	62
看板的의 색채조사 연구	김 진 일	76. 1	20
국산목재표면의 色度와 明度分布의 조사	윤 일 주	"	28

제 목	필 자	월호	페이지
현대건축 석조벽의 합리적 Design에 관한 研究	이 연 덕	76. 1	31
우리나라 아파트 평면의 형성과정을 지켜보며(1)	강 명 구	"	38
실내건축 디자인의 개념과 그 어프로치 방법(1)	윤 도 근	76. 2	2
건축계획을 위한 바닥판의 構造制限	조 철 호	"	8
한국 학교건축을 阻害하는 洋式건축의 그 要因分析과 方向에 관한 研究(1)	유 향 산	"	11
홈통의 설계법	김 창 서	"	21
우리나라 아파트 평면의 형성과정을 지켜보며(2)	강 명 구	"	50
한국내에서도 實施 가능한 리프트 스톤브 工法小考	김 정 수	76. 3	2
실내건축 Design의 개념과 그 어프로치 方法(2)	윤 도 근	"	6
人間과 건축환경	이 경 회	"	"
한국 학교건축을 阻害하는 洋式건축의 그 要因分析과 方向에 관한 研究(2)	유 향 산	"	15
集積된 空間의 해결 모델계획에의 接近	이 학 영	"	22
도시인의 특성과 그 발전적 模型的의 誘導	김 진 일	76. 4	61
건축에 있어서의 스톤브 거푸집에 관한 연구	신 현 식	76. 5	6
住居의 의미	이 필 원	"	11
共同住宅의 隣棟間隔	이 해 성	76. 6	7
남창재개발지역에 대한 사례연구	윤 정 섭	"	12
우리나라 연구조 標準과 구조설계 人間, 建築, 그리고 軸(Axis)	함 성 권	76. 7	7
공장건물의 「換氣, 露氣대책에 대하여」	주 남 철	"	10
도시경관과 조정	김 창 서	"	19
최근 도시계획의 과제와 방향	윤 동 오	"	27
防災의 見地에서본 건축대지의 立地條件	박 병 주	76. 8	3
未來定住환경 - 건축기술의 가능성	김 형 결	"	7
한국 학교건축을 阻害하는 洋式건축의 그 要因分析과 方向에 관한 研究(3)	조 영 무	"	13
都市 속의 樹木	유 향 산	"	20
Energy 절감을 위한 Cavity Wall의 裝置 구조와 시공	윤 등 오	76. 9	3
건축史의 의의	길 정 천	"	8
미래의 定住환경 - 건축기술의 가능성(2)	조 건 영	"	12
R. C바닥 슬래브의 소요두께 小考	조 영 무	"	17
불교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김 평 곤	"	25
寺刹의 배치	김 정 수	76. 10	2
미래의 定住환경 - 건축기술의 가능성(3)	조 영 무	"	7
공동주택의 隣棟間隔(2)	이 해 성	76. 11	19
자연환경과 주거환경	박 윤 성	"	24
도시환경과 樹木植栽	윤 등 오	"	29
기술 정보	신 현 식	76. 12	45
國土造景	윤 등 오	77. 1	8
団地계획에 있어 서로 다른가구와 침실조직에 대한 효율적 점유율 방안연구	유 영 진	77. 2	3
화재와 건축방재 대책(1)	김 형 결	"	13
저온저장고의 시공과 시공상의 문제점	이 승 우	"	43
에너지 보존을 위한 주택열관리 방안	김 홍 열	"	56
건물의관과 스펀드릴 설계	이 연 덕	77. 3	2
도시중심에서 차량제한 구역에 관한 계획	김 진 일	"	9
건축 評價의 의의와 방법론	정 제 영	"	14

제 목	필 자	월호	페이지
모두를 설계	이 문 섭	"	19
화재와 건축방재대책(2)	김 형 결	"	25
주거건축물의 소음방지책	金 文 燦	77. 4	75
불국사 다보탑 및 석가탑 실측보고	강 봉 진	77. 5	2
新行政 수도의 계획과 건설	김 원	"	34
C. I. A. M에 관한 小考	송 민 구	77. 6	2
주택의관의嗜好性에 대한 주관적 평가	이 경 회	"	6
상가건물 Facade와 장치물 및 간판과의 조화에 관한 연구	김 진 일	"	15
주택에 사용한 Plastic 발포전정재 의 화재성향	국립건설연구소	77. 6	72
가족생활에 대한 사회학적으로구들과 주택적합 용어들의 개념(1)	조 영 무	77. 7	2
상가건물 Facade와 장치물 및 간판과의 조화에 관한 연구	김 진 일	"	6
새 위성도시와 주택문제 고찰	유 영 진	"	16
도시화와 경제개발계획	노 춘 회	77. 8	2
가족생활에 대한 주택의 사회학적 및 적합요구들(2)	조 영 무	"	20
외국의 공사비 구성에 대한 분석	도 강 회	"	41
저층Apt를 위한 輕量철골조건축 전통에 대한 思念들	김 홍 열	"	56
한국 건축전통양식 계승을 위한 재연	최 창 규	77. 9	2
불교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한 규 봉	"	6
가족생활에 대한 주택의 사회학적 및 적합요구들(3)	김 정 수	"	8
건축에 있어서 Total Design의 개념에 관하여	조 영 무	"	53
정화조는 건축이 아닌가?	김 회 춘	77. 10	4
人間 / 환경학적 개념을 중심으로	김 진 일	"	8
한국 건축의 전통양식 계승	이 경 회	"	13
假稱의 설치목적 및 그 운영에 관한 試案	한 창 진	"	18
가족생활에 대한 주택의 사회학적 및 적합요구(4)	유 향 산	77. 11	4
편심화중을 받는 기초에 대한 고찰	조 영 무	"	9
석고틀 이용한 새로운 내장재료	김 택 진	"	35
건축 건설공사장의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이 재 욱	"	39
ILZRO Multy Panel 공업화 주택 시스템	강 일 동	"	43
학교 건축의 지역사회화를 시도	이 경 회	77. 12	3
세계 현대건축의 경향(1)	유 향 산	"	23
건축물의 수명과 해체	조 영 무	"	27
HOTEL 기능의 공간분화에 대한 계획론	강 일 동	"	23
유리섬유 보강콘크리트와 그 성질	유 영 진	78. 1	3
2001년의 생활과 직장을 위한 도시공간	김 형 결	"	25
세계 현대건축의 경향(2)	김 원	"	37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경제성장(1)	조 영 무	78. 2	2
주택정책 및 도시개발정책의 문제점	노 춘 회	"	13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경제성장(2)	강 석 원	"	20
세계 현대건축의 경향들(3)	노 춘 회	78. 3	10
신체장애자를 위한 건축시설	조 영 무	"	20
세계 현대건축의 경향(4)	이 중 급	78. 4	17
불교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조 영 무	"	34
종합예술운동장과 건축	김 정 수	78. 5	8
도로교통의 소음방지	박 학 재	"	32
	이 용 운	"	42

제 목	필 자	월호	페이지
세계 현대건축의 경향(5)	조 영 무	"	47
주택문제에 대한 小考	김 진 일	78. 6	11
세계 현대건축의 경향(6)	조 영 무	"	20
鉛板을 이용한 건축구조	이 경 회	"	24
노인과 신체장애자를 위한 설계기준	정 재 영	"	30
都心の 기능(1)	노 춘 회	78. 7	7
先史時代 살림집 구조에 대한 연구	김 홍 식	"	15
전들의 氣密性	이 성 국	"	63
장교·정밀·미려한 시공과 유지관리	장 기 인	78. 8	23
都心の 기능(2)	노 춘 회	"	31
주택·실내디자인 전개	윤 도 근	"	39
건물 진단	오 창 회	78. 8	42
미래변화에 대처하는 학교건물의 적응 성과 융통성에 관한 연구의 분석(1)	유 향 산	"	46
건축환경의 보호와 건축가의 역할	이 재 욱	"	53
풍수지리설과 건축계획(1)	박 시 익	78. 9	29
태양에너지 이용 배관가스발생	윤 태 현	"	41
연립주택의 일반적 고찰과 개발 방향	허 범 팔	"	67
학교건물의 적응성과 융통성에 관한 연구분석(2)	유 향 산	78. 10	30
옥외 소음과 방지	이 성 국	"	36
구조계산을 하기위한 전자계산기에 관하여	정 일 영	"	75
창작인과 공동체 의식	강 두 석	"	78
건축구조이론의 발전과 과제	이 갑 조	78. 11	21
진화하는 건축대상과 건축가의 적응	이 광 노	78. 12	21
건축 교육의 목표	이 해 성	"	26, 27
건축창조와 文化의 媒介問題	김 수 근	"	30
우리시대의 건축가 - 그 존재 형식에 관하여	윤 승 중	"	
건축체계를 통해서 본 형태구성과 표현방법(1)	윤 도 근	"	38
풍수지리설과 건축계획(2)	박 시 익	"	60
도시공간계획과 재개발	박 병 주	79. 1	8
Apt지구내 건축의 적정용적률 및 건폐율 문제(1)	윤 정 섭	"	17
건축체계를 통해서 본 형태구성과 표현방법(2)	윤 도 근	"	25
사회복지시설과 가족제도의 변화	박 용 환	79. 2	11
Apt지구내 건축의 적정용적률 및 건폐율 문제(2)	윤 정 섭	"	16
도심교통과 재개발(1)	김 원	"	21
열손실 방지를 위한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연구(1)	편 집 부	"	37
도심교통과 재개발(2)	김 원	79. 3	8
서울의 도시적 요소로서의 연립주택	여 홍 구	"	11
열손실 방지를 위한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연구(2)	편 집 부	"	25
임시행정수도와 주택공급문제	유 영 진	79. 4	5
연료절약을 위한 열관리주택	신 현 권	"	9
불교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김 정 수	"	15
막살이집의 연구	김 홍 식	"	26
건축사의 건축창작 풍토 개선책에 관한 연구(1)	양 원 구	"	31
건축사의 건축창작 풍토 개선책에 관한 연구(2)	양 원 구	79. 5	33
소도시 개발을 위한 적정생활권 형성에 관하여	노 춘 회	"	41
아파트와 단독주택 주민의 주거 의식 및 형태에 관한 비교	송 장 복	79. 6	20

제 목	필 자	월호	페이지
열손실 방지를 위한 건축물의 구조에 관하여(3)	편 집 부	79. 6	55
건축 配色	강 명 구	79. 7	8
신축학교 건물설계를 위한 시설 실태조사	유 향 산	"	13
아파트 · 단독주택주민의 주거의식 및 行態에 관한 비교	송 장 복	"	20
수도권의 주택공급 模型에 관한 연구 소(小) 생활권 기본계획에 관한 조사(1)	주 종 원	79. 8	6
현대적 공장에 있어서의 조경의 개념과 보전관리	노 춘 회	"	14
태양에너지의 이용과 전망	박 상 호	"	23
태양열 주택의 난방시스템	정 현 채	"	52
태양주택의 시공 및 설계의 경향	이 중 원	"	53
태양열 주택의 냉난방 시스템 개요	이 명 호	"	54
사무소 건축의 발달과정	이 종 호	79. 9	6
건축에서의 인간의 심리적 공간	이 병 우	"	19
소생활권 기본계획에 관한 조사(2)	김 정 태	"	29
뜻으로 본 한국 건축양식	노 춘 회	"	35
건축디자인의 기본적 성격	박 시 익	79. 10	4
건축구조물의 거대화 한계	윤 태 현	"	16
에너지 절약을 위한 디자인 개념	김 규 석	"	22
태양열을 이용한 공동주택 multi-family 설계안	이 경 회	79. 11	5
신축학교건물 설계를 위한 기존 학교시설 실태조사(1)	홍 성 목	"	11
화재시의 철근콘크리트 구성재료의 高温性狀	유 향 산	"	15
CC TV의 건축에서의 활용	이 수 길	"	21
신축학교건물 설계를 위한 기존 학교시설 실태조사(2)	이 정 호	"	45
사무소 건축계획의 분석	유 향 산	79. 12	19
건축재료의 열전도 특성과 실험	김 형 우	80. 1	5
벽돌 및 시멘트블록 벽체의 균열(龜裂)에 관하여	윤 재 진	"	22
현대도시 건축물의 사회성	오 창 회	"	31
한국 민가의 유형별 분류	여 홍 구	80. 2	4
근대건축 표현방법의 세가지흐름(1)	김 홍 식	"	8
건축에서의 에너지·형태·미(美)	윤 도 근	80. 3	4
근대건축 표현방법의 세가지흐름(完)	김 정 태	"	12
방화 재료의 성능 및 평가(1)	윤 도 근	80. 4	15
태양열주택 건축계획	윤 재 진	"	20
구조와 건축美的 총합(統合)	김 회 춘	80. 5	10
방화 재료의 성능 및 평가(2)	정 계 영	"	14
화재시 건축물 내부의 유기고분자 재료의 고온성장(高温性狀)	윤 재 진	"	25
초(超)고층건물의 구조시스템에 관하여	이 수 길	80. 6, 7	4
창의 기능과 에너지 절약	이 갑 호	"	20
서울의 도시정비	박 윤 성	80. 8	6
근린지구 단위의 구성과 이론	여 홍 구	"	26
방화구조의 성능시험에 대하여	박 용 환	"	31
환상적 건축의 재조명	윤 재 진	80. 9	5
자원과 건축	김 정 태	"	13
학생집단 건강을 저해하는 학교 건축환경원의 비교조사연구(1)	홍 사 천	80. 10	8
한국 목조건축기법의 특징들	유 향 산	"	14
건축과 설비의 공사구분	조영무 · 조승원	"	24
조경계획과 에너지 절약	송 영	80. 11	5
학생집단 건강을 저해하는 학교 건축환경원의 비교조사연구(2)	장 문 기	"	37
	유 향 산	"	45

제 목	필 자	월호	페이지
연립주택의 형식과 배치계획	변 중 환	80. 12	30
고딕건축의 구조에 관하여	김 제 동	"	39
화재를 입은 구조물의 검사 · 진단 및 보수대책	정 일 영	81. 1	7
인구 · 자원 · 에너지	홍 사 천	"	13
한국 건축주택과 주택생활	장 기 인	"	21
도시환경과 옥상정원	장 문 기	"	28
에너지 절약형인 P.C 콘크리트 건축물	김 형 질	81. 2	7
도시 근린생활권 형성의 필요성	유 영 진	"	16
아이디어와 구조	이 창 남	"	20
古건축의 기둥배치에 관한 연구	이 재 현	81. 3	5
방화건축 기술	이 수 길	"	11
방공호의 설계	이 창 남	"	32
태양열 주택의 조형설계	이 정 덕	81. 4	19
인간화의 공간	최 종 현	"	32
주거환경의 계획과 설계방법	박 찬 무	81. 5	23
Hotel 건축기획에 대하여	송 민 구	"	42
수동형 태양열 축열벽의 활용	전 찬 진	81. 6	35
주택각부의 표준치수와 단위평면(1)	윤 도 근	81. 7	25
태양열 주택의 액티브 시스템	유 승 규	"	39
수영장 설계의 실제	이 수 길	81. 8	20
주택각부의 표준치수와 단위평면(2)	윤 도 근	"	26
주택정책과 도시주택설계	박 영 훈	"	32
에너지 절약을 위한 주택의 열적 성능	오 창 회	81. 9	33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의 구조 최적화	전 성 남	81. 10	65
신도시계획 이론의 발전	주 종 원	81. 11	29
컴퓨터를 이용한 건축설계	김 문 현	"	33
도시 연립주택 외부공간 구성의 문제점	정 구 은	"	36
장애자를 위한 건축과 도시환경계획	임 만 텍	"	61
노인복지시설-양로원의 현주소	박 용 환	81. 12	14
건축구조해석의 유한요소법에 의한 응용과 전망	권 택 진	"	24
우리나라 양통집의 평면에 대한 연구(1)	김 홍 식	82. 1	21
도시 설계의 기본성격	이 필 원	"	28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현황	최 찬 환	"	36
경량콘크리트를 P.C 구조물에 사용하였을 때의 경제성	김 형 질	82. 2	17
기온변화로 인한 건물의 균열방지에 관한 연구	임 남 재	"	23
우리나라 양통집의 평면에 대한 연구(2)	김 홍 식	"	26
건축물의 단열시공법(I)	이 중 환	"	65
수동형 태양열 시스템의 이론과 실제	정 현 채	82. 3	15
주택에 있어서 태양열 이용에 관한 연구	조 성 효	"	20
건축물의 단열시공법(II)	이 중 환	"	47
鑛主의 허용압축응력도	김 규 석	"	53
건축공사 시방서의 발전적체계(I)	이 용 운	"	60
P.C 구조 시스템	마 춘 경	"	72
한국 건축 개설(1)	장 기 인	"	30
도시계획의 새로운 전개	박 병 주	82. 4	15
서울도심부 불량건축물과 재개발	주 종 원	"	18
공공「Space」의 바닥면 디자인	이 연 덕	"	24
자연형 태양열 주택의 당면과제와 그 대책	이 명 호	"	29
한국 건축 개설(2)	장 기 인	"	32
건축물의 단열시공법(3)	이 중 환	"	58
건축공사 시방서의 발전적체계(II)	이 용 운	"	66
교회건축 · 그 형태와 양식의 유형	김 정 수	82. 5	14

제 목	필 자	월호	페이지
한국기독교 교회건축의 규모결정에 필요한 연구	이 호 진	82. 5	17
우리나라 도시와 농촌의 교회분포현황	한 규 영	"	22
현대 기독교 건축의 동향	정 시 춘	"	28
공동 집합주택의 당면과제	안 영 배	"	58
대학과 캠퍼스 계획	박 윤 성	82. 6	18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발생	오 선 교	"	23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1)			
농촌의 집촌화 계획에 관한 연구	유 용 교	"	42
시멘트벽돌 조적벽체의 구조내력	강 일 동	"	50
현대건축물과 발수제의 응용	홍 사 천	"	55
호텔건축을 기획할 때	송 민 구	82. 7	21
건축과 회화	김 청 강	"	24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발생	오 선 교	82. 7	43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2)			
구내통신 선로설비에 관한 해설(1)	김 문 수	"	68
타일시공방법과 탈락방지책	이 형 재	"	65
도심환경과 고층사무소 건축	박 강 평	82. 8	13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발생	오 선 교	"	29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3)			
주거환경 이대로 좋은가?	주 종 원	82. 9	9
주택설계에 있어서의 합리와	박 돈 서	"	14
정서의 조화			
아파트와 맨션	김 종 인	"	17
독립주택지역의 장차개발은 어떻게	유 영 진	"	22
변할 것인가?			
건축과 설비조화의 계획	손 장 열	"	104
병원 건축의 근대화화 우리들의 과제	김 광 문	82. 10	14
병원 건축에 대한 小考	이 특 구	"	17
건축물의 기구부에 대한 기밀성능	정 종 문	"	63
기준제정의 시험분석			
구내통신 선로설비에 관한 해설(完)	김 문 수	"	72
인테리어 디자인의 실제(I)	박 홍	"	24
환경 Designer 양성의 필요성	강 건 회	"	23
에너지 절약적 건축설계를 위한 고찰	박 상 동	82. 11	47
인테리어 디자인의 실제(II)	박 홍	"	33
공방건축에 대한 小考	오 수 영	82. 12	16
공기조화설비의 체크리스트	손 장 열	"	39
인테리어 디자인의 실제(III)	박 홍	"	21
에너지 계획과 건물디자인	이 경 회	83. 1	14
Apt의 내부소음에 대한 조사연구(1)	박 성 인	"	23
인테리어 디자인의 실제(IV)	박 홍	"	51
감리업무의 책임과 제도개선에	오 용 석	83. 2	12
관한 小考			
단열과 結露(결로)	손 장 열	"	18
Apt의 내부소음에 대한 조사연구(2)	박 성 인	"	21
인테리어 디자인의 실제(V)	박 홍	"	32
초에너지 절약형 건물	박 상 동	83. 3	9
한국 목조건축의 양식과 구조 및	장 경 호	"	51
그 특징			
2 층형 농촌주택 및 새마을회관			64
표준설계에 관하여			
작은 구조	이 창 남	"	79
인테리어 디자인의 실제(VI)	박 홍	"	20
한국의 지진위험 가속도 지도와	김소구·이이형	83. 4	12
내진설계에 관한 小考			
인테리어 디자인의 실제(VII)	박 홍	"	20
소형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유 동 열	"	74
급배수 위생설비			

제 목	필 자	월호	페이지
배연설비(Smoke Exhaust System) 개론	이 승 구	83. 4	93
인테리어 디자인의 실제(VIII)	박 홍	83. 5	19
소형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이 영 수	"	65
난방 및 위생전기설비연구			
부대설비(전기·기계)의 설계도서	최 원 보	"	73
작성 요령			
오수정화시설의 설계를 위한 해설(1)	유 영 배	"	89
경사지의 합리적 이용과 개발	김 정 식	83. 6	12
인테리어 디자인의 실제(IX)	박 홍	"	16
건물의 부위별 성능 및 설비기준(I)	동력자원연구소	"	61
오수정화시설의 설계를 위한 해설(2)	유 영 배	"	69
인테리어 디자인의 실제(X)	박 홍	83. 7	31
병원의 공기조화설비	손 장 열	"	49
소형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난방설비	유 동 열	83. 7	59
서울의 도심재개발사업	송 영 섭	"	26
건물의 부위별성능 및 설비기준(II)	동력자원연구소	"	76
초기 한국 성당건축의 토착화에	김 정 신	83. 8	27
관한 연구			
자연공원내의 시설물 디자인에	장 태 현	"	66
관한 연구			
건물의 부위별성능 및 설비기준(III)	동력자원연구소	"	75
도시근린주민시설 현황에 대한	강 건 회	83. 9	60
주민의 의사에 관한 조사연구			
도시 재개발에 대해	안 병 의	"	28
건물의 부위별성능 및 설비기준(完)	에너지연구분과	"	77
국산 내장재의 가스유해성	장 기 창	"	94
건축공사 시방서 작성요령	최 원 오	"	99
도시재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	윤 정 섭	83. 10	11
도시재개발 사업의 합리적인	노 춘 회	"	16
시행방안(1)			
도시환경에서 본 건축과 조경	이 규 목	"	22
건축과 빛	김 기 환	"	56
건축의 컴퓨터 이용(I)	조 철 호	"	48
콘크리트 강도추정을 위한 비파괴	오창희·이이형	"	78
시험법에 관한 小考	서치후		
인테리어 디자인의 원리(上)	조 성 열	"	74
도시재개발 사업의 합리적인	노 춘 회	83. 11	24
시행방안(2)			
서울 도심부 재개발	주 종 원	"	47
빛의 장인(匠人)들(I)	김 기 환	"	61
건축의 컴퓨터 응용(II)	조 철 호	"	78
인테리어 디자인의 원리(下)	조 성 열	"	70
도시재개발 사업의 합리적인	노 춘 회	83. 12	17
시행방안(完)			
빛의 장인(匠人)들(完)	김 기 환	"	78
건축의 컴퓨터 응용(III)	조 철 호	"	66
실내공기 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심호용·지성만	"	39
정신박약아를 위한 시설의 계획과 설계	박 용 환	"	50
인테리어 디자인의 요소(1) : (III)	조 성 열	"	46
시각장애자를 위한 시설의 계획과 설계	박 용 환	84. 1	39
서울의 도시외부공간에 대한 분석	김 경 수	"	59
고층건물의 위생설비	박 용 환	"	87
고층건물에 있어서의 바레트기초	전 봉 수	"	91
형식에 관한 小考			
인테리어 디자인의 요소(2)	조 성 열	"	23
건축의 컴퓨터 응용(IV)	조 철 호	"	71
사무소 건축의 구조상 문제점	이 창 남	84. 2	33
사무소 건축의 새로운 방향	김 종 남	"	40

제 목	필 자	월호	페이지
지체장애자를 위한 시설의 계획과 설계	박 용 환	84. 2	58
한국의 寺刹建築	김 동 현	"	67
인테리어 디자인의 분류(3)	조 성 열	"	44
건축의 컴퓨터 응용(V)	조 철 호	"	71
현대건축의 동향들	강 혁	84. 3	38
한국의 목조건축 양식	김 동 현	"	48
한국과 일본의 가람(伽藍) 배치 계획 비교연구	김 봉 열	"	62
열펌프(Heat Pump)의 기본원리와 에너지 절약	민 만 기	"	72
공동주거제에 관한 연구	안 영 배	"	76
인테리어 디자인의 분류(4)	조 성 열	"	44
건축의 컴퓨터 응용(6)	조 철 호	"	54
대한생명63층 빌딩	김 회 춘	84. 4	50
초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대한 시험성과	김 입 영	"	36
인테리어 디자인의 분류(5)	조 성 열	84. 4	32
한국 건축의 평면	김 동 현	"	40
건축의 컴퓨터 응용(7)	조 철 호	"	62
주택의 실상과 허상	최 창 규	84. 5	25
주택을 위한 단상(斷像)	김 정 철	"	28
생활공간으로서의 주택에 대한 小考	지 자 순	"	31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설계의 방향	이 각 표	"	35
영·육아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박 용 환	"	73
흡수식 가스 냉난방 장치의 기술 개발동향과 전망	조 흥 곤	"	81
인테리어 디자인(6)	조 성 열	"	42
건축의 컴퓨터 응용(8)	조 철 호	"	53
서울시 4 대문내에 있어서의 광장 형태별 유형분석에 대한 연구	이 범 계	84. 6	66
장애자와 주거	박 용 환	"	70
고층건물의 전기설비연구	이 영 수	"	76
건축의 컴퓨터 응용(9)	조 철 호	"	48
인테리어 디자인(7)	조 성 열	"	51
교회시설의 적정규모와 지역적 배치에 관한 연구	한 규 영	84. 7	57
Wheel Chair 사용자의 생활공간의 실태와 디테일(동작기능과 치수를 중심으로)	정 경 운	"	62
고층건물의 공조설비공간	손 장 열	"	69
주택의 인테리어 디자인(8)	조 성 열	"	38
건축의 컴퓨터 응용	조 철 호	"	50
도시재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계획방안	주 종 원	84. 8	40
휠체어 사용자의 생활공간의 실태와 디테일	정 경 운	"	67
태양에너지 이용시스템에 대한 연구(1)	윤 영 재	"	84
주택의 인테리어 디자인(9)	조 성 열	"	56
건축의 컴퓨터 응용	조 철 호	"	77
초고층건물의 정보설비	송 영	84. 9	70
주택단지경관 및 주택의 질 향상방안	조 성 용	"	74
태양에너지 이용시스템에 대한 연구(2)	윤 영 재	"	85
기존주택의 단열개수	박 상 동	"	86
건축의 컴퓨터 응용	조 철 호	"	59
주택의 인테리어 디자인(10)	조 성 열	"	62
육아시설 트로	박 용 환	84. 10	27
기존주택의 단열개수	박 상 동	"	31

제 목	필 자	월호	페이지
오수정화조 설비	황 원 택	84. 10	43
건축전기 설비면에서의 에너지 절약 기술	이 영 수	"	54
전산화에 따른 Software 보급	전 동 원	"	62
태양에너지 이용시스템에 대한 연구(3)	윤 영 재	"	65
주택의 인테리어 디자인(11)	조 성 열	"	23
건축의 컴퓨터 응용	조 철 호	"	38
태양에너지 시스템에 관한 연구(4)	윤 영 재	84. 11	82
고층건물에 대한 방화계획의 착안	김 상 욱	"	84
방향연구(1)	조 성 열	84. 12	46
특유의 공간연출을 위한 장식소품	최 기 수	"	49
외부환경의 설계	조 철 호	"	52
CAD를 활용한 건축설계	박 상 동	"	60
기존주택의 단열개수	권 상 수	"	81
콘크리트 구조물을 위한 비파괴시험법	윤 영 재	84. 12	84
태양에너지 시스템에 관한 연구(5)	최 기 수	85. 1	60
외부환경의 설계(1)	주 영 욱	"	64
CAD 도입과 소형 CAD의 개발	손 장 열	"	42
공기조화설비의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소비평가	박 상 동	"	50
기존주택의 단열개수(4)	조 성 열	"	55
인테리어 디자인·실내조명	이 명 춘	"	75
에너지 개발에 대한 연구	권 상 수	"	72
콘크리트 강도측정상의 반발치수 R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도시환경연구분과	"	80
조정 설계의 실제	조 성 열	85. 2	54
인테리어 디자인	박 길 용	"	58
옥외환경 가구계획에 있어 디자인 총합개념	노 춘 희	"	62
불량주택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	윤 정 섭	"	68
도시설계와 도심부 재개발	최 기 수	"	76
외부환경의 설계(2)	전 봉 수	"	80
Top Down 공법과 설계자	김 대 로	"	84
조합식 건축에 관한 연구	조성용(외 2인)	85. 3	48
초고층아파트 건축계획설계	조 성 열	"	60
인테리어 디자인	최 기 수	"	64
외부환경의 설계(3)	양 윤 재	"	70
환경과 환경설계	이 규 목	"	72
환경심리적 접근	정 경 운	"	78
도시 PLAN의 연구	이 명 춘	"	86
에너지 콘크리트 부르크	조 성 열	85. 4	62
인테리어 디자인	최 기 수	"	58
외부환경 설계	손 장 열	"	74
병원공기 조화설비의 비용	주 종 원	"	66
한국 주택 오늘의 실태	유 향 산	"	77
초·중학교 교육시설의 다목적, 공용적 기능에 관한 연구(1)	장 기 흥	"	82
주택의 공업화	한 도 롱	85. 5	28
전시공간의 연출	윤 오 석	"	34
OFFICE LANDSCAPE	조 성 열	"	52
인테리어 디자인	최 기 수	"	56
외부환경 설계	유 향 산	"	60
초·중학교 교육시설의 다목적, 공용적 기능에 관한 연구(2)	한 도 롱	85. 6	34
창조 공간의 도전	최 기 수	"	38
외부환경 설계〈수직·천정의 설계〉	조 성 열	"	42
인테리어 디자인 -가구-			

「建築士」誌 掲載 會員作品 總目錄

회원 작품명	건축사명	사무소명
1967년 4월호		
•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사열대	강 봉 진	국보건설단
• 한씨 주택	강 진 상	태양건축
• 고려대학교 정문	김 만 성	연합건축
1967년 9월호		
• 광주 부녀회관	이 백 길	동방건축
• K씨 주택	강 진 삼	태양건축
1967년 11월호		
• 한국순교복자 양화진기념 성당급 기념관	이 회 태	이회태건축
• 관악간츄리클렘하우스	이 명 환	유신건축
1968년 1월호		
• S씨 주택	김 만 성	연합건축
• J씨 주택	김 정 식	정림건축
• 주택	안 인 모	삼봉건축
• 주씨택	유 경 철	삼육건축
• B씨 주택	정 해 준	정해준건축
• K씨 주택	차 경 순	차경순건축
1968년 3월호		
• 정부종합청사	나상진·김정수 윤장섭	
• 부여 농협청사	양 한 구	양건축
• 해남빌딩	오 응 석	신조건축
1968년 5월호		
• 체신공무원 교육원 청사	강 보 삼	태양건축
• 세운상가 아파트	김 수 근	공간사
• 이씨 주택	이 석 문	종합건축
1968년 9월호		
• 부산해운대 극동호텔	김 태 식	김태식건축
• 신촌로터리예식장	김 진 천	김진천건축
• C씨택		우성건축
1968년 11월호		
• 대왕상가 아파트	엄 덕 문	엄·이건축
• 등대문구 청사	강 재 홍	도시건설
• 삼산동 C씨택	김 재 철	김재철건축
• 정신병원	유 경 철	3·6건축
• 중소기업은행 본점	윤 태 현	윤태현건축
1969년 1월호		
• 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	안 기 태	동화건축
• 황씨 주택	장 태 환	상미주택연구소
• 성북동 이씨주택	이 춘 상	신양건축
• 이씨 주택	송 관 식	황해건축
• 한남동 김씨주택	김 만 성	연합건축
• 김씨 주택	김 두 섭	극동건축

회원 작품명	건축사명	사무소명
1969년 3월호		
• 한남동 이씨택	김 중 업	김중업건축
• 주택	이 제 승	중앙건축
• 김씨 주택	송 기 덕	정일건축
• YMCA회관	차 경 순	차경순건축
• 김씨 주택	이 회 태	이회태건축
• 인천소년회관	김 중 회	합동건축
1969년 5월호		
• 주택 (A씨)	유 경 철	삼육건축
• 주택 (L씨)	지 순	일양건축
• 주택 (S씨)	김 수 근	공간연구소
• 사무실빌딩	최 영 훈	신아건축
• 삼윤빌딩	오 응 석	신조건축
• 법률사(사찰)	허 경	민도건축
1969년 7월호		
• 조양빌딩	김 중 근	범아건축
• 동방생명 전록지사	박 성 규	근대건축
• 한남동 이씨택	성 일 영	동진건축
• 외무장관 공관	이 승 우	종합건축
• 용암동 K씨택	홍 영 기	우성건축
1969년 11월호		
• 성하빌딩	장 석 용	아도-무건축
• 충청남도 여성회관	정 진 경	정진경건축
1970년 1월호		
• 제주대학 본관	김 중 업	김중업건축
• 제주대학 수산학부	김 중 업	김중업건축
• EXPO 70 한국관	김 수 근	공간연구소
• 여의도교회	김 수 근	공간연구소
• 칸츄리크립	나 상 진	나상진건축
• 건축가의 집	김 하 진	
1970년 2월호		
• 서부역사	김 중 업	김중업건축
• 과학기술연구소 본관	유 결	기술공사
• 투인 하우스	김 순 련	U아틀리에
• 씨머 하우스	조 창 결	
• 주택	공 일 곤	공일곤건축
1970년 3월호		
• 삼주빌딩	변 용	삼주건축
• 수협회관	나 상 진	나상진건축
• 상도동 교회	조 창 한	조창한건축
• Y사장택	정 인 국	
• 신촌집	김 원	고하산방
• 농촌주택	송 기 덕	정일건축
1970년 4월호		
• 원남교회	박 태 탄	

회 원 작 품 명	건축사명	사무소명
• A회관 • 명륜동 강씨집 • 응암동 한씨집	한 창 진 유 정 김 순 련	제내탈 엔지 U아틀리에
1970년 5 월호		
• 세검정 L씨집 • 삼청동 S씨집 • 상도동 B씨집	김 문 규 김 규 오 변 용	
1970년 6 월호		
• 충신동교회 • 후암동교회 • 육전군 교육청사	정 진 경	삼도건축 정림건축
1970년 8 월호		
• C씨 주택 • C. M. B. A 빌딩 • K사장택 • 김씨집	원 정 수 지 순 장 석 웅 장 석 웅 최 준	일양공방 일양공방 아도-무건축 아도-무건축
1970년 9 월호		
• 가정법원청사 • S씨 주택 • 대한건설협회 충남지부청사 • L씨 주택 • Q씨 주택	아 종 금 부 대 진 정 진 경 공 일 곤 윤 주 환	진아건축 공일곤건축
1970년 10월호		
• 문씨 주택 • K씨 주택 • C씨 주택 • K씨 주택 • 젊은 건축가의 집	안 영 배 강 영 길	안영배건축 동화건축 삼육건축 연희건축
1970년 11월호		
• H씨 주택 • 강원도 문화센터 • 별장 • Y씨 주택 • R씨 주택 • S씨 주택	유 정 철 이 홍 수 김 무 성 노 영 진 이 영 선	삼육건축 신일건축 제내탈엔지 노영진건축 연희건축
1970년 12월호		
• L씨 주택 • H씨 주택 • 효창아파트 • 진씨 주택		향건축 삼원사건축 범아건축 여미 도시전
1971년 1 월호		
• 주 택 • 주 택 • 삼청공원 개발사업계획 • 입업시험장 연구실 • 주 택	장 태 환 박 성 일 서상우·박준호 이 종 금 경 석 구	상미주택 주택연구소 동화건축 세대건축 경석구건축
1971년 2 월호		
• 남강회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홍 철 수 강 기 세	한국건축문화, 연 유신복수설계

회 원 작 품 명	건축사명	사무소명
• 주 택 • 주 택 • 주 택	김 판 성 김 현 석 이 영 회	연합건축 삼정건축
1971년 3 월호		
• 주 택 • 무학교회 • 주 택 • 산 장 • 주 택 • 주 택	조 장 한 김 형 석 김 형 석 김 용 인 윤 태 현 유 영 봉	조장한건축 피아건축 피아건축 진미공사 삼원건설 창일사건축
1971년 4 월호		
• 한국정교회 • 성북동 K씨 주택 • U빌딩 • 후암동주택	조 창 한 박 상 돈 공 일 곤 이 영 회	조장한건축 유신복수설계 공일곤건축 삼정건축
1971년 5 월호		
• 3·1로빌딩 • 코스모스백화점 • 주 택 • 주 택	김 중 업 김 기 환 차 광 통 노 영 진	김중업건축 화성건설 한형건축 노영진건축
1971년 6 월호		
• 주 택 • 연립주택 • 배재빌딩 • 주 택 • 가든타워	박 재 규 김 정 철 안 영 배 이 창 민 송 기 덕	삼육건축 정림건축 안영배건축 세신건축 정일건축
1971년 8 월호		
• 별 장 • 불광동 L사장택 • 영등포 J씨택 • 신당동 P씨택 • Y씨 주택	권 오 현 홍 철 수 김 회 수 김 만 준 유 규 성	에이지건축 한국건축 현신건축 신도시건축 범양건축
1971년 9 월, 10월호 합본		
• 김씨 주택 • K씨 주택 • 김천 J씨 주택 • C씨 주택 • C씨 주택	김 진 천 김 봉 훈 김 인 배 차 광 통 공 일 곤	김진천건축 신신건축 강희설계 한협건축 공일곤건축
1971년 11월호		
- 건축대상 작품전 - • 박씨의 집 • 한독산업(주) • 경북체육관 • 광주시민회관 • 금산 중용사 • 장씨의 집 • 이디오피아 기념탑 • 한일합섬섬유공업(주)	안 영 배 김 관 풍 김 인 호 이 기 수 장 기 인 이 덕 우 김 영 환 허 선 행	안영배건축 김관풍건축 대아건축 우일건축 삼성건축 종합건축 천일건축 부산건축
1971년 12월호, 1972년 1월호 합본		
• 고씨 주택 • 서울외국인학교	이 호 진 이 호 진	삼원사 삼원사

회 원 작 품 명	건 축 사 명	사 무 소 명
• 주 택 • 주 택 • 회 관 • 주 택 • 대구교육대학 • Y씨 주택 • P씨 주택	안 영 배 정 식 영 정 진 경 김 관 풍 조 기 보 윤 기 병 박 규 정	안영배건축 동인건축(전남) 정진경건축(충남) 김관풍건축 공화건축(경북) 미미건축 박건축
1972년 2월호 • Z씨 주택 • C씨 주택 • 평창동 주택 • 안상용씨 주택 • K씨 주택	조 창 한 노 영 진 김 형 석 오 만 준 유 규 성	조창한건축 노영진건축 피아건축 삼정건축 범양건축
1972년 3월호 • 대전 카톨릭 문화회관 • L씨 주택	지 순 김 만 성	일양건축 연합건축
1972년 4월호 • 충무관광호텔 • 숙명여대 학생회관 • L씨 주택 • A씨 주택, L씨 주택	오 만 준 김 인 석 이 영 희 안 병 의	삼정건축 우신건축 희랍건축 향건축
1972년 5월호 • 삼정빌딩 • 한라관광호텔 • 주 택	오 웅 석 김 한 섭 부 대 진	신조건축 금성종합설계 진아건축
1972년 6월호 • 사모아 한국관 • 제주 해군공관 • A씨 주택	박 금 영 강 은 홍 박 춘 상	서라벌건축 금성종합설계 박춘상건축
1972년 7월호 • 동화주차빌딩 • 주 택	김 창 통 김 만 성	동서환경건축 연합건축
1972년 8월호 • 주 택 • 수석감리교회 • 동부이촌동 아파트	김 환 차 경 순 이 해 성	협동건축 차경순건축 이해성건축
1972년 9월호 • 병 원 • 청소년회관 • 주 택	박 춘 상 정 진 경 차 경 순	박춘상설계사 정진경건축 차경순건축
1972년 10월호 • 한국외환은행 마산지점 • 정박사 주택 • 김씨 주택 • 배씨 주택	이 영 희 김 정 석 김 정 일 지 순	회림건축 피아건축 범신건축 일양건축
1972년 11월호 • 주 택 • 주 택 • 실내장식	이 정 일 유 경 철 차 광 룡	범신건축 삼육건축 행동공간전

회 원 작 품 명	건 축 사 명	사 무 소 명
1972년 12월호 • 플립하우스 • 아파트	오 웅 석 김 인 배	신조건축 강희설계
1973년 1월호 • 연금·아스팔트회관 • 숙명여대 서관 • 제주 교육대학 • 동양고속버스 터미널 • 김씨 주택	이 승 우 김 인 석 김 한 보 김 봉 훈 김 만 성	연합건축 우신건축 금성종합 신신건축 연합건축
1973년 2월호 • 김씨대 • M씨대 • 이씨대 • 이씨대 • 국민은행 본점 • 농협중앙회 충북도지부	김 정 철 안 영 배 이 정 일 최 승 국 이 배 길 이 호 진	정림건축 안영배건축 범신건축 삼정건축 동방건축 삼원사
1973년 3월호 • 내자호텔 • 주 택(K씨) • 주 택(O씨) • 별 장(S씨)	이 용 수 유 경 철 홍 철 수 송 기 덕	신일건축 삼육건축 한국건축문화연 정일건축
1973년 4월호 • 어린이예능센터 및 리틀엔젤스 예술학교 • 연립주택(6세대)	엄 덕 룬 김 현 석	엄덕문건축 삼정건축
1973년 5월호 *시민회관 현상 공모전 • 우수작 • 준우수작 • 가 작 • 가 작 • 가 작 • 장려상 • 장려상 • 기 타	엄 덕 룬 이천승 외 2명 윤도근 외 1명 홍 순 인 안 영 배 고 주 석 유 회 준 지 순 외 15명	엄덕문건축 홍익대학 홍익대학 가전건축 안영배건축
1973년 6월호 • 제주도 해군 공관 • 사모아 한국관	강 은 홍 박 금 영	금성종합 서라벌건축
1973년 7월호 • 주 택 • 육산서원 청분각	공 일 곤 장 기 인	공일곤건축 삼성건축
1973년 9월호 • 제일은행 성동지점 • 주 택 • 정릉성당 • 구·서울 문리대 • 경주 문화예술센터 • 경주 문화예술센터	유 승 근 김 영 천 김 현 석 송 명 규 이 종 호	신건축 범신건축 삼정건축
1973년 10월호 • 전북체육관 • 안양경찰서	이 배 길 김 대 석	동방건축 김건축

회 원 작 품 명	건축사명	사무소명
• 순복음중앙교회	안 영 배	안영배건축
1973년 11월호		
• 주 택	김 대 성	범신건축
• 주 택	김 현 석	삼정건축
1973년 12월호 (주택특집)		
• 주 택	지 순	일양건축
• 주 택	홍 철 수	한국건축문화연
• 주 택	이 호 진	삼원사건축
• 주 택	이 춘 상	신양건축
• 주 택	유 승 근	신진속종합연
• 주 택	이 영 회	희림건축
• 주 택	유 규 성	범양건축
• 주 택	오 웅 석	신조건축
• 주 택	안 병 의	향건축
• 주 택	안 관 식	황해건설
• 주 택	김 형 석	파아건축
• 주 택	김 인 배	강희설계
• 주 택	공 일 곤	공일곤건축
• 주 택	강 현 술	동진건축
1974년 1월호		
• 부산시민회관	신 욱 강	신건축
• 광주공관장	김 태 만	강희설계
• 경산 인터체인지	김 인 배	강희설계
1974년 2월, 3월호 (합본)		
• 태종원	차 일 권	행동공간건축
• 한국도로공사	김 인 배	강희설계
• 이씨대	김 만 성	연합건축
1974년 4월호		
• 포항도립병원	김 동 규	김동규건축
• 청주도립병원	김 동 규	김동규건축
• 여의도 성모병원	김 동 규	김동규건축
1974년 5월호		
• 북능냉동식품공장	차 경 순	차경순건축
• 국립서울생사경사소	김 종 근	범아건축
• 대방동 천주교회 사제관	김 종 근	범아건축
1974년 6월호		
• L씨 주택	김 종 근	범아건축
• 삼창각	정 제 원	라이온건축
• A씨 저택	김 인 배	강희설계
1974년 7월호		
• 건축연수원	유 경 철	삼원건축
• 영락교회 기념관	이 호 진	삼원사건축
• 김씨 주택	홍 철 수	한국문화건축
• 서씨 주택 외 1 편 (대구)	권 영 환	합동건축·주
1974년 9월호		
• 한씨 주택	김 인 석	우신건축
• 황씨 주택	이 호 진	삼원사
• 김씨 주택 (대구)	권 영 환	합동건축
1974년 11월, 12월호 (합본)		

회 원 작 품 명	건축사명	사무소명
• 한국카프로락탄사택 (아파트, 연립주택, 독립주택)	강 순	한국종합기술
• 주 택	이 춘 상	신양건축
• 주 택	박 성 규	합성건축
1975년 1월호		
• 동성교회	최 창 규	신진건축
• 장씨주택	이 춘 상	신양건축
• 김씨주택	유 경 철	삼육건축
1975년 2월호		
• 대한주택공사주택자재전시관	지 순	일양건축
• 서울신학대학산교사	이 호 진	삼원사건축
• 최씨 주택	유 규 성	범양건축
1975년 3월호		
• 서울 서부 역사	이 승 우	종합건축
• 농산물 이용 실험실	박 성 규	한성건축
• 한국의환은행 마산지점 합숙소	이 회	희림건축
• 남양소금공장 (경기도)	정 온 용	정은용건축
• 문화회관 (김일체육관) (경기도)	손 중 박	삼호건축
1975년 5월호		
• 펜터 하우스	조 구 현	조구현건축
• 이씨 주택	이 종 관	한국건축기술
1975년 6월호		
• 경주박물관	이 회 태	이회태건축
• 한독의료박물관	주 영 백	동산건축
1975년 7월호		
• 출판문화회관	홍 순 인	홍순인+가전건
• 노량진교회	김 정 철	정림건축
• 중앙침례교회	박 성 규	합성건축
• 우신학교 과학관	이 춘 상	신양건축
• 잠사 부녀생활관	박 운 옥	박연옥건축
• 도고 칸트리클럽 하우스	박 운 옥	박연옥건축
• 박씨 주택	박 회 원	삼건축
1975년 8월호		
• 주 택	엄 태 우	복우건축
• 주 택	박 대 복	복우건축
• 주 택	박 정 덕	협성건축
1975년 9월호		
• 국회의사당	김 정 수	
1975년 10월호		
• 국립극장	이 회 태	이회태건축
• 노량진교회	김 정 철	정림건축
• 대구 시민운동장	윤 태 식	대구합동건축
• 주 택	김 효 일	경남. 원도시킨
• 주 택	유 경 철	삼육건축
• 대구 MBC, 서울탑	장 종 을	전우사
• 대구 청소년회관	유 문 대	대구합동건축
• 서울 신학대학	이 호 진	삼원사
• 주 택	홍 철 수	한국건축문화연

회원작품명	건축사명	사무소명
- 휴게실 - 출판문화회관	김 석 윤 홍 순 인	제주 김석윤전 대우건축
1975년 11월, 12월 합본 - 한국직물 시험조사소 - 충북 실내체육관 - 고려호텔 - 금산 청소년회관 - 강원대학 본관 - 경남은행 - 주 택 - 대구 직업훈련원 - 선인학원(인천제전교사 및 체육관)	김 태 훈 정 진 경 김 효 일 정 진 경 이 욱 남 우 행 기 임 두 현 이 종 금 김 중 회	신신건축 정진경건축 원건축 정진경건축 육남건축 영림건축 새원건축 새대건축 경기합동건축
1976년 1월호 - 중권저대소 현상응모 - 중권저대소 현상응모 - 중권저대소 현상응모 - 중권저대소 현상응모 - 중권저대소 현상응모 - 중권저대소 현상응모	이 승 우 오 응 석 나 상 기 이 호 진 원 정 수 윤 승 중	종합건축 신조건축 충익대학교 삼원사 일양건축 원도시건축
1976년 2월호 - 성베드로 학교 - 실용 주택 - 충북체육관 - 주 택 - 주 택 - 주 택	장 석 용 연 제 진 권 태 식 박 금 영 공 일 곤 김 봉 훈	아도무건축 연제진건축 경북 합동건축 서라벌건축 공일곤건축 신신건축
1976년 3월호 - 환경직목사 기념관 - K씨 주택 - 임변호사 주택 - 동화약품 안양공장 - 이원상씨 주택	김 만 성 김 남 기 홍 철 수 조 명 호 유 영 봉	연합건축 고미건축 한국건축문화 조건설 창일사
1976년 4월호 - 주 택 - 연희동 이씨택 - 배사장택 - 한남동 P씨택 - 주 택	박 성 규 홍 순 인 조 구 현 방 규 상 나 영 군	합성건축 대우건축 조구현건축 동신건축
1976년 5월호 - 아현동 주택 - P씨 주택 - M씨 주택 - 신촌교회 - 동방생명보험(주)	김 두 설 최 창 규 성 일 영 위 형 복 박 춘 명	극동건축 신진건축 동진건축 연희건축 박춘명건축
1976년 6월호 - 어린이회관 문화관 - L씨 주택 - 서현교회 - 주 택 - 송전대 학교 기독교박물관	김 인 석 이 홍 수 조 성 만 김 석 철 김 관 풍	우신건축 신일건축 가야종합건축 아기반설계 김관풍건축

회원작품명	건축사명	사무소명
1976년 7월호 - SILO - 주 택 - 한국기계류 상설전시관 - 주 택 - 은 행 - 교 회	이 조 원 정 효 환 이 해 성 송 기 덕 김 정 식 박 동 회	새기건축 정건축 이해성종합건 정일건축 정림건축 동신종합설계
1976년 8월호 - 주 택 - 주 택 - 주 택 - 주 택 - 주 택 - 터미널	유 규 성 김 영 기 강 은 홍 안 기 태 이 기 범 홍 철 수	범양건축 제 3 건축 금성종합건축 동화건축 도시건축 한국건축문화연
1976년 9월호 - 카톨릭의대부속 성바오로 병원 - 호남화력발전소 - 정능 B씨 주택 - L씨 주택 - 청운동 J씨 주택 - P씨 주택	김 동 규 김 창 서 김 형 석 정 정 치 조 성 만 황 일 인	김동규건축 협화건축 피아건축 합동건축 가야종합건축 건원사건축
1976년 10월호 - 경기지부 회관 - 신사동 Y씨 주택 - 장씨주택 - 주 택 - 대방동 주택 - 김씨 주택 - 낙성대 정화공사	정 은 용 윤 태 현 김 춘 배 윤 봉 원 김 안 배 유 경 철 장 기 인	정은용건축 정원건축 성미건축 원전사 강희건축 삼육건축 삼성건축
1976년 11월호 - 단국대학 학생회관 - 경성산업 전문대학 - 제일은행 부산 독신자 합숙소 - 교육방송국 - L씨 주택	김 인 석 박 성 규 이 영 회 장 종 울 김 석 철	우신건축 합성건축 희림건축 건우사 아기반건축
1976년 12월호 - 한국 고압벽돌공장 - 운실 및 동물사육장 - 원주, 강능 고속버스 터미널 - 제일은행 용암지점 - 이사장택 - L 주택	오 응 석 윤 태 현 서 천 식 유 승 군 이 재 규 김 만 준	신조건축 정원건축 삼일건축 신건축 중앙건축 신도시건축
1977년 1월호 - 병원(동원 메디칼센터) - 제일은행 동교동지점 - 전주 대건 신용협동조합 - 대부도 천주교회 - 주 택 - 주 택 - 주 택 - 주 택	김 동 규 김 정 철 김 광 서 연 재 진 김 인 배 윤 봉 원 김 영 기 홍 철 수	김동규건축 정림건축 전주연합건축 연제진건축 강희설계 원전사 제 3 건축 한국건축연

회 원 작 품 명	건축 사 명	사무 소 명
1977년 2월호 • 마산상고 독서실 • 주화관광호텔 • 동원아파트 • 주 택 • 주 택 • 주 택 • 주 택 • 수도권대 생활관	유 규 성 김 관 욱 이 성 결 공 일 곤 이 만 재 권 오 주 김 병 일 김 중 득	범양건축 대호건축 삼진건축 공일곤건축 불이건축 국제건축 용진건축 강터사
1977년 3월호 • 충청은행 본점 • 영등포 고등학교 체육관 • 용봉중앙교회 • 씨택 • 대림성모병원 • L씨택 • K씨택 • 사진현상소	김 지 태 김 영 덕 성 하 철 송 학 조 위 형 복 이 종 환 정 소 주 영 백	삼아건축 합동 명성건축 남성건축 연희건축 서울종합건축 신동건축 강동건축
1977년 4월호 • 주한○국 대사관 • H씨택 • 난곡새마을 연립주택 • 봉천 슈퍼마켓 • 죽전 휴게소 • 신사동 K씨택	유 경 철 김 인 배 송 기 성 안 기 태 박 수 현 이 기 범	삼육건축 강희설계 범한건축 동화건축 보성건축 도시건축
1977년 5월호 • 주 택 • K씨주택 • 임씨 주택 • 김씨 주택 • L씨 주택 • 장안빌딩 • 주 택	강 신 관 민 영 준 송 욱 호 이 재 덕 이 상 대 김 영 규 이 광 호	예전사 대성건축 신석건축 삼양건축 미화건축 삼진건축 광장건축
1977년 6월호 • 건국대학교 분관 • 구기동 오씨택 • 홍은동 K씨택 • 방배동 C주택 • 중소기업은행 부산지점 • H씨택	김 인 석 김 석 철 권 상 운 황 일 인 이 백 길 강 순 일	우신건축 김석철건축 신원건축 건우사 동방건축 필건축
1977년 7월호 • K씨택 • 주원관광호텔 • 주 택 • 조흥은행 공항동지점 • 노씨 주택 • L씨택	박 성 규 김 관 욱 이 광 호 안 기 태 최 영 준 김 서 한	합성건축 대호건축 건미건축 동화건축 아주주택연 국제건축
1977년 8월호 • 교 회 • 주말 주택 • 태평양화학 체육관 • 주 택 • 효창교회	최 창 규 유 규 성 김 봉 훈 신 현 수 윤 태 현	신진건축 범양건축 신신건축 신건축 정원건축

회 원 작 품 명	건축 사 명	사무 소 명
• 창원공업종합청사 • 월성 원자력 외국인 합숙소 1977년 9월호 • L씨택 • 학동 Y씨택 • 미성빌딩 • 슈퍼마켓 • 홍은동 H씨택 • 녹십자병원	차 동 명 유 병 욱 조 길 용 정 정 치 방규상·윤인섭 조 성 만 이 흥 수 김 동 규	차건축 유강설계 유일건축 합정건축 세진건축 가야건축 신신건축 김동규건축
1977년 10월호 • 소방서 • 주 택 • 남해화학 클립하우스 • 주 택 • 주 택	김 대 식 홍 순 인 김 봉 선 맹 성 우 박 동 회	김건축 대우건축 유일종합 성우건축 동신종합설계
1977년 11월호 *제3회 대한건축사협회 대상수상작품 • 대 상 (청과동교회) • 협회상 (주택) • 우수상 (금동개발 사옥) • 우수상 (태평양화학 본사) • 우수상 (주택)	이 회 태 김 인 배 한 창 진 김 봉 훈 권 태 식	영.이.건축 강희설계 한정건축 신신건축 합동건축
1977년 12월호 • 주 택 • W시 문화방송국 • 주 택 • 치과 및 주택 • 주 택 • 청구병원 • 용진빌딩	유 경 철 안 장 원 조 구 현 공 일 곤 배 동 권 도 성 만 조 성 만	삼육건축 신아건축 조구현설계 공일곤건축 신성건축 삼성합동 가야종합건축
1978년 1월호 • 송전대 기독교 박물관 • 주 택 • 주 택 • 보합교회 • 베다니교회 • 한국화재보험 • 주 택	김 관 풍 한 광 수 홍 철 수 박 상 호 안 일 성 박 윤 욱 이 정 인	김관풍건축 진양종합 한국건축문화 석림건축 극동설계 신원엔지니어 삼협건축
1978년 2월호 • 단국대학교 체육관 • 필리핀 대사관 • 수봉체육관 • 한일시멘트 단암공장 • 선일감리교회	김 인 석 주 한 열 정 상 봉 이 조 원 윤 봉 원	우신건축 공익건축사 신원엔지니어 세기건축 원전사
1978년 3월호 • 왜관지구 전적지 개발 • 한국은행 마산지점 • 주 택 • 주 택	이 승 우 김 정 섭 김 관 욱 유 승 근	종합건축 정림건축 대호건축 신건축
1978년 4월호 • 한일은행 포항지점	김 지 태	삼아건축

회원 작품명	건축사명	사무소명
• 중부소방서 • 두산산업 김포연구소 • 주 택 • 옥석동 장로교회	박 남 준 주 영 백 송 기 성 송 장 복	삼원건축 강동건축 법한건축 삼일종합
1978년 5월호		
• 주택 영동 L씨대 • 주 택 • 수도여자사범대학 대강당 • 청량리 제1 안식일교회 • 한국복수공업 사옥 •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옥 • 시흥군청 청사	황 일 인 강 순 일 김 총 독 성 하 철 서 총 석 김 학 석 박 성 규	건원사 필건축 구미사 명성건축 이과건축 서울종합건축 합성건축
1978년 6월호		
• 경기 반공회관 • 리도백화점 • 코리아 스파이서 본사 • 구미공업기지 옥외 수영장 • 장훈 대장로교회 • 영동 K씨대 • 서울세종문화회관	홍 철 수 박 질 남 김 동 숙 양 영 호 손 중 모 김 학 신 엄 덕 문	한국건축문화 태아건축 주일건축 정한건축 부원합동사 성신건축 엄.이.전
1978년 7월호		
• 천수빌딩 • 주 택 • 설악동 호텔 • 학산 기술도서관 • 주 택 • 서동 전기 전선지공장 • 주 택 • 코실크건축	차 봉 명 이 강 식 박 강 평 박 상 호 김 인 배 김 대 료 한 광 수 조 성 만	차건축 완종합건축 상아건축 석림건축 강희설계 한일건축 진양종합건축 가야건축
1978년 8월호		
• 누하동 윤씨대 • 전설직업훈련소 • 올림픽스 관광유원지 • 부산 시립박물관 • 건축사의 집 • 신대방동 K씨대	김 기 석 송 기 덕 이 정 인 이 회 태 장 종 물 정 소	아람건축 정일엔지니어링 삼협건축공사 엄.이선축연구소 전우사전축연 흥진건축연구소
1978년 9월호		
• 구미시 청사 • 김씨대 • 식 당 • 설악문 • 은 행 • 과학관	김 인 호 장 민 수 김 영 기 김 인 배 유 승 근 차 동 명	대아건축 지구건축 한라건축 강희설계 신건축설계 차건축
1978년 10월호		
• 영동 씨대 • 한일은행 포항지점 • 단국대학교 병정 체육관	황 일 인 김 지 태 김 인 석	건원사 삼아건축 우선건축
* 1977 ~ 1978년 (1년간) 회원작품지상전 수록(72편)		
1978년 11월호		
* 제2 정부종합청사 현상응모전 • 최우수작 • 우수작	엄덕문·이희태 송 기 덕	엄.이.건축 정일건축

회원 작품명	건축사명	사무소명
• 우수작 • 우수작	이승우·윤석우 강철구 박 춘 명	종합건축 박춘명건축
1978년 12월		
• 태양열 주택 • 충무로 성결교회 • 동송동 P씨대	정 정 치 강 순 일 홍 순 인	합정건축 필건축 대우건축
1979년 1월호		
• 주 택 • 연평 주택 • 주 택 • 휘문중고교 • 상림빌딩 • 주 택 • 육사 기독교회 • 주 택 • 점포, 사무실	유 광 홍 강 진 삼 홍 철 수 박 정 삼 차 동 명 유 규 성 윤 봉 원 정 소 박 동 회	한국건축 태양건설 한국건축문화 삼미건축 차건축 범양건축 원전사 흥진건축 등신종합
1979년 2월호		
• 한국은행 강릉기숙사 • 일신계강 본사 사옥 • 주 택 • 한국 국제 GIDEON 협회 회관	공 일 곤 김 정 철 이 상 대 이 영 근	봉일관건축 정림건축 미화건축 정한기술
1979년 3월호		
• 단대 산업대학 교사 • 주 택 • 소규모빌딩 • 주 택 • 주 택 • 외국어대학 도서관 • 쌍용 중앙연구소	김 인 석 이 기 범 황 일 인 김 기 석 유 경 철 한 영 수 김관욱·허필정	우신건축 도시건축 건원사 아람건축 삼육건축 대한합동설계 대호건축
1979년 4월호		
• 주 택 • 제일은행 합숙소 및 연수원 •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 • 주 택 • 장성사백단지 • 부평 부광감리교회	홍 순 인 이 영 희 차 동 명 윤 여 욱 이 문 우 정 시 훈	대우건축 희림건축 차건축 국립건축 한국환경계획 정주건축
1979년 5월호		
• 주 택 • 신탁은행 서교동지점 • 세종대학 박물관 • 대한교원공제회 회관 • 도립 의정부병원 • 아곡실리움센터(근로여성 복지관) • 연세대학교 체육교육관 • 주 택	이 총 언 백 영 기 김 증 득 이 영 일 오 웅 석 김 효 일 김 봉 훈 김 관 풍	원일건축 동림건축 구미사건축 삼송건축 신조건축 원전축 신신건축 서울합동건축
1979년 6월호		
• 청주 종합경기장 • 학동 J씨 주택 • D씨 주택	구 윤 희 강 진 삼 조 구 현	화신건축 동양기술개발 조구현건축

회 원 작 품 명	건 축 사 명	사 무 소 명	회 원 작 품 명	건 축 사 명	사 무 소 명
• 작업실달린 주택 • 광주은행본점 신축사옥 • 광운공과대학 학생회관	안 일 성 한 중 언 이 준 상	동래건축 금성건축 신양건축	• 대각회 보국사	홍 철 수	한국문화건축
1979년 7월호 • 한국증권거래소 • 강화 호국교육원 • 한양식품주식회사 여주공장 • 한국종합전시장(KOEX) • 한국전자통신(주) 구미공장 • 익산군농협	이 승 우 안 장 원 주 영 백 김 정 철 장 석 웅 윤 정 중	종합건축 신아건축 강동건축 정림건축 아도무건축 보정건축	1980년 3월호 • 조흥은행 관악지점 • 노량진 신성교회 • H기업 사무소 • 국민은행 성동지점 • 태양열 주택	이 영 일 이 기 범 강 순 일 이 은 학 김 대 로	상송건축 도시건축 필건축 은일건축 한미건축
1979년 8월호 • 주택(대민이네 집) • 교회(정동제일감리교회) • 주택(이원장택) • 주 택 • 주택(박교수택) • 주택(전주 호반촌 ○씨택) • 시장(전주 중앙시장)	최 창 규 김 정 식 서 중 석 김 영 수 엄 주 호 이 영 수 정 근	신진건축 정림건축 대영합동건축 김영수건축 종합건축 세종건축 삼인건축	1980년 4월호 • 남광토전주식회사 사옥 • 부산연안복지회관 • 창원시청사	김 대 식 이 회 태 김 정 식	김건축 주.영.이.건축 주.정림건축
1979년 9월호 • 전북 공무원교육관 • 부여군청사 • 일신빌딩 • 주 택 • 주 택	안 기 태 오 웅 석 임 현 언 홍 순 인 정 소	동화건축 신조건축 영건축 대우건축 흥진건축	1980년 5월호 • 인천 김씨 주택 • 평창동 김씨 주택 • 은 행 • 안동교회	송 수 구 방 규 상 오 웅 석 이 석 문	동인건축그룹 새진건축 신조건축 건화사
1979년 10월호 • 한국종합전시장 • 한국증권거래소 • 정동 제일감리교회 • 동송동 P씨택 • 남천동 H씨택	김 정 철 이 승 우 김 정 식 홍 순 인 유 광 흥	정림건축 종합건축 정림건축 대우건축 한국건축	1980년 6, 7월호 • S주택 • 중앙대학교 안성분교 1호관 • U종합병원 • 백화점빌딩 • 코지빌딩	이 영 현 공 일 근 김 동 규 강 석 원 박 영 호	대창종합건축 공일근건축 김동규건축 그림가건축 의전건축
1979년 11월호 • 호텔(서울 가든호텔) • 교 회 • 은 행 • 주택(Y씨 주택)	황 일 인 홍 순 인 박 길 남 이 경 호	건원사 대우건축 태아건축 제일건축	1980년 8월호 • 인제의과대학 부속 부산 백병원 • 삼환빌딩 • M씨 주택 • K씨 주택	윤승중·변용	원도시건축
1979년 12월호 • K씨택 • 안암동 K씨택 • 뉴설악호텔	전 상 운 이 의 구 김 정 철	신신건축 창전사 정림건축(주)	1980년 9월호 • 강남 성모병원 • 서강대학교 실내체육관 • 대한전선 본사 사옥 • K씨 태양열 주택	김 대 로 최 정 일 강 영 일	한미합동건축 정일건축기술 아진건축
1980년 1월호 • 한일은행목호지점합숙소,사택 • 한국금융연수원 • 충북대학교 공학관, 사법관 • Y씨택 • 태양열 주택	김 지 태 김 정 철 홍 순 인 유 경 철 박 성 규	삼아건축 정림건축 대우건축 삼육건축 합성건축	1980년 10월호 • 서울대학교 제3식당 • 대한 잡사회관 • 강원도 어린이회관 • 한일은행 종합연수원 • 청주 관광호텔 • 부산 K씨 주택	김 관 욱 유 천 준 김 수 근 윤승중·변용 빈 길 원 최 락 전	대호건축 공신건축 공간연구소 원도시건축 영건축 삼익건축
1980년 2월호 • 조흥은행 연수생활관 • 평창동 주택 • 천호상업고등학교 • 상도교회	안 기 태 박 상 호 황 일 인 이 영 회	동화건축 석림건축 일진건축 진화사	1980년 11월호 •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 연립 주택 • 남도예술회관 • 청포 주택 • 평창동 K씨 주택	한 중 언 김 기 석 박 무 길 윤 주 현 박 금 영	금성건축 아람건축 대광건축 내외종합건축 서라벌주택
			1980년 12월호 • 주택(종식이네집) • 호텔(남이섬 리포트호텔) • 주 택	최 창 규 박 규 정 박 동 회	신진건축 중앙종합건축 동남아종합기
			* 1980년도 대한건축사협회 작품상 수상작 (9편)		

회원작품명	건축사명	사무소명
1981년 1월호 • 학교(영광여자상업고등학교) • 터미널(광주고속 전주터미널) • 주택(오씨 주택) • 주택(김씨 주택) • 회관(상명여자 사범대학 학생회관)	정 상 봉 한 종 언 송 영 주 정 시 훈 김 기 석	주. 신진엔지니어링 금성건축 송영주건축 동인우, 정주건축 아람건축
1981년 2월호 • 빌딩(외환은행 서소문지점) • 회관(전주 덕진문화회관) • 교육원(공무원교육원) • 병원(인천 길병원) • 주택(S씨 주택)	김 정 철 강 석 원 정 은 용 김 일 호 송 기 준	정림건축 구름가건축 정건축 인천중구전·합 인천북구전·합
1981년 3월호 • 빌딩(대한화재보험 사옥) • 병원(청주 서울병원) • 기념관(성직자 기념관) • 주택(○씨 태양열 주택) • 사무실(국립표지 관리사무소) • 주택(○씨 주택) • 병원 및 주택	윤승중·변용 이 회 태 정 소 표 재 범 강 봉 진 신 영 동 연 계 성	원도시건축 엄, 이, 건축 홍진건축 표재범건축 국보건설단 청우건축 청우건축
1981년 4월호 • 교육관(충북대학교 교육관) • 교육관(동국대 경주분교 사회학관) • 군청사(남양주군 청사) • 병원(대전 성세제혈병원) • 백화점(대전 동양백화점) • 교회(영동 천주교회) • 주택(K씨 주택)	홍 순 인 김 인 석 박 성 규 김 종 민 유근렬·정인협 이 재 성 오 영 치	대우건축 종합환경, 일전 함성건축기술 B, K 건축설계 유근렬, 정인협 CMU협동건축 기미건축
1981년 5월호 • 부곡호텔 • 한전 안전사옥(전라남도 지부편) • 도교육위청사 • 시범 어린이집 • 용안과병원 • 군민회관(함평) • 감사장대 • 동광학원 교문	강 석 원 윤 주 현 송 건 임 재 식 홍 종 식 채 규 당 최 계 일 신 정 채	구름가건축 내외종합건축 대호건축공사 금성종합설계 미진, 신진, 조양 연합건축 광일건축 벽재종합설계 한국건축연구
1981년 6월호 • 동아일보 여의도 사옥 • 안성능전대합동강의동 • 용암교회(경상북도 지부편) • 성화여중·고 체육관 • 대구 건축사회관 • H씨 주택 • K씨 주택	이 회 태 안장원·최의준 나 영 균 유 배 근 김 무 권 김 선 들 안 승 채	엄, 이, 건축 신아건축 동진건축 도시건축 현대건축 합동건축 신한진건축
1981년 7월호 • 전주역사 • 서울국립표지 현충관	신 무 성 강 봉 진	서한건축 국보건설단

회원작품명	건축사명	사무소명
• 남대문빌딩 계획안(부산직할시 지부편) • 부산시 여성회관 • 부산 국제호텔 • 부산 성분도지과병원 및 보육원 • 창원 한빛교회 • 김씨 주택	이 기 범 안 종 환 김 신 채 엄 태 우 안 일 성 조 원 식	도시건축 삼광건축 서강건축 엄태우, 김동희건축 극동설계사 락키설계사
1981년 8월호 • 동학동 출이회관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관 • 남서울교회 • 창원공업기지 새마을회관 • 강릉 국동호텔 • 우성쇼핑센터 • 농림중앙회 아천군지부 • 조달청 부산사무소 비속참고 • 상가 및 주차장 복합건물 • 김씨 주택	김 기 석 홍 순 인 한 종 언 김 정 식 이 경 호 윤 태 웅 김 영 섭 박 상 호 신 국 범 임 팔 암	아람건축 대우건축 금성건축 주. 정림건축 제일건축 합동 동인건축그룹 극동종합건축 석림건축 주. 한양엔지니어링 동인건축
1981년 9월호(주택특집) • 최씨 주택 • 건축가의 집 • 박씨 주택 • N교수택 • H씨 주택 • 임씨 주택 • K씨 주택 • 황씨 주택 • H씨 태양열 주택 • K씨 태양열 주택 • 김씨 주택 • 김씨 주택 • 이씨 주택 • 박씨 주택 • S씨 주택 • 박씨 주택 • 김씨 주택	유 규 성 김 대 식 유 철 갑 이 영 희 황 일 인 홍 순 인 이 종 언 김 영 일 이 강 식 김 효 일 이 기 범 김 수 현 권 상 운 박 길 영 최 동 규 김 봉 훈 유 경 철	범양종합건축 김건축연 유림건축 전화사 종합환경, 일전 대우건축 건축 연, 원일 주. 정림건축 완종합전, 주 원건축연 도시건축공사 금강건축 신신건축 삼원엔지니어링 서인건축 신신건축 주. 종합건축
1981년 9월호 • K씨 주택 • K씨 주택 • 임씨 주택 • 이씨 주택 • 유씨 주택 • 이씨 주택 • I국무관관저	공 일 곤 홍 철 수 장 기 봉 정 현 수 김 영 섭 황 재 효 김 대 토	공일곤건축 한국건축문화 신동아 합동 고려건축 극동종합건축 중부산건축 원미건축
1981년 10월호 • 영락상업고등학교 • 중앙대안성기숙사 • 상업은행 속초지점 합숙소 • 감사장대 • 전주유아원(전북지부편) • 전주시 경로회관 • 전북체육고 체육관	김 정 철 김 호 김 기 흥 박 길 영 김 광 환 인 주 성 김 철 수	주. 정림건축 부림종합건축 서인건축 삼원엔지니어링 전주건축 전주성연합건축 신원건축
1981년 11월호		

회 원 작 품 명	건 축 사 명	사 무 소 명
•충무공기념관 •○○전화국청사 •춘천성결교회 •현대병원 •반산별서 •수협제주청사 •삼금부리공원 휴게소	장 석 웅 장 기 봉 이 국 남 김 백 교 김 석 윤 김 수 현 박 진 휴	아도무건축 신동아합동건축 국일종합건축 진일건축 김석윤건축 금강종합건축 동원건축
1981년 12월호 •삼화빌딩 •동명여고 강당 •오천감리교회 •군포읍청사 •청일학원(충북) •삼영아파트(충북)	이 승 우 김 봉 훈 윤 봉 원 박 성 규 오 세 형 윤 영 재	주, 종합건축설 신진건축 건축연, 원전사 합성건축기술공 종합건축설계 종합건축설계
1982년 1월호 •원주새마을 협동 유아원 •L씨 주택 •삼익주택 사옥 •종근당 사옥 •삼익 부산 비지타운	박 세 진 김 호 이 용 배 강 신 관 김 용 인	박건축 부림건축 삼익환경 예전사 삼도건축
1982년 2월호 •전주 예수병원 증축공사 •중소기업은행 마포지점 •광일빌딩 •K씨 주택	박 상 호 공 일 곤 유 천 준 김 용 정	석림건축 공일곤건축 공신건축 동서건축
1982년 3월호 •서초동 김씨택 •장위동 D씨택 •청주대학 상경대학 •한신공업 사옥 •한국산업은행 창원지점 •신화빌딩	김기홍·최동규 김 홍 주 오 선 교 이 영 일 김 정 철 김 석 철	서인건축 서울종합건축 오선교건축 삼송, 상지건축 정림건축 아키반
1982년 4월호 •지방행정회관 •MBC여의도 스튜디오 •대전투자금융(주) 사옥 •상명사대인문사회학관 •반월시청사 •오우선관광호텔 •보명빌딩 •신용보증기금 대구지점 •쇼펍센터 "태양의 집"	김 수 근 김 정 철 박 홍 우 김 기 석 이옥균·한영재 윤승중·변용 조 동 영 조 성 용 김 중 업	공간연구소 주, 정림건축 협정건축 아람건축 주, 영, 이건축 원도시건축 종합환경, 일진 우원건축 김중업건축
1982년 5월호 •마산성당 •압구정동성당 •소망교회 •청파감리교회 •서부제일장로교회 •천주교 감리교회 •상봉감리교회 •산성교회 •서강감리교회 •외정부 감리교회	김 수 근 이 회 태 김기홍·최동규 강 태 성 나영균·이광용 박 재 환 윤 봉 원 임 급 주 정 시 준 차 동 병	공간연구소 주, 영, 이건축 서인건축 고려건축 합동 동진건축 합동 도성건축 건축연·전사 임급주건축 정주건축 차진속연구소

회 원 작 품 명	건 축 사 명	사 무 소 명
1982년 6월호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학생회관 •상명여사대 도서관 •성보중고등학교 •송전대학교 대전캠퍼스 제4교사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본관	윤승중·변용 김 기 석 김 환 박성규·김무형 홍 순 인	원도시건축 아람건축 협동건축 하나그룹 대우건축
1982년 7월호 •태능선수촌 남자합숙소 •수안보 관광호텔 •우창회관 •호텔 롯데	김 창 일 윤승중·변용 윤 석 우 도 다 진 설	정림건축 원도시건축 종합건축 엄, 이, 건축
1982년 8월호 •동원회관 •금성전선 기숙사 •여수 상공회외소 •영풍빌딩 •신원빌딩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오봉석·신동배 권 찬 진 강 영 일 박 춘 명 박 영 호 박 윤 웅	주, 천일건축기 회운건축 아진종합건축 박춘명건축 의진건축연 정원건축
1982년 9월호(I) •한남동 L씨 주택 •L씨택 •서교동 윤씨택 •Y씨 주택 •방배동 B씨 주택 •서교동 박씨집 •S씨 주택 •역삼동 A씨택 •구기동 K씨 주택 •사당동 서씨 주택 •행신당 •쌍문동 L씨택 •서초동 심씨택 •이씨택 •논현동 C씨택 •신림동 J씨 주택 •삼성동 L씨택 •홍씨 주택 •동방고동 H씨택 •동선동 이씨택	김 중 업 공 일 곤 김 기 석 김 명 선 김 무 영 김 석 철 김 영 수 김 정 철 박 원 태 송 기 덕 오 태 길 유 정 철 윤 태 수 이 강 식 이 중 세 임 동 윤 정 구 은 황 일 인 김 호 유 규 성	김중업합동건축 공일곤건축 아람건축 강서합동건축 한국환경설계 건축설계, 아키반 김영수건축연 주, 정림건축 동남아종합기 주, 정일엔지니어 건축연, 강 주, 종합건축 남부합동건축 주, 안중합건축 남경건축 아진종합건축 삼예종합건축 종합환경, 일진 부림종합설계 범양종합연
1982년 10월호 •의료법인 성남병원 •의료법인 재천 중앙병원 •순천향 천안병원 •동래 광혜병원 •가야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영동병원	김 명 찬 성 하 철 이 원 태 김 신 재 이 진 한 김희수·이상두	도희건축 명성건축 권익건축 서강건축 대륜건축 현진건축
1982년 11월호 •부산시민도서관 •제일은행 청주지점 •성암야영장 •한일은행본점	최 행 웅 김기홍·박영건 홍 중 식 윤승중·변용	공간사 삼정건축 미진, 신진건축 원도시건축

회 원 작 품 명	건 축 사 명	사 무 소 명
• 주한말레이시아 대사관 • 동광빌딩	오 우 석 박지원·이외동	신조건축 유니온건축
1982년 12월호		
• 효성빌라 •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 • 선죽회관 • 반공소년 이승복 기념관 • 동화면세점 • 한국청년회의소	우 남 용 김 정 철 유 원 재 이 국 남 이 중 은 주 영 삼	가나건축 정림건축 장건축 국남건축 원일건축 한협도시건축
1983년 1월호		
• 카톨릭의과대학부속 성바오로병원 별관 • 순복음중앙교회 오산리 기도원 • 제일은행 합정동지점 • 항도루자금융 본사 • 태양탕 • 화정동 C씨택 • 상명여자사범대학 남관	이 치 서 조 행 우 이 영 회 공 일 곤 윤 원 석 교 재 선 김 기 석	서진건축 등양건축 희림건축 공일곤건축 미전합동건축 중앙, 한남건축 아람건축
1983년 2월호		
• 울산공대 대학회관 • 덕산병원 • 전남대학교 학생회관 • 역삼동 유씨택 • 효자동 집포 및 주택	황 일 인 김 득 수 임 명 재 김 호 정 구 은	종합환경, 일진 삼미건축 예소건축 주, 부림종합설 삼예건축
1983년 3월호		
• 신용보증기금 부산지점 • 그랜드예식장 • 세종대왕 기념관 • 창녕 남산호국공원 주위정화 • 동국대학교 경주대학 기숙사	조 성 룡 반 세 용 이 용 목 손 경 호 김 인 석	우원건축 삼흥건축 새한건축 은하건축 종합환경, 일진
1983년 4월호		
• 서울신탁은행기숙사및체육관 • 곡동도시가스 • 동수원모델 • 삼연빌딩 • D빌딩 • 새마을 교통회관 • 의료법인 시흥병원 • 전남체육회관 • 태화빌딩 •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 • 호서대학 학생회관 • 고려대학교 정문안내실	공 일 곤 박 상 호 정 구 영 이옥균·김인철 정덕훈 박 원 태 김 영 찬 정시춘·김충진 강 석 원 강 철 구 이 승 우	공일곤건축 석림건축 동성종합건축 주, 연, 이건축 주, 우일건축 주, 동남아건축 도화건축 공간연구소 정주건축 구름가건축 동우건축 주, 종합건축
1983년 5월호		
• 광주대학 과학관 • 하나로빌딩 • 학교법인 동강학원 학생회관 • 근로청소년회관 • 에바다농아원 PHASE. I. • 에인젤호텔 • 대농마을 L씨 주택	김 태 만 차 동 명 유 연 욱 김 효 일 유 원 재 최 영 석 최 승 원	신동림건축 하나로엔지니어 유한건축 원건축연 건축연구소장 우석건축 태음건축

회 원 작 품 명	건 축 사 명	사 무 소 명
• 충주현대시장 • 대구시 유·경도장 • 구미시청사	윤 영 재 임 문 기 이 성	종합건축 유진종합건 대아건축
1983년 6월호		
• 배재대학 • 서울 팔래스호텔 • 원효로의원 • 대성산업중앙연구소 • 함지박 • 중소기업은행 경영·기술 연수원	홍 철 수 송 기 덕 김 석 철 이 현 등 김 기 석 한 종 연	한국건축문화연 정일엔지니어 아키반 이현동건축 아람건축 금성건축
1983년 7월호		
* 건축사협회현상설계 입선작 • 당선작 • 우수작 (1) • 우수작 (2) • 우수작 (3)	송 광 섭 김 기 욱 이 영 회 김무영·최성일	환건축 상정건축 희림건축 환경설계
1983년 8월호		
• 육군박물관(83년 회원건축설 계 작품전 대상) • 근로청소년 회관(최우수상) • 한국은행 인천지점(우수상) • 한미수교 1백주년 기념탑 (장려상) • 경동교회(장려상) • 삼성동 H씨택(장려상) • 동강학원(장려상) • 의환은행합숙소(장려상) • 태화효평(장려상) • 삼익유치원(장려상) • 구인사 사천왕문(장려상)	김 중 업 김 효 일 김 정 철 강 석 원 김 수 근 송 광 섭 유 연 욱 이 영 회 이 용 욱 임 팔 암 장 기 인	김중업건축 원건축연 주, 정림건축 구름가건축 공간연구소 환건축 유한건축 희림건축 일신건축 동인건축 삼성건축
1983년 9월호		
• 3세대를 위한 집 • 망원동 연립주택 • 청담동 L씨 주택 • 주말 주택 • 서초동 Y씨택 • 명륜동 L씨 주택 • K씨 주택 • K씨주택 • 과천 김씨 주택 • J회장택 • 이씨택 • 신사동 B씨 주택 • K씨 주택 • 박사장택: 성북동	오 택 길 서 진 우 유 규 성 김 기 석 송 광 섭 이영희·이석문 정 구 은 김 인 석 정 시 춘 김 문 규 유 경 철 임 동 윤 김 한 일 김 수 근	건축연구소장 하나건축 범양종합건축 아람건축 환건축연 희림건축 삼예건축 종합환경, 일진 건축환경, 동인 하나그룹 종합건축연 아진종합건축 동도건축 공간연구소
1983년 10월호		
• 삼천리산업(주) 본사사옥 • 서울화랑 • 감람감리교회 • 제일은행부민동지점 • 에너지관리공단빌딩	윤승중·변용 김 문 규 김충진·강효석 김기웅·박영진 이옥균·김인철 정덕훈	원도시건축 하나그룹 주, 한국종합건 건축설계, 삼정 주, 연, 이건축
1983년 11월호		

회 원 작 품 명	건 축 사 명	사 무 소 명
• 한일은행 동래지점 • 김중희씨택 • 이태원동 ○씨 주택 • 동수원병원 • 서울대학교 제2기숙사	윤 석 우 공 일 곤 김 중 호 김 석 철 조 동 영	주. 종합건축 공일곤건축 신라건축 건축연. 아키타 종합환경. 일진
1983년 12월호 • 영동백화점 • 박달빌딩 • 서울여자대학정문 • 오박사택 • 동작동 유교수택 • 방배동 ○씨택	강 영 호 김 기 석 이육균·김인철 정덕훈 박 성 규 민 병 진 박 선 원	주. 천일고속 아람건축 주. 업. 이건축 주. 업. 이건축 하나그들 삼우종합건축 보령건축
1984년 1월호 • 동아대학교 교수회관 • 공중목욕탕 및 주택 • 방배동 빌딩 • 풍림산업(주) 본사사옥 • 국립안동대학 교양학관	김 인 석 유 연 창 송 광 섭 김호·김정식 안 장 원	종합환경. 일진 미도-류건축연 환건축연구소 주. 부림종합설 신아건축
1984년 2월호 • 인의빌딩 • 삼안공영본사 사옥 • 코리아헤럴드 사옥 • 창성동사무소 • 삼원빌딩 • 천하빌딩	정 시 춘 조 성 룡 김 정 철 서 진 우 유 회 선 최 동 규	건축환경. 동인 우원건축 주. 정림건축 하나건축 한인건축 서인건축
1984년 3월호 • 제주 K호텔 • 한서상호신용금고 사옥 • 장전동 K씨택 • 갈현동 소나무집 • 한성 성결교회 • 신흥동 B씨 주택	김 무 영 김 영 수 유 광 홍 유 춘 수 윤 봉 원 배 동 권	한국환경설계 김영수건축연 광장건축 공간연구소 건축연. 원전사 동신건축
1984년 4월호 • 제일은행 창원지점 • 서소문 KAL빌딩 • 정포주택 • 주. 세신실업본사 및 공장 • 국립경상대학교 학생 및 교수회관 • 학봉교회	김 기 용 홍 영 회 정 구 은 안 일 성 황 일 인 김 기 석	건축설. 삼정 주. 신한엔지니 삼에건축 극동설계사 종합환경. 일진 아람건축
1984년 5월호 • 명륜동 K씨택 • 역삼동 김사장택 • 신영동 성사장택 • 성북동 K박사택 • 반포동 이씨 주택 • 우이동 양교수택 • J씨 주택 • K박사택 • 유이박사택	황 일 인 위 정 복 강 철 구 주 영 삼 김 총 진 박 상 호 임 길 성 김 문 규 임 동 윤	종합환경. 일진 주. 연회건축 동우건축 한협도시건축 주. 한국종합정주 석림건축 건축·경동마당 하나그들 아진건축
1984년 6월호 • 단국대학교 난파기념 음악관	김 인 석	건축연. 일진

회 원 작 품 명	건 축 사 명	사 무 소 명
• 동의공업전문대학 • 국립의료원 • 초양빌딩 • 중동중·고등학교 • 형주빌딩	안 일 성 김 회 수 최 동 규 이육균·김인철 정덕훈 이 강 식	극동설계사 현진건축 서인건축 주. 업. 이건축 주. 완종합건축
1984년 7월호 • 가든예식장 • 단수동 성당 • 광명종합병원 • 서마산 장로교회 • 경남부지사 관사	송 광 섭 김 영 수 조 동 영 배 동 권 안 일 성	환건축연구소 김영수건축 건축연. 일진 동신건축 극동설계사
1984년 8월호 • 광주 간트리클럽하우스 • 배재 중·고등학교 • 한국의환은행포항지점 • 행림출판사 사옥 • 명륜동 흥막사택 • 청아예식장	오 응 석 박 재 환 이 영 회 정 재 원 표 상 권 김 성 탁	신조건축 도성건축 회림건축 라이온건축 상현건축 한국건축
1984년 9월호 • 용평리저트클럽하우스(회원차 품공모전 대상) •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최우수상) •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최우수상) • 갈현동 소나무집(우수상) • 계명대학교 학생회관(우수상) • 도예가 원교수택(우수상) • 단국대학교 난파기념 음악관(우수상) • 부산시 총춘탑 • 부산 H씨 주택(장려상) • 논산 H씨 주택(장려상) • 용인성당(장려상) • 홍성상호신용금고 사옥(장려상) • 호텔낙산비치(장려상) • 국립경상대학교 학생 및 교수회관(장려상)	김 관 옥 권 도 응 최 태 용 유 춘 수 임 팔 압 최 승 원 김 인 석 김 중 업 김 봉 섭 유 연 창 이 기 범 이 상 훈 이 인 수 황 일 인	대호건축 주. 정림건축 주. 정림건축 공간연구소 동인건축 태을건축 건축연. 일진 김중업건축 신화건축 미도-류건축 주. 도시건축 대우건축 목진종합건축 종합환경. 일진
1984년 10월호 • 삼부빌딩 • 김박사택 • 원암예식장 • 한일은행 북부합숙소	이 영 일 송 수 구 차 동 명 윤 석 우	삼송건축 한송건축 하나로건축 주. 종합건축
1984년 11월호 • 역삼동 K씨 주택 • 전주 서문교회 • 청담동 이씨 주택 • 보해빌딩	민 병 진 김 정 식 유 규 성 박 영 호	삼우종합건축 주. 정림건축 범양건축 건축환경동인 외진건축
• 역삼동 정포주택 • 금오공대 학생회관 및 도서관	정 구 은 위 정 복	삼에건축 주. 연회건축

회 원 작 품 명	건 축 사 명	사 무 소 명
• 한빌딩 1984년 12월호 • 예술의 전당 • 울산시민회관 • 중소기업회관. I • 언론인 수련회관 • 예술의 전당 • 울산시민회관 • 중소기업회관. II • 강화 토산품전시관 • 개포우성상가 • 우석빌딩 • 올림픽회관 1985년 1월호 • 고운빌딩 • 대한화재보험 • 부산일보 사옥 • 두손빌딩 • 농협전북도지회 • 중앙대(안성) 음악대학 및 영신기념관 1985년 2월호 • 대한여행사 사옥 • 마산 고려병원 • 의료보험회관 • 대지동 점포 및 주택 • 석 담 • 장충동 SD빌딩 1985년 3월호 • 대한상공회의소 • 도신산업빌딩	유 원 제 김 중 업 한 종 언 김 정 식 조 판 영 김 수 근 임 장 열 이 영 회 김 지 덕 윤 태 응 유 경 철 이 상 수 강 석 원 이승우·윤석우 김인호·한영재 김 석 철 이 기 병 김호·김정식 김 기 석 한 강 섭 이 영 일 이 종 선 유 광 흥 강 석 원 김 정 철 김 봉 훈	범건축 김중업건축 금성건축 주. 정림건축 건축연. 일건 공간연구소 성림건축 회림건축 유신설계 동인건축 주. 종합건축 주. 신진엔지니어 그룹-가건축 종합건축 엄. 이건축 김석철건축 도시건축 부림건축설계 아람건축 한·건축 삼송건축 단건축 광장건축 그룹-가건축 정림건축 신신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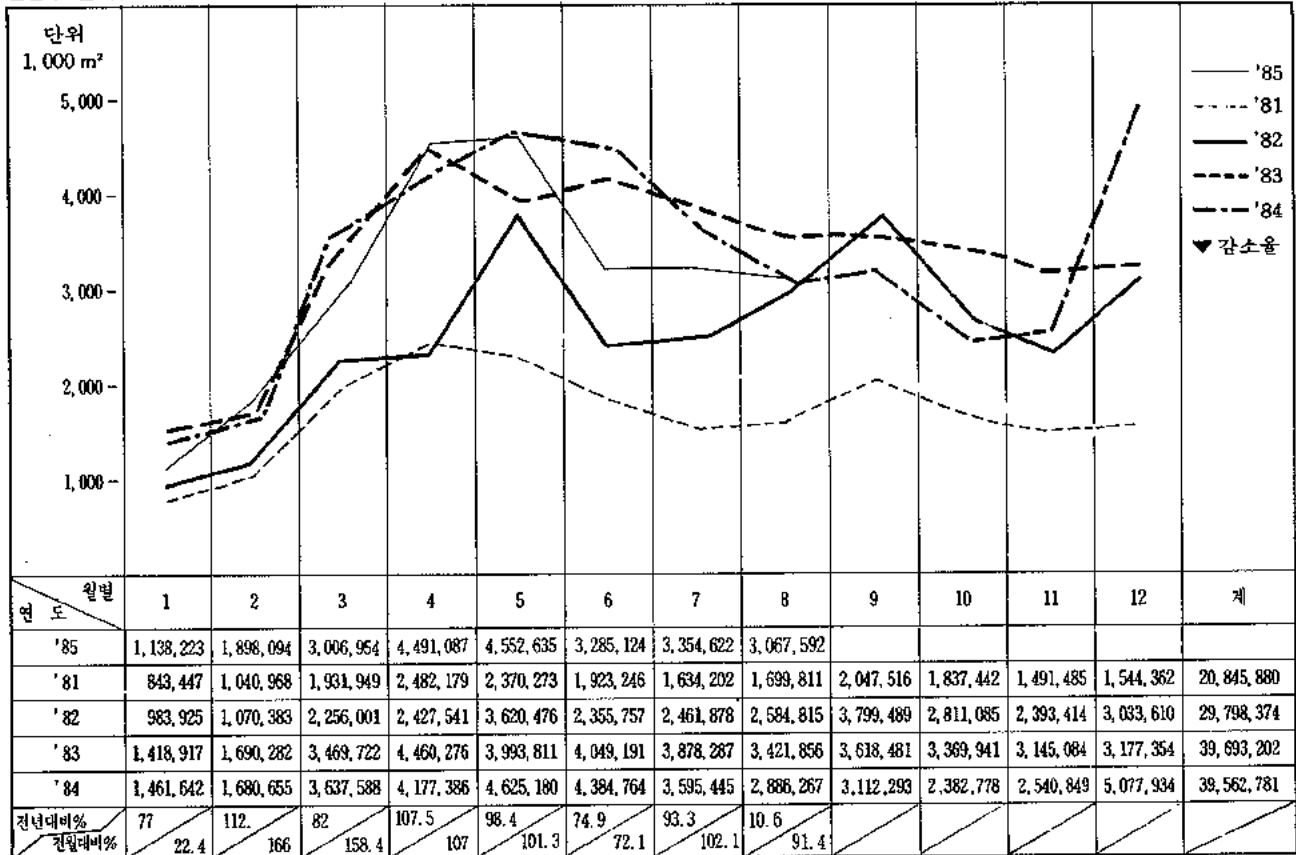
회 원 작 품 명	건 축 사 명	사 무 소 명
• 프라자654빌딩 • 성북동 A씨 주택 • 갈현동 C씨 주택 • 성산동 G씨 주택 • 소극장 산울림 • 국제센터빌딩 1985년 4월호 • 대한건축사협회 • 평창동 L씨대 • 방배동 B씨대 • 방배동 K씨대 • 한남동 K씨대 • 논현동 H씨대 • 개포우성아파트타운 • 인천 간석동 Y씨대 • 용암동 L씨대 1985년 5월호 • 한국은행 청주지점 • 도로교통안전협회회관 • 동철빌딩 • 부산대학교 인문사회관 • 부산 삼일교회 1985년 6월호 • 한국증권금융(주) 사옥 • 제일상호신용금고 논현동지점 • 대신. 신영증권사옥 • 동국대학교. 경주대학 학생회관 •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 대구직할시 종합예술회관 • 사랑의교회	정 용 찬 이 세 훈 진 형 훈 양 재 국 정 정 치 이 원 혁 송 광 섭 김 기 석 황 일 인 김 영 수 박 재 환 김 환 욱 윤 태 응 임 동 운 박 동 회 김 기 용 김 인 천 김 석 철 안 일 성 김 정 식 윤 석 우 임 연 현 송 가 덕 김 인 석 김 중 업 김 인 호 황 일 인	삼우종합건축 세하건축 진건축 녹양건축 합정건축 동해건축 환건축 아람건축 일건. 종합환경 김영수건축 도성건축 대호건축 동인건축 아진건축 동남아건축 삼정건축 연. 아건축 김석철건축 구동설계 정림건축 종합건축 영건축 정일엔지니어 일건건축 김중업건축 대아건축 일건건축

내시간 소중하면 남의시간 존중하자.

건축허가 (도서신고) 면적변동추세

건설부 집계 / 건축허가현황

〈'85. 8월말 현재〉



건축사협회 집계 / 도서신고현황

〈'85. 8월말 현재〉

